외규장각 의궤 연구

Funerary Rites of the Oegyujanggak Uigwe II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る。

학술총서

외규장각

의 궤

외규장각 의권 학술총서

외규장각 의 궤 연 구 흉 례

2018

II



ISBN 978-89-8164-179-5 ISBN 978-89-93773-24-8(세트)

國立中央博物館 NATIONAL MUSEUM OF KOREA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외규정각 의계 원구 Funerary Rites of the Oegyujanggak Uiguve II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외규장각 의궤 연구 Funerary Rite: 하 레 III

Funerary Rites of the Oegyujanggak Uigue II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학술총서 의궤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발간사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4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흉례凶禮 II』를 발간합니다. 이 학술총서는 지난 2011년 5월에 프랑스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의 중요성과 그 내용을 알리고, 연구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학술총서는 지난 2015년 12월에 발간한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 3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흉례凶禮 I』에 이은 흉례 의궤에 관한 두 번째 연구서입니다.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흉례凶禮 I』에서는 흉례 의궤 중에서 외규장각 의궤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까지 국내에 동일한 소장본이 없었던 의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유일본으로 알고 있던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재검 토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의궤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왕실 구성원들의 상장례인 흉례는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포함한 의례이자 유교적 통치의 근간이 되는 예제禮制를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의례였습니다. 흉례는 오례五禮 중에서도 절차와 과정이 가장 길고 복잡했습니다. 또한 흉례 의궤는 조선 왕조 의궤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크며 외규장각 의궤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 하기 때문에 흉례 의궤를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규정각 의궤를 비롯한 조선 왕조 의궤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의궤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의궤의 역사적, 문화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총서에서는 의궤를 역사 자료의 측면에서 조명하여 조선시대 흉례 의식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성격에 대해 규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수도四獸圖, 제기祭器 등 의궤 속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향후 의궤와 관련된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규장각 의궤 누리집(http://uigwe.museum.go.kr) 에서 의궤 원문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외국인들도 외규장각 의궤를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의궤 소개, 서지사항, 해제 등의 기초 자료를 영문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외규장각 의궤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의궤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2018년 4월 국립중앙박물관장 배 기 동

Forewor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s pleased to publish *Funerary Rites of the Oegyujanggak Uigwe II: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the fourth installment in its series of anthologies of academic essays on the Oegyujanggak Uigwe. These publications are intended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content and significance of the Oegyujanggak Uigwe, which was returned from France in May 2011, and promote further application of related research findings.

This 2018 issue addresses once again the funerary rites recorded in the Oegyujanggak Uigwe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academic efforts of the preceding volume published in December 2015. That issue directed special focus on the Uigwe addressing funerary rites that are only found among the Oegyujanggak Uigwe and revealed the potential for study of Uigwe through the lens of various disciplines.

Funerary rites for royal family members possessed considerable political implications and represented the most concrete embodiment of Confucian rites, which in turn constituted the foundation of the Confucian state. Probably for this reason, Uigwe on funerary rites make up the largest proportion among the extant Uigwe volumes, and over half of the Oegyujanggak Uigwe deal with these procedures. In this sense, further in-depth studies of Uigwe on funerary rites can be considered the most urgent.

In addition, new approaches to Uigwe are required in order to encourage the use of Uigwe content for diverse research purposes and more widely spread awareness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of Uigwe. This volume approached Uigwe as historical resources to reveal the political features inherent in the funerary rites of the Joseon dynasty. It also investigated details of funerary rites recorded in the Oegyujanggak Uigwe, including the four directional deities and ritual vessels used for funerary rite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maintains a webpage (http://uigwe. museum.go.kr) that provides online resources related to the Oegyujanggak Uigwe, including electronic images and copies of the original texts. Starting in 2018, English versions of the introduction to Uigwe and the related bibliographies and annotations are available online to allow easier access to the Oegyujanggak Uigwe by a broader audienc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ill continue to support research of Uigwe from diverse perspectives in order to disseminate the value of the Oegyujanggak Uigwe among a wider public and promote the use of Uigwe content by the general public and related experts.

April 2018 Director General, National Museum of Korea BAE Kidong

Avant-propos

En 2018, le musée national de Corée publie le quatrième recueil de recherches sur les *Uigwe* de la bibliothèque royale de la dynastie Joseon, intitulé *Études des Uigwe: les rites funéraires II*. La collection, qui comprendra quatre recueils de recherches, a pour but de faire connaître l'importance et le contenu des *Uigwe* qui sont revenus de la France dans leur pays d'origine, et de permettre l'exploitation des résultats des études.

Le présent recueil est le deuxième ouvrage sur les *Uigwe* relatifs aux rites funéraires après la publication du troisième recueil, intitulé *Études des Uigwe: les rites funéraires I.* Ce dernier se focalise sur les *Uigwe* dont il n'y avait aucun exemplaire en Corée avant leur retour de France. Il permet d'apercevoir de possibles recherches sur les *Uigwe* en divers domaines.

Les rites funéraires réservés aux familles royales impliquent une signification hautement politique, et mettent en œuvre de la façon la plus concrète les principes des rituels funèbres qui sont au fondement de la doctrine et la pratiques confucéennes du gouvernement. Les *Uigwe* relatifs à ces rites font la plus grande partie des protocoles royaux de la dynastie Joseon, et constituent plus de la moitié de ceux de la bibliothèque royale de cette époque. C'est pourquoi il convient d'examiner les *Uigwe* de ce type de très près.

Pour dynamiser les études basées sur les *Uigwe* et faire largement connaître leur valeur historique et culturelle, il faut développer de nouvelles approches. Le présent recueil examine les *Uigwe* comme des documents historiques, ce qui permet d'identifier les caractères politiques que recèlent les rites funéraires sous la dynastie Joseon. Mais il n'exclut pas de l'étude les éléments concrets tels que les peintures des quatre animaux et les ustensiles de culte.

De plus, le musée national de Corée met en place divers services, comme l'accès aux *Uigwe* en version intégrale numérisée à travers le site des *Uigwe* de la bibliothèque royale de la dynastie Joseon (http://uigwe.museum.go.kr). À partir de 2018, le musée fournit également des documents de base en version anglaise, comme une présentation des *Uigwe*, des notices bibliographiques et des explications, afin de faciliter au public international l'accès aux protocoles royaux.

Le musée va continuer à faire connaître la valeur des *Uigwe*, et à les explorer sous divers angles afin de permettre, non seulement aux spécialistes, mais aussi au public, de profiter des trésors qu'ils renferment.

Avril 2018 Le Directeur général du Musée National de Corée BAE Kidong

사진협조 가나다순

고려대학교 박물관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일본 고려미술관 日本高麗美術館

일본 도쿠가와미술관 日本徳川美術館

일본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日本大阪府立中之島図書館(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제공)

중국 국가박물관 中国国家博物馆

일러두기

- 1.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흉례凶禮 II」는 2011년 2월 7일 한국-프랑스 간 합의문 및 3월 16일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국립도서관 간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의 연구 활용을 진작하기 위해 기획한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의 네 번째 책이다.
- 2. 이 책은 외규장각 의궤 중 흉례凶禮 의궤를 연구한 논고편과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부록에는 국왕의 발인發靷 장면을 담은 〈발인반차도發靷班次圖〉의 세부 구성 및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묘호廟號·시호諡號·존호尊號·휘호徽號를 수록하였다.
- 3. 외규장각 의궤 297책 중에는 의궤가 아닌 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를 지칭할 때는 '외규장각 의궤'로 통칭하였다.
- 4. 의궤의 명칭은 내제內題를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성격의 의궤와 통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부 수정하였다. 주인공이 있는 행사를 기록한 의궤는 내제 앞에 주인공의 명칭을 붙여 표기하였다. 이때 주인공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칭을 대표명으로 삼되, 의궤 서명 내에서 격을 맞추어야 할 경우에는 대표명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다.
- 5. 의궤의 연도는 의궤에 기록된 행사 연도가 아닌 의궤 편찬이 완료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 6.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랐다.

목차 Contents

부록

Appendices

1.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흉례Ⅱ』의 구성 Introduction to Funerary Rites of the Oegyujanggak Uigwe II: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이재정 Lee Jaejeong	014
2.	인조·효종의 국장과 국장 의궤 State Funerals of King Injo and King Hyojong and Uigwe for Their State Funerals 이선아 Lee Sun Ah	028
3.	효종 재궁의 개조와 그 정치적 성격 Modification of King Hyojong's Coffin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박미선 Park Mi-sun	058
4.	의궤를 통해서 본 명성왕후 장례의 특징과 정치적 상징성 State Funeral of Queen Myeongseong: Its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Implications Reflected in Uigwe for Her State Funeral 이상식 Lee Sangsik	090
5.	19세기 효명세자의 상례 절차와 지출 구조 Procedures and Expenditures for Funerary Rites for Crown Prince Hyomyeong in the Nineteenth Century 최주희 Choi Joohee	114
6.	헌종대 수릉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Relocation of Sureung Tomb of King Ikjong during the Reign of King Heonjong 임혜경 Lim Hyekyung	146
7.	조선시대 흥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Study of the Four Directional Deities Painted on <i>Changung</i> as Illustrated in Uigwe for Funerary Rites of the Joseon Dynasty 명세라 Myeong Sena	184
8.	17~19세기 흥례 의궤의 혼전제기 기록에 대한 고찰 Study of Ritual Vessels Used in Spirit Halls as Recorded in Uigwe for Funerary Rites from the Seven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y 이재정 Lee Jaejeong	218
9.	17세기 도감 생산 공문서 연구 -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를 중심으로-Study of Official Documents Produced by <i>Dogam</i> in the Seventeenth Century with a Focus on the <i>Uigwe for Bestowing Posthumous Titles to King Jeongjong and Queen Jeongan</i> 박준호 Park Jun-ho	258
1.	〈발인반차도〉자세히 보기 Details of the Procession Illustration (Banchado) of the Carrying out of the Royal Coffin for Burial	304
2.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묘호廟號・시호諡號・존호尊號・휘호徽號 Titles of the Kings and Queens of the Joseon Dynasty	324

1.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흉례II』의 구성 Introduction to Funerary Rites of the Oegyujanggak Uigwe II: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이재정 Lee Jaejeong

- 2. 인조·효종의 국장과 국장 의궤
 State Funerals of King Injo and King Hyojong and
 Uigwe for Their State Funerals
 이선아 Lee Sun Ah
- 3. 효종 재궁의 개조와 그 정치적 성격 Modification of King Hyojong's Coffin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백미선 Park Mi-sun
- 4. 의궤를 통해서 본 명성왕후 장례의 특징과 정치적 상징성 State Funeral of Queen Myeongseong: Its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Implications Reflected in Uigwe for Her State Funeral 이상식 Lee Sangsik
- 5. 19세기 효명세자의 상례 절차와 지출 구조 Procedures and Expenditures for Funerary Rites for Crown Prince Hyomyeong in the Nineteenth Century 최주희 Choi Joohee

는 고 Essays

- 6. 헌종대 수릉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Relocation of Sureung Tomb of King Ikjong during the Reign of King Heonjong 임혜경 Lim Hyekyung
- 7. 조선시대 흉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Study of the Four Directional Deities Painted on *Changung* as Illustrated in Uigwe for Funerary Rites of the Joseon Dynasty 명세라 Myeong Sena
- 8. 17~19세기 흉례 의궤의 혼전제기 기록에 대한 고찰
 Study of Ritual Vessels Used in Spirit Halls as Recorded in
 Uigwe for Funerary Rites from the Seven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y
 이재정 Lee Jaejeong
- 9. 17세기 도감 생산 공문서 연구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를 중심으로 Study of Official Documents Produced by *Dogam* in the Seventeenth Century with a Focus on the *Uigwe for Bestowing Postbumous Titles to King Jeongjong and Queen Jeongan* 박준호 Park Jun-ho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흉례II』의 구성

01

Introduction to Funerary Rites of the Oegyujanggak Uigwe II: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Lee Jaejeong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 Ⅰ. 머리말
- Ⅱ. 수록 논고 소개
- Ⅲ. 맺음말

I. 머리말

유교적 국가 의례인 오례五禮 가운데서도 왕실 구성원들의 상장례喪葬禮인 흉례凶禮는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포함한 의례이자, 유교적 통치의 근간이 되는 예제禮制를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하 는 의례였다. 따라서 흉례는 오례 중에서 절차와 과정이 가장 길고 복잡했으며, 조선 왕조의 의궤 중에서도 흉례 의궤의 분량이 가장 많다. 특히 외규장각 의궤 186종 189건 294책 중 흉례 의궤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규장각 의궤의 연구 성과를 담은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흉례 의궤를 먼저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015년 발간한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3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흉례 [』에서는 흉례 의궤 중에서도 외규장각 의궤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국내에 동일한 소장본이 없었던 자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는 의궤들의 사료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였다. 또한 공예사, 복식사, 회화사 등 여러 측면에서 의궤를 활용한 연구를 시도하고, 의궤에 사용된 안료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의궤에 기록된 안료의 명칭과 대조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간 유일본으로 생각되었던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의궤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4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흉례Ⅱ』는 흉례 의궤를 좀 더 다양한 각도와 주제에 걸쳐 다루어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도 국내 미소장본인지 여부에 국한하지 않았다. 또 외규장각 의궤뿐 아니라 타 기관에 소장된 의궤까지 포함하여 개별 의궤를 분석하기도 하고 주제를 통시대적으로 살펴보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시도하였다.

Ⅱ. 수록 논고 소개

본 총서에는 총 8편의 논고가 수록되었다. 먼저 소개되는 3편의 논고는 17세기에 거행된 흉례

^{1.} 이재정, 「외규장각 의궤 홍례 관련 의궤 연구 서설」,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3 『외규장각 의궤 연구: 홍례 I』(국립중앙박물 관, 2015. 12.), 17쪽에서는 유새롬, 「외규장각 의궤의 현황과 특징」,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1 『외규장각 의궤의 현황과 전 망』(국립중앙박물관, 2012. 12.), 151~155쪽에 의거하여 흉례 의궤의 수를 89종 91건 163책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흉례 의궤의 범주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 본 논고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가운데 인조仁祖(재위 1623~1649), 효종孝宗(재위 1649~1659), 그리고 현종顯宗(재위 1659~1674)의 정비正妃이자 숙종肅宗(재위 1674~1720)의 어머니인 명성왕후明聖王后(1642~1683)의 국장國葬과 관련된 것이다.

17세기 조선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예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왕권王權과 신권 臣權, 당파黨派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났다. 효종과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仁宣王后(1618~1674) 의 국상 때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莊烈王后(자의대비慈懿大妃, 1624~1688)가 상복喪服을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예송논쟁禮訟論爭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교의 핵심 원리인 예의 실천을 두고 일어난 예송논쟁은 조선 왕실의 흉례가 얼마나 중요한 정치적 이슈였는지를 잘보여준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치사, 사상사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흉례 과정과 절차를 상세하게 수록한 의궤에서 예제와 관련된 쟁점들이 어떻게 드러나는 지를 살펴본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번 총서에 실린 3편의 논고는 의궤에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밝혀보려는 시도이다.

먼저 이선아의 「인조·효종의 국장과 국장 의궤」는 인조와 효종의 국장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통해 정치적 의례로서의 국장에 반영된 역학 관계를 고찰하고, 실제 관련 의궤에서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왕先王의 '국장'은 새로 즉위한 국왕이 신하들과 함께 논의하는 첫 국정國政으로, 국왕과 신하들과의 관계 형성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반정反正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와 뒤를 이은 효종은 재야에서 학식과 명망을 가진 학자들인 이른바 '산림山林'의 지원이 필요했다. 인조와 효종의 국장은 바로 산림의 정치적 역할이 중대한 정국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이선아는 이 논고에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의 편년 자료를 활용해 두 차례 국장에서 국왕과 신하들, 당파 간의 역학 관계를 살펴보고, 『인조국장도감의궤仁祖國葬都監儀軌』, 『효종국장도감의궤孝宗國葬都監儀軌』, 『효종영릉산릉도감의궤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 등 국장 의궤에 서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인조 국장에서는 총책임자인 총호사總護 使를 비롯한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되었는데, 이처럼 빈번한 인사 교체는 효종 즉위 초 효종과 산 림 세력 간의 조율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인조, 효종의 국장 과정은 정치적 역학 관계를 첨예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인조국장 도감의궤』, 『효종국장도감의궤』에는 인조의 묘호廟號 논란이나 효종 국장의 재궁梓宮 개조나 예송 과 같은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즉 의례의 절차 와 관련이 없는 비상시적 사안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에 국장의 행정적 절차

16

와 구체적 업무 분장과 실행에 관한 사례에 대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선아는 국장도감의궤가 이후에 진행할 국장에 참고하기 위한 행정 백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의례 절차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의궤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효종영릉산릉도감의궤』에서는 산릉 선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 했는데, 이는 국장에서 산역山役과 관련된 사안은 이후 국장의 중요한 전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17세기 예론의 차이에 따른 사상계 재편의 기점이 된 효종의 국장에 대해서는 장렬왕후의 복제를 둘러싼 예송논쟁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효종의 재궁을 개조하는 문제 역시 예론과 관련된 정치적 역학 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효종의 국장에서 중요한 이슈의 하나였다.

박미선의 「효종 재궁의 개조와 그 정치적 성격」은 효종의 재궁 개조 과정과 그것이 갖는 정치적의미를 면밀히 분석한 것이다. 국왕이나 왕비 등의 시신을 안치하는 재궁은 국왕이나 왕비가 승하한 직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제작해 두었다가 국장 중에 재궁의 몸체와 뚜껑을 조립하고 비단으로 꾸몄다. 조선 후기 영조英祖(재위 1724~1776) 때 간행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는 재궁과 관련한 새로운 절차로 재궁에 옻칠을 더하는 가칠加漆이 추가되었는데, 그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이 1659년(현종 즉위년)에 있었던 효종의 국장이다. 효종의 시신이 부어 이미 제작한 재궁과 맞지않아 본래의 재궁에 나무판을 덧붙여 늘리는 방법으로 개조하고 총 32회의 옻칠을 더한 것이다.

재궁은 단순히 시신을 안치하는 관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에, 재궁 개조는 사후의 국왕을 잘 보필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박미선은 이점에 주목하고,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孝宗殯殿魂殿都監儀軌』에 기록된 재궁 개조와 가칠 경과, 필요 물품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재궁 개조와 가칠을 둘러싸고 송시열宋時烈(1607~1689)을 중심으로 한 서인과 허목許穆(1595~1682)을 중심으로 한 남인의 입장차는 국장이 정치적 역학관계를 표출하는 장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는 효종의 국장과 관련된 예론을 언급하면서 복상服喪에 주목했지만, 이 논문을 통해 재궁을 고치고 꾸미는 것 역시 정치적, 예론적 쟁점이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실록 등 편년 사료에는 상세히 나오지 않는 재궁 개조 경과와 물품 등을 의궤를 통해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의궤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상식의 「의궤를 통해서 본 명성왕후 장례의 특징과 정치적 상징성」은 예송논쟁이 일단락되고 왕과 사서인士庶人간 의례의 차별성을 확정한 시점에서 거행된 명성왕후의 국장에 주목한 논고이다. 명성왕후는 숙종이 14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숙종의 정치적 후원자로서 왕실의 권위와 왕

위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에 따른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며 숙종의 왕권 안정에 기여한 인물이다. 이처럼 명성왕후는 숙종 초기의 여러 정치적 국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 논고에서는 살아생전 명성왕후의 이러한 정치적지위가 장례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또 예송논쟁에서 확정된 규정이 명성왕후의 장례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고찰하였다. 왕실의 장례 절차는 여러 세력들의 관심과 의견 조율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먼저 『명성왕후빈전도감의궤明聖王后殯殿都監儀軌』에 기록된 복제服制에 대한 규정 등을 근거로 명성왕후의 장례는 2차 예송논쟁의 원인이 된 인선왕후 장례의 선례先例를 따름으로써 장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논란을 최소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명성왕후의 장례는 이처럼 예송으로 정리된 전범을 준수하였지만, 특별한 요소들도 발견된다. 명성왕후의 자신의 장례와관련하여 유언을 남겼다. 따라서 장례 절차는 『국조오례의』와 함께 명성왕후의 유언에 따라 진행되어 주된 장례 물품을 감축하고 검소함을 유지하면서도 엄정하고 규모 있게 치러졌다. 또한 인선왕후의 장례 때와는 달리 명성왕후의 장례에서는 빈소에 나아가 곡을 하며 음식을 올리는 '조석곡전급상식의朝夕哭奠及上食儀'를 추가하여 숙종의 지극한 효심을 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명성왕후의 살아생전 정치적 위상과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지는 두 편의 논고는 효명세자孝明世子(1809~1830)의 흉례와 관련된 것이다. 효명세자는 순조純祖(재위 1800~1834)의 아들로 1812년(순조 12)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827년(헌종 즉위년) 왕명에 의해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였으나 1830년(순조 30)에 22세로 병사하였다. 1834년(순조 34)에아들 헌종憲宗(재위 1834~1849)이 즉위하자 익종翼宗으로 추숭追崇하고, 묘호를 수릉緩陵이라 하였다. 1846년(헌종 12)에 수릉이 풍수상 불길하다 하여 양주楊州 용마봉龍馬峯(현광진구용마산)으로능을 옮겼다. 1855년(철종 6)에 다시 천장론遷葬論이 일어나 현재의 동구릉東九陵으로 다시 옮겼으며, 1890년(고종 27)에 부인인 신정익황후神貞翼皇后(1808~1890)가 사망하자 수릉에 합장으로 능을조성하였다.

최주희의 「19세기 효명세자의 상례 절차와 지출 구조」는 효명세자의 상례 절차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3도감의궤 즉 『효명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孝明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효명세자장례도 감의궤孝明世子葬禮都監儀軌』, 『효명세자연경묘묘소도감의궤孝明世子延慶墓墓所都監儀軌』를 분석하여 효명세자의 상례 절차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상례에 들어간 비용과 지출 구조를 검토하였다.

이 논고에서는 『국조상례보편』과 3도감의궤를 비교하여 효명세자의 상례가 『국조상례보편』의

기본적인 규정을 따르면서도 국왕의 친부인 효명세자의 상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음을 확인하였다. 『국조상례보편』에 명시된 것보다 제조와 낭청의 수를 늘려, 왕세자 상례를 국장에 준하는 위상을 갖도록 한 점이나, 효명세자에 대한 순조의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는 절차를 추가한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의궤를 통해 상례에 든 비용과 지출 구조를 검토한 결과 쓸데없는 비용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국조상례보편』을 준용하여 왕실 의례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3도감의궤에는 상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묘소 조성 장인匠人과 역군役軍의 고가雇價의 지급 기준이 다른 의궤에 비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국역 동원에 대한 급가給價 체계를 이전보다 강화함으로써 경비 운영의 탄력성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해석하였다.

지금까지 의궤를 왕실 의례라는 측면에서 주로 다루었고, 왕실 의례에 사용된 비용 등을 분석하여 왕실의 지출 구조를 밝히려는 관점에서 의궤에 접근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이다.

임혜경의 「헌종대 수릉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는 1846년(헌종 12) 효명세자(익종)의 능인 수 릉綏陵을 옮기는 과정과 그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천릉遷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능역에 보수나 보완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하자가 있어야 하며, 대규모 공역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과 이에 대한 여러 정치 세력 사이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임혜경은 이 점에 주목하여 천릉이 결정되기까지의 논의 내용과 그 구체적인 진행 모습을 살핌으로써 당시의 정치 형국에서 천릉 공역이 어떠한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1834년(헌종 즉위년)에 헌종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왕실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효명세자를 익종으로 추존하면서 묘소도 연경묘延慶墓에서 수릉으로 격상했지만, 이는 묘호墓號가 능호陵號로 바뀐 것일 뿐 능소를 다시 만들거나 의물儀物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묘墓'의 상태였다. 이 논고에서는 헌종이 익종의 능을 옮긴 것은 명분상으로는 풍수의 문제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천릉을 함으로써 추숭의 목적을 완성하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특히 구릉舊陵에서 재궁을 꺼내 신릉新陵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기록한 『익종수릉천봉도감의 궤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와 새로 능을 조성하는 과정과 신릉에 재궁을 안치하는 과정을 기록한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翼宗綏陵遷奉山陵都監儀軌』를 주요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편년 자료에서 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천릉 논의의 상세한 내용과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이들 의궤에 수록된 도설圖說에 근거하여 새로 조성한 능에 적용된 각종 의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

즉 애책문哀册文의 내용뿐 아니라 재질도 청옥靑玉으로 바뀌고. 산릉에 설치된 난간석欄干石과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흉례!!』의 구성 19

18

무석인, 종류마다 4기씩 배설한 석수石獸, 찬궁에 그려 넣은 사수도四獸圖에 이르기까지 모두 왕의 상례인 대상大喪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격상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조선시대 천릉·천원遷園을 다룬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가 주로 17·18세기에 집중하였던 것에 비하여 이 논고는 기존 연구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았던 19세기의 천릉 사례에 주목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의궤를 활용함으로써 묘와 능의 위격의 차이가 실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두 편의 논고는 의궤에 수록된 특정한 소재를 통시대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명세라의 「조선시대 흉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은 흉례 의궤에 그려진 찬궁 横宮 사수도를 대상으로 조선시대 사수도 도상의 지속과 변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수도는 왕과 왕비의 관인 재궁이 능침에 안장되기 전에 임시 보관했던 찬궁의 장지[障子]에 그려진 것이다. 일 반적으로 찬궁은 재궁이 능침에 안장된 후 소각되나, 흉례 의궤에만 그 도설이 남아 있어 사수도 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논고에서는 현존하는 흉례 의궤에 수록된 43종의 찬궁 사수도 도상을 서로 비교하고 『국조오례의』등의 문헌과 회화 등에 나오는 도상들과도 비교하여, 사수도 도상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찰하였다. 흉례 의궤에 나오는 사수도의 도상은 예제禮制가 변화했던 영조대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즉 청룡은 그형에서 S형으로, 백호는 비호飛虎에서 출산호出山虎로, 주작朱雀은 삼수삼족三首三足의 상상 속의 새에서 하늘을 나는 일반적인 모양의 새로, 현무는 구사합체 龜蛇合體에서 거북만 남은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종전에는 18세기의 사회 변화에 따른 사실주의적 화풍과 연관시켜 보았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사수도상의 변화가 사실주의적 화풍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사수에 대한 여러 관념 중 어떤 것을 따르느냐와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흉례 의궤에 나오는 사수도 도설은 거의 대부분 산릉도감의궤에 수록되어 있으나 순조 연간에 있었던 현목수빈顯穆綏嬪(1770~1822)과 헌경혜빈獻敬惠賓(1735~1815), 효의왕후孝懿 王后(1753~1821)의 장례에서는 산릉도감의궤와 빈전혼전도감의궤 두 곳에 도설이 수록되어 있고, 형태가 서로 다르며, 빈전도감의궤에 수록된 도상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임을 확인했다.

이 논고에서는 특히 사수도 중에서도 영조대 이후 하늘을 나는 일반적인 새 모양으로 도상이 극적으로 변한 주작에 주목하여, 중국과 조선의 문헌과 도상에서 삼수삼족의 주작과 하늘을 나는 새 도상의 기원을 찾고, 도상의 변화가 중국의 예제를 받아들이게 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20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흉례 의궤에 나와 있는 찬궁 사수도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보다는 도상과 양식을 편년하기 위한 기년작으로 찬궁 사수도를 활용하였다. 이 논고는 의궤의 찬궁 사수도 자체를 대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수도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규명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통시대적 도상 분석을 통해 기존의 사수도 도상 변화에 대한도식화된 설명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문헌과 도상들을 비교하여 사수도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한편 이재정의 「17~19세기 흉례 의궤의 혼전제기 기록에 대한 고찰」은 흉례 의궤에 기록된 혼전제기魂殿祭器를 통시대적으로 고찰하여, 17~19세기에 혼전제기의 제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제사祭祀는 유교적 통치 체제의 유지 기반인 예제를 실현하기위한 중요 장치의 하나였다. 제사에서 신神과 소통하는 매개물인 제수祭需를 담거나 제사 의례 집행에 사용하는 제기祭器는 제사를 예에 맞게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서 조선 왕실에서 제기의 제작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다.

지금까지 왕실 제기에 대한 연구는 종묘제기宗廟祭器를 대상으로 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기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종묘제기에 대한 기록과 실물이 주로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왕실 구성원에 대한 제사라도 종묘대제는 오례 중 길례吉禮에 속하고, 선왕이나 왕실 가족의 사망에 따라 빈전殯殿과 혼전魂殿, 능묘陵墓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의례는 흉례에 해당한다. 제사의 종류나 대상에 따라 제수가 달라지거나 의례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기의 종류와 구성이 달랐다. 특히 장례를 마친 후 종묘에 부묘樹廟할 때까지 신주神主(咸主)를 봉안한 혼전에서는 의례 절차에 따라 다양한 제사를 지냈다. 궁중 내 혼전에서 진행되는 제사는 국왕이 궁중 내에서 왕실의 조상에 대한 효孝를 정례적으로 실천하는 중요한 의례였다. 따라서 혼전에서 사용되는 제기 역시 예제의 구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흉례 의궤에서는 혼전에서 사용한 제기의 종류와 재질, 수량, 무게 등 관련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 제사의 위격, 의례의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 논고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혼전제기에 관한 기록인 1601년(선조 34)의 『의인왕후빈 전혼전도감의궤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부터 1849년(헌종 15)에 편찬된 『헌종국장도감의궤憲宗國 葬都監儀軌』의 혼전제기에 대한 기록을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사 대상에 따라 제기의 구성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왕세자나 세자빈의 제사에는 일부 제기가 생략되거나 수량이 줄기도 했음을 확인했다. 18세기 이후 혼전제기의 제작처와 구성 등에서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정조正祖(재위 1776~1800) 국

『외규장각 의궤 연구: 휴례II』의 구성 **21**

장 이전에는 혼전도감의 삼방에서 혼전제기를 제작했고, 관련 각종 문서와 제기의 목록, 수량 등은 혼전도감의궤의 혼전삼방에 수록되어 있지만, 정조의 국장부터 국장도감의 삼방에서 산릉 제기山陵祭器와 함께 혼전제기를 주조했음을 확인했다. 수록처와 도설을 넣는 등 수록 방식도 달라졌다. 제기의 재질도 정조의 국장 이전에는 주철鑄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정조의 혼전제기부터 유철鍮鐵과 주철의 비율이 역전되어 유철의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 이 역시 정조 혼전제기에서 변화된 양상이다.

영조대에는 여러 차례 국상을 거치면서 예제를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따라 혼전제기의 제작처, 재질, 종류 등도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조英祖(재위 1724~1776) 국장에서 부터 망료쟁반望燎錚盤이 새로 제기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1757년(영조 33)에 축문과 폐백을 묻는 것에서 태우는 것으로 바꾼 예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박준호의 「17세기 도감 생산 공문서 연구 -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를 중심으로 -」는 조선시대의 중앙 관서의 문서 체계 이해를 위한 실례의 하나로 의궤를 분석한 것이다. 의궤에 수록된 공문서는 단일 사업에 대한 관청 생산 문서의 총합이라는 점에서 당시 조정의 문서 행정과 조직 체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 1차 사료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定宗定安王后諡號都監儀軌』를 분석하였다.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는 1681년(숙종 7) 정종에 대한 묘호의 추상追上과 가상시호加上諡號, 정종의 비妃인 정안왕후에 대한 가상휘호加上徽號에 관계된 제반 과정을 기록한 책으로 시호도감諡號都監에서 작성했다. 조선의 역대 국왕 중 정종만 묘호가 없어 이 때 묘호와 함께 시호를 가상한 것으로, 이 의궤는 조선 건국 이래 묘호가 없던 왕에게 묘호를 올려준 최초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호와 묘호는 국장 기간에 올리는 것이어서 관련 기록이 국장도감의궤에 나와 있다. 하지만 정종과 정안왕후의 경우는 사후에 추상된 것으로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런 경우가 이후에도 수차례 있었고, 현존하는 관련 의궤로는 『태조신의왕후태종원경왕후시호도감의궤太祖神懿王后太宗元敬王后諡號都監儀軌』 등이 있다.

시호나 묘소를 추상하거나 가상하는 일은 오례 중에서는 길례에 속하지만, 시호와 묘호를 올리는 일은 흉례인 국상 중에 발생하는 것이고, 시호나 묘호 관련 일관된 기록을 유지한 의궤가 별도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논고를 이번 총서에 실었다. 특히 시호나 묘소의 추상은 정례화된 사업이 아니고, 국왕의 사후 평가를 단행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따는 것이며,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는 이런 종류의 의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데 이 자료의 가치가 있다.

이 논고에서는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에 실린 199점의 도감 생산 공문서를 분석하여 17세기 도감의 실제 운영 방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도감의 직제는 영의정을 도제조都提調로, 판서를 제조로 하는 구조였지만 기본적으로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당하관堂下官 중심의 조직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 결정은 예조를 중심으로 국왕의 재가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결정 내용이 도감에 시달되면서 사업이 실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준호는 이 논고에서 의궤에 실린 문서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수·발급 기관과 형식 등을 분석함으로써, 도감 운영의 특징이 문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두 달 남짓한 기간 안에 치러야하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감에서는 일방적인 지시·하달의 문서가 많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상달 문서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17세기 조선 조정의 행정 문서 중에서 상달 문서가 하달문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을 상당히 중요한 특징으로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문서 형식과 체계에 대한 연구는 현전하는 고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중 단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고에서 의궤에 전사傳寫된 중앙 관청의 공문서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문서 서식에 대한 정의나 성격에 대한 재검토나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외규장각 의궤를 비롯한 조선시대 의궤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다. 하지만 의궤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역사적, 문화사적 가치를 발견하고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다. 본 총서에 실린 8편의 논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집필되었다. 시론적이고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본 총서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고자 한다.

첫째, 각각의 의궤가 생산된 역사적 배경이 해당 의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왕실이나 국가의 개별적 의례 절차는 법전이나 의례서 등에서 다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의 궤를 통해 정리되었다. 특히 오례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며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흉례는 변례變體가 많았다. 따라서 흉례 의궤에는 편년 사료 등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개별 의례만의 특징과 세부사항이 직간점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이런 점을 포착하고자 했다. 그 결과는 생

22 『외규장각 의궤 연구: 홈레I』의 구성 **23**

각처럼 나오지 않거나 미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더 축적된다면 의궤의 가치와 함께 조선왕실의 의례를 통해 다양한 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에 잘 다루지 않았던 주제나 분야를 다루었다. 의궤는 행사를 치루고 나서 그 행사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를 모아둔 것으로 조선시대의 문서 행정 체계를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측면에서는 제대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흉례에서 재궁의 가칠이라는 의례는 그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 점에 주목한 것도 새로운 성과이다. 19세기 효명세자 (약종)의 흉례에 주목한 두 편의 논고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도라는 생각이다. 그간 잘 다루지 않았던 19세기에 생산된 의궤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는 점, 왕실 행사의 비용 구조를 의궤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던 점, 국왕이 아닌 왕세자의 상례를 다룬 점, 천릉에 대해 다룬 점 등이 그러하다.

셋째, 특정한 주제를 통시대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의궤 관련 연구에서 하나의 주제나 대상을 통시대적으로 고찰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특히 의궤에 수록된 사수도와 혼전제기를 통시대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 총서에 수록된 두 편의 논고는 의궤에 수록된 관련 자료를 망라하여 통시대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예제의 변화가 사수도나 제기와 같은 의례의 구체적인 실현 과정에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넷째, 여러 분야의 연구들을 함께 모음으로써 개별 연구들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서에 실린 논고에서 헌경혜빈과 현목수빈의 빈궁혼궁도 감의궤에는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손 등의 찬실橫室에는 사수도를 그리지 않는다는 『국조상례보편』의 규정과 달리 사수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혼전제기의 구성도 국왕이나 왕비의 그것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세기 순조 연간에 거행된 헌경혜빈, 현목수빈, 효명세자의 장례관련 의궤는 17~18세기의 예장도감의궤와 달리 양례도감의궤襄禮都監儀軌(헌경혜빈), 장례도감의궤葬禮都監儀軌(현목수빈, 효명세자)로 명명되어 있다. 1800년(순조 즉위년)에 거행한 정조의 국장에서부터 혼전제기를 국장도감에서 만든 점도 함께 생각해본다면, 19세기의 흉례에는 18세기와 구분되는 변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연구들이 더 확장된다면 의궤를 통해 의례의 전모뿐 아니라 조선 왕실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더 풍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총서가 이런 연구에 조금이라도 보택이 되기를 바라다.

국문초록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흉례॥」의 구성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5년에 발간한 외규장각 의궤 학술 총서3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흉례 니에서는 흉례 의궤 중에서도 외규장각 의궤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국내에 동일한 소장 본이 없었던 의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간 유일본으로 알려졌던 외규장각의궤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의궤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현존하는 의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흉례 의궤의 가치를 발견하고, 연구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4에서 다시 한번 흉례 의궤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외규장 각 의궤 학술총서4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흉례 ॥』에서는 국내 미소장본에 국한하지 않고, 흉례 의궤에 대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번 총서에 실린 8편의 논고는 기존의 의궤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시각에 의한 연구이다. 또한 여러 분야의 연구들을 함께 모음으로써 개별 연구들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흉례가 정치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왔으나, 그것이 의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의궤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된 문서 모음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문서 행정 체계를 밝히는 자료로 활용했다. 흉례에 드는 세부적인 비용, 묘에서 능으로 위격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등을 의궤를 통해서 파악했으며 혼전제기와 찬궁 사수도상을 통시대적으로 살펴보아 시대에 따른 변천과 그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의궤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총서에서는 외규장각 의궤를 활용한 연구 영역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별 의 궤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설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외규장각 의궤, 흉례

24 "외규장각 의계 연구: 흥례 IL』의 구성 25

Abstract

Introduction to
Funerary Rites of the
Oegyujanggak
Uigwe II: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In 2015,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ublished *Funerary Rites of the Oegyujanggak Uigwe I* as the third installment in a series of anthologies of academic essays on the Oegyujanggak Uigwe. This volume turned a special focus to the volumes addressing funerary rites, surviving copies of which are only found among the Oegyujanggak Uigwe. Detailed information on these had been unavailable to the Korean public until their return as part of the Oegyujanggak Uigwe, due to the absence of Uigwe copies with these contents housed in Korean institutions. This academic effort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reviewing the volumes for which the only extant version is found among the Oegyujanggak Uigwe. It also explored the potential for further study of Uigwe from the perspectives of diverse disciplines.

This year's issue, the fourth in the series, once again addresses the topic of funerary rites in order to reveal the value of Uigwe on funerary rites, which make up the largest proportion among extant Uigwe titles. It also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Uigwe research. Rather than confining itself purely to the study of the volumes found only among the Oegyujanggak Uigwe, this publication approached the topic from diverse perspectives. The eight essays included explored topics and perspectives that are relatively unique within existing Uigwe study. This body of research from different fields helps identify common features in the concerned Uigwe titles, which can be difficult to note through discrete studies.

Keywords: Oegyujanggak Uigwe, Funerary Rites

Abstract

Présentation du Études des Uigwe : les rites funéraires II

Le troisième recueil d'articles sur les *Uigwe* de la dynastie Joseon, intitulé *Études des Uigwe* : les rites funéraires /, se focalise sur les documents traitant des rites funèbres, dont on ne disposait plus d'aucun exemplaire en Corée avant qu' ils reviennent de France. Ces études confirment la nécessité de réexaminer les *Uigwe* existant en un seul et unique exemplaire, et laissent entrevoir de nouvelles possibilités de recherches sur l'ensemble des *Uigwe* en divers domaines.

Le présent recueil d'articles examine aussi des *Uigwe* relatifs aux rites funéraires, afin de découvrir la valeur des protocoles royaux des rites funèbres, qui constituent la plus grande partie de l'ensemble des *Uigwe* conservés aujourd'hui, et d'élargir les champs de recherches. Ce quatrième recueil, intitulé *Études des Uigwe* : *les rites funéraires II*, entreprend donc l'examen de ces protocoles sous divers aspects, sans se limiter aux *Uigwe* existant en un seul exemplaire.

Les huit articles du recueil abordent les *Uigwe* dans de nouvelles approches et avec de nouveaux sujets. Cet ouvrage, qui regroupe donc des recherches bien différentes les unes des autres, permet d'apercevoir ce qui serait difficile à saisir à travers une seule étude.

Mots-cles: *Uigwe*, les rites funéraires

26 "외규장각 의계 연구: 홈레IL』의 구성 **27**

인조·효종의 국장과 국장 의궤

02

State Funerals of King Injo and King Hyojong and Uigwe for Their State Funerals

이선아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연구원 Lee Sun Ah

Research Fellow, Ijae Research Cente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Ⅰ. 머리말
- Ⅱ. 인조 국장 과정과 효종의 정치력
- 1. 총호사 임면과 효종의 산림 기용
- 2. 인조의 묘호 개정 열조에서 인조로
- Ⅲ. 효종 국장의 논란과 송시열의 역할
- 1. 송시열의 염습 연기와 재궁 개조
- 2. 효종 산릉 택정 논의와 송시열의 역할
- Ⅳ. 맺음말

I. 머리말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건국된 조선은 국가적, 사회적 윤리를 보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종 의례서儀禮書를 편찬, 간행하였다. 이러한 의례서에 기초하여 국가와 왕실의 중요한 의식과 행사를 시행하였고, 그 과정의 전말을 기록한 의궤를 편찬하였다. 의궤에는 국가와 왕실에서 주관하는 '의례'의 절차와 내용 및 진행 과정에서 거론된 문제와 소요 경비, 참가 인원, 포상 내용 등에 대해 기록하였다. 이런 국가 의례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의궤에 집적된 의례는 후대에 모범적 전례典例로 제시되었다. 의궤의 간행은 문치文治와 예치禮治를 지향한 조선의 국가 운영의 이상과 실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왕의 장례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의례 가운데 가장 정치적인 의례로서, 국장國葬은 즉위한 새로운 국왕이 신하들과 함께 논의하는 첫 국정國政이었다. 국장의 절차는 의례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장을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문제와 논란을 수습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 즉위한 국왕과 신하들의 관계들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국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첫 국정으로서의 국장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를 주목할 만하다.

현재 30여 종의 국장 의궤가 남아 있는데, 조선 전기에 제작된 의궤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전쟁으로 소실되었고 17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제작된 것이 남아 있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국장 의궤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17세기 중반에 편찬된 『인조국장도감의궤仁祖國葬都監儀軌』와 『효종국장도감의궤孝宗國葬都監儀軌』는 현존하는 국장 의궤 중 이른 시기의 것으로 국왕의 국장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궤이다.

특히 인조仁祖(재위 1623~1649)와 효종孝宗(재위 1649~1659)의 국장은 조선의 정치적 지형을 바꾼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에 치른 국장이기 때문에 국장 과정에서 예송禮訟과 같은 국왕의 정치적 지위와 권력에 대한 알력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인조의 국장은 효종의 즉위에 미온적이었던 서인西人 산림山林의 정치적 지지와 후원이 필요한 정국에서 치렀고, 효종의 국장은 19세의 현종顯宗(재위 1659~1674)이 효종 재위 연간에 성장한 산림의 도움을 받으며 치렀다. 효종과 현종은 첫 번째 '국정'으로서 국장에서 제기된 문제와 논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하들과 관계를 설정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조와 효종의 국장 과정을 기록한 『인조국장도감의궤』 『효종국장도감의궤』

^{1.} 조선시대에 편찬된 의궤에 대해서는 '김문식, 「조선시대사 연구와 의궤」, 『조선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참고.

『효종영릉산릉도감의궤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 및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인조와 효종의 국장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을 검토하고 '국장도감의궤'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해 되짚어 보고자 한다.²

Ⅱ 이조 국장 과정과 효종의 정치력

1. 총호사 임면과 효종의 산림 기용

인조는 1649년 5월 8일 미시末時에 창덕궁昌德宮 대조전大造殿에서 승하하였고, 같은 달 12일에 시신을 선정전宣政殿에 이안移安하였다. 9월 11일 자시子時에 발인發靷하고 9월 20일 오시午時에 현궁玄宮에 내리고 9월 21일 인시寅時에 창경궁昌慶宮 문정전文政殿에 마련된 혼전魂殿에 신주神主를 봉안奉安하였다.

국왕이 사망하면 왕의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목욕례沐浴禮와 습례襲禮를 거행한다. 그리고 옷과 이불로 시신을 감싸는 소렴小殮과 대렴大殮을 진행하고, 대렴이 끝나면 시신을 재궁梓宮(가래나무로 만든 국왕의 관)에 모시고 재궁을 빈전殯殿에 모신다. 인조 승하 당시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대신大臣, 예관禮官, 양사兩司에 하문下問하여 사망한 당일에 소렴을 거행하였다. 염 빈險殯할 때 대신, 승지, 사관, 양사의 장관이 입참入參하였다.

조선의 국장에는 국장도감國葬都監, 산릉도감山陵都監, 혼전도감魂殿都監이 설치되어 국장 절차를 진행하였다. 국장도감은 주로 염습強襲에서 발인까지 절차를 진행하였다. 국장도감은 국상 당일에 조직되어 장례 뒤 종묘에 배향할 때까지 신위를 모시던 사당이었던 혼전에 신주를 모셔오는 우

제虞祭가 끝날 때까지 약 5개월 동안 유지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국장에 관련된 의전儀典·재정·시설·문한文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재궁·거여車擧·책보册寶·복완服玩·능지陵誌· 명기明器·김홍의장吉凶儀仗·상유喪帷·포역鋪筵·제기祭器·제정祭奠·반우返虞 등의 일을 담당했다

국장도감에는 총호사總護使, 제조提調, 낭청郞廳이 임명되는데, 총호사는 국상에 관한 의식을 주관하던 임시 벼슬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규정에 따라 좌의정左議政이 임명되었다.⁵ 국장도감의 제조 3인은 호조판서·예조판서禮曹判書·선공감繕工監 제조를 임명했으며 낭청 8인 중 4인은 예조낭청·공조낭청·선공감·제용감濟用監의 관원으로 임명했다. 인조국장도감에 임명된 관리는 다음과 같다.

[표 1] 인조 국장도감 명단

직책	관직	담당자	임명 일자	교체 일자
총호사總護使	좌의정左議政	이경석李景奭	5월 8일	8월 8일
	우의정右議政	전태 화 鄭太和	8월 8일	8월 9일
	영의정領議政	 이경석李景奭	8월 9일	9월 2일
	좌의정左議政	조익趙翼	9월 2일	
제조提調	해숭위海嵩尉	윤신지尹新之	5월 9일	
	행호조판서行戸曹判書	원두표元斗杓	5월 9일	7월 13일
	호조판서戸曹判書	정세규鄭世規	7월 14일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육金堉	5월 9일	8월 28일
	예조판서禮曹判書	한흥일韓興―	8월 20일	9월 6일
	예조판서禮曹判書	 조형趙泂	9월 8일	
도청都廳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	 심대유沈大孚	 5월 9일	 8월 27일
	사복시정司僕寺正	장응일張應一	8월 28일	
	이조정랑吏曹正郎	이해창李海昌	5월 9일	 9월 3일
낭청郎廳		장우한張遇漢	5월 9일	 5월 28일
	부사직副司直	임의백任義伯	6월 2일	8월 18일
	부사직副司直	홍수洪鐩	8월 23일	8월 28일
	부사과副司果	임의백任義伯	8월 28일	
	호조정랑戸曹正郎	さいの表示	5월 9일	9월 4일
	사과司果	윤겸尹珶	9월 5일	
	예조정랑禮曹正郎	윤시우崔時遇	5월 9일	
	병조좌랑兵曹佐郎	정익鄭榏	5월 9일	
	형조좌랑刑曹佐郎	민조閔照	5월 9일	
	상의원별제尙衣院別提	이익노李翼老	 5월 9일	

^{5. 『}국조오례의』 권7, 「흉례・계령戒令」, "三都監都提調 以左議政為之 稱總護使 治喪葬諸事."

^{2.} 이 글을 구상하면서 국장 의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도움을 받았다. 박종민, 「조선 중·후기 국장도감의 운영과 국장의례-행정관리조직과 역할 중심으로」, 『민족문화』 31(한국고전번역원, 2008); 홍근혜, 「조선 성종대 정희왕후 국상 의례와 그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80(조선시대사학회, 2017); 최나래, 「조선 초기 세조 국상 연구」, 『역사민속학』 45(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석창진, 「조선 세종비 소헌왕후 국상의례와 그 의미」, 『역사민속학』 45(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안희재, 「19세기 조선 국왕 국장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총』 37(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박권수, 「17세기 조선왕실의 王陵地 선정 과정과 方外地師의 역할」, 『문화역사지리』 27(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5); 김병헌, 「효종대왕孝宗大王 영릉寧陵의 택산擇山 논쟁」, 『조선시대사학보』 69(조선시대사학회, 2014); 신재훈, 「조선 전기 천릉遷陵의 과정과 정치적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58(조선시대사학회, 2011).

^{3. 『}인조국장도감의궤』,「일시日時」.

^{4. 『}효종실록』권1, 효종 즉위년 5월 9일 정묘.

좌의정이 임명되는 총호사는 국장이 진행되는 기간에 교체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런데 인조의 국장에는 이례적으로 좌의정이 임명되는 총호사가 4번 임명되었다. 이에 대해 『인조국장도감의궤』「이조단자吏曹單子」에 교체 시기와 사유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인조의 국상 당일 5월 8일에 『국조오례의』의 규정에 의거하여 좌의정 이경석李景奭(1595~1671)이 총호사에 임명되었다. 그러다가 8월 8일에 우의정 정태화鄭太和(1602~1673)가 임명되었지만 체직遞職되어 다음날 8월 9일에 영의정에 임명된 이경석이 총호사를 다시 맡았다. 이경석은 9월 2일까지 총호사를 맡으며 한달 남짓 국장을 총괄하였고, 이경석의 뒤를 이어 좌의정 조익趙翼(1579~1655)이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호사를 역임하였다.

이와 같이 총호사의 임면任免이 반복된 것은 좌의정에 임명된 김상헌金尚憲(1570~1652)의 거취 때문이었다. 인조 국장 초기에 좌의정이 총호사를 맡은 관례에 의거하여 당시 좌의정 이경석이 총호사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8월 4일에 이경석이 영의정에 임명되고 좌의정에 김상헌이 임명되면서? 규정에 따라 김상헌이 총호사를 맡아야 하는데 노병老病으로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효종은 김상헌을 좌의정에 임명하여 총호사의 직책을 맡기고자 하였으나 출사하지 않으면서 총호사가 궐석關席이 되었다. 이에 인열왕후仁烈王后(1594~1635)의 상사喪事에 좌의정 오윤겸吳允謙(1559~1636)이 병으로 시사視事하지 못하였을 때에 우의정 홍서봉洪瑞鳳(1572~1645)에게 대행시켰던 전례前例를 근거로 우의정 정태화를 총호사로 겸찰兼察하게 하였다. 그런데 우의정 정태화마저 모친의 병 때문에 총호사를 체직하면서? 다시 궐석이 된 총호사를 영의정 이경석이 겸찰하였다.

좌의정에 임명된 김상헌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字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 석실산인石室山人, 서간노인西磵老人이다. 1590년(선조 23)에 진사進士가 되고 1596년(선조 29)에 임진왜란 중에실시한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관로에 올랐다. 1613년(광해군 5)에 대북파大北派가 영창대 군永昌大君(1606~1614) 및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칠서지옥七庶之獄을 일으켰을 때에 김제 남金悌男(1562~1613)과의 연혼連婚이 빌미가 되어 파직되었다가 1623년(양조 1) 양조반정 이후 이

- 7. 『효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 8월 4일 신묘.
- 8. 『효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 8월 8일 을미.
- 9. 『효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 8월 9일 병신.
- 10. 『인조국장도감의궤』, 기축 8월 초8일, "東曹禮曹同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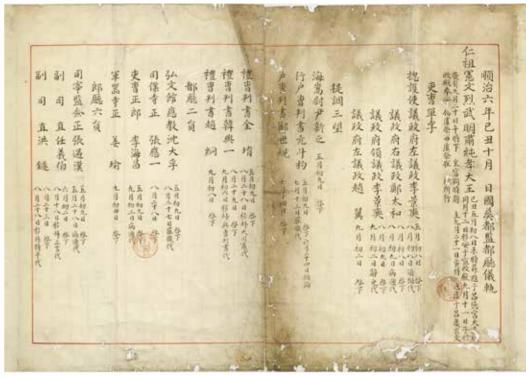


^{6.} 외규장각 의궤 가운데 국왕의 국장에서 확인되는 총호사는 효종의 국장에는 심지원沈之源, 숙종의 국장에는 이건명李健命, 경종의 국장에는 이광좌李光佐, 헌종의 국장에는 조인영趙寅永으로 교체 없이 국장을 총괄하였다. 『효종국장도감의 궤』, 『숙종국장도감의궤肅宗國葬都監儀軌』, 『경종국장도감의궤景宗國葬都監儀軌』, 『헌종국장도감의궤憲宗國葬都監儀軌』 의 「이조단자東曹單子」 참조,

조참의에 발탁되고 서인 청서파淸西派의 영수로 활약하였다. 1632년(인조 10)에 인조의 생부生父 인 정원군定遠君(1580~1619)을 원종元宗(1580~1619)으로 추숭追崇하는데 반대하여 물러났다가 1635년(인조 13)에 대사헌大司憲으로 재기용되었고,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주전론主 戰論을 주장하였다. 1639년(인조 17)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에 반대하는 소疏를 올렸다가 청나라에 압송되어 6년 후 풀려 귀국하였다. 1645년(인조 23)에 특별히 좌의정에 제수되고,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갔다. 김상헌은 반정에 참여하고 주전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산림으로 그 이념적 상징으로 '대로大老'라고 존칭되었다.

그런데 김상헌 등 서인 산림계는 소현세자昭顯世子(1612~1645)가 사망한 후에 발생한 강빈옥사 養嬪獄事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강빈옥사는 소현세자가 사망한 후 강빈이 인조를 독살하려 고 하였다는 무고誣告로 일어난 옥사로 강빈姜嬪(1611~1646)은 사사賜死되고 소현세자의 세 아들 도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된 사건이다. 서인 산림은 강빈에 대한 처벌에 반대하며 사건을 재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소현세자의 아들을 제치고 세자에 책봉되어 왕위를 계승한 효종에 대 해서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였다. 효종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서인 산림의 영수 김상헌 을 좌의정에 임명하여 인조의 국장을 총괄하는 총호사를 맡기려고 하였던 것이다. 당시 79세의 김상헌이 실질적으로 국장을 총괄하기는 어려웠고, 김상헌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효종은 즉위 초부터 김상헌을 초치招致하려고 노력하였고 사헌부에서도 김상헌을 조정 에 불러들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신들이 삼가 보건대 영돈녕부사 김상헌金尚惠은 나라의 귀감卷鑑이자 백관의 사표歸表이니 바로 오늘날의 대로木*입니다. 오래도록 교외에 거처하다가 분상奪養하기 위하여 도성에 들어왔는데, 들으니 오늘내일 사이에 물러갈 것이라고 합니다. 성상께서 왕위를 계승하신 초기에 유덕하고 노성한 신하가 조정에 있어야 의문나는 모든 전례共禮와 정령政수을 물어볼 곳이 있고 조정의 경사대부卿士大夫들이 본받을 바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의 근력이 쇠약해져서 출사할 수 없지만, 원근遠近의 사람들이 듣는다면 모두 현인賢사이조정에 있다고 하면서 눈을 비비고 교화를 관찰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니, 새롭게 정치를 행하는 데에어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대행 대왕의 시호를 이제 의정議定하려고 하니, 더욱 그로 하여금 참여하여 의논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간곡하게 만류하시어 현인을 공경하고 덕에 부합하고자 하는 정성을 보이소서."11



도1.『인조국장도감의궤』「이조단자」

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상헌은 칭병稱病하며 부응하지 않았다.¹² 효종은 인조의 국장을 계기로 자신의 왕권에 부정적인 산림과 정치적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김상헌은 끝내 출사하지 않았던 것이다.¹³ 하지만 효종의 이러한 정치적 시도는 김상헌 등 서인 산림의 정계 진출의 명분을 제공하여 효종이 정국을 주도하는데 유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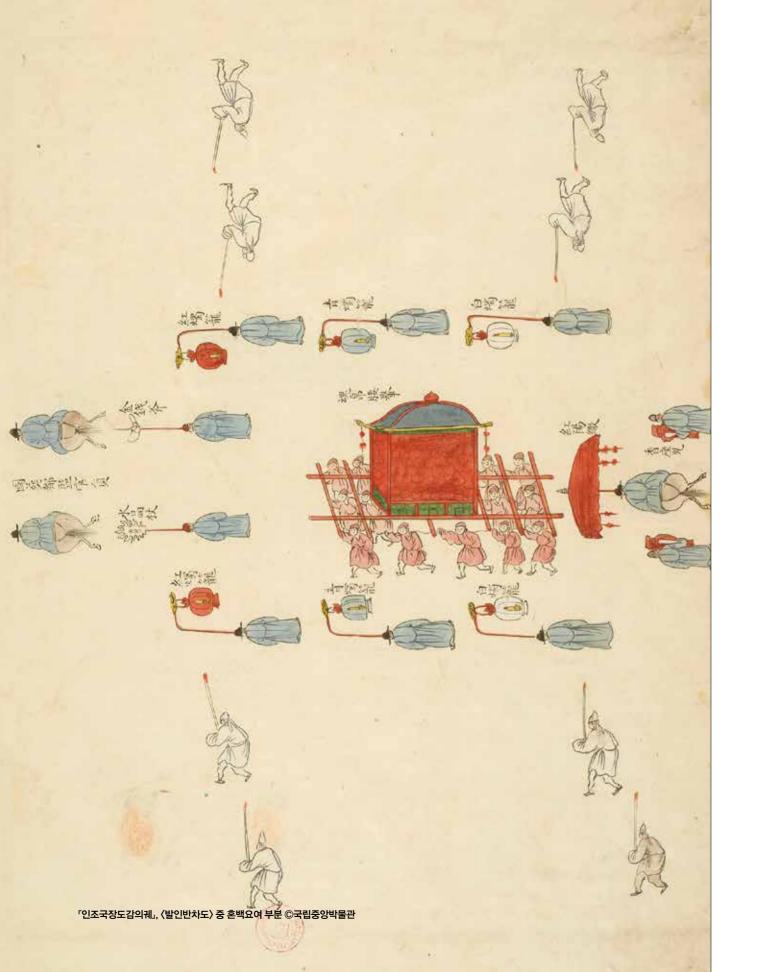
이밖에 인조의 국장도감의 관리는 다른 국장과는 달리 인적 교체가 빈번하였다. 3명이 임명되는 제조도 모두 6명이 임명되었다. 5월 9일에 해숭위海嵩尉 윤신지尹新之(1582~1657), 행호조판서 원두표元斗杓(1593~1664), 예조판서 김육金堉(1580~1658)이 임명되었다. 원두표가 6월 26일 피론被論되고 7월 13일에 파직되면서 후임 호조판서 정세규鄭世規(1583~1661)가 임명되었다. 김육이 8월 28일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면서 예조판서에 임명된 한흥일韓興—(1587~1651)이 맡았다가 9월 6일 한흥일이 병조판서로 옮겨가면서 예조판서에 부임한 조경趙絅(1586~1669)이 담담하였다. 14 도 1

^{11.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5월 14일 임신.

^{12. 『}효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 5월 14일 임신.

^{13. 『}효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 8월 5일 임진.

^{14. 『}인조국장도감의궤』, 「이조단자」.



이와 같이 도감 인원이 번번하게 교체된 것은 효종 즉위 초의 정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서인은 원당原黨과 낙당洛黨, 산당山黨과 한당漢黨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효종은 반정공신 세력이었던 원평부원군原平府院君 원두표의 원당과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김자점金自點(1588~1651)의 낙당을 견제하면서 송준길宋浚吉(1606~1672)과 송시열宋時烈(1607~1689) 등의 산당을 적극적으로 기용하여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인조의 묘호 개정 - 열조에서 인조로

국왕이 승하하면 새 국왕이 애지哀旨를 내려 묘호廟號, 능호陵號, 시호諡號를 정하여 올리게 한다. 묘호는 왕의 사후 대를 이은 다음 왕이 조종공덕祖宗功德의 원리에 의해 결정하여 올리는 데, 왕이 승하한 직후 왕위를 계승한 왕과 대신들의 논의를 거쳐, 대신들이 삼망三望을 올리면 새 국왕이 낙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인조의 국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묘호가 논란이 되었다. 5월 15일에 인조의 시호와 묘호가 정해졌고, 같은 날에 예조에서 "대행대왕의 시장諡狀, 지문誌文, 애책哀册, 시책諡册을 지을 제술관 製述官과 서사관書寫官을 국장도감으로 하여금 차출하라."고 요청하였다.¹⁵ 시호는 헌문정무인명순 효憲文定武仁明純孝라고 하고, 묘호를 열조烈祖라 하고, 전호殿號를 영사永思라 하고, 능호를 장릉 長陵이라 하였다.¹⁶ 인조의 묘호는 처음에는 '열조'라고 정하였다가 '인조'로 개정된 것이다. 처음 묘호 '열조'는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의 한소열漢昭烈 묘호의 자의字義를 취한 것이었지만 남당南唐의 임금 서지고徐知誥(888~943)가 참람되게 사용하여 국운國運을 재촉하였다는 이견이 나오면서 인조가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미 인종仁宗(재위 1544~1545)에서 사용된 묘호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으나 『통전通典』을 상고하건대 역대 제왕의 시호에 부자父子가 같은 경우도 있으므로 고금의 전 레典禮에 의거하여 '인仁'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효종은 처음에는 묘호 개정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조신朝臣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마지못해 허락하였다. 묘호가 열조에서 인조로 개정되면서 시호 가운데 '인명仁明'도 '명숙明肅'으로 고쳤다."

그런데 '열조'에서 '인조'로 개정된 묘호에 대해 유계兪棨(1607~1664) 등이 재고再考를 요청하였다. 의정부와 홍문관, 예문관의 관리들이 거듭 의논하여 대행대왕의 성대하신 공업과 지극한 뜻

^{15. 『}인조국장도감의궤』, 「계사啓辭」, 기축 5월 15일.

^{16. 『}효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 5월 15일 계유.

^{17. 『}효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 5월 23일 신사.

을 살려 열조로 정하였으며, 게다가 '인묘仁廟'가 이미 있는데 다시 묘호에 '인仁'을 쓰는 것은 분별하는 뜻이 없는 것이니 재론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게다가 응교 심대부沈大孚(1586~1657)가 "선대의 뒤를 이은 군왕들은 비록 큰 공덕이 있어도 모두 '조祖'로 호칭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이견을 내었다. 아울러 효종이 이런 논의에 대해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국가의 일은 대소를 막론하고 논의해야 될 것이 있으면 뭇 신하들이 소견에 따라 숨기거나 거리낌 없이 할 말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세盛世의 일"이라고 하면서 신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칭하는 것이 성군의 자세라고 효종을 압박하였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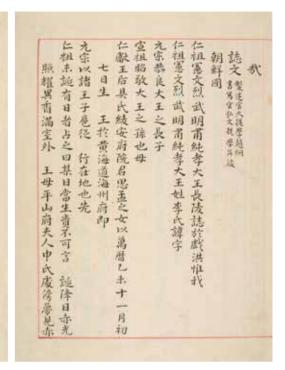
유계의 상소에 이어 사간 조빈趙贇(1587~미상)이 묘호 문제를 다시 의논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조빈은 심대부의 '조祖'라는 호칭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동조하며 한漢·당唐·송宋의 계세繼世한 임금 중에는 모두 조祖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조손祖孫이 같은 글자를 시호로 사용하는 근거로 세종世宗(재위 1418~1450)과 세조世祖(재위 1455~1468)의 사례를 거론한 것을 비판하며 세조의 시호 의논은 잘못된 정령政令인데 선왕의 고사라고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하였다. 조빈은 태조太祖(재위 1392~1398) 이외의 세조와 선조宣祖(재위 1567~1608)의 묘호는 소인들에 의해 잘못 정해진 시호라고 지적하면서 사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였다."

인조의 묘호에 이어 시호도 논란이 되었다. 예조참판 허계許啓는 대행 대왕의 시호에 강상綱常을 세우고 이륜葬倫을 펴고 명분을 바르게 하고 민지民志를 안정시킨 등의 자의字義가 없으므로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효종은 묘당에 의논하게 하였고, 좌의정 이경석 등이 개정한 묘호 인仁에 의義·예禮·지智의 덕을 포함하여 모든 선이 빠짐없이 갖추어 있는 뜻을 겸하고 있으며, 헌문열무憲文烈武 네 글자가 실로 난리를 평정하여 바른 세상으로 되돌린 중흥中興의 공에 부합한다고 하였다.²⁰

인조는 성공한 정변이라는 '반정'을 통해 집권하였기 때문에 그의 묘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수 있었다. 효종 자신도 열조에서 인조로 개정되는 것에 대해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효종은 '인조'로 결정된 이후에는 묘호에 대해 재론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그 결과 유계 등 서인 산림을 중심으로 묘호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국왕으로서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조정 내에서 진행된 묘호, 시호와 관련된 논의 과정이 『인조국장도감의궤』에

配於 后側又見一人書請屏八字語基神異中夫人欲然而寤則 王誕矣扶魏異九在股有黑子無数 然而寤則 王誕矣扶魏異九在股有黑子無数 然而寤則 建深祖之家勿泄也前二三歲置諸宮中家 莫及具命以小字若諱屬意可見光海間而不悅至五六 英及具命以小字若諱屬意可見光海間而不悅至五六 歲聰明特達不煩提讓文理賑進未成童 無不順適無一毫介恃事惟學是動丁未進階為緩陽都 正尋封君皆以已鼓不專為異思 仁烈王后韓氏領數軍正尋封君皆以已鼓不專為異思 仁烈王后韓氏領數軍正尋封君皆以已鼓不專為異思 仁烈王后韓氏領數軍正尋封君皆以已鼓不專為異思 仁烈王后韓氏領數軍正尋封君皆以已鼓不專為異思 仁烈王后韓氏領數軍正尋封君皆以已鼓不專為異思 仁烈王后韓氏領數軍 是一次



도2. 『인조국장도감의궤』,「지문」

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5월 15일에 예조에서 올린 시장, 지문, 시책과 조익이 지은 시책문²¹과 김광 욱金光煜(1580~1656)이 지은 애책문²², 조경趙絅(1586~1669)이 지은 지문²³만 첨부되어 있다.⁵² 의궤에 묘호와 시호 제정 논의에 대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의궤는 국장 절차와 관련된 실무적 내용 을 중심으로 의례의 전거典據로 참고할 내용이 정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8.} 위와 같음.

^{19.} 위와 같음.

^{20. 『}효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 6월 8일 병신.

^{21. 『}인조국장도감의궤』,「삼방의궤三房儀軌·인조대왕시책문仁祖大王諡册文」.

^{22. 『}인조국장도감의궤』,「삼방의궤·인조대왕애책문仁祖大王哀册文」.

^{23. 『}인조국장도감의궤』, 「삼방의궤·인조대왕지문仁祖大王誌文」

Ⅲ 효종 국장의 논란과 송시열의 역할

효종은 1659년 5월 4일 오시午時에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였다. 5월 8일 사시巳時에 선정전에 시신을 이안하였다. 발인은 10월 28일 인시寅時에 거행하였고, 같은 달 29일 진시辰時에 현궁에 내리고 사시에 신주神主를 쓰는 제주題主하고 신주를 창덕궁 문정전에 봉안하고 초우제初虞祭부터 칠우제七虞祭 및 졸곡제卒哭祭까지 문정전에서 거행하였다. 253

효종의 왕위를 계승한 현종은 효종과 인선왕후仁宣王后(1618~1674) 사이에서 태어났다. 효종이 청나라의 인질로 심양瀋陽에 있을 때 태어난 현종은 1649년(인조 27)에 왕세손에, 1651년(효종 2)에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1659년(효종 10) 5월에 효종이 승하하자 19세의 나이에 즉위하였다. 부왕父王 효종은 자신의 왕위 계승을 반대했던 산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북벌을 추

진하였다. 특히 송시열 등 서인 산림을 예우 禮遇하며 그들의 지지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를 통해 북벌 을 추진한 효종과는 달리 송시열 등은 '내 수외양內修外攘'과 '수기치인修己治人'을 강조 하는 명분론적 북벌론을 주창하였다. 이러 한 북벌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응하다가 큰 성과없이 효종이 죽고 현종 이 왕위에 올랐던 것이다.

효종이 승하한 당일에 규례대로 좌의정 심지원沈之源(1593~1662)을 총호사에 임명하고, 영의정 정태화를 원상院相으로 삼았다.²⁵ 『효종국장도감의궤』에는 국장도감에 임명된 관리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26 표2}



도3. 「효종국장도감의궤」,「일시」

[표 2] 효종 국장도감 명단

직책	관직	담당자	임명 일자	교체 일자
총호사總護使	좌의정左議政	심지원沈之源	5월 4일	
제조提調	판중추부 사判中樞府事	ろ る	5월 4일	5월 17일
	호조판서戸曹判書	허적許積	5월 4일	
	예조판서禮曹判書		 5월 4일	
	병조참판兵曹參判	조수익趙壽益	5월 17일	
도청都廳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0 시 全李時術	5월 4일	6월 29일
	행부사직行副司直	정만화鄭萬和	5월 4일	
	행부호군行副護軍	성이성成以性	7월 1일	
낭청郎廳		유정柳頲	 5월 4일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	김왕金连	 5월 4일	
	형조정랑刑曹正郎	이회원李會源	5월 4일	
	장예원사의掌隷院司議	유호연柳浩然	5월 4일	
	호조정랑戸曹正郎	윤유근尹惟謹	5월 4일	6월 6일
	호조정랑戸曹正郎	임준任濬	6월 6일	6월 13일
	호조정랑戸曹正郎	 정창도丁昌燾	6월 13일	
	장흥고주부長興庫注簿		 5월 4일	 5월 12일
	형조정랑刑曹正郎	 한 亭기韓後琦	 5월 12일	 6월 2일
	호조정랑戸曹正郎	 김 수홍 金壽弘	 6월 2일	

인조의 국장 때와는 달리 효종의 국장에서는 총호사 심지원이 국장이 끝날 때까지 담당하였다. 제조 등도 교체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효종의 국장은 불과 10년 전에 치른 인조의 국장을 준용하였다. 『효종국장도감의궤』에 수록된 「사목별단事目別單」은 인조의 국장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밖의 사안에 대해서도 인조 국장 때의 '기축년등록라표年謄錄'에 의거하여 참작하라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온다." 그런데 대체로 기축년에 비해 물품이나 비용이 축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월 10일에 도감단자에 후록後錄된 물품 내역 가운데 숯, 천초茜草, 중국中 竹, 중부등목中不等木, 누주樓柱, 재목材木 등이 축소되었고, 실입實入 내역과 사용하고 남은 수량의

^{24. 『}효종국장도감의궤』상, 「일시日時」.

^{25. 『}현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 5월 4일 갑자.

^{26. 『}효종국장도감의궤』상, 「이조단자」.

^{27. 『}효종국장도감의궤』상, 「사목단자事目單子」.

^{28. 『}효종국장도감의刊』 상,「계사」, 기해 5월 초9일, "都監凡干擧行之事 必須考見謄錄 然後可以爲之 而禮曹所藏己丑年謄錄稱以閪失 終不現出 殊甚痛駭 禮曹其時當該郎廳罷職 色吏囚禁重治 春秋館所藏謄錄取來 以爲相考擧行之地."

이관처移管處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²⁷ 각 도에 분정分定된 잡물의 수량은 대체로 동일하지만 일부 물품은 줄어들었다. 인조의 국장에 비해 효종의 국장이 축소되어 진행되었다고 생각된다.

효종은 세자 책봉을 둘러싼 논란 끝에 즉위하여 자신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산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북벌정책을 펴는 등 정치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효종의 유화적 노력으로 산림은 정계에 진출하였고, 그 위상도 강화되었다. 효종 재위 연간에 성장한 산림은 효종의 국장을 치르는 과정에서 깊이 관여하면서 국장 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하였다. 효종의 국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염습 시기를 놓쳐서 재궁을 다시 제작하고, 자의대비慈懿大妃(1624~1688, 장렬왕후莊烈王后)의 상복喪服을 두고 서인과 남인의 의견이 엇갈리고, 장지葬地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는 등 송시열등 서인 산림과 19세의 청년 군주 사이에 알력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1. 송시열의 염습 연기와 재궁 개조

염습은 습염襲險이라 부르기도 하고, '염 한다'라고도 한다. 습襲, 소렴, 대렴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습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壽衣를 갈아입히는 과정이고, 소렴은 임종 이후 시신을 가지런하게 정돈하여 임시로 묶는 과정이며, 대렴은 수의를 갈아입힌 시신을 묶어서 입관入棺하는 과정이다.

인조의 국장 때에는 승하한 다음날 5월 9일에 소렴을 거행하였다. 원래 소렴은 3일 만에 거행하는 것이었지만 한창 더울 때라서 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어서 대신, 예관, 양사에 하문하여 서둘러 거행하였던 것이다. 공교롭게 효종도 인조와 비슷한 시기에 승하하였는데, 승하한 당일 5월 4일에 장선정張善讚(1614~1678), 정선흥鄭善興(1615~1662), 여성제呂聖齊(1625~1691), 한두상韓斗相(1627~1687)을 모두 내지內旨로 불러들여 부마 홍득기洪得箕(1635~1673)와 함께 염습에 관한 제반일을 맡아보도록 하였다. 그런데 인조의 국장 때와는 달리 상규常規대로 사흘 뒤인 5월 6일에 소렴을 거행하였다. 염을 마치고 나서 끈을 드리어 놓은 채 모두 매지 않자, 정태화가 끈을 매라고 하였는데, 송시열이 대렴 때 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왕세자(현종)가 "소렴 후에 끈을 매지

않는다는 것은 전에도 들은 바가 없으니 대신은 충분히 토론해 보고 주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송시열은 "끈을 매지 않는 이유는 효자가 차마 자기 어버이를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없어서"라고 하면서 조정 논의가 꼭 매야 한다고 한다면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하였고, 송준길은 "예를 안다는 사람들이 그 끈을 맬 때, 한두 개 정도는 매지 않고 남겨둔다"고 하면서 송시열을 거들었다. 정태화는 "한두 끈만 그대로 두었다가 형편을 보아서 다 매면 아마 예문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을 듯하다"고 하였다³³

그런데 송시열의 의견에 따라 소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장생전長生殿의 재궁의 크기가 맞지 않아 쓸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재궁이 효종의 시신에 맞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정태화는 예조판서 윤강尹絳(1597~1667), 이조판서 송시열, 우참찬 송준길과 함께 정선흥을 불러 염할 때 매지 않고 드리워져 있는 끈을 지금까지도 매지 않았는지, 의대衣帶가 너무 두껍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그런데 끈을 단단히 묶고 의대도 두껍지 않은데 재궁의 너비가 거의 2치 가량 부족하고 길이도 부족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정태화가 총호사 심지원 등과 함께 봉심奉審하여 길이와 너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왕세자(현종)에게 보고한 뒤, 넓은 판자를 성 안 또는 강상 江上 등지에서 찾아내도록 요청하였으나 끝내 맞는 판자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에 정태화가 "사대부 집에서도 흰 부분을 깎아버리고 부판附板으로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고 하면서 황장목黃陽木을 가져다가 붙여 만들어 쓰자고 제안하였다. 현종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으나 마지못해 널 속면과 칠성판七星板을 만들어 여러 번 옻칠을 하라고 허락하였다.⁴ 이후로 장생전의 새로 짠 재궁 내부에 3차에 걸쳐 옻칠을 하였다.⁵

다음 날 5월 7일에 원상 정태화, 총호사 심지원, 예조판서 윤강 등이 새로 짠 재궁의 접합 부위가 꽉 맞물려 흠집이 없다고 보고하였고, 소렴 때 입시하였던 원임原任 대신 이하 모두에게 봉심하도록 하였다. 이경석, 이시백李時白(1581~1660), 원두표 등이 들어가 봉심을 마치고는, "신들이방금 들어가 봉심한 바로는 일이 미진한 점이 없었으므로 감히 다시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음 날 5월 8일 오시에 대렴을 하면서, 재궁 속에 통천관通天冠과 적석赤鳥을 넣었다. 윤강이 규圭와 패옥佩玉도 넣어야할 지를 묻자, 송시열이 반대하여 정태화가 현궁에 넣는 것으로 절충하였다.

^{29. 『}査委국장도감의刊』 상,「계사」, 5월 초10일, "炭已丑謄錄四百石內 减五十石 所捧三百五十石內 實入二百十七夕三斗移送山 陸都監 三十石用後 移送戸曹一百二石十七斗"

^{30. 『}효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 5월 9일 정묘.

^{31.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4일 갑자.

^{32.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6일 병인.

^{33.} 위와 같음.

^{34.} 위와 같음.

^{35.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7일 정묘.

^{36.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8일 무진.

국왕의 국장에 소렴을 제때에 하지 않아서 재궁이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현종은 이에 대해 누구도 문책하지 못하였다. 원상 정태화와 총호사 심지원, 이조판서 송시열 등 조정의 서인 관리들이 논란을 덮었기 때문이다. 송시열은 재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효종의 국장 이후에 송시열의 실책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자 송시열은 예문禮文의 소렴조小強條에 "끈을 완전히 매버리지 아니하며 얼굴을 덮지 않는 것은 효자가 아직도 행여 다시 살아날까를 바라고 또 수시로 그 얼굴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내용대로 했던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해 명하였다. 자신이 고집을 부리다가 그르친, 전에 없었던 변고에 대해 조정과 재야에서 일어나는 여론에 대해 '예론禮論'에 근거하여 진행하다가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조정에서 이와 같은 논쟁이 벌어진 것과는 달리 재궁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효종국장 도감의궤』에는 그다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재궁 개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는 반면에 재궁을 실을 윤여輪擧를 설치할 처소를 마련하는 일이나" 윤여를 맬 담지군擔持軍을 확보하는 일³⁸에 대해서는 상세히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국장 의궤는 행정적 절차와 구체적 업무 분장과 실행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였으나 국장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한 정치적 논란이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국장 의궤는 국가 의례의 전거로서 이후의 국장에 참고하기 위한 행정백서行政自書라고 할 수 있다

의궤가 행정백서라는 점은 효종의 국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 자의대비(장렬왕후) 복제服制를 둘러싼 '예송'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에서 확인된다. 효종의 사후에 일어난 복제 논쟁은 처음에는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장렬왕후)가 죽은 아들을 위해 얼마간 상복을 입어 야 하는가 하는 단순한 문제였다. 국상의 복제는 대체로 『국조오례의』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 이 관례이었다. 그러나 차자로서 종통을 이은 아들에 대한 상복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정 에서는 삼년복과 기년복朞年服을 두고 복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이때 윤휴尹鑴(1617~1680) 와 허목許穆(1595~1682) 등 남인은 『의례儀禮』에 근거하여 삼년복을 입는 것이 제왕가의 법도에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같은 자신의 생각을 주변의 인사들에게 피력하였고, 그의 견해 는 이유대李惟泰(1607~1684), 송시열, 송주길, 정대화 등 서인들에게 전해졌다. 당시 왕실의 의례는 주로 『국조오례의』를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사가士家의 경우에는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근간으로 하는 예가 존중되고 있었다. 그러나 윤휴는 '고례古禮'로 존중되고 있던 『의례』를 전거로 삼아 삼년복을 주장하였다. 윤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송시열은 『의례』 주소注疏의 삼년복을 입을 수 없는 예외 조항인 '사종지설四種之說'을 지적하면서 이의異意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사종지설은 단지 몇 년 동안 상복을 입을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효종의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당시는 인조의 큰 아들인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효종을 서자庶子로 간주하여 '체이부정體而不正'을 적용시켜 자의대비(장렬왕후)가 기년복을 입게 된다면, 효종은 서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것이되어 정통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논의가 뜻밖의 사태로 진전하자, 영의정 정태화는 『의례』에 의거한 복제를 접어두고, 『대명률大明律』과 『경국대전經國大典』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장자와 차자 구분 없이 1년 동안 상복을 입는 기년복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논란 끝에 기년복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4'

이와 같이 조정에서는 남인과 서인의 학문적,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반영되어 논의되고 있던 복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효종국장도감의궤』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재궁 개조와 관련된 논의처럼 예송 역시 상시적 절차와 관련된 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궤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국장 의궤는 국장의 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여 이후에 발생하는 국장에 참고하기 위해 편찬한 행정백서라고 할 수 있다.

2. 효종 산릉 택정 논의와 송시열의 역할

효종의 국장 과정에서 벌어진 재궁 개조나 복제에 대한 사안에 대해 『효종국장도감의궤』에 자세히 거론되지 않은 것에 비해 효종의 능지陵地 선정과 관련된 조정의 논의에 대해서 『효종영릉산 릉도감의궤』에는 매우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국장에서 능지 선정 등 산역山役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산릉도감을 설치하여 관할하도록 하였고, 산릉 조성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매우 자세

^{37. 『}玄종국장도감의刊』상, 5월 18일, "臣積率都廳…(중략)…眼同奉審 輪舉排設處 則自攢宮 至仁和門內 一百六十二尺三寸 自仁和門外 至仁政殿 前弟二階替用 肩輿處 一百八十七尺三寸 合三百四十九尺六寸矣 輪輿依此措備之意."

^{38. 『}孟孝子장도감의刊』상, 9월 13일, "平市署提調尹絳啓曰···竊聞外梓宮載於輪車 使市民引車而行 果是前規 而及至己丑年 始 以擔持軍陪往 則擔持與引車爲役不同 自有應役之君 而我國凡事 不計易難便否 而每循前例 故其時調行市民."

^{39.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5일 을축; 원년 4월 2일 병술.

^{40. 『}백호전서』, 「연보」, 10년 기해.

^{41.} 송시열이 주장한 사종지설四種之說은 ①정체부득전중正體不得傳重 ②전중비정체傳重非正體 ③체이부정體而不正 ④정이 불체正而不體를 말하는 것으로 ①은 적자嫡子로서 폐질廢疾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경우이고, ②는 서손庶孫이 뒤를 이었을 경우이고, ③은 서자庶子가 뒤를 이었을 경우이고, ④는 적손嫡孫이 뒤를 이었을 경우이다. 이 네 가지 경우에는 비록 승중承重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삼년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시열은 사종지설을 설명한 후에 효 중은 ③체이부정에 해당하고 소현세자의 아들은 ④정이불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42.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5일 을축.

하게 기록되어 있다.

효종이 승하하고 여러 곳이 능지로 거론되었다. 효종의 산릉 조성 과정이 기록된 『효종영릉산 릉도감의궤』에는 산릉山陵으로 치부置簿된 곳 가운데 15곳을 「산릉간심처초출별단山陵看審處抄出 別單」으로 수록하고 있다. 광릉光陵 화소火巢 밖 김작金碏(1427~1488)의 묘산墓山, 포천抱川 신평新坪, 광주廣州 속달동래군束達東萊君의 묘산, 수원부 호장가戶長家 뒤, 수원부 항교 뒤, 남양南陽 서면西面 홍정승洪政丞의 묘산, 양주楊州 하도대조전下道大鳥田 이유인李裕仁의 묘산, 양주 서면 조수준趙守準(1544~?)의 묘산, 교하交河 와동瓦洞, 광주廣州 남면 이증李增(1525~1600)의 묘산, 양주 해동촌海東村, 남양南陽 홍기영洪耆英의 족장산族葬山, 장단長湍 진동면津東面 서곡瑞谷 김영열金英烈(?~1404)의 묘산, 양주 동면 와초瓦草 화산군花山君 묘산, 남양 고군기古郡基 등이다. 이외에 지관地官들은 안산安山 유현柳峴 강가姜哥의 묘산 남향, 적성積城 감악산紺岳山 아래 임좌병향壬坐丙向, 영평永平 근가산近佳山 남신용南辛龍 병좌묘향丙坐卯向, 왕십리 밖 동향장부혈東向長乳穴, 양근楊根 중은동中隱洞 김사형金士衡(1341~1407)의 묘산 등을 추천하였다.

이곳 가운데 국장도감 제조 겸 예조판서 윤강은 "수원의 호장戶長 집 뒷산이 용혈龍穴과 사수
砂水가 진선진미盡善盡美한 곳으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곳"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였다.⁴⁵ 대부분의
지사地師들은 세종의 영릉英陵이 있는 여주 홍제동을 추천하였지만 윤강의 강력 추천으로 최종적
으로 수원 산이 물망에 올랐다. 현종은 수원 산을 염두에 두고 영의정 정태화, 판중추 송시열, 대
사헌 송준길, 첨지 윤선도尹善道(1587~1671), 호군 이원진과 함께 의논하였다. 총호사 심지원은 "수
원 호장가 뒷산의 형세는 지리地理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국용國用에 적합한 곳"이라는 의견을 냈
다.⁴⁶ 효종의 사부였던 윤선도도 "산의 우열만을 들어 논하기로 하면 홍제동이 가장 좋고 수원은
그 다음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윤선도의 견해에 대해 윤강 등이 이견을 제시하였지만 총호사 심지
원은 홍제동과 수원 이외에는 적당한 곳이 전혀 없으므로 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현종은 수원이 가깝고 특별한 흉해凶害도 없으므로 수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수원으로 확정되고 나서 인근의 500여 채의 가구와 700여 결結의 전답을 옮기는 문제까지 거론되었다. 이에 송시열은 현종이 수원으로 결정하여 신하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 서 홍제동을 다시 거론하였다. 가장 길지吉地인 홍제동을 두고 수원을 쓰려 하는지 따져 물었고, 송준길도 홍제동이 길지라는 주장에 동조하였다.

송시열의 주장에 대해 현종은 "선대왕이 계셨을 때 미리 산릉을 정해두려 하시면서도 홍제동은 너무 멀다고 하셨는데, 자손된 도리로서 그곳은 아마 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송시열은 태조의 능인 건원릉健元陵이 있는 여러 산등성이 중에도 틀림없이 쓸 만한 곳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아뢰었다. 한 현종의 결정으로 수원으로 확정되었지만 뒤늦게 송시열이 문제를 제기하여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당시 산릉 논쟁에서 논의를 주도한 이는 도감의 제조를 겸임한 예조판서 윤강이었다. 수원 산을 강력하게 주장한 윤강의 의견에 총호사 좌의정 심지원, 영의정 정태화 등도 찬성하였는데. 송시열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다.

이어서 부호군 이상진季尚眞(1614~1690)이 "수원 산의 혈이 느릿느릿하고 흐리터분하고 국세 局勢마저 평평하고 낮아 대장大葬의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⁴⁸ 함릉군咸陵君 이해李澥 (?~1670)도 "수원은 삼도三道 도회지로서 오환五患의 자리이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릉國陵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자 현종은 관련 상소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교하였고,⁴⁹ 이에 대해 언로를 막는 것이라는 홍문관의 비판이 이어졌다.⁵⁰ 이에 총호사 심지원은 인산因山 문제가 결정되었지만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하지만 현종은 동요되지 말고 곧바로 택일을 하여 아뢰라고 명령하였다.⁵¹

이런 와중에 전 영중추부사 원두표와 완남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1598~1660) 등이 수원 산은 쓸 만한 곳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고, ⁵² 심지원은 수원 산을 쓸 수 없다는 대신의 소차疏箚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정산定山을 다시 의논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결국 현종은 다시 수원 산과 서울 근교의 다른 산, 광주廣州 원적산圓寂山, 헌릉獻陵 내의 이수동梨樹洞 등을 간산看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총호사 심지원이 간산과 수원의 산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니

^{43.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3일 임진; 『효종영릉산릉도감의궤』(奎 15075), 「계사」, 6월 3일, "山陵看審處抄出別單."

^{44. 『}효종영릉산릉도감의궤』, 「계사」, 6월 11일, "地官等薦山單子."

^{45.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15일 갑진.

^{46. 『}효중영등산릉도감의궤』, 「계사」, 6월 18일, "總護使別單 水原戶長家後山 來勢起伏節節合法 青龍白虎重重疊疊 案對有情 形局雄偉 雖不曉地理者 亦知其可合於國用."

^{47.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19일 무신.

^{48.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0일 기유.

^{49.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1일 경술.

^{50.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2일 신해.

^{51.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4일 계축.

^{52.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6일 을묘.

수원의 산역을 잠시 정지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현종은 그대로 산역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였다.⁵³ 그러자 대사헌 송준길이 "한쪽으로는 산을 다시 보라고 하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산역을 시작하라." 는 명령을 비판하였다. 송준길의 비판에 현종은 수원의 산역을 정지하라고 결정하였다가,⁵⁴ 다음 날 간산을 마치고 돌아온 예조판서 윤강, 관상감제조 이응시李應蓍(1594~1660) 등의 보고를 받고 그대로 수원을 쓰기로 결정하였다.⁵⁵ 현종은 수원 산으로 산릉이 결정되었지만, 수원 산에 대해 처음 반론을 제기하였던 송시열에게 재차 의견을 물어 동의를 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은

"막중한 일을 신이 맨 먼저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그후 대신·재신들이 계속 소차를 올려 지금까지도 결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 신은 참으로 황공합니다. 그러나 만세 후에 오환^{五惠}이 있으리라는 것은 인사^{人事}로 따져 보아 틀림없이 그리될 것입니다. 그 부府에는 언제나 6, 7천의 병마가 주둔해 있고, 지리적 여건도 삼남= 휴의 요충 지대에 해당되므로 만약 변란이 있게 되면 틀림없이 싸움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백 호의 민가를 일시에 철거하고 분묘들을 옮기고 생업을 깨트린다면, 그에 따른 원한과 한탄이 국가의화기^{和氣}를 해칠 것입니다. 신의 생각 같아서는 주자^{朱子}가 말했던 대로 시기를 다소 늦추어 다른 산을 널리 찾아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56

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극력 간쟁하면서 건원릉 왼편 등성이를 추천하였다. 송시열의 거듭된 반대에도 현종은 수원 말고는 달리 논의할 곳이 없겠다고 비답하였다. 57 그런데 연양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이 상소하여 건원릉 왼편 산등성이의 형세에 대해 태조 대왕과 무학無學이 골라 잡은 순수한 길지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의 정혈처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58

송시열의 반대로 산릉 문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면서 더욱 복잡하게 얽혀갔다. 수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급히지 않는 송시열의 입장에 영돈녕부사 이경석도 가세하면서⁵⁹ 건원릉 왼편 산등성이로 논의가 모아지면서⁶⁰ 수원 산을 쓴다는 명령을 취소하라는 양사兩리와 홍문관의 요청이 이어졌다.⁶¹ 현종은 결국 영돈녕부사 이경석, 영의정 정태화, 연양부원군 이시백, 좌의정 심지원, 완남부원군 이후원, 예조판서 윤강, 부호군 이상진·이원진, 대사성 유계, 좌승지 강백년姜栢年(1603~1681)이 입시한자리에서 산릉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모두가 건원릉의건좌의 산이 수원보다 낫다는 의견이었다.⁶² 이에 대해현종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도4. 『효종영릉산릉도감의궤』, 「계사」, 7월 11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산릉으로 정해진 땅을 직접 가서 볼 수도 없고 달리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나 산론山論과 도형圖形을 보면, 산론의 경우 내가 그 평품^{蔣品}을 알려고 하였고, 도형의 경우, 내가 그 국세^{局勢}를 알고자 하였기에 내가 보기에 수원이 나은 것 같아서 쓰고 싶다. 하지만 오늘 삼사^三리에서 모두 의견을 내어 분분한데 내 가 독단^{那斷}하면 사리로 보아 매우 미안하니 여러 대신에게 회의^{會議}하여 정하고자 한다. 대신 및 제신^{議臣} 이 모두 건좌^乾生의 산이 수원보다 낫다고 하니, 건원릉 내에 건좌 등성으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겠다."⁶³

결국 현종은 자신의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종은 자신이 주장한 수원과 송시열이처음 주장하였던 홍제동이 아닌 제3의 장소인 건원릉의 왼편 능성으로 효종의 산릉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타협하였다.⁵⁴

그러나 불과 1여 년 만에 효종의 영릉寧陵의 대석臺石과 상석床石이 연결된 부분이 기울어져

^{53. 『}玄종영등산·릉도·감의·刊』,「刘朴」,6월 25일,"都監郎廳 以總護使意啓曰 山陵裁穴之後 左右浮石所 郎廳監造官已爲出去 始 役補土所郎廳及都廳 亦已下去 而諸大臣疏箚相繼極言 水原之不可用 行護軍李尚眞大司成俞棨等 亦以更爲看審事下去時 未還來 一邊看山 一邊起役 事理未安 各所役事 姑爲停止 都監提調以下 待山陵完定後 下途何如 傳曰 何必停止乎 仍爲始 役可也。"

^{54.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8일 정사.

^{55.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29일 무오.

^{56.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30일 기미.

^{57.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30일 기미.

^{58.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7월 2일 신유.

^{59.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7월 3일 임술.

^{60.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7월 8일 정묘.

^{61.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7월 9일 무진.

^{62.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7월 11일 경오.

^{63. 『}효舍영등산号도감의利』、「계사」、7월 11일,"上日 山陵所卜之地 既不得親往見之 又無從他可聞之路 只以山論及圖形見之 山論則欲予知其評品 圖形則欲予知其局勢 而予之所見 水原似勝 故欲爲用之矣 及至今月三司俱拔群議紛紛 自予獨斷 揆以事理 亦甚未安 兹欲會議於諸大臣以定矣 大臣及諸臣 皆言乾坐之山 勝於水原云 健元陵內乾坐之岡 定用爲當矣."



도5. 영릉 전경 ⓒ국립문화재연구소

틈이 생기고 병풍석屛風石과 가석駕石 등을 연결시킨 부분에도 틈이 벌어지는데다가 정자각丁字 閣의 기와의 석회石灰도 떨어지는 등 훼손되어 개수改修하게 되었다." 영릉수개도감寧陵修改都監을 설치하고 영릉을 수개修改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영릉에 회칠하고 수리하는 공사가 거의 해마다 실시되었고, 물이 고이고 습지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매년 되풀이되는 하자 공사로 인해 결국 1673년(현종 14)에 길지를 가려 천릉遷陵하였다." 55

앞서 국장도감의궤에 재궁 개조나 예송에 대해 기록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산릉도감의궤에는 조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능지 선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장에 있어서 산역과 관련된 사안은 이후의 국장의 중요한 참고할 수 있는 전거이기 때문에 논의와 관련된 발언과 입장이 정리되었던 반면에 '의례'의 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상시적이지 않은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의궤에는 기록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국장도감의궤는 국장 전반의 행정 실무를 정리한 보고서로 이후에 수행할 의례를 위한 전거 자료였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인조와 효종의 국장의 논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왕의 장례는 왕실에서 거행하는 정치적 의례로서, '국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즉위한 새로운 국왕과 신하들이 함께 논의하는 첫 '국정'이었다. 국장의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고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를 수습하고 처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즉위한 국왕의 국정의운영 방식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은 신하들과의 관계틀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국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조는 '반정'이라는 비상시적 정치 행위를 통해 국왕이 되었고, 효종은 여론을 주도하는 산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즉위하였다. 이러한 국왕권의 한계로 인해 인조와 효종을 계승한 효종과 현종은 국장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안을 정치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인조의 국장을 주관하는 총호사가 4차례 임명된 것은 이러한 효종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효종은 자신의 왕위 계승에 부정적이었던 서인 산림의 영수 김상헌을 총호사에 임명하여 산림이 조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효종의 조치에 대해 비록 김상헌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인조의 국장을 계기로 서인 산림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인조의 묘호를 둘러싼 논의 역시 효종은 열조에서 인조로 개정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결국 조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개정함으로써 효종의 정치력을 안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조정 내에서 진행된 묘호, 시호와 관련된 논의 과정이 『인조국장도감의궤』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의궤는 국장 절차와 관련된 실무적 내용을 중심으로 의례의 전거로 참고할 내용이 정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효종은 세자 책봉을 둘러싼 논란 끝에 즉위하여 재위 10여 년간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산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북벌 정책을 펴는 등 정치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효종의 유화적 노력으로 효종 재위 연간 산림의 정치적 위상은 강화되었고, 효종의 국장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러한 산림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특히 송시열 등 유력 산림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효종의 뒤를 이어 19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현종은 송시열을 비롯한 산림과 정국을 운영해야 하였는데, 그 첫 번째 국정이 효종의 국장이었다. 효종의 국장은 인조의 국장 때와는 달리 심지원이 국장이 끝날 때까지 총호사를 담당하였다. 제조 등도 교체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전에 인조의 국장을 거행했기 때문에 국장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해서 인조의 국장을 거의 준용하였다. 국장을 거행할 당시의 사정과 여건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인조

50

^{64. 『}현종개수실록』 권4. 현종 1년 7월 20일 계유.

^{65. 『}현종개수실록』 권26, 현종 14년 3월 24일 갑오.

^{66. 『}현종개수실록』 권27, 현종 14년 5월 5일 갑술.

와 효종의 국장은 이후 국왕 장례의 중요한 사례로서 준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효종의 국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염습 시기를 놓쳐서 재궁을 개조하고, 자의대비(장렬 왕후)의 복제에 대한 서인과 남인의 의견이 엇갈리고, 능지를 둘러싼 갈등까지 붉어졌다. 송시열의 주장으로 효종의 시신을 제때에 염습하지 않아서 시신이 재궁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전대 미문의 일이 발생하였고, 결국 부판을 사용하게 되었다. 국왕의 국장에 소렴을 제때에 하지 않아서 재궁이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현종은 이에 대해 누구도 문책하지 못하였다. 원상 정태화와 총호사 심지원, 이조판서 송시열 등 조정의 서인 관리들이 논란을 덮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정의 당혹스러운 상황과는 달리 재궁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효종국장 도감의궤』에는 그다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국장 과정을 기록한 의궤에 정치적 논란이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의궤는 행정적 절차와 실무를 정리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의궤가 행정 보고서라는 점은 효종의 국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 자의 대비 복제를 둘러싼 '예송'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에서 확인된다.

효종의 국장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가운데 산릉 택지에도 송시열이 깊이 관여하였다. 효종이 승하하고 15곳이 능지로 거론되었다. 이곳 가운데 수원 능지가 강력하게 추천되었다. 현종도 수원 산을 염두에 두고 조정 관리와 의논하였고, 총호사 심지원도 수원 산의 지형과 산세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종은 수원이 가깝고 특별한 흉해도 없으므로 수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송시열은 현종이 수원으로 결정하여 신하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수원으로 확정되었지만 뒤늦게 송시열이 문제를 제기하여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결국 송시열의 반대로 국릉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자 수원 산을 지지하였던 총호사 심지원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하기에 이르렀고, 논의 끝에 송시열이 추천한 건원릉으로 결정되었다.

앞서 국장도감의궤에 재궁 개조나 예송에 대해 기록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산릉도감의궤에는 조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능지 선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장에 있어서 산역과 관련된 사안은 이후 국장의 중요한 참고할 수 있는 전거이기 때문에 논의와 관련된 발언과입장이 정리되었던 반면에 '의례'의 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상시적이지 않은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의궤에는 기록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국장도감의궤는 국장 전반의 행정 실무를 정리한 보고서로 이후에 수행할 의례를 위한 전거 자료였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국문초록

인조·효종의 국장과 국장 의궤

조선시대에 편찬된 의궤는 국가와 왕실의 중요한 의례의 절차와 내용 및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과 동원된 인원, 소요 경비, 포상 내용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며, 국정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국왕의 장례인 국장은 가장 정치적인 의례로, 국장 과정은 새로 즉위한 국왕과 신하들이 함께 논의하는 첫 번째 국정이었다.

국장의 절차는 대부분 의례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장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처결하면서 사망한 국왕의 신하와 새로 즉위한 국왕은 대립 혹은 갈등하면서 정치적 균형을 잡아 갔다. 특히 『인조국장도감의궤』는 '반정'으로 집권한 국왕의 장례를 기록한, 조선 후기 국장의 전례가 되는 의궤로, 장례 절차뿐만 아니라 국장 중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국의 항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효종(재위 1649~1659)은 인조(재위 1623~1649)의 국장 과정에서 제기된 '묘호'와 관련된 논란 등을 처리하면서 자신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 '산림'을 등용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였다. 효종의 왕위 계승에 부정적이었던 '산림'은 인조의 국장을 치른다는 명분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정국에 참여할 수 있었고, 효종은 산림의 지원 속에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 효종의 왕위를 계승한 현종(재위 1659~1674)은 효종의 국장을 치르는 과정에서 시신을 안치하는 '재궁'을 개조해야 하는 일과 인조의 계비이자 효종의 양어머니가 효종을 위해 상복을 입는 기간에 대한 논의(예송) 등을 처리해야 하였다. 게다가 현종 자신의 건강마저 쇠약해져 국장 의례를 직접 주관하기 어려워지면서 송시열(1607~1689)을 비롯한 신하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신하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커졌다.

인조와 효종의 국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자가례와 고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깊어지면서 국장 의례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였고,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분리에 영향 을 끼쳤다.

주제어: 국장, 의례, 인조, 효종, 현종, 『인조국장도감의궤』, 『효종국장도감의궤』

Abstract

State Funerals of King Injo and King Hyojong and Uigwe for Their State Funerals Uigwe of the Joseon dynasty recorded the procedures of major rites and events pertaining to the state and royal family, as well as the issues raised during the preparation of such events. Other details they covered include the number of people mobilized for events, the expenses incurred, and the rewards provided to participants of events. Uigwe therefore served as important sources of reference for statecraft. State funerals for a late king were highly political events and constituted the first state affair for a newly enthroned king to prepare through consultations with his subjects.

Most of the state funeral procedures were provided in the rules for state rites, but unexpected problems could arise over the course of preparing state funerals. In dealing with such problems, the subjects who served the deceased king and those who served the new king would oppose each other but compromise to strike a political balance. The *Uigwe for the Funeral of King Injo* (仁祖國莽都監儀軌, *Injo gukjang dogam uigwe*) and the *Uigwe for the Funeral of King Hyojong* (孝宗國 莽都監儀軌, *Hyojong gukjang dogam uigwe*) offer models for the state funerals of the late Joseon period. The former is particularly significant as the record of the state funeral of a king who ascended to the throne through a coup d'etat. These two Uigwe records include not only the details of the funeral procedures, but also the discussions over the issues raised during the state funeral, which help illuminate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time.

In resolving the debate over a suitable temple name for the late King Injo (仁祖, r. 1623–1649) that was provoked during the preparations for the state funeral, King Hyojong (孝宗, r. 1649–1659) showed exceptional political skill by appointing members of the Sallim (山林) faction of scholars who had disapproved of his enthronement. On the pretext of preparing for the funeral of King Injo, Sallim scholars were elevated into politics, and their political engagement and support helped King Hyojong smoothly administer state affairs. In preparing the subsequent state funeral of King Hyojong, King Hyeonjong (顯宗, r. 1659–1674), who succeeded to the throne, confronted the problem of modifying the royal coffin, known as *jaegung* (梓宮), and the debate over how long Queen Jangryeol (莊烈王后, 1624–1688), the second consort of King Injo and stepmother of King Hyojong, should wear mourning. Furthermore, he was unable to personally supervise the funeral procedures due to illness and required support from Song Siyeol (宋時烈, 1607–1689) and other subjects, which consequently increased their power.

As scholarly interest in the *Zhu Xi's Family Rituals* (朱子家禮) and other ancient rules on rites grew during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state funerals of King Injo and King Hyojong. debates over state rites emerged as a major political issue and led to a schism between the Seoin (西人, "Westerners") and Namin (南人, "Southerners") factions.

Keywords: State funeral, Rites, King Injo, King Hyojong, King Hyeonjong, *Uigwe* for the Funeral of King Injo (Injo gukjang dogam uigwe), Uigwe for the Funeral of King Hyojong (Hyojong gukjang dogam uigwe)

Abstract

Les obsèques royales des rois Injo et Hyojong et les *Uigwe* concernés Sous la dynastie Joseon, les *Uigwe* sont des recueils de manuscrits exposant la procédure et le contenu des rites royaux importants, les problèmes soulevés lors de leur déroulement, les effectifs engagés, ainsi que les dépenses et les récompenses afférentes ; ils sont utilisés comme des documents significatifs pour gérer les affaires du royaume. Les funérailles d'un roi sont le rite le plus politique, et sont l'objet des premières délibérations entre le nouveau roi et les hauts fonctionnaires.

La procédure des obsèques d'un roi est pour l'essentiel définie par une série de rites établis. Mais il arrive que des problèmes inattendus surviennent durant le déroulement : en les résolvant, le nouveau roi et les hauts fonctionnaires s' opposent, se trouvent même parfois dans une situation conflictuelle, pour finalement parvenir à un certain équilibre politique. Les *Uigwe* relatifs aux rites funéraires des rois Injo et Hyojong sont des protocoles royaux concernant deux souverains qui furent intronisés à la suite du détrônement forcé de leur prédécesseur. Ils présentent des modèles exemplaires pour les rites funèbres réservés aux rois, et permettent de comprendre non seulement la procédure des funérailles, mais aussi l'orientation de la gestion des affaires politiques qui se profile à travers les discussions sur les questions posées durant cette période de transition.

Face à la polémique sur le nom donné au roi défunt Sukjong lorsque sa dépouille fut installée dans le sanctuaire royal, le roi Hyojong (qui régna de 1649 à 1659) déploya une tactique politique inattendue en nommant comme fonctionnaires des nobles de la faction politique appelée *Sanlim*, qui ne reconnaissaient pas son intronisation. Ce clan entra ainsi dans le monde politique et s'y engagea activement sous le prétexte d'assister aux funérailles du roi Injo. Soutenu ensuite par *Sanlim*, le roi Hyojong put diriger le pays de manière stable. Son successeur, le roi Hyeonjong (qui règna de 1659 à 1674), dut traiter deux questions relatives au décès du roi : d'une part, il fit reconstruire le *Jaegung*, le cercueil destiné à la dépouille royale ; d'autre part, il trouva une solution pour clore la polémique sur la durée pendant laquelle la seconde épouse du roi Injo devait porter le deuil du roi défunt Hyojong – qui n'était pas son fils, mais celui de la première épouse, décédée antérieurement. Cependant le roi Hyeonjong s'affaiblit au point de ne pas pouvoir présider aux rites funéraires et d'avoir besoin de l'aide de certains de ses sujets comme Song Si–Yeol (1607–1689), ce qui entraîna l'accroissement de l'

influence politique des hauts fonctionnaires.

Lors des funérailles du roi Injo et de celles du roi Hyojong, les rituels familiaux de Zhu Xi et les coutumes anciennes suscitèrent un intérêt académique. Le débat sur les rites funéraires réservés aux rois s'imposa comme un enjeu politique et fut un facteur important de la scission entre les clans politiques Seoin et Namin.

Mots—clés: funérailles réservées aux rois, rites, roi Injo, roi Hyojong, roi Hyeonjong, *Uigwe* relatif aux funérailles du roi Injo, *Uigwe* relatif aux funérailles du roi Hyojong

효종 재궁의 개조와 그 정치적 성격

03

Modification of King Hyojong's Coffin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박미선 전남대학교 강사 Park Mi-sun
Lectur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Ⅰ. 머리말
- Ⅱ. 효종 국상의 절차와 특징
- 1. 효종의 승하와 국상 절차
- 2. 발인 이전 국상 절차의 특징
- Ⅲ. 재궁 제작과 개조의 배경
- 1. 재궁의 제작
- 2. 재궁 개조의 배경
- 3. 재궁 개조와 가칠
- Ⅳ. 재궁 논쟁의 전개와 정치성
- 1. 허목의 재궁 가칠 비판
- 2. 송시열의 효종 국상에 대한 상소의 내용
- 3. 윤선도의 상소와 이후의 전개
- Ⅴ. 맺음말

I. 머리말

재궁梓宮은 국왕이나 왕비의 시신을 안치하는 관인데, 내재궁內梓宮과 외재궁外梓宮으로 나뉜다. 내재궁은 대렴大險을 마치고 시신을 직접 안치할 때 사용되었고, 외재궁은 장례를 치르기 전에 미리 산릉山陵으로 옮겨 안장할 곳에 설치하였다. 재궁은 국왕이나 왕비가 승하한 이후에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장생전長生殿에서 제작해 두었다. 국상國喪 기간 중에는 재궁의 몸체와 뚜껑을 조립하고 비단으로 꾸미는 치벽治梓이 이루어졌다. 이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정리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에는 재궁에 가칠加漆하고 곡림哭臨하는 의주儀註가 추가로 마련되었다. 재궁을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재궁 그 자체의 본래 목적 곧 시신으로 침투하는 습기의 방지를 위한 가칠의행위가 의례 과정에서 강조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가칠 의주의 정착과 관련하여 그 직접적 계기로서 1659년(현종 즉위년) 효종孝宗(재위 1649~1659)의 국상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효종의 국상에 대한 관심은 복제服制와 관련된 예송논쟁禮訟論爭에 집중되어 왔다. 효종에 대한 자의대비慈懿大妃(1624~1688, 장렬왕후莊烈王后)의 복제 문제에서 서인西人의 이론가였던 송시열宋時烈(1607~1689)을 중심으로 한 대신들은 효종이 차자次子로서 입승대통入承大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년복朞年服을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남인南人 허목許穆(1595~1682)과 윤휴尹鏞(1617~1680),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윤선도尹善道(1587~1671)와 조경趙絅(1586~1669) 등 서인의 주장은 종통을 둘로 하여 군주를 낮춘다는 입장에서 참최복斬衰服을 내세웠다.

예송논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인과 서인의 정치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17세기 예론禮論의 차이에 따른 사상계의 재편을 이해하고, 『주자가례朱子家禮』의 확대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효종의 국상은 정치 세력 간 차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의례적 차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의 기점이 된다. 효종의 시신을 모시는 재궁을 더 단단히 하고 습기를 막기 위해 염습險襲 과정 에서 재궁에 수차례 가칠을 행하게 되면서 관련 의주가 마련되었고, 이것이 전례前例가 되어 영조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및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의주儀註로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발인發靷 이전 효종의 국상 절차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孝宗殯殿魂殿都監儀軌』』를 통해 효종의 재궁 개조 및 가칠의 실제

^{1.} 본고는 외규장각 의궤의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孝宗殯殿魂殿都監儀軌』를 검토하였다. 표제는 '빈전도감의궤殯殿都監儀 軌'로 되어 있지만, 빈전도감의궤와 혼전도감의궤가 합부된 형태이다. 불분권 1책이며, 앞뒤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외규장 각 의궤는 어람용이며, 4건의 분상용 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의정부본과 강화부본이 소장되어 있다.

및 그 정치적 배경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술할 것이다.

첫째, 효종의 국상 절차를 살펴보겠다. 국상은 국왕이 승하한 이후부터 발인, 시신을 장지에 매장하는 일, 매장 후 신주(虞主)를 혼전魂殿에 모시고 1년 후에 소상小祥을 지내고, 우주虞主를 연주練主로 바꾸고, 2년째 되는 날에 담제潭祭를 드리는 일, 3년 상을 마치고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일을 포함한다. 다만 재궁을 꾸미는 일은 발인 직전에 마무리된다. 따라서 연대기 사료 및 발인 이전의 절차가 수록되어 있는 『효종반전혼전도감의궤』를 주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둘째, 재궁의 제작과 효종의 국상에서 갑작스럽게 재궁을 개조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다. 국 상에서 재궁을 꾸미는 것은 『국조오례의』의 「치벽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에 「치벽조」의 내용 과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를 바탕으로 재궁을 꾸미는데 소용된 물자, 담당처 등 그 실제를 파악 하고자 한다.

셋째, 재궁 개조를 둘러싼 서인과 남인 사이의 정치적 책임 공방을 검토해 볼 것이다. 국상 중의 논의와 국상 이후 정치적 소재로 확대된 재궁 논쟁을 통해 정치적 확산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의주가 마련되게 된 정치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효종 국상의 절차와 특징

1 효종의 승하와 국상 절차

인조仁祖(재위 1623~1649)의 둘째 아들인 효종은 1645년(인조 23) 형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가 사망하면서 세자로 책봉되었다. 이후 1649년(효종 즉위년) 왕위에 올랐으며, 10년 뒤인 1659년(효종 10) 5월 4일 오시午時에 창덕궁 대조전大造殿에서 41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사망의 원인은 머리에 난 종기 때문이었다. 1659년 4월 효종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기우제를 올리고, 왕세자(현종)의 병세가 위중한 것을 걱정하다가 정작 자신의 지병은 신경 쓰지 못하여 4월 27일 상태가 악화되었다. 다음날에는 종기의 독이 얼굴에까지 퍼져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4월 30일에는 증후가 점점 심해졌고, 5월 1일에는 부기가 심하여 눈꺼풀에 산침散

鍼을 놓았지만, 점점 위독해져서 편전便殿에 나아갈 수 없었다. 여러 차례 산침을 놓아도 차도가 없자, 효종은 5월 4일 의관을 불러 처치법을 논의하도록 한 후, 침술에 능한 신가귀申可貴(?~1659)에게 명하여 침을 놓게 하였다. 종기의 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침을 놓아 나쁜 피를 뽑아내는 방책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도리어 침을 놓은 자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고, 오시 초에는 효종의 기도가 막혀 응급처치를 하였지만. 결국 승하하였다.

효종이 승하하자, 그날부터 국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국조오례의』와 전례를 참고하여 시 의時宜에 맞추어 국상이 마련되었다.⁸

5월 4일 : 숭하[오시^{午時}], 복^復, 역복불식^{易服不食}, 목욕^{沐浴}[신시^{申時}], 습^雙[무시^{戊時}], 습^{전 雙}[구시^{隨時}], 함^含, 설빙

성화墨座, 명정

(영화墨座, 명정

(영화墨座)

(영화墨座, 명정

(영화墨座)

(영화墨座)

(영화墨座)

(영화墨座)

(영화墨座)

(영화墨座)

(영화

5월 6일 : 소렴小殮[진시辰時], 소렴전小殮奠[수시隨時]

5월 8일: 대럼^{大殮}[사시^{巳時}], 대렴전^{大殮奠}[수시^{隨時}], 성빈成屬[隨時], 성빈전成屬奠[隨時]

5월 9일 : 성복成服[진시辰時], 사위嗣位[오시두時]

승하~발인 이전: 삭망전^{朔望奠}. 재궁가칠고유전조전겸행의^{梓宮加柒告由奠朝奠兼行儀}.

재궁가 칠시곡림의 梓宮加柒時哭臨儀

위 일정은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에 기록된 발인 이전의 행례에 해당한다. 이외 실록을 통해 살펴보면 대체로 『국조오례의』의 절차를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우선 승하 당일인 5월 4일에 고

^{2. 『}효종실록』 권21, 효종 10년 4월 27일 정사.

^{3. 『}효종실록』 권21, 효종 10년 4월 28일 무오.

^{4. 『}효종실록』 권21, 효종 10년 4월 30일 경신.

^{5. 『}효종실록』 권21, 효종 10년 5월 1일 신유.

^{6. 『}효종실록』 권21. 효종 10년 5월 3일 계해.

^{7. 『}효종실록』 권21, 효종 10년 5월 4일 갑자;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4일 갑자. 효종의 사인은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신가귀의 수전증 때문에 혈맥을 잘못 짚었다는 의견이다. 둘째 종독이 심하여 혈도血道가 종기난 곳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함부로 침을 놓아 터뜨렸다는 것이다.

^{8. 『}국조오례의』의 절차가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의 의주에 모두 기록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효종실록』, 『현종실록』, 『현종실록』, 『현종생후』, 『현종생후』 등의 내용을 통해 보면 『국조오례의』의 절차를 따르면서도 시의에 맞추어 국상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국조오례의』의 국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휼고명國恤顧命, 초종初終, 복復, 역복불식易服不食, 계령戒令, 목욕沐浴, 습襲, 전奠, 위위곡爲位哭, 거림擧臨, 함含, 설빙設氷, 영좌靈座, 명정銘旌, 고사묘告社廟, 소렴小殮, 전奠, 치벽治椑, 대렴大殮, 전奠, 성빈成殯, 전奠, 여차廬次, 성복成服, 복제服制, 사위嗣位, 반교서頒教書, 고부청告訃請, 시청승습諡請承襲, 조석곡존 급상식의朝夕哭尊及上食儀, 삭망전朔望奠, 의정부솔백관진항의議政府率百官進香儀, 치장治葬, 국상은 국왕이 승하한 장소에서 염습險襲을 하고 임종한 시점으로부터 3일 만에 소렴, 5일 만에 대렴을 하며, 대렴을 마친 시신은 재궁에 안치하여 빈전으로 옮겨진다. 빈전에서 5개월 동안 재궁을 모시면서 혼백에게 조석으로 곡을 행하고 상식을 올리고, 발인을 위한 여러 의례 물품과 의장儀仗을 준비한 후, 산릉과 혼전을 조성한다. 그리고 빈전 의례를 마치면 발인하여 산릉에서 재궁을 문고 혼을 우주에 담은 뒤 궁궐에 마련된 혼전으로 돌아온다. 혼전에서 22개월 동안 상례를 지내며, 임종에서부터 27개월이

명顧命하고자 하였지만, 효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하여 미처 거행되지 못하였다. 즉, 효종이 창덕궁 대조전에서 위급해지자, 영의정 정태화鄭太和(1602~1673)와 이조판서 송시열에게 장차 고명이 있을 것 같다는 전명을 하였지만, 대신들이 제 때에 도착하지 못하였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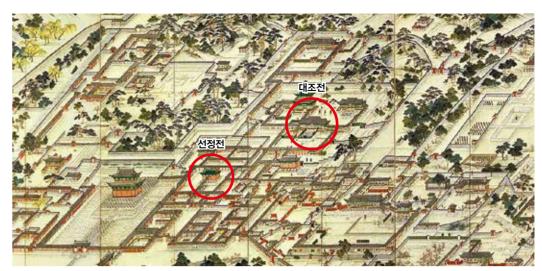
그리고 효종의 승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대신·승지·예관 및 송시열 등은 대조전으로 들어가 내관內官을 불러 호흡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국상의 절차 중 초종初終이 이루어진 것이다. 뒤이어 죽은 자의 혼이 돌아오라고 외치는 복復이 이어졌다. 왕세자(현종)와 왕비 이하는 모두 소복素服으로 갈아입었다. 왕세자(현종)가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역복불식易服不食을 하였다. 병조, 예조, 이조에 관련 업무를 맡기고 빈전·국장·산릉 세도감의 제조提調이하 관원을 차출하는 계령戒令이 있었다. 11 동일 신시申時에는 시신을 목욕沐浴시키고, 무시戊時에 옷을 갈아입히는 습襲이 있었다. 12 시신의 입속에 쌀과 진주를 물리는 반함飯含을 왕세자(현종)가 직접 행하였다. 습상襲床을 받들어 전殿의 중앙으로 옮겨 남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고 습전襲奠을 올렸다. 백관은 위곡位哭을 하였다. 13 죽은 이의 혼백을 임시로 모셔두는 영좌靈座의 설치를 차례로 마쳤다. 그리고 니금泥金으로 '대행왕재궁大行王梓宫'이라고 전서체篆書體로 쓴 명정銘旌을 영좌의 오른쪽에 설치하였다. 명정서사관銘旌書寫官은 병조참지 이정영李正英(1616~1686)이 맡았다.

5월 6일 진시辰時에는 베로 시신을 싸서 묶는 소렴을 하였다. 산의散衣는 19벌〔稱〕이었으며, 소 렴전을 올렸다. ¹⁴ 소렴에 필요한 물품은 자문감紫門監, 제용감濟用監, 장흥고長興庫, 호조戶曹, 상의 원尚衣院, 풍저창豊儲倉 등에서 진배進排하였다.

5월 8일 사시巳時에는 효종의 영상을 대조전에서 선정전宣政殿으로 옮겨 대렴을 하였는데, 산 의는 모두 90벌이었다.^{도1} 소렴과 마찬가지로 대신이 입시하여 시상屍床을 전내 동북쪽 모퉁이에 봉안奉安하고 남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하였다. 찬궁橫宮을 전내 북쪽에 설치하여 그 중앙에 설치하였다. 재궁은 찬궁 곁에 두고 염상驗床에 의대衣營를 진열하여 재궁 남쪽에 두었으며, 명정선개

지나면 상장례 의식이 모두 끝난다.

- 10. 영의정 정태화, 이조판서 송시열에게 전명하여 이르기를, "급히 들라. 장차 고명이 있을 것 같다." 하므로, 두 대신이 바삐 들어갔는데, 좌의정 심지원, 우참찬 송준길이 뒤따라 들어갔다. 이때에 상은 침상에 누워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흰 명주의 겹옷으로 머리를 덮었는데 벌써 옥음玉音은 들을 수 없었다. (『현종개수실록』권1. 현종 즉위년 5월 4일 갑자)
- 11. 『효종실록』 권21, 효종 10년 5월 4일 갑자.
- 12. 습전은 봉상시에서 올렸으며, 이후 치러진 소렴전은 5월 6일 내섬시에서 대렴전은 5월 8일 내자시에서 성빈전은 5월 9일 봉상시에서 성복전은 5월 9일 내섬시에서 설행하였다.(『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일방도감의궤·의주儀註」)
- 13.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4일 갑자.
- 14.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 「빈전삼방소장殯殿三房所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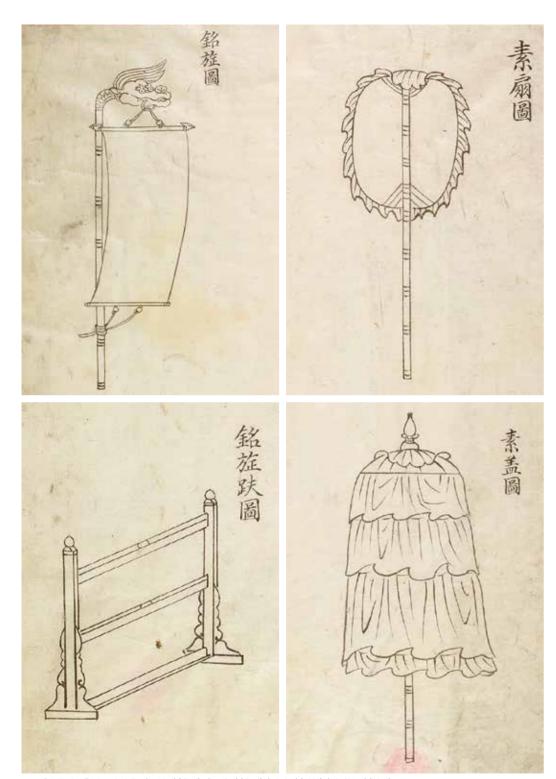
도1. 〈동궐도〉, 조선, 비단에 색, 273×576cm, 국보 제249-1호, 고려대학교 박물관

銘旌扇蓋는 찬궁 밖 서남쪽 모퉁이에 세웠다. 도2 유장輔帳은 백색의 명주를 쓰고, 선개도 백색을 썼다. 효종의 시신을 대렴상으로 옮겨 의대 17벌로 대렴을 하였다. 면복冕服을 쓰고 황금선금黃金線衾으로 염하였다. 염이 끝나면 재궁에 봉안하였는데, 통천관通天冠과 적석赤鳥을 가져다가 재궁에 넣고, 대렴전大險奠을 올렸다. 이로써 성빈成殯을 마치고 성빈전成殯奠을 올렸고, 왕세자(현종)는 선정전 서쪽 계단 밑 여막에 자리하였다. 5

5월 9일 진시에는 왕세자(현종)와 왕대비 이하가 모두 상복으로 갈아입는 성복成服을 거행하였다. 성복은 빈전 이방二房에서 담당하였다. 성복이 끝나고 성복전을 올렸다. 동일 오시에는 사위嗣位 의식을 거행하였다. 왕세자(현종)가 인정전仁政殿에서 즉위하고, 백관이 진하陳賀하고, 사면령을 내리고, 중외中外에 교서敎書를 반포하였다. 연종 국상의 고사古事를 근거로 대신에게 문의하여 길일을 택해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社稷에 고유告論한 것을 근거로 하였다.

같은 날 관상감觀象監을 통해 길지를 골라 산릉을 정하였다.¹⁹ 빈전에 봉안되었던 재궁을 모시고 장지로 출발하기 위한 발인 예행 연습[習儀]도 거행되었다 5월 11일에는 묘호廟號를 효종으로.

- 15.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8일 무진.
- 16. 5월 5일부터 신하 및 자의대비 등 복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17. 『효종실록』 권21, 효종 10년 5월 9일 기사.
- 18.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5일 을축.
- 19.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9일 기사.



도2.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 〈소선도〉(우상), 〈소개도〉(우하) 〈명정도〉(좌상) 〈명정부도〉(좌하)

전호殿號를 경모敬慕로, 능호陵號를 영릉寧陵으로, 대행대왕의 시호諡號는 선문장무신성현인宣文章武神聖顯仁으로 정하였다.²⁰

또한 장생전에서 본래 만들어 두었던 재궁에 판자를 더하여 붙여 재궁을 다시 조성하고, 성빈 이후부터는 칠漆을 추가하였다.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조석전朝夕尊과 삭망전朔望奠도 빈전도감이 주관하였다. 경아문과 각도에서 빈전에 향을 올리는 진향의進香儀가 이어졌다.¹

10월 26일에는 임시로 썼던 명정을 휘호黴號와 시호를 포함한 명칭으로 바꾸어 쓰는 개명정을 거행하였다. 새로 고쳐 쓴 명정에는 대행이라는 용어는 빼고 생전에 받은 존호尊號에 이어 휘호, 시호 순으로 썼다. 개명정은 빈전일방에서 담당하였으며, 서사관승지 이정영이 썼다.

5개월이 지나 10월 27일 발인 하루 전, 진시에는 계빈전啓殯冥을 올리고, 사시에 찬궁을 열고, 신시에 조전祖冥을 올렸다. 10월 28일 발인하여, 영릉에 장사지냈다. 재궁은 파루罷漏 후에 대여大擧에 모시고 출발하였다. 현종顯宗(재위 1659~1674)은 소여를 타고 인화문仁化門으로 나가고, 시위侍衛하는 신하들도 모두 통곡하며 행렬을 따랐다. 인정문 밖에 이르러서 현종은 소여에서 내려 연量으로 바꿔 탔다. 백관들은 모두 걸어서 뒤를 따랐다. 흥인문興仁門을 나와 동쪽 관왕묘 뒤 노제소路祭所에 이르러 대여를 악차幄次에다 봉안하고, 현종도 막차幕次로 들어갔다. 의정부·충훈부가 노제를 모시고 난 후 대여가 떠났다. 현종은 봉사위奉辭位에 나아가 동쪽을 향하여 네 번 절하고는 통곡하였고, 백관들도 모두 통곡하였다. 대여가 멀리 떠난 후, 현종은 다시 궁궐로 돌아왔다.

10월 29일에는 영릉에 장례를 치렀다. 현종은 희정당 앞뜰에 나아가 망곡례望哭禮를 행하였다. 오시에는 현종이 연을 타고 흥인문을 나와 관왕묘 뒤의 막차로 들어가서 반우返虞를 기다렸다. 조금 후 우주虞主가 이르자 현종이 막차에서 나와 우주를 맞으면서 곡하고 절하였다. 시위한 백관들도 모두 곡하였다. 우주가 지나간 후 현종은 연을 타고 뒤를 따라 홍화문弘化門을 거쳐 들어와 문정전文政殿에 우주를 봉안하고, 직접 초우제를 모셨다. 10월 30일 밤 4경에 현종은 직접

^{20. 『}효종실록』 권21, 효종 10년 5월 9일 기사;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11일 신미.

^{21.} 의정부 7월 2일 병시丙時, 종친부 7월 5일 오시午時, 의빈부 7월 8일 사시巳時, 개성부 7월 13일 사시, 강화부 7월 14일 사시, 경기 7월 17일 오시, 충청도 8월 9일 손시巽時, 황해도 7월 27일 사시, 강원도 8월 19일 미시未時, 전라도 8월 27일 미시, 평안도 9월 10일 사시, 경상도 9월 13일 사시, 충훈부 7월 12일 사시, 돈녕부 9월 3일 미시, 함경도 9월 28일 사시 등이다.

^{22.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10월 27일 갑인.

^{23. 『}효종실록』 권21, 효종 10년 5월 9일 기사.

^{24.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10월 28일 을묘.

^{25.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10월 29일 병진.

경모전敬慕殿에서 재우제再虞祭를 모셨다.²⁶ 이후 혼전에서 삼년상을 마치고 효종의 신주가 종묘에 부묘祔廟될 때까지 혼전에서 제사를 거행하였다.

2. 발인 이전 국상 절차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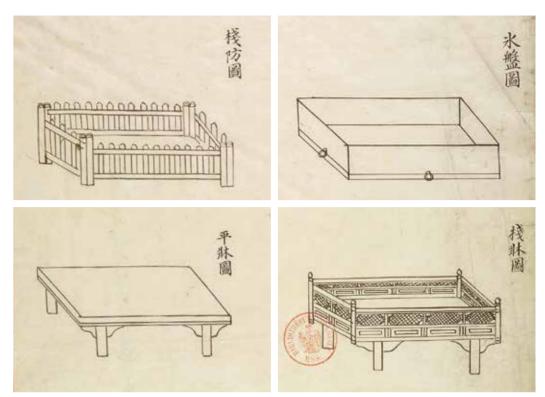
이상 효종의 국상 절차를 살펴보면, 『국조오례의』를 따르면서도 시의에 맞지 않은 것은 전례인 1649년(인조 27) 인조의 국상을 고출하여 참고하거나, 고례古禮에 맞춰 새롭게 마련하여 거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인 이전의 절차 가운데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승하 후 소렴은 3일째에 하고, 대렴은 5일째에 하며, 성복은 6일째에 하도록 하였다.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의 의주 역시 그 원칙을 세주로 기록하였다. 하지만 소렴이 하루 앞당겨지면서 다른 절차 모두 하루씩 당겨졌다. 즉, 소렴은 5월 7일 정묘일丁卯日에 해야 했지만, 이때 한더위였기 때문에 인조의 국상에 의거하여 하루 앞 당겨 6일에 행하면서 대렴의 날짜도 앞당겨졌다."

둘째, 염습 담당자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시신을 염습하는 담당자는 내시內侍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효종의 국상에서 염습을 담당하는 자는 효종 및 효종비의 친인 척과 그의 사위였다.²⁸ 전정 정선흥鄭善興(1615~1662), 전정랑 장선징張善澂(1614~1678), 좌랑 여성제 呂聖齊(1625~1691), 유학 한두상韓斗相(1627~1687), 부마 홍득기洪得箕(1635~1673)등이 함께 염습의 일을 보게 하였다. 한두상은 인열왕후仁烈王后(1594~1635)의 아버지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 韓浚謙(1557~1627)의 증손이고, 정선흥과 여성제는 그 외손이며, 장선징은 효종비의 오빠였다.²⁹ 그들은 이 공로로 숙마熟馬 1필이나 반숙마半熟馬 1필을 사급받았다.³⁰

셋째, 시신에게 반함을 행한 담당자가 『국조오례의』와 다르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그 담당 자는 의정議政이었다. 그러나 효종의 국상에서는 왕세자(현종)가 하였다. 전례를 참고한 것이었다. 송

- 26.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10월 30일 정사.
- 27. 『효종실록』 권21, 효종 10년 5월 6일 병인.
- 28. 소렴 때에 내시 1인이 홍득기, 정선홍, 여성제 등과 함께 염을 하였던 만큼 내시도 참여하였을 것이다.(『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6일 병인.)
- 29.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4일 갑자.
- 30.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 「논상」, 기해 12월 초10일, "襲斂時入參人益平尉洪得箕 靑平尉沈益顯 寅平尉鄭齊賢 掌樂僉正張 善瀓 司果鄭善興各熟馬一匹賜給 兵曹正 郎呂聖齊 幼學韓斗相各半熟馬一匹賜給."



도3.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 〈빙반도〉(우상). 〈잔상도〉(우하). 〈잔방도〉(좌상). 〈평상도〉(좌하)

시열과 송준길朱浚吉(1606~1672)도 고례에 근거하여 세자가 이를 직접 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³¹

넷째, 『국조오례의』와 달리 습, 소렴, 대렴에 대신과 삼사 이하가 모두 입시入侍하여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왕세자(현종)는 『국조오례의』에 이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고는 입시하지 말라고 명하였지만, 제신諸臣들이 극력 청하자 결국 허락하였다.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1595~1671), 영의정 정태화, 연양부원군 이시백李時白(1581~1660), 좌의정 심지원沈之源(1593~1662), 원평부원군 원두표元斗杓(1593~1664), 완남부원군 이후원李厚源(1598~1660), 예조판서 윤강尹絳(1597~1667), 이조판서 송시열, 우참찬 송준길, 대사헌 이응시李應蓍(1594~1660), 대사간 이상진李尚眞(1614~1690) 및 승지·사관·옥당 등이 이 자리에 입시하였다.³²

- 31.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4일 갑자.
- 32. 『효종빈전혼전도감의利』,「빈전도감의利・의주」, "斂時領議政鄭太和 左議政沈之源 領府事李景奭 延陽府院君李時白 原平府院君元斗杓 完南府院君李厚源 禮曹判書尹絳 吏曹判書宋時烈 右參贊宋浚吉 大司憲李應 蓍大司諫李尚眞 玉堂金萬均禮房承旨金壽恒及史官等入侍 大斂時亦如之.";『효종실록』 권21, 효종 10년 5월 4일 갑자.

다섯째, 『국조오례의』에는 조석상식만 있고 주다례畫茶禮는 없었는데, 주다례를 시행하였다. 무신년 국휼國恤 때 주상식畫上食과 다례茶禮를 병설하고, 인조 국상에 이르러 주상식을 감하였지만 이 의례를 시행하였던 만큼. 전례에 근거한 것이었다.³³

여섯째,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설빙設泳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빙은 선공감에서 만들어 놓은 빙반氷槃·잔상棧牀·잔방棧防에 얼음을 넣어 시신의 사면을 둘러싸는 나무틀을 만드는 것이다. 도급 음력 2월 중춘仲春 이후로 그 철을 헤아려서 습을 한 뒤에 하거나 또는 염을 하고나서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리 덥지 않은 철이라면 전목반全木盤을 써서 얼음을 담아 상 밑과 사면에 적당하게 놓아도 되었다. 그런데 효종의 국상에서는 이러한 의주를 제시해 두었으면서도 설빙 대신 포토鋪土 즉 흙을 까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효종의 시신이 놓이는 평상 아래에 황토 2촌寸, 대략 3cm 정도를 깔고 그 위에 두꺼운 기름종이(油莖)를 깔았다. 칠성판七星板의 구멍과 같은 구멍을 여러 개 뚫었다. 호종이 승하한 날짜가 5월 4일이었던 만큼 설빙이 필요했을 텐데, 이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시에도 반방繋冰을 맡은 자들이 무더운 계절이어서 모두 걱정하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에 황토를 까는 것으로 대신했다는 것과 소렴을 하루 앞당겨 거행하였다는 점에서 설빙이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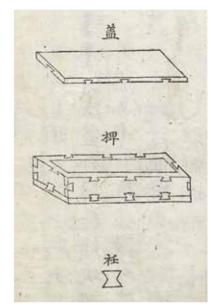
일곱째, 재궁의 크기가 시신과 맞지 않자 재궁을 개조하고 가칠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행례가 추가되었다. 장생전에서 본래 만들어 두었던 재궁에 판자를 더하여 붙여 재궁을 다시 조성하고, 성빈 이후부터는 칠을 추가하였다. 가칠할 때에는 총호사, 도감제조, 장생전제조 각 1명이 전내에 들어와 곡을 하였다. 재궁의 크기가 맞지 않고, 다시 제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판을 덧대 개조 함으로 인해 가칠을 여러 차례 행하였다.

Ⅲ. 재궁 제작과 개조의 배경

1. 재궁의 제작

다음에서는 재궁을 어떻게 제작하였으며, 국상 과정에서 재궁을 개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국조오례의서례』와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를 통해 살펴보도록하겠다.

재궁을 제작하는 법은 『국조오례의서례』 「염빈도설 險殯圖說」에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국왕이 즉위하는 해 에 널을 만드는 데, 품질이 좋은 소나무 황장목黃腸木을 판자로 하여 밑판과 사면을 연결한 벽을 만들어 둔다. 판자의 두께는 3촌이며, 벽과 뚜껑〔盖〕을 연결하기 위한 은정銀釘도 황장목으로 만들었다. 은정은 양쪽은 넓고 중앙은 좁은 형태로 제작하였는데, 벽과 뚜껑을 합해 붙 이는 곳은 세 개, 양쪽 끝에는 각 한 개씩 만들었다. 해 마다 한 번씩 칠을 올려서 팥을 넣어두었다." 54



도4. 『국조상례보편』,「치벽도설」,〈개〉·〈벽〉·〈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왕의 사후 공조工曹에서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이미 만들어놓은 벽 안팎을 꾸미는 것을 치벽이라고 한다. 벽 안은 붉은 비단으로 사방을 바르고 푸른 비단으로 네 모퉁이를 바르며, 볶아 태운 차좁쌀 재를 그 바닥에 4촌 정도 두께로 펴고 그 위에 5푼 두께의 옻칠한 칠성판을 얹는다. 그리고 이 칠성판 위에 붉은 비단 요와 자리를 편다. 외 재궁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꾸몄다.³⁸

효종도 즉위 이후 곧바로 재궁을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재궁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5월 5일 빈전도감에서 장생전에 보낸 이문移文과 재궁의 임시 봉안처로 차비문 밖 장막을 배설하도록 한 데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만들어진 재궁을 다시 개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이를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3. 『}현종개수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5일 을축.

^{34. 『}국조오레의』 권7. 「흉례·설빙」,

^{35.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 「빈전도감의궤·의주」, "設氷代鋪土."

^{36.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5일 을축.

^{37. 『}국조오레의』 권7. 「흉례·서례·벽」

^{38. 『}국조오례의』 권7, 「흉례·치벽」.

^{39. 『}현종실록』 권20, 현종 13년 3월 4일 경술; 『현종개수실록』 권25, 현종 13년 3월 3일 기유.

2. 재궁 개조의 배경

재궁 개조의 이유는 '설빙設水'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연결지어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이는 효종이 승하한 다음날 5월 5일 당시 반빙繋冰을 맡은 자들의 우려와 정태화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당시 반빙을 담당한 자들은 모두 날씨 때문에 효종의 시신 상태를 걱정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정태화도 3일이 지난 후 소렴을 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난처한 일이 생기면 앞당겨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태화는 시신의 상태에 대해서 중사中使 임우문林友問에게 자주 들어가서 봉심奉審하도록 하였다. 6차례 봉심을 한 임우문은 새벽과 달리 낮에 시신이 부풀었음을 보고하였다. 결국시신에서 붓기가 감지되자, 소렴과 대렴 등의 행례가 앞당겨졌다. 소렴은 하루를 앞당겨 다음날 5월 6일 새벽 이른 시간인 갑시甲時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렴도 하루 먼저 거행하게 되었다.

시신의 상태로 인한 의례 일정 변경은 이후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바로 소렴의 중요한 행례인 시신을 의대로 싼 후 끈으로 묶는 것이 문제시 되었다. 이는 재궁과 관련하여 정치적 논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비판 대상이 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렴은 홍두기, 정선흥, 여성제와 내시 1인 등이 담당하였다. 소렴 과정 중 교금檢念을 잡고 3, 4벌의 의대로 소렴을 한 후, 끈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들이 입시하였다. 그리고 끈을 묶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태화, 송시열, 송준길 등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었다. 정태화는 대신들이 나간 뒤 시신을 의대로 싸서 끈으로 묶도록 하였고, 송시열은 예문을 근거로 끈으로 묶는 것은 소럼 때가 아닌 대렴 때라고 하였다. 송준길은 예문은 그러하지만 더운 날씨이므로 매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최종적으로 송시열의 의견에 따라 소럼을 마칠 때까지 끈으로 묶지 않았다. 하지만 현종은 소럼 후에 끈을 묶지 않는다는 전례를 들은 바가 없고, 무더위에 더욱 망극하므로 대신들이 토론하여주달奏達하도록 하였다.

정태화가 중심이 되어 논의한 결과, 소렴을 할 때에 끈으로 묶는 것에 대한 입장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우선, 송시열은 소렴 때에 끈을 매지 않는 이유는 효자가 차마 자기 어버이를 이미 죽은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정에서 꼭 매야 한다고 한다면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하였다. 송준길도 예문의 규정은 대렴 때에 하는 것이지만, 너무 무더운 때여서 변통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더구나 여염집에서도 예를 아는 사람들은 그 끈을 맬 때, 한두 개

40.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5일 을축.

41.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6일 병인.

정도는 매지 않고 남겨 두어 예를 아끼는 뜻을 보이므로 예문과 시의를 고려하여 한두 끈만 그대로 두었다가 형편을 보아서 다 매는 절차를 제안하였다.⁴²

문제는 그날 오후 미시未時에 발생하였다. 재궁을 봉심하던 임우문이 정태화에게 와서 장생전의 재궁이 척수尺數가 부족하여 난관에 봉착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예조판서 윤강, 이조판서 송시열, 우참찬 송준길, 정선흥이 모여 재궁의 크기가 시신과 맞지 않는 까닭을 점검하였다. 염할때 매지 않고 드리워 놓은 끈을 여전히 묶어두지 않아서였는지, 또는 염습 시 의대가 너무 두껍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정선흥은 끈을 단단히 묶었고, 의대는 그리 두껍게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재궁의 너비가 거의 2촌 가량 부족하고 길이도 짧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정태화, 심지원, 윤강, 송시열, 송준길, 김수항金壽恒(1629~1689) 등이 들어가 염상 아래까지 가서 재궁과의 척수를 재보았는데, 길이와 너비가 모두 부족했다. 재신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재궁의 크기가 맞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제시되었다. 상의한 결과 넓은 판자를 찾아내어 재궁을 다시 제작할 것을 현종에게 아뢰었다. 하지만 갑자기 적당한 크기의 황장목 판자를 찾을 수 없었다. 당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개렴改驗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재궁을 개조하기 위해 합목合木하는 것이 마땅하는 주장이 각각 제시되었다. 결국 차선책으로 정태화 송시열, 송준길 등은 본래 있던 재궁에 부판附板하여 개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국왕의 마지막 안식처인 재궁을 부판으로 마련하는 것은 행례에 있어서 심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되었다. 당시 사대부의 경우에도 관 크기가 작을 경우 관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최상의 황장목을 가져다가 붙여서 만드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현종은 여염집의 필부匹夫도 부판을 상喪에 쓰지 않는다고 하며 허락하지 않았지만 넓은 판자를 전혀 구할 수 없는 형편에서 어쩔 수 없이 본래의 재궁에 판자를 붙여 개조할 수밖에 없었다.

^{42.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6일 병인.

^{43.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 「도청의궤」

3. 재궁 개조와 가칠

재궁을 다시 제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판하여 개조하기로 결정되자, 목수를 골라 그날 밤 안으로 널 속면과 칠성판七星板을 만들도록 하였다. 재궁을 이어붙인 것이었으므로 개조 후 여러 번 옻칠을 하도록 하였다. " 판자는 장생전에 있던 판자를 활용하였다. 재궁을 만드는 동안 영의정, 좌의정 및 장생전의 제조와 낭청, 도감의 제조, 도청, 낭청이 밤을 새워 선화문宣化門 내정에서 관리 감독(董役)하고 다음날 5월 7일 일찍 마쳤다. 이렇게 합목한 재궁의 안과 밖에 옻칠을 하였다. 안쪽은 4번, 바깥쪽은 3번 시행하였다. 다음날 정태화, 심지원, 윤강 등이 새로운 재궁의 접합 부위가 꽉 맞물려 흠집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미 봉심했던 제신들 이외에도 소렴 때 입시했던 원임原任 대신 이하 모두가 다시 들어가 일에 잘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재궁 가칠은 성복 후 5월 12일에 시작해서 2~3일 간격으로 "매번 바깥쪽은 3번, 안쪽은 4번 덧칠하여 8월 1일까지 총 32회 가칠하였다." 28번을 가칠하고, 칠포漆布를 붙인 후, 또 4번을 더하여 모두 32번의 가칠을 하였다. 칠포란 『국조상례보편』을 통해 유추해 볼 때, 벽과 뚜껑을 연결하여 합봉하는 은정 위에 칠을 하고 저포로 은정을 싸서 한 번씩 칠을 바르고 다시 싸는 방식으로한 뒤 벽 전체에 다시 칠을 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기존에 제작된 재궁의 칠과 가칠한 부분을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가칠을 여러 차례 시도한 것이었다.

재궁을 가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물종이 사용되었다. 칠만 하는 날에는 1승 5합을 칠하고, 칠포를 하는 날에는 3승을 썼다. 4일 이후로는 각 2승씩을 사용하고 매 5번 마정磨正하고 가칠하였다. 이외에 가칠에 소용되는 것으로 매 가칠일 마다 법유法油 5석夕과 백저포걸레[白苧布臣 乙乃] 2건, 백포걸레[白布臣乙乃] 5건, 고이목古伊木 8개를 진배하도록 하였다. 또한 칠장漆匠 김복金福, 유득민愈得民, 이영李永, 황애일黃愛一 등 4명이 착용할 두건頭巾·정의淨衣·치마[赤汀]·베로 만

44.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5월 6일 병인.

든 버선(布護)·한삼汗杉·단고單袴 등 각 4건을 진배하도록 하였다. 장인들이 5월 7일 재궁을 초칠할 때부터 시작하여 역을 마칠 때까지의 요포料布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⁴⁸ 가칠을 고유하는 제사는 조전과 격행하였다.⁴⁹

재궁 가칠을 책임진 장생전과 총호사, 빈전도감의 관리와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칠장이 가장 먼저 행례의 장소인 빈전으로 나아가 기다리면, 문무백관은 인정전의 뜰에 나아가 대기했다. 국왕이 지팡이를 짚고 곡위哭位에 나가 궤부복곡跪俯伏哭하면, 인정전의 문무백관도 궤부복곡을 했다. 그리고 현종이 곡을 마치고 여차廬次로 돌아가면 문무백관도 곡을 그쳤다. 그 후 재궁에 칠장이 가칠을 끝마치면 백관과 제조 이하가 물러나왔다. 가칠을 할 때마다 곡림의를 빠지지않고 거행하여. 2~3일에 한번씩 신하들 모두가 슬픔을 드러낼 수 있었다.

한편 재궁을 꾸미는 치벽에 소용된 물품은 다음과 같다.^{표1} 재궁은 장생전에서 담당하여 안은 4번 밖은 3번 옻칠해 둔 것을 갖추었다. 재궁의 안팎을 다듬기 위해 안감으로는 다홍색 구름문양의 비단과 네 모서리 부분에 사용할 초록색 비단이 갖추어졌다. 칠성판 도배감은 재궁 안감과 같은 비단을 사용하였다. 모두 호조에서 진배하였다.

재궁 안에 구비한 물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縟 1부와 자리(席) 1장을 갖추었다. 요의 경우 겉감은 구름 문양이 들어간 다홍색 비단으로 하고 안감은 백초로 만들었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 흰 실, 다홍색실, 백포, 면화, 면자 등을 호조, 상의원, 제용감 등에서 진배하였다. 자리 1장은 요위 에 까는 것이다. 채화석으로 하였는데 다홍은문필단으로 선을 두르고 그 안감은 반홍색의 비단 을 사용하였다 장홍고 호조, 상의원 등에서 진배하였다

72 효종 재궁의 개조와 그 정치적 성격 **73**

^{45.} 이경석, 이시백, 원두표, 이응시, 조형, 이상진, 원만석, 오정원, 이은상, 유계, 김만균, 이백린, 정중휘 등이 들어가 봉심하고서는 미진한 점이 없음을 왕세자(현종)에게 주달하여, 재궁의 크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46. 15}번째 가칠할 때에 그 기간이 6일의 간격을 보이고, 23번째 가칠할 때에 4일 간격이 생기는 것을 제외하면 2일이나 3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가칠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회 5월 12일, 2회 14일, 3회 16일, 4회 18일, 5회 20일, 6회 23일, 7회 25일, 8회 27일, 9회 29일, 10회 6월 2일, 11회 4일, 12회 7일, 13회 9일, 14회 12일, 15회 18일, 16회 20일, 17회 22일, 18회 24일, 19회 26일, 20회 28일, 21회 30일, 22회 7월 2일, 23회 6일, 24회 8일, 25회 10일, 26회 13일, 27회 15일, 28회 18일, 22일·28일·8월 1일 각 추가 1회씩. 총 32회(『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 『변전일방』)

^{48.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 「빈전일방」, 기해 5월 12일;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 「빈전일방」, 기해 5월 13일; 『효종빈전혼전도 감의궤』, 「빈전일방」, 기해 5월 23일: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 「빈전일방」, 기해 5월 25일.

^{49.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빈전도감의궤」, 재궁가칠고유전조전겸행의梓宮加漆告由奠朝奠兼行儀。

[표 1] 재궁 치벽 소용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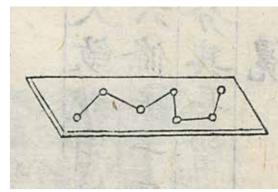
구분	진배물종進排物種	담당 기관
재궁梓宮	_	장생전長生殿
재궁 안감[梓宮內塗]	다홍운문필단多紅雲紋匹段 24자尺 5치寸	호조戸曹
재궁 네모서리감[梓宮隅四角次]	초록필단草綠匹段 3자尺	호조戸曹
칠성판 도배감[七星板塗褙次]	다홍운문필단多紅雲紋匹段	호조戸曹
재궁 안에 깔 요褥	1부部, 다홍운문필단多紅雲紋匹段 4자尺 4치寸	호조戸曹
(요褥) 안감[内拱]	백초白綃 4자尺 3치寸	호조戸曹
(요褥) 흰실[白絲]		상의원尚衣院
(요褥) 다홍색실[多紅絲]	5 ど 分	상의원尚衣院
(요褥) 칠승백포七升白布	20자尺	호조戸曹
(요褥) 면회綿花	2근斤	제용감劑用監
(요褥) 면자綿子	7전錢	상의원尚衣院
요 위에 깔 채화석[褥上席彩花席]	1장枚	장흥고長興庫
(채화석) 선[上席縇]	다홍운문필단多紅雲紋匹段 2자尺	호조戸曹
(채화석) 안감[內拱]	반 홍주 磻紅紬 8자尺	상의원尚衣院
차조 껍질을 태운 재[秣灰]	14두斗	동적전東籍田
목두木斗, 목승木升, 평목平木	각 1개	별공작別工作
재를 덮는 재료[覆灰次]	저주지楮注紙 1권卷	장흥고長興庫
실성판七星板	1개	
구의柩衣	2건, 다홍운문필단多紅雲紋匹段 80자尺	호조戸曹
	1건, 초록운문필단草綠雲紋匹段 40자尺	호조戸曹
	1건, 다홍운문필단多紅雲紋匹段 40자尺	호조戸曹
보를 그리는 재료[畫黼次]	진분眞粉 12량兩	평시서平市署, 제용감濟用監
니은泥銀	1전錢 3푼分	호조戸曹, 상의원尙衣院

둘째, 칠성판을 갖추었다. 칠성판은 송판에 북두칠성 모양의 구멍을 7개 뚫어 옻칠을 한 것으로 사자의 시신을 올려놓는 나무판이다. 동적전東耤田에서 나온 차조 껍질 3석을 볶아서 14두의 재를 만든 다음 벽의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칠성판을 올려놓는 것이다. 차조 껍질을 태운 재(麻厥) 양을 재기 위해서 목두木斗, 목승, 평목 등을 이용하였고, 재를 덮기 위해 저주지 1권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칠성판 위에 요와 자리를 차례로 깔았다. 별공작別工作과 장흥고에서 진배하였다.^{도5}

이외에도 재궁을 덮는 구의柩衣가 마련되었다. 구의에는 니은泥銀으로 보黼를 그렸으며, 재궁

을 덮는데 사용되었다. 재궁을 싸고 묶을 때에 재궁을 닦은 후 가장 먼저 구의로 쌌다. 재궁칠로 손상되거나 오염될 것을 고려하여 다홍운문필단으로 1건을 추가로 제작해 두었다. 호조, 평시서, 제용감, 상의 원에서 진배하였다.

이러한 재궁을 꾸미는데 진배된 물품 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pm 2}$



도5. 「국조상례보편」「치벽」〈칠성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표 2] 재궁을 꾸미는데 진배된 물품

진배물종進排物種	세부 사항	담당 기관	비고
초[起畫夜役四兩燭]	3쌍雙	의영고義盈庫	
족제비꼬리털 붓[黃毛筆]	 5병柄	공조工曹	니금泥金 소용所用
토끼털 붓[兎毛筆]	 5병柄	공조工曹	니금泥金 소용所用
병풍屏風	 1건 8첩貼	제용감齊用監	금번에는 자내自內에서 배설排設
삼갑소三甲索	입량入量		재궁梓宮 소용所用
상자서사재료[上字書寫次]			니금泥金은 명정을 쓸 때 쓰고 남은 것을 사용. 진배하지 않음
상자서사관上字書寫官			좌참찬左參贊 오준吳竣
화원畫員	2인人	예조禮曹	
나무숟가락[木匙]	- 6개, 백칠白漆	별공작 別工作	
	과장피裹獐皮	공조工曹	
백저포白苧布	1필匹	제용감濟用監, 장생전長生殿	
전칠全漆		공조工曹, 장생전長生殿	실입實入에 따름
6장 붙여 두 번 기름칠한 유지 [進獻六張付油芚二番]		장흥고長興庫	재궁梓宮 소과所裹
결과할 백사를 대신한 백포 [結裹白綃所用代白布]	46필疋	제용감濟用監	
방망이[方亇赤]	6개		
지입음知入音	6개	별공작 別工作	양단과장피兩端裹獐皮 공조工曹
2년목지내二年木地乃	5개	별공작 別工作	
도련할 때 받치는 판[剪板]	5개	별공작別工作	

74 효종 재궁의 개조와 그 정치적 성격 **75**

밤에 일을 할 때 사용할 초, 니은이나 구의에 보를 그리거나 니금泥金으로 상자上字를 쓸 때 사용할 홍모필黃毛筆이나 토모필兔毛筆을 갖추었다. 8첩의 병풍 1개는 선공감이 아니라 자내自內에서 배설하였다. 화원 2명도 예조에서 담당하여 뽑아 두었다. 전칠全漆은 실입實入에 따라 공조와 장생전에서 올렸다. 재궁의 위 판에 상上 자字를 쓰고, 재궁을 싸는데 필요한 제구들도 진배되었다. 상자를 쓰기 위한 니금은 명정을 쓸 때 쓰고 남은 것을 사용하였다. 좌참찬 오준吳竣(1587~1666)이 서사관이 되었다. 재궁을 싸맬 때에 쓰는 삼갑소三甲素와 유지油紙, 백포 등도 진배되었으며, 이외에도 나무젓가락, 백저포, 방망이, 도련할 때 받치는 판 등이 재궁 안을 꾸미고 외부를 싸매는 제구로 진배되었다. 의영고, 공조, 제용감, 선공감, 장생전, 공조, 별공작, 장흥고 등이 담당하였다.

한편 재궁을 임시로 안치해두는 곳[梓宮權安處]에도 물품을 진배하였다. 재궁은 인정전仁政殿의 동월랑東月廊에 두었는데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진배물종이 있었다. 우선 목침이 있는데, 이는 재궁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으로 등凳이라고도 하였다. 나무로 만들고 흰 칠을 하였는데 3쌍을 별공작에서 만들어 백칠을 하여 진배하였다. 상모전常毛氈 6부도 호조와 공조에서 진배했다. 공석空石은 적당량을 군자감과 광흥창에서 올렸다. 이외에 유차일油遮田, 휘장揮帳, 등매登毎, 지의地衣는 재궁 임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전설사典設司와 장흥고 등에서 진배하였다. 다 사용한 후에는 반납하였다.

재궁 위에 니금으로 '상'자를 쓰는 일은 서사관 좌참찬 오준이 담당하였다. 총호사 도감당상, 장생전, 제조, 일방 당청 1명이 선정전에 나아가 입참하였다. ** 재궁의 추위를 막을 모금毛衾과 제반 도구를 싸맬 때 별도의 전奠을 드렸다. 9월 18일에는 추위를 대비하여 결과結裹할 때에 품목을 추가하였다. 결과할 때에는 총호사와 제조 3명 일방당청 1명이 함께 빈전 계단 아래에서 부복 俯伏하여 곡을 하고 입시했다.

76

Ⅳ. 재궁 논쟁의 전개와 정치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제작된 재궁을 개조해야 하는 변례가 발생하여 2~3일에 한 번씩 재궁을 꺼내어 옻칠을 수차례 할 수 밖에 없었다. 재궁 개조 및 가칠을 두고 현종과 여러 정치 세력들 사이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었다. 그 대표적 내용을 세 가지 측면으 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1659년(현종 즉위년) 6월 11일 재궁 가칠의 범주와 횟수에 대한 허목 의 비판적 상소가 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송시열이 재궁 개조와 관련한 자신의 행위가 효종 에 대한 성신誠信에 있음을 고한 상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상소 이후에도 송시열에 대한 비 판은 잦아들지 않았는데, 1660년(현종 1) 4월 18일에는 윤선도가 상소를 올려 송시열이 사부로 서 효종의 신체를 보필하지 못하였음을 비판하면서 재궁 논쟁은 더욱 확산되었다. 이에 대한 내 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허목의 재궁 가칠 비판

허목은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과 예학禮學에 대해 논쟁한 남인의 핵심 인물이다. 원시유학原始 儒學인 육경학六經學에 관심을 두면서 고학古學을 개척한 허목은 재궁 가칠에 대한 비판도 고사古 事와 『예기禮記』를 근거로 전개하였다.⁵²

첫째, 내재궁과 외재궁에 대한 재궁 가칠이 성빈의 예가 지니는 본래적 의미를 손상시킴을 비판하였다. 『예기』 「상대기喪大記」의 "임금의 초빈草殯에는 상여틀을 쓰고 나무를 위에까지 쌓아 진흙을 바르고 지붕을 만든다"는 구절을 활용하였다. 즉, 임금의 초빈은 어둑하고 고요한 곳에 시신을 안치하여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궐내에서 효종의 시신을 성빈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성빈 후에도 내재궁 가칠을 위해 재궁을 2~3일에 한 번씩 꺼내는 것은 예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둘째, 가칠의 횟수가 지나침을 비판하였다. 이는 탕왕湯王, 무왕武王의 고사를 근거로 하였다. 재궁은 국왕이 즉위한 후 재위 기간 동안 매년 한 번씩 칠을 하는 것임을 중국의 은殷·주問의 사례로 근거를 제시하였다. 탕왕은 13년 동안 재위했으므로 13번을 가칠했고, 무왕은 7년을 재위했으므로 7번 가칠했다. 그런데 허목이 상소를 올릴 당시 재궁은 이미 15차례나 가칠을 한 상태였

^{51.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 「빈전일방」, 기해 8월 초1일.

^{52.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6월 11일 경자.

다. 10년을 재위한 효종의 재궁을 15차례나 가칠을 한 것은 탕왕이나 무왕의 재궁보다 더 후하게 형식을 갖춘 것이었다.

셋째, 가칠할 재궁을 분류하여 외재궁 가칠만을 제안하였다. 허목은 현종이 명령한 가칠이 지나침을 아뢰면서도 국왕의 입장을 고려하였다. 즉, 이후로도 계속될 내재궁과 외재궁 가칠은 현종의 지극한 정성과 삼가는 효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예제에는 어긋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예제를 지키고 자식된 자로서 효를 다하는 방식으로 이후로는 외재궁의 가칠만을 두껍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빈하는 장소는 유암幽暗하게 지키면서도 예에 미진한 점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허목의 이러한 상소문을 현종은 오래도록 가지고 있다가 내리지 않았다. 이는 재궁 가칠에 대한 현종의 입장이 허목의 견해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암시적 행위였다. 현종은 상소문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대신들에게 의견을 구하였는데, 송시열, 정태화 등도 모두 성빈을 자주 여는 것은 미안한 일이라고 하여, 허목의 상소에 동조하였다. 왕의 예법과 사대부의 예법의 적용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던 남인의 영수 허목과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재궁 가칠에 있어서는 동일한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인, 남인과 달리 현종은 성빈 후에도 가칠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변례를 당했으므로 모두 고례古禮와 같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내재궁과 외재궁 가칠을 지속시켰다. 이렇게 볼 때, 재궁에 칠을 하는 목적은 시신으로 침투하는 습기의 방지를 위한 관의 견고성이라는 본래적 목적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재궁 개조라는 변례가 발생함으로 인해 재궁 가칠은 현종의 효종 에 대한 '효성'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종대의 재궁 가칠의 사례는 이후 국상의 전례前例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전례의 축적은 『국조속오례의』의 의주의 작성과 연결되었던 것이며, 이렇게 볼 때, 재궁 가칠 의주 항목의 정립은 국왕의 선왕에 대한 효성의 축적된 결과물이 라고 할 수 있겠다.

2. 송시열의 효종 국상에 대한 상소의 내용

허목의 상소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재궁 가칠의 횟수와 범주는 예문의 의미를 고찰하는 과 정에서 제기되었다. 그 입장 차이도 예문을 중시하는 신하들과 효성을 강조하는 현종 사이의 문

53. 이러한 허목의 상소는 6월 11일 기사에 있지만, 이보다 앞서 상소를 올렸다.

78

제였다. 하지만 왜 재궁 가칠을 해야 했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재궁 가칠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1659년(현종 즉위년) 12월 송시열의 상소문은 그러한 정치적 공박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이었다.⁵⁴

잘 알려져 있다시피 송시열은 주자朱子와 이이李珥를 흠모하였고, 김장생金長生(1548~1631)과 김집金集(1574~1656)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조선이 유교 국가가 되는데 기여한 핵심 인물이었다. 송시열이 1635년(인조 13) 약 1년 간 봉림대군鳳林大君(1619~1659)을 가르치며 쌓은 유대감은 효종이 즉위 한 후 송시열이 관직에 나가게 된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렇지만 1659년 7월 송시열이 이조판서가 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1659년 5월 효종이 급서急逝하였다. 송시열은 효종의 국상에서 복제나 예론의 적용 등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와 입장차를 보였던 남인 측의 공박이 계속되자, 12월 5일 상소문을 올려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밝혔다. 그 중 재궁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궁 크기가 맞지 않게 된 요인으로 지목된 염을 하는 시기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시신에 대한 염은 3일이 지나서 하는데 그 이치에 대해서 정자程子와 조간자趙簡子의 해석을 인용하였다. 정자는 사람이 죽어도 다시 소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에 3일이 지난 뒤에 염한다고 하였고, 조간자는 10일이 지난 뒤에도 소생할 수 있으니 만약 3일이 되기 전에 염을 한다면 이는 이치로 볼 때 죽은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고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3일이 지나 염을 하는 것이야 말로 적어도 죽은 국왕에 대해서 3일 동안은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신하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었다. 더구나 국왕과 사대부의 예는 차이가 있어서 국왕은 3일 만에 소렴하고 5일 만에 대렴하도록 하고 사대부는 2일 만에 소렴하고 3일 만에 대렴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기한에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촉박하게 소렴과 대렴의 날짜를 앞당기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는 더운 날씨 때문에 소렴을 하루 앞당겨 2일 만에 거행하였지만, 이상과 같은 주장을 하였던 송시열 때문에 염을 하는 시간이 다소 늦어졌고 따라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던 것이다.

둘째, 예서에 기록된 소렴조의 행례와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 신하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었음을 밝혔다. 소렴조에 의하면 "아직 끈으로 묶지 않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효자가 어버이의 소생을 바라는 마음과 수시로 그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

효종 채궁의 개조와 그 정치적 성격 79

^{54. 『}현종실록』 권1, 현종 즉위년 12월 5일 신묘; 『현종개수실록』 권2, 현종 즉위년 12월 4일 경인.

로, 효종의 소렴에서도 이를 지키는 것이 신하된 자의 도리라고 여겼다. 아울러 송시열은 재궁의 크기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송시열은 재궁에 임금 초상에 쓰이는 의복이 1백 28벌이 들어간다는 『예경禮經』의 내용을 읽고 효종의 재궁도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는 송시열이 조선의 재궁은 크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데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송시열은 염을 예론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효종에게 성신誠信을 다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 원칙에 따른 주장은 전고典故에 없는 변고의 원인으로 인식되었다. 조야朝野에서는 송시열이 괜한 고집을 부리다가 일을 그르쳤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이에 불씨를 지핀 것이 다음에서 살펴볼 유선도의 상소이다

3. 윤선도의 상소와 이후의 전개

윤선도는 1628년(인조 6) 별시문과 초시에 장원으로 합격해서 봉림대군과 인평대군麟坪大君 (1622~1658)의 스승이 되었고, 효종 즉위 이후에는 예조참의禮曹參議가 되었지만 서인의 모략으로 사직하였다가 다시 1657년(효종 8) 동부승지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송시열과 맞서다가 관직에서 쫓겨났고, 1659년(현종 즉위년) 효종의 사후 예론 문제로 다시 서인과 맞섰다. 1660년(현종 1) 4월 18일 상소도 서인 송시열과 송준길에 대한 비판이었다.

윤선도는 상소문에서 조야의 공론을 들어 송시열과 송준길이 현자가 아님을 밝히고, 맹자가 말한 안부존영安富尊榮이 국왕을 위한 것이 아닌 송시열과 송준길 본인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하였다. 안부존영이란 『맹자』「진심상盡心上」에 공손추公孫丑가 군자가 직접 밭을 갈지 않고도 공밥을 얻어먹는 이유에 대해서 맹자에게 묻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이다. 맹자는 군자가 그 나라에 거처할 때에 임금이 그를 등용하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풍부해지며, 임금이 존경받고 영화롭게될 것이라고 하였다. 송시열과 송준길은 효종에게 등용되어 국가를 평안하게 만들고 임금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임금의 신임을 독차지하면서 자신들의 안부존영을 최고로 누렸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송시열과 송준길은 효종으로부터 유현遺賢의 대우를 받았고, 사부로서의 책임도 사과할 수는 없는데 선왕을 잘못 보도하여 죽음(함궐銜橛의 걱정)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부傳는 덕의德 義를 펴야 하고, 보保는 신체身體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었다. 특히 재궁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일은 이제껏 없었던 이변으로 안부를 다하지 못한 것이었다. 특히

유선도의 상소로 인해 송준길마저도 체직遞職하였다.56

윤선도의 상소에 대해 사간원에서는 현종에게 상소의 문제점을 아뢰었다. 윤선도가 재궁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워 송시열과 송준길의 의혹을 제기하고 심지어 효종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선왕까지도 범한 말이므로 극력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그의 죄는 종묘사직과 선왕에게 연관되는 것으로 귀양보다 더 큰 죄를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날 사간원에서는 윤선도의 무고죄를 이뢰었다. 윤선도가 재궁의 문제를 들추어내어 송시열과 송준길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덫을 놓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권력을 차지하였으며, 국왕권도 흔들린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신하로서 '극죄'이자 '천하의 대약'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윤선도의 언급은 죄가 없는 송시열을 모함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타인을 악역惡逆으로 무고한 자는 반드시 반좌율反坐律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윤선도의 무고죄는 악역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사간원에서는 재궁의 일은 날조하고, 효종을 보좌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은 선왕까지도 범하였으므로 여론이 애통해 한다는 사실을 아뢰었다.

같은 날 사헌부에서도 윤선도의 상소에 대해서 사간원과 같은 입장에서 윤선도를 비판하였다. 윤선도는 재궁의 문제를 들고 나와 송시열과 송준길을 모함하는 발판으로 삼았고, "보도輔導를 잘 못하여 함궐의 변까지 있게 만들었다"고 하여 선왕까지 들먹였으니, 매우 흉측한 일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윤선도의 상소에 대해서 사간원과 사헌부 등에서는 그가 송시열과 송준길을 '몰래 미혹'하고, '어지럽히려고 하는 것'이며, 재궁의 일은 '날조', '함정' 등의 기미幾微라는 주장을 하며 윤선도를 국법으로 처단할 것을 아뢰었다.⁶⁰ 윤선도는 효종의 사후 이러한 예론 문제로 서인과 맞서다가 결국 유배되었다.

윤선도는 비록 유배를 가게 되었지만, 이 상소를 통해 발인 이전에 있었던 재궁의 일에 대한 재조사의 필요성이 재점화 된 것은 분명하였다. 이에 정태화는 "윤선도의 상소 중의 말뜻은 진실로 감히 모두 진달하지 못하겠으나, 그중에서 재궁에 관한 일은 소신이 홀로 책임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⁶ 재궁의 일은 당시 재궁 봉심에 함께 참여하였던 최고 책임자 정태화의 귀

80 효종 재궁의 개조와 그 정치적 성격 **81**

^{55. 『}현종실록』 권2, 현종 1년 4월 18일 임인; 『현종개수실록』 권3, 현종 1년 4월 18일 임인.

^{56. 『}현종실록』 권2, 현종 1년 4월 23일 정미.

^{57. 『}현종실록』 권2, 현종 1년 4월 20일 갑진; 『현종개수실록』 권3, 현종 1년 4월 20일 갑진.

^{58. 『}현종실록』 권2. 현종 1년 4월 21일 을사: 『현종개수실록』 권3. 현종 1년 4월 21일 을사.

^{59. 『}현종실록』 권2, 현종 1년 4월 21일 을사.

^{60. 『}현종개수실록』 권3, 현종 1년 4월 21일 을사.

^{61. 『}현종개수실록』 권3, 현종 1년 4월 23일 정미.

책으로 결론지어 봉합하였다. 하지만 이후로도 상대 붕당 및 관련자들을 비판할 때에는 재궁 문제가 다시 소환되었다.

우선, 윤선도의 상소 후 12년이 지나 1672년(현종 13) 전제용감정前濟用監正 조사기趙嗣基 (1617~1694)가 상소를 하였다. 조사기는 효종 초년 사관으로 효종의 명을 받고 재궁을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는 효종이 즉위하자마자 재궁을 준비하고 해마다 옻칠을 했으며, 장생전에서 재궁을 칠하는 데 농간을 부리는지 조사하도록 하였음을 아뢰었다. 이는 곧 효종이 그만큼 재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작에 유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재궁을 연판連板하여 개조한 것은 신하들이 정성을 다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상소를 아뢰었다.

승정원 도승지 장선징은 조사기가 이인환李寅煥(1633~1699)에게 탄핵을 받은 이후 상소를 올렸다는 점에서 공정한 마음이 아니었고, 연판 재궁에 관한 이야기는 신하로서 다시 말할 수 없는 것임을 밝혔다. 복제에 있어서는 3년설을 주장하였던 남인 허적許積(1610~1680)도 조사기의 투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음을 아뢰었다. 효종 국상 당시 호조판서 허적은 공조판서였던 정치화鄭致和(1609~1677)와 함께 힘을 다해 전판全板을 찾았지만 결국 얻지 못했던 사실을 밝히며 불가항력적이었던 일이었음을 밝힘으로써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1673년(현종 14) 효종의 능인 영릉寧陵 봉심 이후 석물에 틈이 생긴 변이 생기자 전참 의前參議 장응일張應—(1599~1676)이 응지상소應旨上疏를 올리면서, 재궁의 문제가 다시금 언급되었다. 효종의 장지로 영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윤선도가 올린 내용을 없애고 현재의 장지로 결정한 서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천릉할 때에 재궁 이봉移奉을 대신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것임을 아뢰었다. 영릉을 봉심한 후 능의 상태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였고, 재궁 개조를 결정하였던 것도 대신이었으므로 천릉할 때에 재궁을 이봉하는 일을 대신들이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중이 깔려 있는 것이었다. 사헌부장령 성호장成虎徵(1625~1694)은 현종이 중하게 여기고 국가가 의지하고 믿을 자는 대신들이라고 옹호하며 그를 탄핵하였다. 응교 이선李選(1632~1692)도 장응일을 탄핵하는 등 정치적 공세가 이어졌다.

같은 날 현종은 이 문제를 두고 총호사 김수홍金壽興(1626~1690) 및 도감 당상을 인견하였다. 김수홍은 천릉에 대한 장응일의 상소가 송시열을 겨냥한 정치적 이유에 있다는 사실을 아뢰었다. 1660년(현종 1) 이후 항간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송시열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첫째, 예禮를 의논한 일, 둘째, 재궁에 합판한 일, 셋째, 영릉을 쓰자고 주장한 일이다. 두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당시 재궁 봉심에 참여했던 대신들은 이를 두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영릉의 석물에 틈이 생기자 이를 두고 천릉할 것인가 아니면 봉분을 개축할 것인가 하는 점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 능의 봉분을 보완할 것인가 아니면 능을 열고 재궁을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재궁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관련한 것이었다. 천릉을 위해 봉분을 헐고 재궁을 이봉하려고 할 때 만약 재궁에 탈이 있다면 송시열이 중죄를 입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신과 도감당상 이외에도 낙선군樂善君 이숙李潚, 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 복선군福善君 이남李柟, 복평군福平君 이연李梗 등 종친도 참여하여 재궁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재궁은 상처가 없고 옻칠의 색깔도 그대로였다. 또 광중壙中에 들어가 살펴보니 외재궁 안이 마르고 깨끗하였다. 종친의 참여는 장선장이 요구한 재궁 봉심의 공정성이 충족된 것이었다.

재궁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궁 가칠과 연관해 볼 수 있다. 즉, 앞서 발인 이전 재궁 가칠을 할 때 서인, 남인, 중도파 등 모든 신하들은 재궁 가칠 횟수가 지나치게 많음을 경계하였다. 하지만 현종은 효성을 이유로 수십 번의 재궁 가칠을 하도록 명령하였고, 그로 인해 재궁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현종이 고집스럽게 주장한 재궁 가칠이 이후 천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궁의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논쟁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궁 가칠을 통해 습기를 막아 시신을 잘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후 국상에서 재궁 가칠이 각인되었던 것이라고 여겨진다.

V. 맺음말

재궁은 국왕이나 왕비 등의 시신을 안치하는 관이다. 재궁은 국왕이나 왕비가 승하한 직후 제 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장생전에서 제작해 두었다가 국상國喪 중에 재궁의 몸체와 뚜껑을 조립 하고 비단으로 꾸몄다. 그 내용은 조선 전기 『국조오례의』에 정리되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재

82 효종 재궁의 개조와 그 정치적 성격 **83**

^{62. 『}현종실록』 권20, 현종 13년 3월 4일 경술; 『현종개수실록』 권25, 현종 13년 3월 3일 기유.

^{63. 『}현종실록』 권20, 현종 13년 3월 4일 경술; 『현종개수실록』 권25, 현종 13년 3월 3일 기유.

^{64.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6월 14일 임자.

^{65.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6월 20일 무오.

^{66.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6월 20일 무오; 『현종개수실록』 권27, 현종 14년 6월 20일 무오.

^{67.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9월 30일 병신.

궁과 관련한 새로운 절차가 추가되었다. 바로 재궁에 옻칠을 더하는 가칠 의주가 더해졌다. 재궁을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본래의 목적, 곧 습기 방지를 위한 의례 행위가 강조된 것이다. 이에 재궁 가칠의 직접적 계기로 현종 즉위년 효종의 국상을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와 『현종실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659년(효종 10) 5월 효종이 승하하자, 『국조오례의』, 전례, 고례를 참고하여 발인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더운 날씨, 염습의 절차에 있어서 예문에 따른 절차가 강조되면서 재궁의 크기가 시신보다 작아지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에 여러 논의 끝에 본래의 재궁에 나무판을 덧붙여 늘리는 방법으로 개조하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궁에 32회의 옻칠을 하였다

재궁 개조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재궁 가칠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즉, 재궁 가칠은 재위 기간의 횟수에 맞추어 칠하는 것이 고사古事였다. 이에 근거한다면 효종은 10년을 재위하였으므로 10번만 가칠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32회 가칠을 하였으므로 가칠을 가중하게 행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서인, 남인, 정태화 등 중도적 입장의 관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재궁 가칠이 과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현종은 재궁을 개조할 수밖에 없게 되자 효성의 마음으로 내재궁과 외재궁 가칠을 발인 이전까지 수십 차례 진행하였다.

또 다른 한편 재궁 개조의 문제는 재궁을 개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고, 그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정치적 공방과도 연결되었다. 염습 과정에서 시신에 의대를 묶는 시점을 예문에 따라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던 송시열이 그 죄인으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대신들이 함께 봉심한 결과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었음으로 결론 내려졌다. 따라서 봉심을 할 때 최고 책임자였던 정태화가 직접적으로 사죄하였고, 송시열, 송준길 등도 낙항하였다.

재궁 개조는 이후 1672년(현종 13), 1673년(현종 14)에도 상소문에 언급되면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1673년에는 효종의 능인 영릉의 천장과 봉분 개축의 문제를 두고 정치 세력 간 첨예한 갈등이 있었다. 봉분을 헐어 재궁의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송시열과 송준길 등에게 중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천릉에서 재궁을 봉심할 담당관들을 공정히 선정하였다. 수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재궁 봉심 결과 재궁은 견고히 잘 유지되고 있었다. 수십 차례의 재궁 가 칠이야말로 재궁을 견고하게 만들고 습기로부터 시신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이 전례로 연결되어 이후 『국조상례보편』의주의 정립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국문초록

효종 재궁의 개조와 그 정치적 성격

재궁梓宮은 국왕이나 왕비 등의 시신을 안치하는 관이다. 보통 국왕이나 왕비가 즉위하면 미리 장생전長生殿에서 제작해 두었다가 사후 국상國葬 중에 재궁의 몸체와 뚜껑을 조립하고 비단으로 꾸몄다. 이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정리되어 있는데, "국조속오례의」에는 재궁에 가칠을 하고 '상上'이라는 글자를 쓸 때 곡哭하는 의주가 더해졌다. 재궁을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습기 방지를 위한 가칠의 행위가 의례적 행위로서 강조된 것이었다. 이에 재궁 가칠의 직접적 계기로 현종 즉위년 효종의 국상의 절차와 재궁 개조에 대해서 「효종빈전혼전도감의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효종은 1659년(효종 10) 5월 4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41세의 나이에 승하하였다. 효종이 승하한 날부터 발인 하루 전날까지 궁궐에서는 "국조오례의」, 전례前例, 고례古禮, 시의時宜를 고려하여 행례를 하였다. 더운 날씨 때문에 소렴과 대렴의 날짜를 하루씩 앞당겼으며, 시신의 염습險襲은 내시 이외에 효종과 효종비의 친인척이 담당하였다. 반함飯含은 왕세자(현종)가 직접 행하였다.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설빙設氷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습, 소렴, 대렴 등의 절차에 대신과 삼사 이하의 관원이 입시하였다.

특히 염습을 봉심奉審하면서 시신이 본래보다 부었고, 이미 제작되어 있는 재궁과도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그 해결 방법을 논의한 끝에 본래의 재궁에 나무판을 덧붙여 늘리는 방법으로 개조하였다. 이는 시신의 안치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거행되었다. 대신 개조한 재궁에 총 32회의 옻칠을 하였다. 이상의 재궁 개조와 재궁 가칠은 현종대 정치적 논란의 소재가 되었다. 허목은 예론을 근거로 재궁 가칠의 범주와 횟수를 제한할 것을 이뢰는 상소를 올렸으나 현종은 효성을 이유로 이를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재궁 가칠을 해야 했던 근원은 재궁 개조에 있었다. 그리고 그 실질적 책임자로 지목된 자가 송시열宋時쥈이었던 만큼 정치적 공세가 이어졌다. 송시열은 재궁 개조가효종에 대한 자신의 성신誠信의 행위였음을 밝혔지만, 윤선도尹善道는 효종의 사부였던 송시열이 효종의 신체를 편안히 보살피지 않고 자신의 안부安富와 존영尊榮을 위한 행위였다고 비판하였다. 재궁은 단순히 시신을 안치하는 '관'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재궁 개조는 사후

주제어: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 치벽, 치재궁, 재궁, 재궁, 가칠, 관곽, 송시열, 효종

의 국왕을 잘 보필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그 정치적 공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Abstract

Modification of King Hyojong's Coffin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Jaegung (梓宮) refers to the coffins of kings or queens. Instead of being produced as needed upon the death of a king or queen, they were assembled during the official mourning period using materials that had been prepared and stored in Jangsaengjeon Hall. The body and lid of the coffin were assembled at this time and finished with a silk covering. Details of the production of jaegung are recorded in the Five Rites of the State (國朝五禮儀, Gukjooryeui) published in the early Joseon period. In the late Joseon period, a lacquering process, known as gachil (加漆, "additional lacquering"), was added to the production of jaegung. Gachil was a ritual procedure designed to both adorn jaegung and block moisture, the original purpose of lacquering. This paper examines the Uigwe for Installing the Royal Coffin Hall and Spirit Hall of King Hyojong (孝宗殯殿都監儀軌, Hyojong binjeon dogam uigwe) and related material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etails of the state funeral of King Hyojong (孝宗, r. 1649–1659) performed in the accession year of King Hyeonjong (顯宗, r. 1659–1674), which featured a direct cause for adding the gachil procedure to the production of the jaegung.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death of King Hyojong and the day before the coffin was carried out of the palace, the state funeral was prepared according to the Five Rites of the State, with a few slight changes made based on precedents and ancient examples. First, there was an adjustment to the number of people participating in the rites performed before the corpse was placed in the coffin. In consideration of the hot weather, the soryeom (小殮) rite of dressing the corpse in clothes and wrapping it in a blanket and the daeryeom (大殮) rite of placing the body in the coffin were each conducted one day earlier than prescribed by regulations. The banham (飯含) rite of inserting rice and a pearl inside the mouth of the deceased was performed by the crown prince himself, and the seolbing (設 氷) procedure to prevent the corpse from decaying was omitted.

During this process, the corpse was found to have swollen too much to fit in the coffin already produced. After a discussion, it was decided to add planks to expand the coffin and apply 32 coats of lacquer to finish the amended casket. This modification meant that a serious issue took place with the king's coffin, which must be treated with extreme care and rigor, but circumstances allowed no other alternative. Thereafter, lacquering a king or queen's coffin became an official procedure for the state funeral.

For the *gachil* lacquering process, the royal coffin hall, known as *binjeon* (殯殿), had to be opened every two to three days, and this aroused criticism since it contradicted the original purpose of the *binjeon* of preserving a royal coffin in a secluded, dark place.

After the end of the state funeral, Song Siyeol (宋時烈, 1607–1689), the leader of the Seoin (西人, "Westerners") faction, was blamed as the fundamental cause of this need to modify the king's coffin. This and the additional lacquering (*gachil*) were frequently citied during the three occasions on which Song Siyeol and his clique came under attack during the reign of King Hyeonjong.

Keywords: *Uigwe for Installing the Royal Coffin Hall and Spirit Hall of King Hyojong (Hyojong binjeon dogam uigwe), Jaegung, Jaegung gachil*, Coffin, Song Siyeol, King Hyojong

Abstract

Le réaménagement du Jaegung et ses implications politiques Un Jaegung est un cercueil où l'on place le corps d'un roi ou d'une reine. Il n' est pas fabriqué après le décès, mais du vivant de la personne royale à laquelle il est destiné; le coffre et le couvercle sont bâtis et conservés dans un magasin du Jangsaengjeon, l'office chargé de la construction des cercueils, puis sont assemblés et décorés de soie. Tous les détails sont enregistrés dans Les Cinq rites royaux, ouvrage publié pendant la première moitié de la dynastie Joseon. Durant la seconde moitié, un procédé a été ajouté à la fabrication des Jaegung: il s'agit de l'application de laque sur le cercueil. Cette peinture avait pour fonction d' embellir l'objet, mais constituait avant tout une mesure contre l'humidité.

Notre étude examine les funérailles de Hyojong, le le 17e roi de la dynastie Joseon, célébrées lors de l'année de l'intronisation de son successeur, Hyeonjong, qui régna de 1659 à 1674. Il faut noter que c'est à cette occasion que commença le laquage des *Jaegung*. Notre analyse est basée sur le *Uigwe* relatif au pavillon où fut gardé le cercueil du roi Hyojong avant sa mise au tombeau, et sur les documents concernant cette procédure.

Du décès du roi Hyojong jusqu'à la veille du départ du cortège funéraire, le processus funéraire s'avère conforme aux *Cinq rites royaux*, mais enrichi de nouveaux éléments définis à partir de coutumes et de rites anciens. Il y a d' abord un changement du nombre des participants au rite de la mise en bière. Puis un autre changement notable : du fait du temps chaud, on avance d'un jour l'habillage du corps avec le linceul, son recouvrement d'une couverture et son installation dans le cercueil. En outre, troisième innovation, c'est le prince dauphin lui—même qui met du riz et des perles dans la bouche du défunt. Enfin, ultime changement observable : on ne dépose plus de glace autour du corps pour en ralentir la dégradation.

Dans ce processus, on découvre que le corps, qui a eu le temps d'enfler, n'entre plus dans le cercueil fabriqué à l'avance. Étant donné qu'un Jaegung doit être traité d'une façon stricte et rigoureuse, c'est un problème grave. À l'issue d' une délibération, on décide d'augmenter le volume du cercueil en y ajoutant une planche de bois, et d'y appliquer trente—deux couches de laque. Il s'agit d' une mesure prise faute de mieux, due aux circonstances. Cependant, elle a pour conséquence que le laquage du *Jaegung* est désormais intégré au rituel des obsèques royaux.

Pour appliquer la laque, il fallut ouvrir tous les deux ou trois jours le pavillon

où le cercueil du roi Hyojong était gardé. Cela provoqua des critiques, puisque le pavillon destiné au *Jaegung* devait en principe demeurer un lieu sombre et calme. Après les funérailles du roi Hyojong, une voix accusatrice s'éleva contre Song Si–Yeol (1607–1689), le responsable direct du problème qui entraîna finalement la modification du cercueil. De là, sous le règne du roi Hyeonjong, le réaménagement et le laquage du *Jaegung* devinrent le principal sujet de trois attaques politiques contre la faction des occidentaux dont Song Si–Yeol était le chef de file.

Mots—clés: *Uigwe* relatif au pavillon où fut gardé le cercueil du roi Hyojong avant sa mise au tombeau, *Jaegung* (cercueil où l'on place le corps d'un roi ou d'une reine), laquage du *Jaegung*, cercueil (coffre), Song Si—Yeol, roi Hyojong

의궤를 통해서 본 명성왕후 장례의 특징과 정치적 상징성

04

State Funeral of Queen Myeongseong: Its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Implications Reflected in Uigwe for Her State Funeral

이상식

∟ee Sangsik

Research Professor, History and Culture Research Institute,
Duksung Women's University

- Ⅰ. 머리말
- Ⅱ. 명성왕후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
- Ⅲ. 『국조오례의』에 따른 장례 절차와 왕실 권위 강화
- Ⅳ. 명성왕후의 유언에 따른 장례 절차와 효 의식의 표출
- Ⅴ. 맺음말

I. 머리말

의례는 상호간의 질서를 수직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위상과 권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데 매우 효율적인 기제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된 의례는 일정 기간 경험이 축척되고 관계와 절차가 상호간에 이해되면 보편적인 형태로 규정화, 형식화되게 마련이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의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종 때에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영조 때에는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등으로 정리했다.

그런데 왕조 국가의 특성상 왕실 의례는 법전이나 역사서로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의례를 통해 대상자를 규정하고 기억하는 일은 시·공간 및 상황에 따라 변칙적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특히 성리학적 이념이 보편화되는 17세기에 이르러 두 차례의 예송禮訟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선 사회는 흉례의禮를 중심으로 한 왕실 의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왕실과 사서인士庶人의 차별이 공식화되었고, 이 내용을 기록한 의궤는 이후 국가적 규범 외에 또 다른 왕실의 전범으로서 기능하였다.

이들 의궤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서지학, 소재, 활용 콘텐츠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의궤 종류, 형태, 분포, 제작 과정, 외규장각 의궤 '반환(환수)' 등과 관련한 고문헌학, 서지학 측면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의례에 사용한 물종物種의 종류 및 특징을 의궤를 통해 분석한 예술 문화적인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의궤의 역사성과 활용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가 구축되었다.¹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의궤의 활용성이 증진되어 의궤 연구 성과는 많이 축적되었다.

하지만 대상자의 추모와 기억이라는 흉례 의궤의 특성에 따르면 이상의 작업 및 연구들은 '행사 도구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왕실 의례는 국가적 관심과 역량이 집중된 행사이다. 행사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끼리 서로 간의 관계성과 소속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를 기록한 의궤는 당대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의궤에 관한 연구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당대의 정치사회적 관계와의 연결성을 파악하는 단계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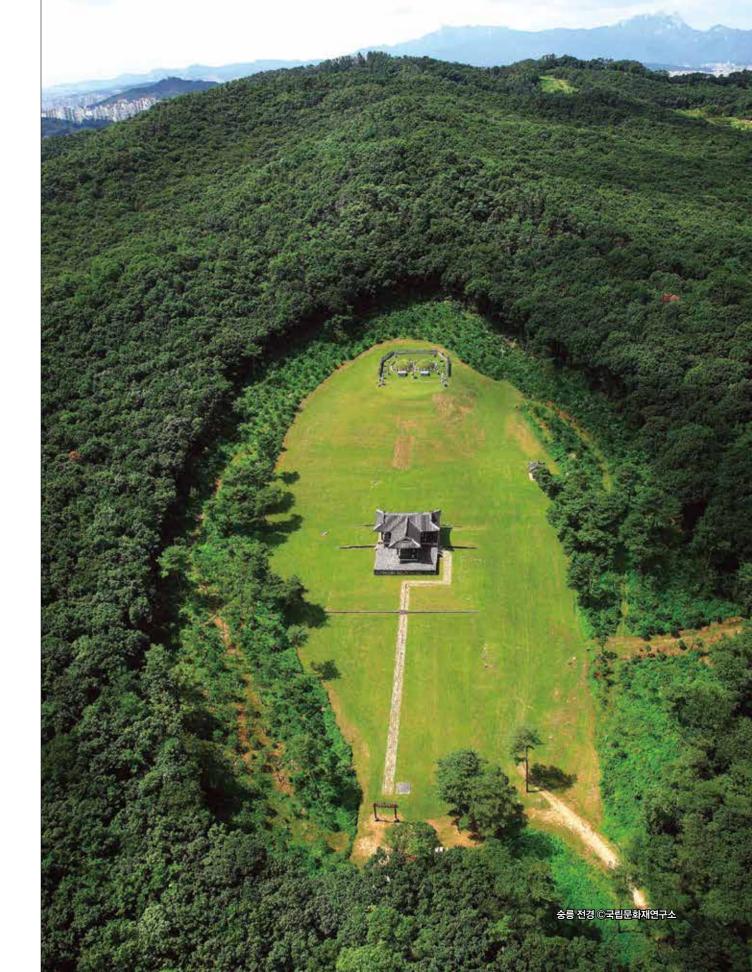
한편 이전 숙종肅宗(채위 1674~1720) 초기의 연구는 주로 정치 세력과 권력 구조, 그리고 예송

^{1.} 의궤 이용과 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규장각 의궤 누리집(http://uigwe.museum.go.kr)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의궤 종합정보(http://kyujanggak.snu.ac.kr/center)가 있다. 여기에서는 의궤의 원문 이미지, 텍스트 파일(TXT), 해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 한국고전번역원을 중심으로 의궤 번역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禮訟을 주제로 이루어져왔다. 서인西人, 남인南人, 종척宗戚, 외척外戚 등 정치 세력들 간의 상호 연계성 파악을 통해 숙종 초기의 정치적 갈등은 왕권을 둘러싼 종친과 외척간의 구조에 당파들이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숙종 초기 홍수지변紅袖之變(1675, 숙종 1), 경신환국庚申換局(1680, 숙종 6)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명성왕후明聖王后(1642~1683)의 역할은 '붕당'이라는 틀에 얽매인 탓에 연구자들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²

흉례의 대상자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관계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사례 중의 하나로 명성왕후 장례식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당쟁의 심화, 신분제의 변동 등 조선 사회의 동요 속에서도 소중화론小中華論, 예송 등 성리학적 질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형성해나가는 단계에 있었다. 특히 명성왕후 장례식의 경우, 예송 논쟁 관련자들이 참여했고, 예송의 핵심 사항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명성왕후의 흉례 의궤 중 『명성왕후빈전도감의궤明聖王后殯殿都監儀軌』에는 의주儀註, 복제服制, 제전祭奠, 지문誌文 등 장례의 핵심 사항이 실려 있다. 이 의궤에는 예송에 따른 왕실 의례의 특수성 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었고, 명성왕후의 대왕대비로서 상징성과 당시 정치 세력과의 관계도 이 의궤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명성왕후빈전도감의궤』를 『인선왕후빈전도감의궤仁宣王后殯殿都監儀軌』에 나타난 사례와 비교 검토해 보면 그 의미는 더욱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3



^{2.} 명성왕후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논고는 한지희, 「숙종 초 '紅袖의 變'과 明聖王后 金氏의 정치적 역할」, 『한국사학보』 31(고려사학회, 2008.5)이 유일하다.

^{3.} 본고는 외규장각 의궤 중 『명성왕후빈전도감의궤』, 『인선왕후빈전도감의궤』를 활용했다. 명성왕후 관련 흥례 의궤는 『국장도감의궤』, 『빈전혼전도감의궤』, 『산릉도감의궤』가 남아 있다. 이중 『국장도감의궤』는 현재 상책은 없고 「이방」, 「삼방」, 「별 공작」 등이 있는 하책만 남아 있다.(김혁, 『파리국립박물관소장 외규장각 의궤 조사연구』, 외교통상부, 2006) 『명성왕후빈 전도감의궤』는 어람용과 분상용(의정부, 춘추관, 예조, 강화부 보관본) 의궤인 총 5건을 장악원掌樂院에서 편찬하였다. 이 때 어람용 의궤는 『명성왕후빈전도감의궤』와 『명성왕후혼전도감의궤』를 분리해 각각 편찬하였는데 비해, 각 분상용 의궤는 두 책을 하나로 제본해 『명성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로 편찬하였다.(『명성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의궤사목」)

Ⅱ. 명성왕후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

조선시대 정치 과정에 대비大妃가 관여한 사례는 드물기도 하지만 유교 이념상 대비의 정치 관여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수렴청정垂簾聽政이 아닌데도 정치적인 영향 력을 끼쳤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종顯宗(재위 1659~1674) 비妃이자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 왕후는 명실상부한 대비로서 숙종의 건강과 왕실 보호에 적극 노력하면서 정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다. 더불어 송시열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뛰어넘어 사표師表로 추켜세웠다.

이러한 명성왕후의 정치적 상징성과 관계성은 김석주가 지은 행장과 송시열이 찬술한 묘지문 墓誌文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⁵ 행장行狀을 기초로 작성된 묘지문은 대상자의 업적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상징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 왕실 특히 왕과 왕비의 묘지문은 성격상 작가의 역량뿐 만 아니라 대상자와의 관계도 고려되었다.

명성왕후의 묘지문은 숙종이 행록行錄을 작성했고 김석주가 지은 행장을 바탕으로 송시열이 찬술했다. 숙종이 지은 행록에는 명성왕후의 덕성을 위주로 서술되었다. 세자빈으로 간택되고 궁궐로 들어온 이후로 효성과 공경, 화락和樂과 검약 등에 대한 명성왕후의 실천에 대한 사례들이 나열되었다. 반면에 송시열이 지은 묘지문은 명성왕후와 자신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숙종 초기 명성왕후의 정치적인 측면의 역할을 강조하고 평가했다.

명성왕후의 상징성은 먼저 효경孝敬을 들 수 있다. 세자빈이 되었을 때 인조仁祖의 계비인 장렬왕후莊烈王后(자의대비慈懿大妃, 1624~1688), 효종孝宗, 효종의 비 인선왕후에게서 효경으로 자주 칭찬을 받았다. 효종은 "아름다운 이 며느리는 마침내 우리 국가를 복되게 할 것이다."라고 칭찬하였다. 1669년(현종 10)에 현종이 어머니인 인선왕후를 모시고 온양 행궁溫陽行宮에 갈 때에 명성

왕후는 그동안 문안을 하지 못할 것임을 한탄하며 이에 따라갈 정도로 효경이 지극하였다.

하지만 명성왕후의 궁중 생활은 각종 장례 준비와 간병으로 점철되었다. 입궁한 후 효종, 인선 왕후, 현종, 두 공주 및 며느리인 인경왕후仁敬王后(1661~1680) 등의 잇따른 사망에 성신誠信을 다해 장례를 치렀다. 특히 효종, 인선왕후의 장례 때에는 규정대로 다했고, 현종이 사망했을 때에는 통곡하다가 기절할 정도였다. 또한 장례 관한 일은 유사有司에 맡기지 않고 금모衾冒 등의 제구를 친히 다 장만했다. 이런 경험은 나중에 자신의 장례식을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 유언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현종의 병환이 잦자 명성왕후의 근심은 끊이지 않았고 아들인 숙종마저도 매우 병약하여 병간호에 지극 정성이었다. 1678년(숙종 4) 숙종이 설사 증세로 위중하게 되자 명성왕후와 인경왕후는 목욕재계를 하면서 치성致誠을 드렸다. 이 덕택인지 숙종의 병이 거의 낫게 되었다. 또한숙종은 어려서 천연두를 겪지 않았는데 뒤늦게 1683년(숙종 9) 10월에 발생하자 추위를 무릅쓰고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지극히 빌었다. 하지만 도리어 이로 인해 자신이 질병에 걸렸고 그해 12월 5일에 저승전儲承殿 서별당西別堂에서 42세 나이로 사망했다.

다음으로 명성왕후의 정치적 행보는 1675년(숙종 1)에 발생한 이른바 홍수지변과 1680년(숙종 6) 경신환국, 송시열에게 보낸 언문諺文 교지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숙종은 수렴청정 없이 14살에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정무를 처리했다. 이때 효종의 동생인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아들 삼복三福형제(복창군福昌君, 복선군福善君, 복평군福平君)는 종실宗室이자 숙종의 당숙으로 현종 때부터 궁궐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정치에 개입했고 왕위를 엿본다는 의심을 샀다. 이들은 김현金鉉, 조희맹趙希孟 등 환관 및 유상궁尹尚宮 등과 결탁하며 현종의 움직임을 살피며 삼복 형제에게 알려주었다.

때마침 1675년(숙종 즉위년)에 청나라 사신이 조문하는 일로 조선에 왔다. 이때 접반사였던 오시수吳始壽(1632~1681)가 이들을 접촉하고 "임금이 약하고 신하는 강하다(君弱臣强)"라는 말을 퍼뜨려 정세가 급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명성왕후는 "전에 선왕의 신하였던 자가 어찌하여 감히 밝히지 못하는가?"라고 몹시 분해하며 허적計積(1610~1680)에게 그 근원을 밝히도록 지시했고 결국 오시수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예송 과정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던 삼복 세력과 명성왕후 측의 정치적 긴장은 홍수지변을 통해 서인과 남인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증폭되었다. 현종의 장례식 때에 복창군 이정李楨과 복평군 이연李權 등이 대전관代奠官으로 궁궐에서 숙직하면서 궁녀와 간통한 사실이 명성왕후에

^{4.} 명성왕후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역할과 상징성은 시호諡號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시법諡法에 사방四方을 조림照臨하는 것을 '명明'이라 하고, 착함을 드날리고 간소簡素함을 편 것을 '성말'이라 한다.(『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 12월 11일 무신.)

^{5.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1월 15일 신사.

^{6.} 송시열은 왕실의 지문誌文 작성과 관련해 총 5번 요청을 받았다. 그중 효종, 명성왕후, 인경왕후의 지문을 작성하였고 현종, 인선왕후의 묘지문은 예송으로 인해 작성하지 못했다. 이중에서 명성왕후의 지문은 송시열의 역량과 정치적 위상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명성왕후가 사망한지 12일 만에 송시열이 서울로 올라오자 숙종은 직접 맞이하여 통곡하였다. 그리고 송 시열에게 서울에 머무르며 지문을 찬술하도록 간곡히 요청했다. 병중에도 숙종은 친히 명성왕후의 행록을 지었고, 청성부원군 김석주에게 행장을 만들어 송시열이 지문을 자을 수 있게 했다. 명성왕후가 사망한지 1달여 만인 1월 15일 송시열은 명성왕후의 묘지문을 바쳤다.(『숙종실록』권14, 숙종 9년 12월 17일 갑인; 『숙종실록』권14, 숙종 9년 12월 28일 을축)

^{7. 『}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 12월 28일 을축.

^{8.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1월 15일 신사.

게 발각되었다. 궁녀들과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이미 현종 때부터 알려진 사실이었다. 하지만 숙종은 주저하며 처리를 지체했다. 이는 외척보다는 종척인 삼복 형제에게 많이 의지하며 가깝게 지냈기 때문이다.

명성왕후는 이러한 숙종의 일처리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 김우명金佑明(1619~1675)에게 요청해 상소하게 하였다. 숙종은 어쩔 수 없이 복창군, 복평군 형제와 궁녀인 김상업金常業, 귀례貴禮 등을 잡아들여 국문輔問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줄곧 잡아떼며 혐의를 부인하자 숙종은 남의 말을 믿고 지친至親을 의심했다고 하면서 복창군 형제를 석방했다. 이때 복창군의 외삼촌 오정창吳挺昌 (1634~1680)은 윤휴尹鑴(1617~1680)·허목許穆(1595~1682) 등과 결탁하여 이들을 변호했다. 이로 인해 김우명은 도리어 죄를 뒤집어쓰고 의금부에 대죄하게 되었다.10

명성왕후는 아버지인 김우명이 자신의 부탁으로 상소하다가 도리어 죄를 받을 지경에 이르자 자책하면서 숙종과 함께 선정전宣政殿으로 나가 대신大臣과 재신宰臣들을 불렀다. 그리고 현종의 장례 때 복창군이 김상업과 간통한 일과 자신이 아팠을 때 병문안 왔던 복평군이 귀례와 간통했던 일에 대해 통곡하면서 이야기했다. "정·연 등의 간통한 사건은 아침·저녁 사이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때문에 선왕께서도 전에 이에 대해 말했고 모두 분명한 증거가 확실히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때 아닌 명성왕후의 등장과 충격적인 간통 사건을 들은 허적許積, 권대운權大運(1612~1699) 등은 즉시 복창군, 복평군 형제 및 궁인들의 처벌을 요청하였다. 다만 왕실의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명성왕후는 이들의 죄를 감등하여 유배를 보내는 선에서 그쳤다. 이렇게 홍수지변은 일단락되었다.

이후 명성왕후는 "주상主上이 어리므로 내가 감히 잠자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며 숙종과 함께 정국을 논의하여 결정했다.¹² 하지만 이러한 명성왕후의 정치 개입은 남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윤휴·허목·홍우원洪字遠(1605~1687) 등은 "허물을 두 번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움직임을 단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불이과不二過', '조관론照管論' 등을 거론하며 명성왕후의 정치 개입을 비판했다.

잇따라 이수경李壽慶(1627~1680)·조사기綃嗣基(1617~1694)·박헌 등도 명성왕후의 정국 개입에

대해 반발하였다. 이들은 특히 명성왕후 배후에 송시열과 서인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정국에 파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명성왕후의 아버지인 김우명은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자, 명성왕후는 차라리 자결하겠다는 언문을 약방에 보내며 강력 항의했다. 이처럼 정국이 극단으로 치단자 허적은 정국 안정을 위해 박헌의 처단을 숙종에게 촉구했다.

반면 허목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데에서 나왔다."라고 하며 박헌을 변호하였다. 윤휴는 '조관'을 '간고幹蠱'에 비유하며 변명했고, 윤휴를 변호하는 자들은 "한기韓琦(북송北宋, 1008~1075)도 조관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며 변호했다. 더구나 허목과 윤휴는 한재早災로 인한 죄인소결疏決 때에 복창군과 복평군의 석방을 주장하자 숙종은 이를 받아들여 풀어주었다.¹³ 하지만 본인이 관련된 왕실의 문제로 정치적 대립과 분란을 원하지 않았던 명성왕후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한편 1680년(숙종 6)에 복선군 이남李柟이 허견許堅(?~1680)·이태서李台瑞(1614~1680)·오정창 등과 함께 역모를 꾀하다가 김석주에 의해 발각되어 처형된 '경신환국'이 발생했다. 명성왕후는 반역 옥사가 붕당간의 대립으로 지나치게 확산되자, 사건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의심스러운 자는 가볍게 죄주고, 분명히 죄가 있는 자라도 살릴 방도를 찾았다. 숙종은 역모의 주동자인 복선군에 대해 "우리 선왕의 골육骨內이다."라고 하여 종친을 우대하는 의리상 경전聲甸을 시행했다. 그리고 명성왕후의 뜻대로 이들의 관금棺衾을 바꾸고 고장藁葬을 고치게 하는 등 장례의 절차를 왕실 법도대로 진행했다. '이처럼 명성왕후는 경신환국이 확대되어 왕실의 안녕과 숙종의 왕권이약화될 것을 우려해 해당 역모 사건 관련자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한편 명성왕후와 송시열의 관계는 명성왕후가 보낸 언문 편지에 잘 드러나 있다. 당시 송시열은 1674년(현종 15)에 인선왕후의 사망을 계기로 제기된 예송에 휘말려 오인례誤引禮의 죄목으로 유배되었다. 그후 경신환국으로 석방되어 영중추부사에 임명되었고 숙종의 여러 차례의 간곡한 부름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거절했다.

1680년(숙종 6) 10월 인경왕후 장례식 때도 지문을 짓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가 곧바로 떠나갔다. 숙종은 도승지都承旨를 보내 선유宣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마침내 명성왕후가 나서서 동생인 김석연金錫衍(1648~1723)을 시켜 언문 편지를 전달했다. 결국 송시열은 이에 감동하여 다시 조정에 나오게 되었다.¹⁵

^{9. 『}숙종실록』 권3. 숙종 1년 4월 1일 기축.

^{10. 『}숙종실록』 권3, 숙종 1년 3월 12일 경오; 숙종 1년 3월 13일 신미.

^{11. 『}숙종실록』 권3, 숙종 1년 3월 13일 임신.

^{12.} 사관들의 평가는 좀더 적극적이었다. "갑인년 선왕께서 승하하시어 애통에 싸였으며 임금은 어리고 나라는 안정되지 않아서 화란禍亂이 일어나려 할 때에 남모르게 임금의 도리를 돕고 가만히 임금의 자리를 붙들어 세우셨다."(『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4월 3일 무술)

^{13. 『}숙종실록』 권4, 숙종 1년 7월 9일 을미.

^{14.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1월 15일 신사.

^{15.} 명성왕후의 언찰의 판본 및 내용에 대해서는 김일근, 「명성대비(明聖大妃) 언찰(諺札)에 대(對)하여-송시열(宋時烈)에게

송시열은 이 명성왕후의 언문 편지에 대해 "갑인년(1674) 이후로 옛 신하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늘 몹시 근심하고 마음 아파했다. 우리 전하께서는 뜻을 받들었는데 놀랄 일들을 여러 번 겪었으나 끝내 보전하여 별 탈이 없었다. …… 그 뒤로 옛 신하가 물러가려고 하자 편지로 만류하셨다."라고 하며 솟나라 선인태후宣仁太后가 사마광司馬光(1019~1086)을 만류했던 고사와 같다고 평가했다.¹⁶

명성왕후 사후 서울을 떠나 귀향을 결심한 송시열은 명성왕후의 지문을 지어 바치고¹⁷ 숙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로 귀향을 하여 광주廣州 땅까지 이르렀다. 숙종은 승지 이세백李世白을 보내어 송시열에게 재차 귀향을 만류하였다. 심지어 송시열을 붙잡기 위해 숙종은 경신년 당시 명성 왕후가 송시열을 불렀던 인연을 들었지만 송시열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¹⁸

명성왕후의 언문 편지는 송시열에게 정치적 위상을 확보해주었고, 명성왕후는 경신환국 이후 송시열을 앞세워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¹⁹

"선조^{先朝}의 가르침과 뜻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나 우리 성모^말의 가르침과 권면^{動勉}에 힘입었고, 서정^{庶政}의 당부^{繼否}에 대해서는 내가 미처 잘 살피지 못하는 것이 있으나 우리 성모의 분부와 경계에 힘입었다."²⁰

송시열은 명성왕후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 『서경書經』「주아周雅」에서 태사大姒를 "견천지매俔 天之妹"로, 송宋나라에서는 선인 고태후宣仁高太后를 "여중요순女中堯舜"이라고 청송한 것을 거론하

보낸 수필전유(手筆傳輸)」(『국어국문학』 49·50, 1970.9, 국어국문학회)를 참조할 수 있다.

- 16.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1월 15일 신사.
- 17.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1월 15일 신사;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1월 18일 갑신.
- 18.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1월 19일 을유: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1월 17일 계미, "경신년에 교외로 나갔던 것이 생각난다. 자성慈聖께서 특별히 하유하여 불렀던 일이 정녕하고 간절하자 경은 융성한 관심에 감격하여 그 날로 조정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재궁梓宮이 빈전殯殿에 있고 선침仙寢은 아직 식지 않았고 그때의 옥음玉音이 귀에 쟁쟁하다. 그런데 경은 어찌하여 차마 선후先后의 유지遺旨를 받들지 않으며, 넘어지는 것을 붙잡을 계책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냐?(仍記庚申之出郊也 慈聖特下諭召 丁寧懇惻 卿感激隆眷 即日還朝矣 今梓宮在殯 仙寢未冷 伊時玉音 耿耿在耳 卿何忍不體先后之潰旨 罔念扶顧之策平?)"
- 19. 이후 이 언문 편지는 1689년(숙종 15) '원자元子' 호칭 지정 문제로 송시열이 귀양을 갔다가 손자인 송주석宋疇錫(1650~1692) 이 효종의 편지와 함께 바치려고 했다가 요절하여 그만두었다. 그러다가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 때 복관復官 치제致祭되 자 송시열의 아들인 송기태宋基泰가 찾아다가 바치게 되었다.
- 20. 명성황후의 역할에 대해 사신史臣의 평가는 좀 더 적극적이다. "갑인넌 이래로 뭇 간사한 자가 나라의 권세를 잡고 반역하는 중친이 세력을 폈으나, 오히려 성모聖母를 꺼려서 번갈아 흉악한 상소하여 어린 임금을 속이고 양궁兩宮을 이간하려 꾀하였으니, 이때는 위태로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성모께서 일념으로 걱정하고 지성으로 도와 성심聖心을 깨우쳐서 국맥國脈을 유지하였다."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4월 5일 경자.)

면서 명성왕후에 대해서는 "성덕聖德으로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어, 흉악한 역모를 중지시켜서 국 가적 위기를 바로 잡아 공功이 사직社稷에 남고 은택이 백성에 미쳤기 때문에 고태후 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평가했다.²¹

Ⅲ. 『국조오레의』에 따른 장례 절차와 왕실 권위 강화

명성왕후의 장례 기간은 규정대로 사망에서 발인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1683년(숙종 9) 12월 5일에 사망했고 다음해 4월 3일에 발인을 시행했다.²² 명성왕후의 장례식은 숙종의 주관하에 각 절차마다 『국조오례의』에 따른 1674년(현종 15) 인선왕후의 장례식 사례와 명성왕후의 유언을 참고하여 진행되었다.²³ 여기서는 『국조오례의』에 따라 진행된 장례 절차를 숙종이 주도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습襲으로부터 성복成服 때까지 의주儀注는 일체 『국조오례의』를 따랐다.²⁴ 명성왕후 사망당일 12월 5일 2경에 습례襲禮를 시행했는데 예조에서 반함례飯含禮를 여관女官에게 대행케 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숙종은 반함례의 대행 근거를 민정중閔鼎重(1628~1692)에게 물었으나 그는 "승정원일기와 『국조오례의』에 대신 시행한다는 글만 있다."라고 하며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²⁵이에 숙종은 1674년에 현종이 직접 반함飯含한 것을 근거로 직접 반함례를 시행하였다.

12월 7일과 9일에는 각각 소렴과 대렴을 절차대로 시행했다. 이때 빈전殯殿은 선정전宣政殿, 혼전魂殿을 문정전文政殿에 설치하였다.⁴⁶ 이곳은 각각 창덕궁과 창경궁의 편전便殿에 해당한다. 종종 편전을 빈전이나 혼전으로 사용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두 궁궐의 편전을 동시에 장례식 장소로 사용한 경우는 유례가 없었다.

명성왕후의 빈전도감의궤 중에서 주목할 사항은 복제服制에 관한 규정이다. 다른 절차는 사

^{21. 『}숙종실록』권15, 숙종 10년 1월 15일 신사, 「지문誌文」; 송시열, 『송자대전宋子大全』권20, 「자탐라취나출육후유소自耽羅 就拿出陸後遺疏」

^{22.} 인선왕후의 장례는 1674년(현종 15) 2월 24일 사망에서 5월 28일에 발인했다.(『인선왕후빈전도감의궤』, 「시일」)

^{23.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1월 5일 신미;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1월 17일 계미; 『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 12월 12일 기유.

^{24. 『}명성왕후빈전도감의궤』, 「의주儀註; 『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 12월 10일 정미.

^{25. 『}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 12월 5일 임인.

^{26. 『}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 12월 9일 병오.

망자와 산자 사이의 규정인데 반해 복제는 상주와 타인간의 상호간의 관계 설정까지를 포함하여 정치적 관계를 가장 형식적으로 잘 드러내는 상징이다. 『명성왕후빈전도감의궤』에서는 성복조成 服條 안에 별도로 복제조服制條를 설정하여 각 지위별 복제를 상세히 규정했다.

「가례복도家禮服圖」와 「시왕지제時王之制」에서는 며느리의 상喪에 시어머니가 입는 상복인 자부복子婦服을 기년朞年(1년)과 대공大功(9개월)으로 구별했다." 인선왕후 장례 때에 시어머니인 자의대비慈懿大妃(장렬왕후)의 복제를 재최齊衰 기년朞年으로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명성왕후 장례 때 복제는 1674년(현종 15)의 원칙대로 숙종과 인현왕후仁顯王后는 각각 재최 3년, 대왕대비인 자의대비(장렬왕후)는 소공小功 5개월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복제 규정의 경우, 인선왕후 장례 때에는 예조에서 단자單子와 계사啓辭를 통해 끊임없이 현종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명성왕후 장례 때에는 이러한 과정 없이 규정만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때는 인선왕후 때와 달리 '복제'의 항목을 설정하여 그동안 예송을 통해 나타난 의례를 종합하여 복제의 정형화를 꾀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명성왕후 장례식 때에 이르러 복제는 논란의 대상으로서 변례變體가 아닌 불변의 가치인 상례常體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발인 때의 절차도 1674년 인선왕후 장례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³⁰ 전알례展謁 禮와 산릉에서 지내는 입주전立主奠, 반우返虞하고 지내는 초우제初虞祭 등의 절차를 인선왕후 장 례 때의 전례에 따라 진행할 것을 예조에서 요청하자 숙종은 모두 허락했다.³¹

한편 명성왕후 장례 절차는 숙종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의주에 있는 절차에 따라 해당 의식을 직접 진행하려고 했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국조오례의』와 비교 검토하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졸곡卒뽓 전에는 각종 제사를 폐지한다는 『국조오례의』의 조문을 근거로 산릉이 끝난 뒤의 안릉安陵의 전奠과 선릉先陵의 고유告由에 대한 문제를 이단하李端夏(1625~1689)가 제기하자 숙종

은 졸곡 전에 제사를 폐지하는 것과 관계없이 전물을 진설하고 제문도 짓도록 지시했다. 2

또한 총호사摠護使 민정중이 명성왕후의 재궁梓宮에 벌어진 틈을 해결하기 위해 『국조오례의』의 규정에 따라 재궁을 칠포漆布로 감싸는 일에 대해 숙종에게 문의했다. 1674년(헌종 15)과 1680년(숙종 6) 국휼國恤 때에는 무익하다는 이유로 장생전長生殿에서 계청啓請하여 중지했었다. 하지만 숙종은 칠포를 사용토록 지시했다.³³

숙종은 정자각丁字閣에서 재궁을 닦을 때 묶었던 끈을 풀어 해친 후 다시 묶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대신들에게 다시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 영의정 김수항金壽恒(1629~1689)·좌의정 민정중 등이 우선 근례近例를 따르기를 요청하고, 우의정 남구만南九萬(1629~1711)은 『국조오례의』에 구체적인 사항은 없으나 절도節度와 문식文飾 상 다시 묶도록 요청했다. 숙종은 남구만의 의견을 따랐다.³⁴

숙종은 발인전發引奧에 애책문哀冊文을 두는 위치 문제로 국장도감國葬都監 낭청郎廳과 감조관 監造官들을 파직하기도 했다. 의주儀註에는 발인전 애책문은 빈전 서쪽 계단 아래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1674년(현종 15) 인선왕후의 장례와 1680년(숙종 6) 인경왕후仁敬王后의 장례시 견 전遺奠 때의 사례에서도 애책문을 안으로 들여와 읽었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명성왕후의 장례 때 애책을 밖에 두자 숙종이 그 사유를 세밀히 캐물었다. 당시 총호사 민정중과 당상堂上들은 안이 하게 아전衙前의 이야기를 듣고 고례古禮로 이해했다. 이에 대해 숙종이 질문하자 당황하며 대답 하지 못하고 낭청에게 죄를 돌리기도 했다.35

또한 숙종은 명성왕후와 관련된 일이 논쟁화 되는 일은 회피하고자 했다. 명성왕후의 사망 원인은 숙종의 병구완을 위해 벌였던 무축巫祝과 무리한 재계齋戒 행위였다. 숙종은 자주 병 치례에시달렸다. 1678년(숙종 4)의 심각한 이질痢疾 증세에 이어 1683년(숙종 9)에는 명성왕후가 그토록걱정했던 천연두가 결국 발생했다. 이로 인해 명성왕후는 종종 무녀를 불러들여 굿도 하고 추운겨울에 목욕 재계를 감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1680년(숙종 6)에 인경왕후仁敬王后는 사망했고, 이번에는 명성왕후 자신이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 32.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3월 13일 기묘.
- 33.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3월 18일 갑신.
- 34.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4월 1일 병신.
- 35.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4월 2일 정유.
- 36. 명성왕후 사망 직전에 궁궐에서 전신餞神한다는 설이 민간에 널리 퍼졌다. 숙종이 두질痘疾을 앓자 명성왕후는 무녀巫女 인 막례莫禮를 궁궐로 불러들여 기양법祈禳法을 시행했던 것이다. 이때 막례는 명성왕후에게 차가운 샘물로 목욕할 것을 요청했다.(『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 12월 2일 기해)

^{27. 『}현종실록』 권22, 현종 15년 2월 27일 임술.

^{28.} 효종이 사망한 뒤 자의대비(장렬왕후)의 복상기간을 둘러싸고 발생한 기해예송己亥禮訟 결과 대왕대비의 복제는 예조에서 올린 기년에서 대공大功으로 수정했다.(『인선왕후빈전도감의궤』, 갑인 2월 26일)

^{29.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3월 9일 올해, "禮曹請 四月十七日卒哭祭訖 上就齋殿 改服白袍素冠布裹帶白皮靴 百官各就次 易服 祭時 大王大妃具小功服 中宮殿具衰服 別堂行望哭禮 外官亦於卒哭日質明 正廳設香卓 大小奉命使臣在東 外官在西 具衰服 北向哭 四拜訖 易服一如禮制 可之"

^{30.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3월 8일 갑술.

^{31.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3월 8일 갑술.

이 때 명성왕후에게 차가운 샘물로 목욕하도록 했던 무녀 막례莫禮를 처벌하자는 대간들의 상소가 잇따르자³⁷ 사헌부에서는 막례를 붙잡아 가두기는 했지만 논계論啟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지방에서 있던 박세채朴世采(1631~1695)까지 상소하여 비판했다. 하지만 숙종은 무녀의 사건에 대 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민간에서 오해한 탓이지 명성왕후의 견식이 고명하고 무격을 배척하 였기 때문에 믿고 현혹되었을 리 없다."라고 숙종은 강변했다.³⁸

심지어 홍문관弘文館에서도 차자節子를 올려 막례를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기를 요청했고³⁹ 수 찬修撰 서종태徐宗泰(1652~1719)에 이어 좌의정 민정중, 승지 박치도朴致道(1642~1697) 등도 요청했 으나 숙종은 명성왕후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⁴⁰

숙종은 장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외숙인 명성왕후의 동생 김석익金錫翼(?~1686)을 개성유수 開城留守로 특제特除하기도 했다. 명성왕후를 추념하는 뜻에서 특제한 것이지만 묘당의 의견을 문지 않고 특명으로 발탁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수찬 서종태가 상소하여 외척을 특명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비판했지만 숙종은 오히려 척완戚畹을 그토록 미워하는 이유를 반문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영의정 김수항마저 교체를 요구하자 마지못해 이를 허락하고 다시 참판參判의 망望에 비의備擬 하라고 명하였다. 이처럼 숙종은 명성왕후 장례 절차를 『국조오례의』에 따른 인선왕후의 사례를 인용하였다. 이를 통해 장례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직접 주관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확보하였다.

Ⅳ. 명성왕후의 유언에 따른 장례 절차와 효 의식의 표출

명성왕후는 사망 전에 제구祭具, 폐백幣帛, 진향進香, 궤전饋奠 등에 쓰이는 장례 물품 마련에 대한 사항을 유언으로 남겼다. 숙종의 남다른 효성을 생각할 때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과 어김없이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언을 작성하였다. 당시 명성왕후는 호조

의 경비도 없고 백성들의 사정 또한 매우 곤궁함을 생각하여 전례를 따르지 말고 장례 관련 각종 물품을 감축할 것을 바랐다. 아래는 명성왕후가 사망 전에 내린 유언이다.

"습襲은 무공주無孔珠로 하고, 대렴차驗·소렴小檢의 의대초衞는 교포絞布로써 할 것이다. 그리고 입관하는 의대 交帶와 초상 때 명정銘旌과 발인 때 명정의 소금저素錦補와 평상시에 덮는 구의柩衣와 현궁호흡에 내릴 때 삼중 구의=重柩초와 영좌靈座의 회장揮帳과 신문神門의 회장과 영좌의 교의^{交椅} 아래에 까는 욕褥과 제사상의 탁의후 초와 영상墨床 교의호稿의 방석 호백魂魄 교의의 보자기 초상初喪에 쓰이는 홍초탁의紅綃후초와 산룡山陵 영침墨寢 의 욕틀과 퇴광退廳에 들이는 함자函子의 안팎 보자기와 산릉山陵 찬궁讃宮의 현훈호繼은 신묘년 납채納采 때의 두 빛깔의 옷감이 있으니 예기 體器의 척도 尽度에 의하여 재단해 쓰고 새로 베를 짜 만들지 말도록 할 것이 다. 발인 때의 영취함墨源函과 유의함遺域函. 다른 것을 담는 함자函子와 보자기는 내가여間에 있는 것이 또한 쓸 만하니 이것을 가져다 쓸 것이다 중궁 책례^{冊禮} 때의 교서^{敎書 ·}옥보^{玉寶 · 책보} 등 3가지 물건의 안팎 보자기는 모두 새 옷감으로 바꾸어서 이들 물건은 모두 글에 쓴 대로 이미 마련했으니 즉시 먼저 지시해 겹쳐서 만들지 않게 할 것이다. 삭망제朔望祭의 과실 그릇의 수는 이전 사례를 따르지 말고 모두 절반으로 할 것이며, 아침저녁의 정莫은 비록 행하지 않는다 해도 좋을 것이나. 만약 예禮 때문에 다 폐지할 수 없 다고 생각하다면 유과 교무와 이병태鮮을 한 그릇씩 차릴 것이며, 다른 전물 變物도 또한 반으로 감할 것이다. 그리고 각 도와 각 사회의 진향進제 또한 정지하도록 할 것이다. 제사에 쓰는 상탁珠후은 혹 전날 쓰던 것이 있다면 그대로 다시 쓰도록 할 것이며, 초상에서부터 발인變위하여 현궁호흡에 내리고 반우返虞하는 데 이 르기까지의 여러 기구로서 만약 예전대로 쓸 만한 것이 있다면 또한 다시 만들지 말게 하여 폐단을 줄 이는 바탕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혹 너무 검소 절약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위에서부터 감하고 줄이는 것과는 다름이 있는 것이다. **3

먼저 제구와 관련해서는 초상初喪에서부터 반우返虞하기까지의 각종 기구들은 예전 것을 사용하여 폐단을 줄이도록 한 유언대로 시행했다. 하지만 진향의 경우 영의정 김수항은 신하된 정리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즉 각 관서마다 진향을 할 수 없겠지만 의정부만이라도 백관을 거느리고 진향할 수 있기를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납폐의 경우 혼례 때와 장례 때는 경우가 다르므로 1680년(숙종 6) 명성왕후 혼례 때의 납폐를 장례 때의 차림으로 쓸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폐백으로 바꾸기를 요청했다. 반면에 대사헌 이단하는 김수항이 주장한 의정부의 진

^{37. 『}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 12월 2일 기해.

^{38. 『}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 12월 15일 임자.

^{39.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2월 22일 무오.

^{40.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2월 25일 신유.

^{41.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2월 22일 무오.

^{42.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2월 23일 기미.

^{43. 『}명성왕후빈전도감의궤』, 계해 12월 초5일, 「대행왕대비유교大行王大妃遺敎」

향은 명성왕후의 유언을 어기는 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의견이 엇갈리자 숙종은 봉조하奉朝賀 송시열에게 문의했다. 송시열은 진향의 경우 유언을 어길 수 없지만 납폐의 경우, 의례를 근거로 하여 가례 때의 폐단幣段은 장례 때의 증례贈禮로 사용할 수 없으니 새로 준비할 것을 건의했다. 숙종은 처음에는 김수항의 건의대로 의정부에서 진향하는 것을 인정했으나 송시열의 의견을 듣고는 각 관서의 진향은 중지하고 납폐만 새로 바꿔 시행하도록 결정했다.

주다례畫茶禮는 명성왕후의 유언에 들어있지 않았다. 총호사 민정중은 주다례의 시행 여부에 대해 "크고 작은 제전祭奠을 명성왕후의 유언에 따라 감축했으니 유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똑같이 포함시켜야한다."는 취지로 문의했다. 이때 숙종은 주다례는 유언에 들어있지 않지만, 자식된 정리상 매우 어그러지는 것이라고 하여 이전처럼 시행토록 지시했다.⁴⁵

제전 즉 삭망제와 조석전 물품의 경우, 명성왕후의 유언에 따라 물품의 숫자를 감축하였다. 이를 『명성왕후빈전도감』 제전식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명성왕후 장례 궤전饋奠

대제급별전	大祭及別	奠		협탁 挾卓				조석전 朝夕	7奠		
종류	인선 왕후	명성 왕후	비고	종류	인선 왕후	명성 왕후	비고	종류	인선 왕후	명성 왕후	비고
중박계 中朴桂	4그릇	2그릇	감축	약과 藥果	1그릇	1그릇		약과藥果	3그릇	1그릇	
홍산자 紅散子	2그릇	1그릇	 감축	실생률 實生栗	1그릇	 1그릇		세면細麪	1그릇	1그릇	
백산자 白散子	3그릇	1그릇	 감축	エマンピ 悪古看藍	1그릇	1그릇		一 수정과 水正果	1그릇	1그릇	
약과 藥果	5그릇	2그릇	감축	수정과 水正果	1그릇	1그릇		추청 追淸	1그릇	1그릇	
실백자 實柏子	1그릇	1그릇		 就菜	1그릇	1그릇			1그릇	1그릇	이상 3개 중 1개는 순회
건 시자 乾栋子	1그릇	1그릇		면麪	1그릇	1그릇		송고병 松古餅	1그릇	1그릇	

^{44. 『}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 12월 13일 경술.

대제급별전 大祭及別奠			협탁 挾卓				조석전 朝夕奠				
종류	인선 왕후	명성 왕후	비고	종류	인선 왕후	명성 왕후	비고	종류	인선 왕후	명성 왕후	비고
생리 生梨	1그릇	1그릇	대大 10개 소小 15개	잡탕雜湯	1그릇	1그릇		두단자병 豆丹子餅	1그릇	1그릇	
자박병 自朴餅	 1그릇	 1그릇		추정追淸	 1그릇	1그릇		유사병 油沙餅	1그릇	 1그릇	
お子餅	1그릇	1그릇		사량 촉 四兩燭	2개	2개		실백자 實柏子	1그릇	1그릇	이상 4개 중 2개는 순회
절병 切餅	1그릇	1그릇		오 량촉 五兩燭	1개	1개		실생률 實生栗	1그릇	1그릇	
산삼병 山蔘餅	1그릇	1그릇		マ 순ン計 竹笋看藍	1그릇	_	유언감축 遺敎減省	생리 生梨	1그릇	1그릇	대大 10개 소小 15개
송고병 松古餅	1그릇	1그릇		다	1그릇	_	유언감축 遺敎減省	大楽	1그릇	1그릇	
실진자 實榛子	1그릇		유언감축 遺敎減省	전증 煎蒸	1그릇		유언감축 遺敎減省	전증 煎蒸	1그릇	1그릇	이상 2개 중 1개는 순회
대 조 大楽	1그릇	_	유언감축 遺敎減省	거 을면 擧乙麪	1그릇	_	유언감축 遺敎減省	잡탕 雜湯	1그릇	1그릇	
황율 黃栗	1그릇	_	유언감축 遺敎減省	거 을증 擧乙蒸	1그릇	_	유언감축 遺教減省				
유병 油餅	1그릇	_	유언감축 遺敎減省								
유사병 油沙餅	 1그릇	-	유언감축 遺敎減省								
보시병 甫是餅	1그릇	_	유언감축 遺敎減省								
상화병 床花餅	1그릇	_	유언감축 遺敎減省								
두단자병 豆丹子餅	1그릇	_	유언감축 遺敎減省								
 합계	30	14		 합계	16	11		 합계	16	14	

[※]참고자료: 『명성왕후빈전도감』 「제전식」, 『인성왕후빈전도감』 「제전식」

^{45. 『}명성왕후빈전도감의궤』, 계해 12월 초6일, 「도감낭청총호사의계都監郎廳總護使意啓」



숭릉 홍살문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제급별전大祭及別奠 및 조석전朝夕奠에 쓰이는 기본 물품의 수량은 위 표에 보이듯이 인선왕후 때는 62개였는데 명성왕후 때는 39개로 축소되었다. 대제급별전 항목은 30개에서 14개로, 협탁은 16개에서 11개로, 조석전은 16개에서 14개로 감축되었다. 이중 대제급별전 및 협탁 감축분은 대부분 명성왕후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조석전 물품까지도 순환 배치하는 등 가짓수와 그릇수를 대폭 줄인 까닭에 제전祭奠은 매우 소략해졌다.

이러한 명성왕후의 검소함은 생전에도 일상화되었다. 명성왕후는 명안 공주明安公主가 시집가게 되자 경계하기를, "사치하다가 검소하게 생활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혼수를 예전 사례보다모두 줄였다. 또한 홍수와 가뭄이 들자 백성의 어려움을 생각해 음식을 폐하고 진상 물품과 내탕고內帑庫 물건 등을 내서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보태기도 했다.

46.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1월 15일 신사.

명성왕후가 이처럼 각종 장례 물품에 대해 자세하게 유언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차례 치른 장례 경험에 따른 것이었다. 현종 장례 때에 관련된 일을 직접 모두 정리하고 여어女御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리고 시신 묶는 끈 및 옷 등 관 안에 넣은 사소한 물품까지도 궁궐에서 마련해 국력國力을 조금도 허비하지 않았다.

『명성왕후빈전도감의궤』에서 강조된 항목 중의 하나는 빈전에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며 음식을 올리는 곡전哭寞 의식이다. 곡전은 효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숙종은 곡전과 상식上食을 직접 실행함으로써 명성왕후에 대한 효성을 직접 드러냈다. 또한 3월 3일 절일에 숙종은 명성왕후 빈전을 찾아 직접 제사를 지냈고, 제문에서 명성왕후에 대한 애모의 정을 절절히 드러냈고 참여자들 모두 감탄하여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예관이 발인 때의 절차에 대한 의주儀注를 바치자 숙종은 교외에서 지송祗送하려고 했다. 내의원 도제조 김수흥 등은 숙종의 병환이 재발할 것을 염려하여 말렸으나 숙종을 자로의 사례를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⁴⁹

자로^{子路}는 100리 밖까지 쌀을 지고 가려고 하여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평소에 맛있는 것으로 봉양하는 일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또 교외에서 지송하지 못하면, 장차 종신토록 지극한 아픔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교외에서 지송祗送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김수항 등이 발인 때 교영郊 迎하는 예를 중지하기를 다시 아뢰자 그제야 겨우 중지하였다.⁵⁰ 비록 교외 지송이 중지되기는 하 였지만, 효孝의 실행자로서의 숙종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상 명성왕후의 장례와 관련하여 명성왕후의 유언과 그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명성왕후의 유언에 따라 각종 제전祭奠이나 제구祭具 등을 대폭 줄여 간소화하였다. 이는 당시 각종 재해의 빈발에 따른 왕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었고, 고통 받고 있던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민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효의 실천자인 숙종은 명성왕후의 유언에 나타난 사항을 준수하는 한편 미진한 부분은 부모 자식 간의 효를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47. 『}숙종실록』 권14. 숙종 9년 12월 28일 음축.

^{48.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3월 3일 기사.

^{49.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3월 20일 병술.

^{50.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3월 27일 계사.

V. 맺음말

명성왕후는 숙종에게는 어머니이자 정치적 후원자였다. 숙종 초기에 '문정왕후文定王后'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왕실의 권위와 왕위의 정통성,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위기를 극복했다. 명성왕후는 한때 협력 관계였던 삼복三福과는 홍수紅袖의 변變 처리 과정에서 멀어졌다. 이어 발생한 경신환국 등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궁중과 신료들을 연계하면서 사건을 처리했다. 특히 예송 과정에서 대립했던 송시열을 불러들여 정치적 위기 상황을 무마했다.

한편 명성왕후가 사망하자 숙종은 송시열에게 묘지명을 작성하게 했다. 숙종 자신이 지은 행록을 기반으로 지어 올린 지문誌文에서 송시열은 명성왕후를 '여중요순女中堯舜'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명성왕후 장례 절차는 지위에 비해 매우 간소하게 마련되었지만 엄숙하고 규모있게 치러졌다. 장례 절차는 『국조오례의』를 따른 인선왕후의 사례와 명성왕후의 유언을 인용하고 적용했다. 먼저 『국조오례의』를 적용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1674년(헌종 15) 예송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복成服 등의 항목을 진행했다. 한편 장례 과정에는 상황에 따른 변례變體는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국왕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다. 숙종은 직접 장례를 주관함으로써 명성왕후의 장례식은 별다른 논란 없이 진행될수 있었다.

또한 장례 절차에서 명성왕후의 유언을 인용한 것은 숙종의 어머니에 대한 효의식의 표출이었다. 장례에 필요한 각종 물종은 유언대로 대부분 절반 이상으로 감축했으나, 숙종은 병환 중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서 곡전이나 지송 등의 장례 절차에 참여했다. 이처럼 의궤에 나타난 명성왕후 장례 절차와 내용은 이후 왕실 권위 확보와 효의식의 표출과 측면에서 하나의 전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문초록

의궤를 통해서 본 명성왕후 장례의 특징과 정치적 상징성 왕조 국가에서 왕이나 왕실의 권위는 질서를 상징화한 의례를 통해 구현된다. 초법적인 성격을 지닌 왕실의 전범典範은 법전이나 역사서 등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거나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은 왕실 전례典禮의 절차와 운영 규정 등을 의궤라는 형식을 통해 정리하였다.

성리학적 이념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두 차례의 예송을 거치면서 왕실 전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특히 갑인예송(1674)에서 왕과 사서인士庶人간 의례의 차별성을 확정함으로써 의궤는 국가적 규범과는 다른 왕실의 전범으로써 공식화되었다. 명성왕후明聖王后의 흉례 의궤는 예송을 통해 정리된 전범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종顯宗 비妃이자 숙종肅宗의 어머니인 명성왕후는 명실상부한 대비로서 막후에서 정국에 영향력을 발휘했다. 숙종 초기 섭정을 하면서 홍수지변, 경신환국, 임술삼고변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과정에 개입하면서 숙종의 왕권을 보호했다. 하지만 명성왕후의 당대의 평가는 사실 위주로 기록된 편년체인 국가 문서들에서는 산재되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구체적인 명성왕후의 상징적 위치를 장례 의궤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징적 지위는 장례 절차의 정당성과 참여자들의 관심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명성왕후의 장례는 검소함을 유지하면서도 엄정하고 규모있게 치러져, 장례의 모범이라고할 수 있다.

먼저 1674년(숙종 즉위년) 인선왕후仁宣王后 장례의 선례先例를 따름으로써 장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논란을 최소화하였다. 대왕 대비 조씨의 상복을 소공복小功服으로 정함으로써 갑인 예송 이후 효종 이래 왕위의 정통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장례에 쓰이는 물품은 명성왕후의 유언에 따라 대폭 축소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함과 더불어 위민 정신을 구현했다.

한편 숙종은 병이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장례를 주관함으로써 명성황후에 대한 애절한 효孝를 드러냈다. 특히 숙종 자신의 치료를 위해 명성왕후가 무속 행위를 했다는 비판에 직접 해명함으로써 논쟁화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묘지문 작성은 숙종이 직접 초안을 작성하고 김석주의 초고를 거쳐 송시열가 수정 검토하였다. 여기서 송시열은 "여중 요순女中堯舜보다 낫다"라고 까지 표현함으로써 명성왕후의 지위를 드러냈다.

주제어: 의궤, 명성왕후, 숙종, 인선왕후, 예송

Abstract

State Funeral
of Queen
Myeongseong:
Its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Implications
Reflected in
Uigwe for
Her State Funeral

The authority of the king and the royal family of a kingdom are commonly represented through rites that symbolize the order of the state. The rules for the royal family, which were higher than the common law, could hardly be defined or described in just any code or history book. For this reason,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procedures and regulations of royal events were documented in a form known as Uigwe.

As Confucian ideology solidified and diffused throughout the nation and two debates over the proper period for wearing mourning during state funerals swept political circles, interest in the rules for royal events grew throughout Joseon society. In particular, the debate in 1674, known as the *gabin yesong* (甲寅禮訟), over how long Queen Jangryeol (莊烈王后, 1624–1688) should wear mourning for her daughter—in—law Queen Inseon (仁宣王后, 1619–1674), consort of King Hyojong (孝宗, r. 1649–1659), clearly showed the distinction made between rites for the king and royal family and those for ordinary people. Uigwe consequently became the canon for royal rites as they were distinguished from state rites. Uigwe titles for the state funeral of Queen Myeongseong allow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rules for the royal rites that had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two *yesong* (禮訟, "debate over rites") debates were in fact observed in practice.

Queen Myeongseong (明聖王后, 1642–1683) was the consort of King Hyeonjong (顯宗, r. 1659–1674) and mother of King Sukjong (肅宗, r. 1674–1720), and exerted considerable influence on politics from behind the scenes. As the grand queen dowager, she acted as regent during the early years of King Sukjong's reign and defended the royal authority of her son by engaging in a series of political maneuvers. However, appraisals of Queen Myeongseong's achievements by her contemporaries appear only sporadically in state documents that describe historical facts in a chronological order. The symbolic status of Queen Myeongseong, which was reflected in the procedures of her funeral and the interest people took in preparing her funeral, can be better identified in detail through the study of the Uigwe titles for her state funeral.

The funeral of Queen Myeongseong avoided extravagance and provided a model example of a state funeral. First, it followed the precedents of the state funeral of Queen Inseon in order to avoid any political controversies that could arise over the course of preparing the funeral. The number of funeral items was greatly reduced and the procedures were streamlined according to the preference of the

queen for lessening the burden on the people.

King Sukjong demonstrated his filial piety toward his mother by supervising the funeral while he was suffering from an illness. He also defended Queen Myeongseong against the criticism that she performed shamanistic activities to cure him because he did not want this criticism to escalate into political strife. The epitaph of Queen Myeongseong was drafted by King Sukjong and revised by Song Siyeol (宋時烈, 1607–1689), who praised the queen by comparing her to the wise Emperors Yao and Shun of ancient China.

Keywords: Uigwe, Queen Myeongseong, King Sukjong, Queen Inseon, Yesong

Abstract

Caractéristiques et symbolique politique des rites funéraires de la reine Myeongseong à travers le *Uigwe* concerné Dans une monarchie, l'autorité du roi ou de la famille royale se concrétise par les rites symboliques de l'ordre dynastique. Il ne suffit pas de définir comme un code ou un livre d'histoire les règles particulières de la famille royale qui transcendent les lois. Le royaume de Joseon présenta les procédures des rites royaux et les règlements concernant leur mise en pratique sous la forme de *Uiqwe*.

Sous la dynastie Joseon, le néo—confucianisme s'étendait à tous les domaines de la vie sociale. C'est à l'occasion de deux polémiques sur la durée pendant laquelle doit être porté l'habit de deuil suite aux funérailles royales, que les rites royaux retinrent le plus d'attention. En l'occurrence, en 1674, année du décès de la reine Inseon (épouse du roi Hyojong), une polémique se développa sur la durée pendant laquelle la belle—mère de la défunte devait porter le deuil. Cela permit de fixer les différences entre les rites de la famille royale, d'une part, et ceux des nobles et des plébéiens, d'autre part. C'est alors que les *Uigwe* furent officiellement reconnus comme renfermant les règles propres à la famille royale, différentes de celles du pays. Ainsi, le *Uigwe* relatif aux funérailles de la reine Myeongseong permet—il de savoir que les règles particulières, mises en place à l'issue des polémiques sur la durée du port du deuil, furent respectées.

La reine Myeongseong, épouse du roi Hyeonjong (qui régna de 1659 à 1674) et mère du roi Sukjong (qui régna de 1674 à 1720), fut une femme politique très active. Au début du règne du jeune roi Sukjong, elle devint régente, intervint dans les affaires politiques et protègea le trône de son fils. On peut trouver des commentaires de son action et de sa personnalité parsemés dans nombre de documents factuels du royaume. Mais c'est le *Uigwe* relatif à ses funérailles qui révèle de façon précise son statut symbolique.

Le statut symbolique est défini par la légitimité de la procédure des obsèques et l'intérêt des participants. En ce sens, les funérailles de la reine Myeongseong constituent un cas exemplaire, puisqu'elles se déroulent avec sobriété et rigueur. La procédure des funérailles de la reine Myeongseong fut conforme à celle suivie antérieurement pour la reine Inseon, ce qui évita les risques d'une éventuelle polémique politique à ce moment—là. La quantité d'objets funéraires nécessaires fut sensiblement diminuée, selon les dernières volontés de la reine. La simplicité des rites et le nombre restreint d'objets employés manifestaient la volonté de donner l'image d' « une dynastie pour le peuple ».

Le roi Sukjong, bien que malade, présida aux rites funéraires pour la reine-mère,

montrant ainsi sa profonde piété filiale. De plus, il expliqua l'acte chamanique pratiqué pour sa propre guérison sur ordre de la reine Myeongseong, afin de prévenir une éventuelle polémique. C'est encore lui qui rédigea l'ébauche de l'épitaphe de la reine—mère. Song Si—Yeol (1607—1689), qui retoucha cette inscription funéraire, compare la reine Myeongseong à Yao et Shun, deux rois sages légendaires de la Chine antique, et va jusqu'à la dire « Reine comme Ya et Shun », ce qui montre bien l'élévation du statut de cette reine.

Mots—clés : *Uigwe*, reine Myeongseong, roi Sukjong, reine Inseon, polémiques sur la durée pendant laquelle doit être porté l'habit de deuil suite aux funérailles royales

19세기 효명세자의 상례 절차와 지출 구조

05

Procedures and Expenditures for Funerary Rites for Crown Prince Hyomyeong in the Nineteenth Century

최주희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Choi Joohee
Researcher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 Ⅰ. 머리말
- Ⅱ. 상례의 절차와 특징: 『국조상례보편』의 준용과 변용
- Ⅲ. 재원 마련 방식과 지출 구조
- Ⅳ.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은 건국 이후 유교적 예치 질서를 확립하여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백성의 풍속을 교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15세기에 확립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한 나라의 군주이자, 왕실의 수장인 국왕이 반드시 치러야 할 책무를 유교적 의례에 맞게 재해석하고 의주儀註 형태로 성문화한 예전禮典이라 할 수 있다.

16세기 이후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어 왕실 의례를 둘러싼 '예송'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18세기 중반 영조가 다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을 간행하면서 왕실 의례가 재정비되었다.! 그런데 18세기 예전禮典의 대대적인 정비에 앞서 조선 후기 국왕들은 왕실 의례를 치르기 위해 임시 도감을 설치하고, 진행 과정을 담은 일기와 등록, 의궤 등의기록물을 꾸준히 남겼다. 조선 왕조가 남긴 방대한 왕실 문헌은 왕조 정부가 국가 운영에 있어 얼마나 '의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를 가늠케 한다. 특히 국왕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의 죽음은자칫 왕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조선 왕조는 사적 영역일 수 있는 왕실의 상장례를 종친부가 아닌 도감 제조提調와 당청郎廳의 주관 하에 국가 행사로 치름으로써 공적 통치 구조 속에서 왕실의 위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였다.

그간 왕실 관련 연구는 17세기 왕실의 복제服制 논쟁을 정치사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들에서 최근에는 왕실 의례의 종류와 특징을 밝히는 생활 문화사 연구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왕실 의례를 주관하는 도감의 운영 양상을 밝힌 연구들이 발표되어 왕실 의례가 관료제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설행되었는지 가늠하는 데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다.²

왕실 의례는 국가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표방하는 상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조선 왕조는 국가의 공적 관료제 하에서 의례의 절차를 논의하는 한편, 국가 재원의 일부를 할애하여 경비를 마련하였다. 현존하는 조선 후기 의궤와 일기, 등록류를 살펴보면, 왕실 의례에 소용된 경비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그간 왕실 재정에 관한 연구는 19세기 회계 장부와 장토 문적庄土文籍을 중심

^{1.} 영조대 예제의 정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탁신희, 「『國朝續五禮儀』의 編纂과 왕권의 位相」(서울시립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 송지원, 「영조대 儀禮 정비와 『國朝續五禮儀』 편찬」, 『韓國文化』 50(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 학연구원, 2010.6.); 이현진, 「영조대 왕실 喪葬禮의 정비와 『國朝喪禮補編』, 『韓國思想史學』 37(한국사상사학회, 2011.4.)

^{2.} 박종민, 「조선시대 국장도감 내 일방(一房)의 역할과 기능」, 『民族文化』 28(한국고전번역원, 2005. 12.); 「조선 중후기 국장 도감의 운영과 국장의례: 행정관리조직과 역할 중심으로」, 『民族文化』 31(한국고전번역원, 2008. 6.); 안희재, 『조선시대 국상의례 연구-국왕국장을 중심으로』(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 나영훈, 『조선시대 都監의 성립과 변천』(한국 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2.); 김윤정, 「조선시대 禮葬都監의 성격과 역사적 추이」, 『藏書閣』 38(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10.)

으로 궁방의 사적 재정 운영을 밝히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기에, 국가의 공적 재정 구조 하에서 지출되는 왕실 의례 비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왕조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상례喪禮를 중심으로 왕실 의례의 지출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국장 비용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비용이 산출된 바 있으므로 본논문에서는 왕세자 상례, 특히 논의가 전무하다시피 한 효명세자孝明世子(1809~1830) 상례를 중심으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식, 지출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820년(순조 20) 이후 중앙의 재정 적자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19세기 재정 위기를 규명하기 위한 보다 실증적인 사례 연구들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효명세자의 상례 절차를 상세히 살펴 볼 수 있는 3도감의궤 즉 『효명세자빈 궁혼궁도감의궤孝明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효명세자장례도감의궤孝明世子葬禮都監儀軌』, 『효명세자연경묘묘소도감의궤孝明世子延慶墓墓所都監儀軌』를 분석하여 효명세자의 상례 절차에서 나타 나는 특징과 상례에 들어간 비용 및 지출 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고의 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경우, 조선 후기 왕세자의 상례 절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9세기 왕실 재정의 성격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Ⅱ. 상례의 절차와 특징: 『국조상례보편』의 준용과 변용

조선시대 왕실의 흉례는 임종 후 망자를 염습強襲하고 빈전에 안치하는 일, 발인發朝하여 장지에 안치하는 일, 장지에 돌아와 신주神丰를 봉안奉安하고 혼점을 조성하는 일, 상기를 마치고 신주

를 종묘에 부묘하는 일까지 3년간 치러졌다. 특히 국왕이 승하한 후 빈전殯殿을 차리고 발인, 반우 返虞하기까지의 절차가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그런데 흉례의 의주를 파악할 수 있는 『국조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에는 국왕과 왕비의 흉례에 대한 절차만 실려 있고, 왕세자 및 왕세자빈의 상례 절차는 빠져 있다. 국왕에 앞서 왕세자가 사망하는 일은 흔치 않았기에 『국조오례의』의 편찬 당시 왕세자 의주를 작성하는 데 대한 필요성이 적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국왕에 앞서 왕세자가 사망한 경우는 총 7건이다. 조선 전기에는 세조의 맏아들인 의경세자懿敬世子(1438~1457)와 명종의 아들인 순회세자順懷世子(1551~1563)가 일찍 홍서薨逝하여 궐에서 상을 치렀으나 현존하는 등록과 의궤가 남아있지 않아 상례의 절차를 자세히 살피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대로 『국조오례의』에는 왕세자 상례에 관한 의주가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昭顯世子(1612~1645)가 죽자 곧바로 상례 의절을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소현세자의 상례는 국왕례보다는 격을 낮추고 사대부례보다는 격을 높인 의례로 평가된다. 상례를 주관하는 3도감[빈궁·예장·묘소도감]도 소현세자상을 계기로 정례화되고, 명정銘旌의 크기와 신주의 형식도 이때에 확립되었다. 상기喪期와 복제에 있어서는 적장자에게 적용되는 고례古禮의 참최삼년斬衰三年 대신 자최기년齊衰期年이 채택되었으며, 월을 날수로 바꾸어 상기를 계산하

서명	형태 사항	제작 연대	소장 기관
효명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孝 明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1책 3권	1830	규장각
효명세자장례도감의궤孝明世子葬禮都監儀軌	1책 4권 1책 1권(3권 낙본)	1830	규장각/국립중앙박물관
효명세자연경묘묘소도감의궤孝明世子延慶墓墓所都監儀軌	2책	1830	규장각
효명세자상례초등록孝明世子喪禮草謄錄	1책	1832	장서각
효명세자상례등록孝明世子喪禮謄錄	1책 1권	1832	장서각
효명세자상장등록孝明世子喪葬謄錄	 1책	1832	장서각
효명세지상례의주등록孝明世子喪禮儀註謄錄	1책	1832	장서각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孝明世子入廟都監儀軌	 1책	1832	규장각/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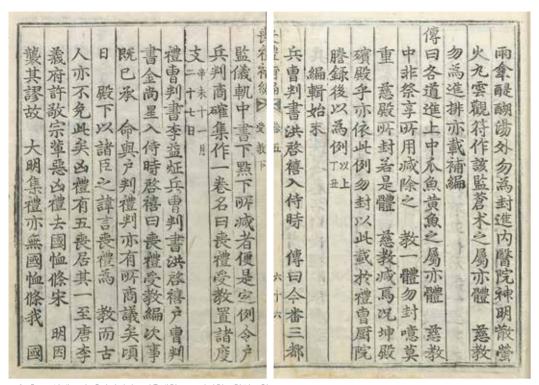
^{6.} 조선시대 왕세자 상례는 ①세조의 맏아들인 의경세자懿敬世子(1438~1457), ②명종의 아들인 순회세자順懷世子 (1551~1563), ③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昭顯世子(1612~1645), ④영조의 맏아들인 효장세자孝章世子(1719~1728)와 ③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思悼世子(1735~1762), ⑥정조의 맏아들인 문효세자文孝世子(1782~1786), ⑦순조의 맏아들인 효명 세자孝明世子(1809~1830)의 상례로 총 7차례의 상례가 있었다.

^{3.} 조선 후기 궁방의 존재 양상과 재정 실태를 분석하여 조선 후기 왕실 재정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조영준, 『조선 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소명출판, 2016.)

^{4.} 나영훈, 「17세기 후반~18세기 국장도감(國葬都監)의 재원 조달과 규모」, 『大東文化研究』 91(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9)

^{5.} 효명세자 상례 관련 자료는 상례를 주관한 빈궁·예장·묘소도감의궤 4종과 예조에서 예장을 날짜별로 기록한 등록류 4종이 있다. 이밖에 1832년(순조 32) 효명세자를 문호묘文祐廟에 입묘하는 과정을 기록한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가 있다. 이 중 『효명세자장례도감의궤』와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외에 외규장각본이 남아 있으며, 『효명세자장례도감의궤』의 경우 외규장각본은 전체 1책 4권 중 1권만이 전한다. 『효명세자상례등록』은 1830년(순조 30) 5월 6일 묘시에 희정당에서 22세의 나이로 죽은 효명세자의 예장절차부터 1832년(순조 32) 7월 입묘할 때까지의 절차를 기록한 등록으로, 예장을 주관하는 빈궁도감, 혼궁도감, 장례도감, 묘소도감의 보고와 처리 내용이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효명세자예장도감의궤』는 1830년 5월 6일에 효명세자가 창덕궁 희정당에서 사망한 후, 8월 4일에 창경궁통화전으로 신주를 봉안할 때까지의 절차를 기록하여 작성 기간 상에 차이를 보인다.

^{7.} 의경세자의 상장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조용철, 「朝鮮 世祖代 懿敬世子 喪葬禮 구성과 특징」, 『역 사민속학』, 45(한국역사민속학회, 2014, 7.) 의경세자의 상례는 인조대 소현세자의 상례에 직접적인 전거로 활용되었다.



도1. 『국조상례보편』, 「편집시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는 역월공제易月公除는 만12일(13일)이 적용되었다. 소현세자의 상례는 이후 영조의 장자인 효장세자孝章世子(1719~1728)의 상례에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특히 가장 민감한 복제에 있어서 소현세자의 상례와 마찬가지로 자최기년을 따랐다. 그러나 만며느리인 효순현빈孝純賢嬪(1715~1751)의 상에 대공복을 입게 되자 영조는 만아들과 만며느리 상의 복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를 개정하도록 하였다. ^{9 도1} 1752년(영조 28)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에는 장자를 위해 국왕은 참최삼년복, 왕비는 자최삼년복을 입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복제의 개정은 앞서 언급한대로 왕세자의 상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국조상례보편』이 1758년(영조 34) 최종 완성된 후 4년이 지난 1762년(영조 38) 사도세자思悼世子(1735~1762)가 뒤주에 갇혀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영조는 세손과 혜경궁 그리고 동궁의 궁속 외에는 성복成服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이후 정조正祖(재위 1776~1800)의 맏아들인 문효세자 文孝世子(1782~1786)의 상에도 『국조상례보편』에 명시한 참최삼년이 아닌 기존의 자최기년복이 적용되었다. 정조는 문효세자가 의빈 성씨 소생으로서 정체正體의 설에 혐의가 있기 때문에, 후궁 소생에 대한 의주가 명백하지 않은 『국조상례보편』을 준용하는 대신 효장세자 때 행한 예를 따르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국조상례보편』의 복제는 19세기 효명세자의 상에만 적용되었다.

당시 순조純祖(채위 1800~1834)는 왕세자의 상에 국왕이 참최삼년복을, 중궁전이 자최삼년복을 적용하는 것은 삼대 이래 국조國朝에 없던 일이고, 1786년(정조 10) 문효세자의 상에도 자최기년 복을 행하였던 점을 들어 구제舊制를 따르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남공철南公轍(1760~1840)은 소현세자의 상에 대전과 중궁전이 모두 자최기년으로 성복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국조상례보편』에 의거해 왕세자 상에 국왕은 참최삼년, 왕비는 자최삼년으로 거행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5월 9일 진시辰時에 국왕에서부터 일반 서인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복제에 따라 성복을 행하였다. 그러나 효명세자의 상례 역시 『국조상례보편』의 의주를 전부 따른 것은 아니다. 바로 앞 시기 문효세자의 상례에서 기본 의절은 『국조상례보편』을 따르면서도 행례시에는 효장세자의 예를 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효명세자의 상례 역시 『국조상례보편』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면서도 의주를 변용하여 행례하였다. 효명세자 상례의 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국조상례보편』의 소주사람에 실린 왕세자 상례 절차를 살펴보자.

영조의 명에 의해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에는 왕세자와 세자빈의 상례 절차를 '소상小喪', '소내 상小內喪'이라 하여 소주로 처리하였다. 소상례가 행해진 의절을 정리하면 초종初終, 복의復儀, 전奠, 역복불식易服不食, 계령戒令, 목욕沐浴, 습襲, 전奠, 위위곡爲位哭, 거림擧臨, 함含, 설빙設氷, 영좌靈座, 명정銘旌, 고사묘告社廟, 소렴小殮, 전奠, 치벽治稗, 대렴大殮, 전奠, 성빈成殯, 전奠, 여차廬次, 성복成

^{8.} 김윤정은 조선 후기 왕세자 상례의 의절이 정해진 계기를 소현세자의 상으로 보았으며, 왕세자와 세자빈의 상례가 국장에 서 상례로 격이 낮아지고, 묘소도감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도 소현세자의 상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였다.(김윤정, 「17세기 昭顯世子 喪禮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40(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6. 3.), 443~446쪽)

^{9. 『}국조상례보편』권5, 「편집시말編輯始末」.

^{10.} 이현진, 앞의 논문(2011), 132쪽

^{11 『}영조실록』권99. 영조 38년 유5월 21일 계미

^{12.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5월 12일 갑인. 이현진은 이에 대해, 문효세자는 5살의 어린 나이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의례추소 등록儀禮註疏謄錄』의 만 8세 이하는 모두 복은 없고 곡만 할 뿐이라는 조항[不滿八世以下皆爲無服之殤]에 따라 애초에 복을 할 필요가 없었으나 조정에서 이러한 규정이 아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이현진, 「정조대 文孝世子의 喪葬 의례와 그 특징」, 『奎章閣』 40(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6.), 116쪽).

^{13.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7월 15일 경오.

^{14. 『}승정원일기』, 순조 30년 5월 8일 갑자.

^{15.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5월 9일 을축.



도2.『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궤』, 〈명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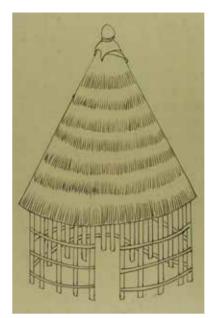
服, 조석곡朝夕哭, 전奠 및 상식上食, 삭망전朔望奠, 의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진향하는 의식[議政府率百官進香儀], 치장 治葬, 재실가칠의梓室加漆儀, 재실서상자의梓室書上字儀, 재실 결과의梓室結裹儀, 상시책인의上諡册印儀, 계빈啓殯, 조조의 朝祖儀, 조전祖奠, 견전遺奠, 발인반차發朝班次, 발인의發制儀, 발인봉사의發靷奉辭儀, 노제路祭, 천전의遷奠儀, 하현실망곡 의下玄室望哭儀, 우주전虞主奠, 반우반차返虞班次, 반우의返 慮儀, 안묘정의安墓奠儀등이다¹⁶

고명顧命으로 시작되는 국장과 달리, 소상은 임종을 알리는 초종初終부터 시작된다. 고명은 국왕이나 왕비가 임종전에 대신大臣과 근시近侍를 불러 반포하는 명으로, 국왕의상에는 고명 후 대신들이 왕위를 이양하는 유교遺敎를 작성한다. 초종에는 내시가 햇솜을 입과 코에 얹어두어 숨을 거

두었는지 살피고, 숨이 끊어지면 안팎이 모두 곡을 행한다. 이어 내시가 세자의 웃옷을 메고 지붕에 올라 혼을 부르는 복의를 행한 뒤 망자에 첫 전翼을 올리면 세손과 왕손 이하는 모두 소복으로 갈아입은 뒤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역복불식易服不食을 행한다. 국왕과 왕비 이하 왕실 구성원은 내시가 전殿 안에 마련한 자리에서 곡을 행하고(爲位哭), 중친과 문무백관도 외정에 마련된 자리에서 곡을 한다(擧臨).

한편 초종 이후 병조는 숙위宿衛할 곳을 지키며, 예조는 모든 상사에 관한 일을 의정부에 보고하고 중앙과 지방 관서에 공문을 보내 직무를 받들게 한다. 또 이조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빈 궁·예장·묘소도감을 설치한다[戒令]. 이후 예장도감에서 시신을 목욕시키고 습을 마친 후 다시 전을 올린다. 이어 망자의 입에 쌀을 넣는 의식을 행하고(含) 시신이 썩지 않게 시신 아래 얼음을 넣은 뒤(設冰) 시신의 신백神帛을 모시는 영좌靈座와 명정銘旌을 설치하고 사직과 영녕전, 종묘에고한다(告社廟).⁵²

둘째 날에는 옷과 이불로 시신을 감싸는 소렴小殮을 행한 후 전을 올린 뒤 관을 만든다(治椑). 셋째 날에는 시신을 싸고 입관하는 대렴大殮을 행한 후 다시 전을 올리고 빈궁을 차리고(成殯) 또 왕실 가족이 거처할 여차廬次를 마련한다.



도3. 「효명세자연경묘묘소도감의궤」〈묘상각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넷째 날 비로소 성복을 행하는데, 예조판서가 여차 앞에 나이가 성복하기를 청하면 상의원 관원이 최복衰服을 올린다. 성복의 예가 끝나면, 국왕이 승하한 경우에는 곧바로 사위嗣位 절차가 진행되지만, 왕세자의 상례에는 '사위하는 의식', '교서敎書를 반포하는 의식', '기일에 앞서 부음을 알리고 선왕先王의 시호證號와 세자의 왕위 계승을알리는 의식(告計請證請承襲)' 등이 빠지게 된다. 다만 궁관宮官이 발인 전까지 조석전과 상식을 행하고 삭・망일에전을 올리는 의식, 의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진향하는의식은 소상의 예로 행하였다.

치장治葬부터 재실결과의梓室結裏儀까지는 발인 전까지 묏자리를 정비하고 재실을 꾸미는 의식이다. 왕세자의 경우는 재궁보다 격을 낮춘 재실梓室이라 하였다. 소상은 보통 3개월 만에 장사를 지내는데. 기일에 앞서 예조의

당상관과 관상감 제조가 지리학관을 거느리고 장사지낼 땅을 살피고 택일하여 묏자리를 마련한다. 묘상각墓上閣을 만들고 광을 파고 석물을 조성하는 등의 역사役事를 마치기까지 빈궁에 모셔놓은 재실에 옻칠을 여러 번하고[梓室加漆儀], 니금泥金으로 재실의 머리 쪽 판에 '상上' 자를 쓴 뒤 [梓室書上字儀], 묶어 싸는 의식을 행한다[梓室結裹儀]. ⁵³

한편 발인 전 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시호와 시책證册, 시인謹印을 올리고 종묘에 하직을 고하는 의식을 치렀다. 국장의 경우, 종묘에 시호를 청하는 의식이 있으나 왕세자상에는 의정부에서 의시議證하는 절차만 있으며, 시호가 정해지면 시책과 시인을 올리도록 하였다. 또 『국조상례보편』에는 발인 전 반궁에서 재실을 꺼낸 뒤(啓殯) 조조의朝祖儀를 행하도록 하였다. 조조의는 망자의 시신을 종묘로 옮겨 조상을 알현하고 하직 인사를 올리는 의례를 일컫는다. 영조가 『국조상례보편』을 편찬하면서 특별히 첨입한 의주이나 실상은 한 번도 설행되지 못하였다. 효명세자의 상례에도 조조의는 1776년(정조 즉위년)의 전례에 따라 설행하지 않았다. 반면 발인하기 전날 밤 망자에 드리는 조전祖 奠과 영구가 떠날 때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인 견전遺奠은 국장과 동일하게 치러졌다.

견전을 마친 후에는 발인반차에 따라 발인의를 행한다. 이어 왕세자의 운구運柩를 모신 신백연神

^{16.} 본고에서는 임종 이후 시신을 묘소에 안치하기까지의 의절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묘소도감 의궤에 나타나는 안묘전의 이후 의절은 논외로 한다.

^{17.} 박례경, 「조선시대 國葬에서 朝祖儀 설행 논의와 결과」, 『奎章閣』 31(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12.)

류輦이 장지로 나아갈 때 국왕 이하 백관은 영장전靈帳殿에 노제路祭를 지내고, 운구를 현실玄室로 옮기는 천전의遷奠儀를 행한다. 신백을 현실에 내릴 때에는 국왕이 직접 하현실망곡의下玄室望哭儀를 행하며, 현실을 닫는 일이 끝나면 우주의 전면에 '아무개 세자(某號世子)'라 쓰고, 함중陷中에 '조선국 아무개 세자 휘 아무개 신주〔朝鮮國某號世子諱某神主〕'라 쓰는 입주전의立主奠儀를 행한다. 『국조상례 보편』에는 이를 우주전虞主奠으로 칭하였다. 이어 신주를 모시고 궐로 돌아오는 반우의返虞儀를 행한다. 국장에는 반우를 지영祗迎하는 의식이 있으나 소상에는 의주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효명세자의 상례 시 왕세손인 헌종에 의해 반우지영의가 행해졌다. 반우의를 마친 후에는 묘에 흙을 덮는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정자각丁字閣에서 안묘전安墓奠을 지낸다. 이후 묘소에 조석곡朝夕哭과 상식上食을 행하고 우제處祭를 지낸다. 이때 우제는 7우제를 지내는 국장과 달리 5우제를 지냈다. 5우제를 지낸 뒤 강일剛田이 되면 졸곡제를 지낸다.

졸곡제 이후에는 혼전에 올리는 조석곡과 상식, 사시賜諡와 납일臘日, 속절俗節, 삭망朔望에 행하는 친향혼전의親享魂殿儀 등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국장과 마찬가지로 1년 후 연제練祭, 2년 후 상제, 상제를 지낸 뒤 1개월 후 담제禪祭를 지냈다. 마지막으로 왕세자의 신주를 종묘에 옮기는 입묘의入廟儀를 행함으로써 왕세자의 상례가 일단락되었다. 왕세자 신주를 입묘하는 의식은 담제를 지낸 뒤 곧바로 행하였다. 왕세자는 본래 종묘에 부묘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사당을 마련하는데, 효명세자는 문호묘를 영건營建하여 입묘하였다.¹⁸ 그러면 『국조상례보편』의 소상례는 효명세자의상에 그대로 적용되었을까?

효명세자는 1809년(순조 9) 순조와 순원왕후純元王后(1789~1857)의 사이에서 장자로 태어나 1830년(순조 30) 5월 초6일 22세의 젊은 나이로 창덕궁 희정당에서 훙서하였다. 이날부터 8월 초4일까지 약 3개월 간 왕세자의 상례인 소상이 진행되었다. 이는 『국조상례보편』에 소상은 3개월 만에 장사를 지낸다는 소주小註에 부합한다.

5월 초6일 세자가 임종하자마자 내시는 세자가 입던 웃옷을 메고 지붕 위에 올라가 혼을 부르는 복의復儀를 행하였다. 이어 예조에서 대전, 중궁전, 빈궁의 거애擧哀하는 의주儀註를 마련해 들이고, 종친·문무백관은 천담복淺淡服, 오사모, 흑각대를 갖추고 궐내에 와서 거애하도록 하였다. 또 파산관罷散官, 성균관 학생, 서인에 대해서는 백의와 흑립을 갖추고 궐 밖에서 거애하도록 하였

다.²⁰ 이후 성복하는 5월 초9일까지 상례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소략하고 담당 관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효명세자 상례절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도감 의궤의 소상 의주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국조상례보편』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일치한다

[표 1] 빈궁혼궁도감·장례도감·연경묘묘소도감의주

빈궁혼궁도감	장례도감	연경묘묘소도감
복復, 전奠, 역복불식易服不食, 위위곡爲位哭,	시책시인급애책자도감배진예궐의	정자각상량의丁字閣上樑儀,
목욕沐浴, 습襲, 전奠, 거림擧臨, 함含, 설빙設氷,	諡册諡印及哀册自都監陪進詣闕儀,	천전의遷奠儀, 하현실의下玄室儀,
영좌靈座, 명정銘旌, 소렴小殮, 전奠, 치벽治椑,	선교의宣教儀, 사시빈궁의 賜諡殯宮儀,	안묘전의安墓奠儀
대렴大殮, 전奠, 성빈成殯, 전奠, 여차廬次,	개명정의改銘旌儀, 계빈의啓殯儀,	
복제服制, 성복成服, 조석곡전급상식	조전의祖奠儀, 견전의遣奠儀, 발인의發引儀,	
朝夕哭尊及上食, 삭망전의 朔望奠儀	발인시전하망곡의發引時殿下望哭儀,	
(속절별전俗節別奠 동일), 재실가칠梓室加漆,	발인시중궁전망곡의發引時中宮殿望哭儀,	
개명정改銘旌, 재실서상자梓室書上字,	노제의路祭儀, 천전의遷奠儀,	
재실결과梓室結裹, 재실결과후별전	하현실시전하망곡의下玄室時殿下望哭儀,	
梓室結裹後別奠, 친림별전親臨別奠,	하현실시중궁전망곡의	
계빈啓殯, 조전祖奠, 견전遣奠, 노제路祭,	下玄室時中宮殿望哭儀,	
발인發靷, 천전遷奠, 입주전立主奠, 반우返虞	입주전의立主奠儀, 반우의返虞儀	

다만 『국조상례보편』과 삼도감 의궤 사이에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표1 『효명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에는 사직·종묘에 고하는 의식[告社廟]과 죽은 자의 시신을 종묘에 옮겨 조상을 알현하고 하직 인사를 올리도록 하는 의식[朝祖儀]이 빠져 있다. 또 발인반차와 반우반차에 관한 의절도 없다. 반면 발인 전 재실을 묶어 싼 후 별전別錢을 올리는 예와 친림별전의 예가 첨입되어 있다. 앞의 별전은 왕세손이, 후자는 국왕이 빈궁에 올리는 전이다. 54

한편 『효명세자장례도감의궤』에는 시책과 시인, 애책을 도감에서 배진拜診하여 궐내에 이르는 의주가 포함되어 있다. 또 발인할 때와 현실을 내릴 때 각각 양전兩殿(순조와 순원왕후)에서 곡을 하는 의주, 정자각을 상량하는 의절 역시 『국조상례보편』에 없는 의주이다. 왕세손(순조)이 발인 전에 재실을 묶어 싼 후 친림별전을 행하고, 발인 때와 현실을 내릴 때 중궁전과 각각 망곡의를 한 차례 더 설행한 것은 효명세자에 대한 양전의 각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다음으로 왕세자례에서 보이는 중요한 특징은 도감의 명칭을 달리하고 격을 낮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순조는 왕세자가 홍서한 당일 상례를 치르기 위해 빈궁혼궁殯宮魂宮·장례葬禮·묘소 도감墓所都監을 설치하고 삼도감의 당상堂上과 당청을 계하啟下하였다. 국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18.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7월 7일 신해. 김윤정은 효장세자 이후 왕세자 입묘의가 확립되었으며, 정조대 이후로는 시호에 묘를 붙이던 소현묘, 효장묘와 달리 따로 묘호를 짓는 변화가 나타난 점에 주목하였다(김윤정, 「조선후기 世子喪禮 의절의 확립과 그 성격」, 『서울과 역사』 93(서울역사편찬원, 2016. 6.), 102쪽).

^{19. 『}국조상례보편』권1,「치장治葬」.

^{20. 『}승정원일기』, 순조 30년 5월 6일 임술.

국장을 치르기 위해 빈전혼전도감, 국장도감, 산릉도 감이 설치되는데, 왕세자이기 때문에 격을 낮추어 빈 궁도감, 예장도감(장례도감), 묘소도감이라 한 것이다. 다만 효명세자 상례에는 예장도감을 장례도감이라 칭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세자와 세자빈의 예장 역시 국장도감이라 칭하고, 왕비의 부모, 빈, 귀인, 대군, 공주, 종친, 공신에 대해 예장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소현세자의 상례부터 예장도감으로 격을 낮추었다. 묘소도감 역시 의경세자의 상에는 조묘도감을 설치하였으나 소현세자의 상례부터 격을 낮추어 묘소도감이라 칭하였다.²¹



도4. 『효명세자장례도감의궤』「의주」

그러면 삼도감의 기능은 어떠했을까. 『국조상례보

편』에 실린 삼도감의 기능을 살펴보면, 빈궁도감은 습, 염, 성빈, 성복, 혼전魂殿, 배비排備 등의 일을 맡고, 예장도감은 재실, 연練·여·책인·복완·묘지·명기·길흉의 의장·상유·포연·제기·제전·반우 등의 일을 주관한다. 마지막으로 묘소도감은 현실 및 정자각, 재방을 짓는 일 외에 상례를 모두 총괄하였다. 또 소상인 왕세자의 상에는 시원임대신을 의망擬望하고 총호사 대신 도제조라고만 청하였다."

효명세자의 상에서도 임종 직후 곧바로 혼을 부르는 복의와 세자의 시신을 목욕시키고 머리를 빗기는 습, 관(梓室)을 모셔두는 빈궁의 수리와 찬실欑室의 조성, 그리고 시신에 옷을 입히고 관에 넣는 소렴과 대렴, 빈궁을 마련하는 성빈, 상복喪服으로 갈아입는 성복에 이르기까지 빈궁혼궁도감에서 주관하였다. 한편 『국조상례보편』과 명칭을 달리한 장례도감에서는 장례에 필요한 제기祭器 및 시책문諡冊文·애책문衰冊文·지문誌文의 초본 및 발인반차도 모사본을 제작하여 바치는 일을 맡았다.

또한 발인에 앞서 도로를 적간摘好하고 표석, 지석, 제기 등의 일체를 배진하는 한편 빈궁혼궁 도감과 함께 반우의를 주관하였다. 마지막으로 묘소도감에서는 묘호를 정하고, 묘소의 위치를 간 심看審하여 최적의 자리에 묘소를 조성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효명세자의 상에는 5월 11일 빈청 회의에서 묘호를 정한 뒤, 세 차례 묘소의 터를 간심하여 6월 초 1일 오시 도장곡에 봉표封標하고 개기開基하는 역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6월 11일 묘소도감에서 간심한 결과, 예전 묘역의 뼈가 드러나고 놋쇠 숟가락과 철정, 자기 같은 것이 나와서 정결한 곳으로 다시 정해야 한다는 도감의 장계狀啓가 있었다. 이에 다시 세 번 간심하여 6월 29일 오시 의릉 좌변 2강에 봉표하고 다시 개기 하는 역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7월 4일 정자각의 위치를 정하고 각종 석물을 운반해 들이는 한편 재실을 내려 보낼 위치를 정하였다.

삼도감이 하는 일이 이처럼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감에 속한 당상과 낭청 이하 관원에 있어서도 구성이 조금씩 달랐다. 효명세자의 상에 삼도감 도제조는 처음에 영중추부사 남공철이 맡았으나 제조와 낭청(도청 포함), 감조관, 서리, 고사 등은 도감의 특성에 따라 달리 차정差定되었다.

[표 2] 왕세자 상례의 삼도감 직제(출전: 『국조상례보편』)

빈궁혼궁도감	예장도감	산릉도감
도제조 1원		
· 제조 2원(예조판서 1원 포함) · 당하관 5원(도청 1원, 당청 4원) ※ 예조 당하관 포함 · 감조관 2원	· 제조 2원(호조판서 1원 포함) · 당하관 6원(도청 1원, 당청 5원) ※ 예조 · 공조의 당하관, 제용감 · 선공감 관원 차출 · 감조관 5원	· 제조 2원(공조판서 · 선공감제조 포함) · 당하관 7원(도청 1원, 당청 6원) ※ 2원 문관, 선공감 관원 · 감조관 7원

『국조상례보편』의 왕세자 상례에는 국장보다 격을 낮추어 인원을 1원씩 조정하였다. ^{표2} 예컨대, 국장의 경우 제조는 각 3원이며, 당하관도 국장은 각각 6원, 8원, 10원이다. 당청도 5원, 6원, 8원이며, 감조관은 각각 3원, 7원, 9원이다. 이하 하급 원역의 수는 정해놓지 않았다. 빈궁혼궁도감 제조에 예조판서를 예겸例兼하도록 한 것은 빈궁혼궁도감이 염습과 성빈, 성복, 혼전의 조성과 같은 예장을 주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예장도감은 상장례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마련하는 일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호조판서가 제조를 예겸하였다. 마지막으로 묘소도감은 현실호室, 정자각 등을 짓는일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공조와 선공감제조가 예겸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 효명세자의 상례에 삼도감의 직제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아래 [표 3]은 빈궁혼궁도감과 장례도감, 연경묘묘소도감의 좌목座目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영중추부사 남공철이 삼도감의 도제조를 맡았다. 『국조상례보편』에 소상의 도제조는 시원임대신을 의정議定하고 명칭은 '총호사'가 아닌 도제조로 칭한다고 하였는데, 이 규정을 따른 것이다. 다만, 남공철은 고령의 나이로 연경묘묘소도감의 도제조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

^{21.} 김윤정, 앞의 논문(2016), 87~88쪽.

^{22. 『}국조상례보편』권1, 「계령戒令」.

[표 3] 빈궁혼궁·장례·연경묘묘소도감의 좌목座目

빈궁혼궁도감 		장례도감		연경묘묘소도감		
직책	담당자	- 직책	담당자	 직책	담당자	
도제조 都提調	영중추부사 남공철 領中樞府事 南公轍	도제조 都提調	영중추부사 남공철 領中樞府事 南公轍	도제조 都提調	영중추부사 남공철(代) 領中樞府事 南公轍	
					우의정 정만석 右議政 鄭晩錫	
제조 提調	행상호군 조만영(代) 行上護軍 趙萬永	제조 提調	행호조판서 박종훈 行戸曹判書 朴宗薫	제조 提調	행대호군 김이재 行大護軍 金履載	
3원員	지중추부사 서준보 知中樞府事 徐俊輔	- 3원員	행대호군 홍석주(代) 行大護軍 洪奭周	- 3원員	공조판서 김로(代) 工曹判書 金鏴	
	행상호군 김재창 行上護軍 金在昌	_	한성부판윤 이지연 漢城府判尹 李止淵	_	행대호군 홍석주(代) 行大護軍 洪奭周	
	병조판서 홍석주 兵曹判書 洪奭周	-	공조판서 김로(代) 工曹判書 金鏴	-	형조판서 이광문 刑曹判書 李光文	
도청 都廳 1원員	부사과 조병구 副司果 趙秉龜		召예조판서 이희갑 兼禮曹判書 李羲甲		행대호군 박기수 行大護軍 사綺壽	
낭청 郎廳	예조정랑 신윤록(代) 禮曹正郎 申允祿	都廳 2원員 - 2원員	강서원좌권독 김영순 講書院左勸讀 金英淳	도청 都廳	부사과 이인필 副司果 李寅弼	
6원員	공조정랑 홍면주(代) 工曹正郎 洪冕周		사	사간원 박종길(代) 司諫院 朴宗吉	- 2원員	부사과 서기순 副司果 徐箕淳
	형조정랑 황종림(代) 刑曹正郎 黃鍾林		부사과 이정기 副司果 李正耆	삼물소낭청 三物所郎廳	돈녕부판관 유석주(代) 敦寧府判官 俞碩柱	
	한성부주부 구병노(代) 漢城府主簿 具乗魯		병조좌랑 김용익(代) 兵曹佐郎 金龍翼	- 2원員	사재감첨정 이겸수 司宰監僉正 李謙秀	
	장악원주부 김성구(代) 掌樂院主簿 金性求		공조정랑 윤재보(代) 工曹正郎 尹載輔	_	공조좌랑 권도(代) 工曹佐郎 權度	
	호조정랑 이형재(代) 戸曹正郎 李衡在	_	호조좌랑 서승순(代) 戸曹佐郎 徐承淳	_	부사과 유홍근 副司果 柳弘根	
	부사과 오태창 副司果 吳泰昌	_	호조좌랑 윤심구(代) 戸曹佐郎 尹審求	조성소낭청 1원 造成所郎廳 1員	공조좌랑 이인량 工曹佐郎 李寅亮	
	부사과 안정희 副司果 安廷喜	_	형조좌랑 홍순모(代) 刑曹佐郎 洪淳謨	감조관監造官 1원員	익위사부솔 신의 翊衛司副率 申慤	
	부사과 이형원 副司果 李衡遠	-	평 시서주부 김재선(代) 平市署主簿 金在善	대부석소낭청 大浮石所郎廳 1원員	사복시주부 이유 司僕寺主簿 李游	

빈궁혼궁도감 		장례도감		연경묘묘소도감		
직책	담당자	직책	담당자	 직책	담당자	
낭청 郎廳	부사과 이희승 副司果 李羲升	낭청 郎廳	부사과 남준응 副司果 南駿應	上 の・	전생서판관 홍진연(代) 典牲署判官 洪晉淵	
6원員	부사과 황도경 副司果 黃鍍庚	6원員	부사과 유봉주 副司果 俞鳳柱	- 1원員	익위사익위 김영부 翊衛司翊衛 金永孚	
	부사과 이정구 副司果 李鼎耇		부사과 서선보 副司果 徐善輔	보토소낭청 補土所郎廳 1원員	한성주부 김노순 漢城主簿 金老淳	
감조관 監造官	동몽교관 이윤우 부사과 박종렴 감조관監造官 童蒙敎官 李胤愚 副司果 朴宗濂 1원員	부사용 이상조 副司勇 李象祖				
3원員	부사용 최황 副司勇 崔璜		부사과 홍한주 副司果 洪翰周	소부석소 감조관 小浮石所 監造官	의위사시직 송태희(代) 翊衛司侍直 宋泰熙	
	부사용 임백수 副司勇 任百秀		부사과 홍헌모 副司果 洪獻謨	- 1원員	익위사시직 조기순 翊衛司侍直 趙箕淳	
		감조관 監造官 4원 員	익위사세마 오치익 翊衛司洗馬 吳致翼	수석소 감조관 輸石所 監造官 1원員	익위사세마 이민행 翊衛司冼馬 李敏行	
			사용 정택우 司勇 鄭澤友	경낭청 京郎廳 1원員	병조좌랑 김용익(代) 兵曹佐郎 金龍翼	
			사용 이덕우 司勇 李德愚		병조좌랑 김학민 兵曹佐郎 金學敏	
		감조관 監造官 4원 員	의영고직장 김조근 義盈庫直長 金祖根			
		별공작 別工作 선공감 繕工監	가감역 이상두 假監役 李相斗	별공작 別工作 분차관 分差官	선공감가감역 이상신 繕工監假監役 李象信	
		조 주소 造主所 감 조관 監造官	봉상시정 조병구 奉常寺正 趙秉玖	분장흥고 分長興庫 분차관 分差官	장흥고주부 남석노 長興庫主簿 南石老	
		五 4 4 点 表 石 所 ス 4 4 4 ま 石 所 さ 2 4 4 5 音 官 監 造 官	봉상시부봉사 김현복 奉常寺副奉事 金鉉復			

^{*} 체대遞代한 경우 '〇〇〇(代)'로 표기하였다.

므로 체차遞差해달라는 남공철의 청으로 인해 임명된 지 3일 만에 체차되고 우의정 정만석鄭晩錫 (1758~1834)으로 도제조가 바뀌었다. 한편 제조 이하 도청, 낭청, 감조관 등은 다른 도감의 업무를 중복해 맡지 않도록 하였다. 예컨대, 병조판서 홍석주洪奭周(1774~1842)는 빈궁혼궁도감의 제조로 차정되어 장례도감과 연경묘묘소도감의 제조를 모두 체차하였다.

그런데 도제조와 달리 제조는 삼도감 모두 『국조상례보편』의 액수보다 많은 3원을 차정하였다. 빈궁혼궁도감은 예조판서가 예겸제조에 빠져 있으며, 장례도감과 연경묘묘소도감에는 도청 1원이더 많이 차정되었다. 낭청의 경우에도 『국조상례보편』에 실린 낭청수와 달리 6원(빈), 6원(장), 6원(묘)을 차정하였으며, 감조관도 3원(빈), 4원(장), 4원(묘)을 임명하여 액수와 차이를 보였다. 표 그러나 이러한 좌목의 구성은 효명세자의 상례에서만 보이는 특징은 아니다. 문효세자의 상례에서도 『국조상례보편』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3

요컨대, 효명세자의 상례 역시 문효세자와 마찬가지로, 『국조상례보편』의 기본적인 규정을 따르면서도, 사친私親으로서 왕세자의 넋을 기리고 죽음을 애도하는 의주를 추가해 놓았다. 한편 상례의 절차와 경비를 마련하는 제조와 낭청 수를 정원보다 늘려, 왕세자 예장을 국장에 준하는 위상을 갖도록 하고, 각 절차가 정해진 기일 안에 효율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 실제 효명세자의 상례에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는 효명세자의 상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삼도감에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재원 마련 방식과 지출 구조

주지하다시피 효명세자가 홍서한 1830년(순조 30) 무렵은 세입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중앙 재정에 상당한 위기를 초래한 시기였다. ²⁴ 반면 왕실 구성원의 탄생과 죽음으로 왕실 의례가 빈번히 설행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순조 재위 20년대만 하더라도 1821년(순조 21) 왕대비인 효의왕후孝懿王后(1754~1821)가 홍서한 이후 1822년(순조 22)에 순조의 사천인 수빈박州綏嬪朴氏(1770~1822)

가 별세하였으며, 1824년(순조 24)에는 정조의 후궁인 화 빈윤씨和嬪尹氏(1765~1824)가 명을 달리 하였다. 또 순조의 딸인 영온옹주永溫翁主(1817~1829) 역시 재위 29년에 13살 의 나이로 요절하였으며, 영온옹주에 이어 왕세자인 효명세자가 22세의 나이로 별세하면서 왕실의 충격은 더할 나위 없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순조대 왕실 의례를 치르는데 특별경상비조로 지출된 경비가 늘어났을 정황이 크지만, 이를 19세기의 현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19세기 왕실 의례가 중앙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는 효명세자의 상례 비용이 어떻게 마련되었고, 또한 지출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19세기 왕실 의례비용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도5. 「효명세자연경묘묘소도감의궤」, 「재용」,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우선 효명세자의 상례를 위해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부터 살펴보자. 이에 대해서는 『연경 묘묘소도감의궤』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5월 29일 연경묘묘소도감에서 올린 별단別單을 보면, 묘소도감에서 진휼청과 병조를 비롯한 경외 군문에 요청하여 받은 재원을 빈궁혼궁도감과 장례도감에 배분하였다. "5 이후에 묘소도감에서는 빈궁혼궁도감과 장례도감에서 필요로 하는 물력物力을 나누어 주었으며, 부족한 물력을 묘당廟堂에 요청하는 일도 묘소도감에서 주관하였다. 삼도감에서 필요로 하는 물력의 규모는 애초에 묘당에서 결정하였으며, 묘소도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삼도감에 물력을 배분하는 일을 책임진 것이다. 55

그런데 당초 효명세자가 홍서한 것은 5월 초6일이었는데 묘소도감에서 물력을 확보하여 배분한 것은 5월 말 경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표 효명세자가 홍서한 직후 이미 빈궁혼궁도감에 서는 초8일까지 시신을 염습하고, 빈전을 조성하는 한편 재실을 제작하는 절차를 마쳤다. 물론 8월 초1일 재실이 모셔진 환경전歡慶殿에 화재가 나서 재실을 환취정으로, 신주를 도총부로 이안移安하였다가 옮겨 오는 일이 있었으나 이러한 의식을 설행하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의식에 필요한 제구諸具와 복식을 대부분 대내와 상의원을 비롯한 공상아문에서 조달해

^{23.} 문효세자의 상례를 주관한 3도감의궤(『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문효세자례장도감의궤文孝世子禮葬都監儀軌』,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이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본))의 좌목을 살펴보더라도 『국조상례보편』의 소상례와 다르게 제조와 당청. 도청의 인원수를 차정하였다.

^{24.} 최주희, 「1826년 『例式通攷』의 간행과 왕실재정의 정비노력의 정비」, 『역사와 현실』 107(한국역사연구회, 201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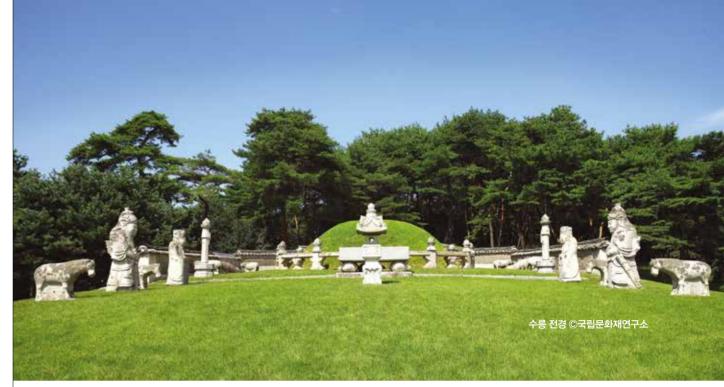
^{25. 『}연경묘묘소도감의궤』, 5월 29일, "庚寅五月二十九日 墓所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曰 三都監所用物力 例自本都監請得分排 用下矣 取考各年謄錄 參互分定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국장도 마찬가지로 산릉도감에서 빈 전혼전도감과 국장도감에 재원을 배분하고 있었다(나영훈, 앞의 논문(2015)).

쓰도록 『국조상례보편』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장례도감은 다음 날인 초9일이 되어서야 도감 당상이 사용원에 회동하여 도감의 설치 장소를 정하고 5월 11일부터 비로소 역사를 시작하였다. 묘소도감 역시 처음 회동한 것은 5월 초9일이지만 5월 30일까지는 묘소를 세 차례 간심하여 봉표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큰 역사가 행해지지 않았다. 묘소도감의 역사는 삼간심이 끝나 묘소의 위치가 정해진 후인 6월 1일에 시작되었다. 무료 요컨대, 묘소도감에서 물력을 확보하고 이를 다른 도감에 배분한 시점이 5월 29일 무렵인 것은 묘소도감의 역사가 6월 초1일에 착수된 점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후에 상술하겠지만 삼도감 의궤 중 가장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것은 묘소도감이었다.

그러면 삼도감의 물력은 어느 아문에서 염출捻出하였을까? [표 4]를 바탕으로 묘소도감에서 확보한 재원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진휼청을 비롯한 군문에서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 서도 진휼청에서 가장 많은 재원을 염출하였으며, 쌀은 다른 아문에서는 아예 획급하지 않았다. 묘소도감에서 1차로 확보한 재원은 미米 1,000석, 전錢 22,000냥, 목本 290동, 포布 40동이었다. 그러나 7월 초1일 묘소도감에서는 장인匠人과 모군募軍의 고가雇價로 지급할 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휼청의 쌀 1,000석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이어서 7월 12일에도 보토補土하는 일과 제반 공역公役이 매우 많은데 장인과 모군의 고가를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진청미 500석을 추가로 획급해줄 것을 청하였다." 마지막으로 7월 21일에는 묘소도감에서 본 도감의 재력이 부족하므로 여유 있는 아문에서 가획加劃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선혜청전 2,000냥, 화성전華城錢 6,000냥과 병조목兵曹木 20동, 금위영·어영청목 각 10동이추가로 지급되었다.²⁸ 이로써 효명세자의 상례에 구획된 총 재원은 미 2,400석, 태 200석, 전 63,760 냥, 목 41동, 포 6동으로 집계된다.





^{26. 『}연경묘묘소도감의刊』,7월 초1일,"墓所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曰 三都監所用物力 已自本都監請得分給于魂宮葬禮兩都 監 而見今米邊太半不足 匠募雇價 無以繼用 賑廳米限一千石 爲先加區劃 以爲需用之地 何如 傳曰 允."

^{27. 『}연경묘묘소도감의刊』, 7월 초12일, "墓所都監京郎廳以都提調意 啓日 本都監事役 時急正日迫近 補土及諸般工役 極其浩繁 而區劃中米邊 今幾垂乏 匠募雇價 無以繼用 賑廳米 限五百石 加區劃 以爲需用 之地 何如 傳曰 允."

^{28. 『}연경묘묘소도감의刊』, 7월 21일, "墓所都監京郎廳以都提調意啓曰 本都監財力垂乏 木四十同 錢八千兩 以有裕衙門區劃事 前已蒙允矣 宣惠廳錢二千兩 華城錢六千兩 兵曹木二十同 禁衛營木十同 御營廳木十同區劃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표 4] 효명세자 상례의 재원 규모

재원조달처	1차 구획	2차구획	3차 구획	4차 구획
진휼청賑恤廳	미米 1,000석石	1,000석石	500석石	* 선혜청宣惠廳
(*선혜청宣惠廳・화성華城)	목木 30동同	내 환작태		2,000냥兩
	 전錢 6,000냥兩	内 換作太 200 석石		화성華城 6,000냥兩
병 조兵曹	목木 10동同			목木 20동同
	전錢 1,000냥兩	-	-	-
훈련도감訓鍊都監	목木 10동同	_		
	전錢 1,000냥兩	_		_
금위영禁衛營	목木 30동同			목木 10동同
	전錢 6,000냥兩			_
어영청御營廳	목木 30동同			목木 10동同
	전錢 6,000냥兩			_
사복시司僕寺	전錢 2,000냥兩			_
평안감영平安監營	목木 60동同	_		_
평안병영平安兵營	목木 30동同			_
전라감영全羅監營	기부목記簿木 50동同			_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	売世목休番木 10동同			-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	売世목休番木 10동同			-
	군수목軍需木 20동同	_		-
함경감영咸鏡監營	기부포記簿布 40동同			-
계	미米 1,000석石,	미米 1,000석石	미米 500석石	8,000냥兩
	전錢 22,000냥兩	내内 100석石		목木 40동同
	목木 290동同,	환작태換作太 200석石		부사군대전
	포布 40동同			浮莎軍代錢
				3,500냥兩
		미米 2,400석, 태太 200석,	전錢 63,760냥兩, 목	木 41동同, 포布 6동同

미禾 2,400억, 대太 200억, 신ᇏ 63,760궁吶, 녹木 41중미, 포슈 6중미

이처럼 상례를 치르기 위해 진휼청을 위시한 중앙 군문과 지방 병영의 재원을 획급하는 방식은 효명세자의 상례에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 왕실 의례를 설행하는 도감의 운영비와 노동력을 지방 백성에게 분정分定하는 방식을 줄이고 각 기관의 재원을 갹출하여 활용하는 관행은 18세기 선혜청을

위시한 중앙의 재무아문이 집권적 재정 운영의 틀을 형성함으로써 가능해진 일이었다." 특히 왕실 의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특별경상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급적 일반 경상비를 집행하는 호조, 선혜청 등의 재무 관서의 재원을 할애하지 않고, 진휼청을 위시한 군문과 감, 병영의 재원을 염출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감영, 병영에서 구획한 재원은 본래 각도, 군현에서 차출해야 할 현물과 노동력을 화폐로 대신한 성격이 컸다." 한편 재원은 기본적으로 백성의 세입을 통해 마련되었지만, 왕실 의례에는 이같은 공적 재원 외에도 왕실의 내탕이 비공식적으로 활용되었다. 효명세자의 상례에는 내수사內需司와 용동궁에서 제수소용전祭需所用錢과 다례茶禮 비용을 마련하여 보냈다. 그러나 주요 상례 절차에 필요한 재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의 공적 재원에서 마련되었다.

상례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묘역을 조성하는 데 드는 물력과 노동력이었다. 묘소 주변의 도로를 정비하고 묘소에 제사를 지낼 정자각과 전사청 등을 세우고, 묘소의 봉분과 곡장曲牆을 만드는 일련의 절차에 많은 역군이 동원되었다. 문제는 대동법 시행 이후 선혜청에서 공물·요역가를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왕실 의례에 동원되는 관료 및 역군들에게 급료가 지급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에 지방에 분정해 쓰던 물력과 노동력을 일일이 값을 주고 사서 써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중앙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초 묘당에서 구획한 액수 외에 묘소도감에서 세 차례 추가로 요청한 금액이 대부분 역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재원은 묘소도감에서 염출한 재원의 총액이지만, 이밖에 각 도감의 관원 이하하급 원역, 역군들에게 지급되는 공궤미供饋米는 호조와 선혜청에서 별도의 식례式例에 의거해 따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실제 어떻게 지출되었을까? 우선 삼도감의궤에서 획급한 재원을 중심으로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9.}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구조의 정비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4, 2.), 5장 참조.

^{30.} 나영훈, 「17~18세기 도감의 고가(雇價)마련과 군문재원(軍門財源)의 활용」, 『역사와 현실』 103(한국역사연구회, 2017. 3.), 284~285쪽.

^{31. 『}탁지오례고度支五禮考』(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본)에는 인조대 이후 길례, 가례, 흉례, 군례, 빈례의 설행 내역과 비용 마련 절차를 총 7권으로 정리해 놓았다. 그러나 『탁지오례고』에 적힌 비용은 의례를 설행하는 데 들어간 전체 경비를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홀만恤民을 위해 특별히 내려진 조치를 중심으로 기사를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왕실 의례의 전반적인 경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의궤와 등록류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2. 『}탁지오례고』권2, 「흉례·익종대왕翼宗大王」.

^{33.} 최주희, 「조선후기 재정운영과 시장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딜레마」, 『역사와 현실』 94(한국역사연구회, 2014, 12.)

^{34. 『}연경묘묘소도감의利』, 6월 초1일, "墓所都監郎廳以都提調意啓曰 墓所始役之後 堂上郎廳監造官及諸員役供饋等節 依前 例 令戶曹官惠廳磨鍊題給事分付何如 傳曰 允."

[표 5] 묘소도감의 재원 배분

재원배분처		叫米	태太	전錢	목木	포 布
혼궁도감	1차 이송	100석石	_	1,000냥兩	5동同	2동티
魂宮都監	2차 이송	 50석石		400냥兩		_
	3차 이송			300냥兩		_
	 4차 이송				5동同	_
 장례도감	 1차 이송	 100석石		3,000냥兩	20동同	4동티
葬禮都監	2차 이송	100석石				_
		308석石 3두斗		 3,209냥兩 6푼分		_
삼물소三物所		8석石 9두斗 2승升		 1,871냥兩 6푼分	10필疋 22척尺	
조성소造成所				 20,319당兩		
		6승升		8전錢		
대부석소大浮石所		545석石 12두斗	_	5,448냥兩	1필疋 17척尺	_
		6승升 5흡合 		3전錢 7푼 分		
노야소爐冶所		77석石 7두斗	_	1,051냥兩	_	-
		2승升		2전錢 8푼分		
보토소補土所		_	_	11,025냥兩 5전錢 9푼分	-	-
立十二 <u>元</u> (1)/子(1)/1		300억和 7千年 6合升	_	3,986냥兩 7전錢 6푼分	_	
 수석소輸石所		 19석石 13두斗	 182석石 8두斗	2,279냥兩		
		2승升		3전錢 6푼分		
별공작미別工作米		146석石 3두斗		1,659냥兩		_
				3전錢 8푼分		
분장흥고미分長興	庫米	6석石 14두斗	_	175냥兩	_	-
				1전錢 8푼分		
분전설사分典設司		2석石 12두斗		68냥兩 4푼分		
삼물소사초가三物	所莎草價			575냥兩		
보토소사초가 補土	所莎草價			2,000냥兩		
담군고가擔軍雇價	[1,019냥兩 5전錢		
상격목賞格木					25필疋	_
군복마외양가軍卜	馬喂養價	_	_	429냥兩 4전錢	_	_
각항잡하各項雜下		28석石 13두斗	 17석石 3두斗	1,737냥兩	10동同 12필疋	_
상격미賞格米		5승升 5흡合 	2승升 5흡合	1전錢 6푼分	31척尺	
축미전縮米錢		40석石		300냥兩		
의궤청儀軌廳 획송	劃送			220냥兩		
계		2,400석石	200석石	63,359냥兩 9전錢 4푼分		_
실여전實餘錢				400년兩 6푼요 (비	국에 보고하고 호조(에 이송한)

묘소도감은 혼궁도감에 네 차례에 걸쳐 미 150석, 전 1,700냥, 목 10동, 포 2동을 이송하였으며, 장례도감에는 두 차례에 걸쳐 미 200석, 전 3,000냥, 목 20동, 포 4동을 옮겨 주었다. 각 도감에서는 이를 가지고 일방—房·이방二房·삼방三房에 분배하여 지출하였다. 실제로 『효명세자장례도감의 케』에는 진휼청전 3,000냥, 목 10동, 미 200석, 병조목 10동, 함경감영포 4동(대전代錢 160냥)이 장례도감의 재원으로 잡혀 있어 액수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례도감에서는 이를 일방·이방·삼방에 분배해 주었는데, 일방에는 공장전 696냥, 목 3동 14 필 26척, 미 4석을, 이방에는 공장전 138냥 9전 5푼, 목 39필 6척, 미 4석을, 삼방에는 공장전 395 냥 9전, 목 2동 36필 19척, 미 2석 10두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전체 재원의 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빈궁혼궁도감과 장례도감에 비해 묘소도감에서 지출하는 액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묘소도감은 일방·이방·삼방 체제가 아닌 삼물소·조성소·대부석소·노야소·보토소·소부석소·수석소·별공작·분장흥고·분전설사 등 역종별 처소에 재원을 분급해주는 한편, 사초가莎草價, 담군고가擔軍雇價 등을 직접 지급해주었다.

삼물소는 삼물(석회石灰, 세사細沙, 황토黃土)을 섞어 무덤의 광擴을 조성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조성소는 정자각과 봉분을 만들 때까지 비와 눈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묘상각, 그리고 묘역을 조성하는 관원이 머물 가가假家를 짓는 일을 맡았다. 대부석소는 석상石牀, 문무석인文武石人, 지석함誌石函 등을, 소부석소는 제수祭需를 마련하는 전사청典祀廳, 재실 등에 쓰이는 작은 석물을 제작하였다. 보토소는 묘소 주위에 흙을 돋우고 사초莎草를 입히는 공역을 수행하였으며, 노야소는 각종 철물 제작을 담당하였다. 수석소는 부석소에서 채취한 석재石材를 묘소로 운반하는 역을 맡았다. 이밖에 별공작은 선공감에 두던 임시 관서로 나라의 큰 역사가 있을 때 설치되었으며, 분장흥고와 분전설사 역시 상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물자를 마련하는 임시 관서로 도감내에 설치되었다.³⁶

그밖에 상례를 무사히 마친 후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상격목賞格木, 군복마외양가軍卜馬喂養價를 비롯해 의궤 제작을 위한 의궤청 획송분이 묘소도감의 지출 내역(用下)에 포함되었다. 각소 및 분설 관아에서는 도감에서 배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조달 상인에게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역군을 고립하였다. 이밖에 공물 아문에서 물품을 빌려 쓴 경우 해당 아문에 다시 돌려주었다. 도감에는 이처럼 돌려주는 물품을 용환질用還秩로 구분해 놓았다. 그럼에도 상례 절차에서 비용이 가장 많

^{35. 『}효명세자장례도감의궤』, 「재용財用」.

^{36.} 묘소도감의 각 소의 기능은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누리집(http://uigwe.museum.go.kr)의 『문효세자묘소도감의 궤』하의 해제(이현진)를 참고하였다.

이 드는 것은 단연 역가였다.

결국 효명세자의 상례에 들어간 재원은 미 2,400석, 전 63,760냥, 목 41동, 포 6동이며, 이중 실제 지출한 액수는 미 2,400석, 태 200석, 전 63,359냥 9전 4푼이었다. 묘소도감에서는 나머지 400 냥 6푼은 비국備局에 보고한 후 호조에 이송하는 것으로 재원을 모두 소진하였다. 한 가지 특기할점은 전체 재원 중에 동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호조와 선혜청에서 장인, 모군에게 지급하는 요미料米는 본색(營)으로 지급하였으나, 묘소도감에서 지급하는 목本·포布의 경우 매일 공전工錢과 고기雇價를 지급하는데 길이의 척촌을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전으로 대신지급하였다.

공전과 역가의 지급을 기존의 현물 화폐 대신 동전으로 대체하는 경향은 동전의 보급과 유통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한정된 세수로 경비를 지탱해야 하는 재무 기관에서 주전鑄錢을 통해 지급 준비율을 높이고, 경비 지출에 대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19세기 전반 중앙의 재정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왕실 의례와 같은 특별경상비를 마련하는 데에 각 재정 관서에 비축된 동전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던 것으로 이해되며, 효명세자의 상례는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앞으로 다른 사례들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IV. 맺음말

왕세자의 사망은 왕실의 종통宗統을 위협하는 위태로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왕실의 상례는 여러 정치적 고려 속에서 치러졌으며, 경비를 지출하는 문제 역시 여러 신료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순조의 장자인 효명세자의 죽음 이후 상례 절차와 비용을 『효명세자빈궁혼궁도감의 궤』, 『효명세자장례도감의궤』, 『효명세자연경묘묘소도감의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효명세자의 상례 기간은 대략 3개월로 『국조상례보편』의 소상 의주에 부합하였으며, 구체적인 상례 절차 역시 기본적인 틀은 『국조상례보편』을 따르되, 행례 시 의주가 일부 첨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삼도감의 관원은 『국조상례보편』에 명시된 것보다 제조당상의 수를 늘림으로써 전반적으로 상례 절차에 무게감을 실었다

한편 상례의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 또한 없지 않았다. 『국조상례보편』의 간행 자체가 상례 절차를 명확히 밝혀 쓸데없는 비용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한다는 것은 왕실 의례를 간소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상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진휼청과경외 군문에서 차출해 씀으로써 정규 재원을 침범하지 않고자 하였으며, 상복과 제구祭具, 각종 잡물을 대내大內와 공물아문真物衙門에서 조달해 쓰거나 필요시 공인에게 구입해 씀으로써 외방의 백성들에게서 현물과 노동력을 차출해 쓰는 관행을 개선해 나간 점도 주목할 점이다. 이는 대동법 시행 이후 중앙의 재정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나타난 후속 효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문제는 이러한 지출 구조가 모군募軍의 고립 비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삼도 감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한 묘소도감에서는 장인과 역군의 고가雇價 지급에 대부분의 재원을 할애하였다. 이러한 지출 구조는 비단 효명세자의 상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이전 시기 왕세자 상례보다 삼도감의 지출 식례를 명확히 밝히고 역가 지급 규정을 세밀하게 정리해 놓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국역 동원에 대한 급가給價 체계를 전시기보다 강화함으로 써 경비 운영의 탄력성이 줄어든 측면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본고는 1830년(순조 30) 무렵 효명세자의 상례를 중심으로 19세기 왕실 의례에 사용된 비용이어느 정도 규모였고, 주요 지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사례 연구의 성격을 띤다. 효명세자의 상례는 『국조상례보편』을 기반으로 의주를 몇 가지 추가하는 수준에서 치러졌으며, 상례 비용의 상당 부분을 묘소를 조성하는 장인과 역군의 고립가로 지출된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19세기 국가재정의 위기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하였는지는 이전 시기 왕세자 상례와의 비교 검토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37. 『}是立州자豆소도감의刊』상, "爲相考事 三都監所用物力 自廟堂才已區劃乙仍于 同錢木數爻 後錄移文爲去乎 匠募所下 計 日工錢與雇價 有難以木布寸尺分給 故在前如此之時 每以代錢取用是如乎 今亦依此例以代錢準備 待更關即爲輸送事 宣惠 廳兵曹訓鍊都監禁衛營御營廳司僕寺平安監營兵營全羅監營左右水營統營咸鏡監營了"

[부표] 효명세자 상례 절차

일시	빈궁혼궁도감	장례도감	연경묘묘소도감
5월 초6일	묘시 복의復衣	도감 당상 · 낭청 계하	
	신시 목욕沐浴		
	유시습襲		
	빈궁殯宮(환경전)수리 찬실欑室 조성 시역		
5월 초7일	도감 당상 · 낭청 사옹원 회동 사시 소렴小殮		
	명정銘旌을 세움		
	신시 영상靈牀을 환경전으로 옮김		
 5월 초8일	 진시 재실을 악차幄次에 임시로 설치		
	오시 대렴大殮		
	미시 재실 봉하奉下, 성빈成殯		
 5월 초9일	진시 성복成服	사용원에 회동	
	(*『승정원일기』, 순조 30년 5월 9일 기사)	형조 · 공조 · 사역원에 도감설치	
	신시 재실의 은정銀釘 위에 칠을 함.		
5월 초10일			형조에서 회동
5월 11일		시역始役	빈청회의에서 묘호墓號를 정함.
			묘소 첫 간심看審
5월 18일		제기주성소祭器鑄成所 시역始役	
5월 22일	혼궁 이하 제처 수리 시역始役		
5월 24일			묘소 재간심
5월 25일			진시 벌목
			원릉에서 고유제 행함.
5월 29일	오시 재실梓室의 칠포漆布 위에 칠을 함.		
5월 30일			묘소 삼간심
6월 초1일			오시 광릉 국내 도장곡에 봉표,
			미시 개기 시역開基始役
6월 초2일			빈청 택일 회의
6월 초9일	사시 재실梓室을 전체 칠함.		부토浮土를 제거함.
6월 초10일			부토를 제거함.
			봉표 내에 탈이 있어 제조를 들임.
6월 11일			길지吉地를 개복改卜하라고
			하교함.
6월 12일			묘소 초간심 출거出去
6월 18일			묘소 초간심 다시 출거出去
6월 20일		시책문초도서諡册文草圖書	
		옥인전문정본玉印篆文正本,	
		부본副本 입계	
6월 23일			묘소 재간심 출거出去
6월 24일			벌목, 의릉에서 고유제 행함.

일시	빈궁혼궁도감	장례도감	연경묘묘소도감
6월 27일			묘소 삼간심 출거
6월 29일			오시 의릉 좌변 제2강에 봉표, 미시 선릉에 고함. 개기시역開基始役
7월 초2일	 진시 상우판에 상上 자를 씀.		
7월 초3일		애책문초도서哀册文草圖書 지문초도서誌文草圖書 입계	
7월 초4일	재실梓室을 묶어 쌈[結裹]		정자각 개기開基, 굴토掘土 각양 석물을 운반해 들임.
7월 초7일			사시 옹가甕家(묘상각) 시역 재실 이하 절구로 터 다지기 [基址杵築]
7월 초9일		표석전후면表石前後面 초도서草圖書 입계	재실 이하 초석을 정하고 기둥을 세움[定礎立柱].
7월 초10일			사시 정자각의 초석을 정함
7월 초11일			수도각의 역사를 마침. 가제실 이하를 개복蓋覆함.
7월 초12일			개금정開金井, 천광穿壙, 혼유석 운반해 들임.
7월 13일		사시빈궁시賜諡殯宮時 각항 의주 입계	재실 이하 서까래를 얹음[掛椽]
7월 14일			광중에 지회地灰를 다짐.
7월 15일	오시 빈궁에 시호를 내림. 신시 명정銘旌을 바꿈.		
7월 16일			사시, 정자각에 기둥을 세움. 재실 이하는 상량上樑하고 기와를 덮음.
7월 17일		발인發靷시 각항 의주 입계 발인반차도모사發靷班次圖摹寫 입계	신시, 외재실外梓室을 배진하여 수도각隧道閣에 봉안함, 정자각에 서까래를 얹음, 혼유석, 표석, 농대석 마정磨正
7월 18일		 각항 공역 고흘	유시, 외재실을 내림
7월 19일		발인 초도의	횡대판 배설, 3면에 방회傍灰를 다짐. 정자각 · 재실 이하 기와 덮는 역 마침.
7월 20일			오시, 횡대橫帶 상면에 회를灰 다짐. 금정 안으로 천회天灰를 다짐.
7월 21일			정자각 벽을 막고, 흙을 바름. 단청 시작, 수라간 · 수복방 기둥을 올리고 상량함.
7월 22일		도로, 교량 적간 표석, 지석, 제기 일체 배진	사대석莎臺石을 세움. 하전석下磚石을 정자각에 들임. 단청사면丹靑四面 첨계簷階의 역을 마침.

일시	빈궁혼궁도감	장례도감	연경묘묘소도감
7월 23일			사대하전석莎臺下磚石 배치, 곡장 지대석曲墙地臺石 시역.
7월 24일			후면사대석 배설, 천광穿擴 시역, 정광正壙을 복부형覆釜形으로 만드는 역사를 행함.
7월 25일			정광복부형正壙覆釜形의 역을 마침. 앞면에 편결목을 배설함. 대청, 재실 등에 벽을 세우고 도배함.
7월 26일			퇴광의 역을 마침.
7월 27일		겸행발인 2,3도 습의	비각碑閣 용대석籠臺石 안치, 정자각丁字閣 찬실欑室 배설. 오시 퇴광을 지회로 다짐.
7월 29일	미시 찬실欖室을 염		비각에 기둥을 세움. 상량하고 서까래를 검. 곡장의 역을 마침.
8월 초1일	오시 환경전 실화 신시 재실 환취정으로 이안 빈궁 수리 유시 도총부에 영상靈淋 이안		혼유석을 연마하는 역을 마침. 향어로香御路에 축계築階함. 정자각에 발蘆簾을 설치함. 향대청, 재실 등의 역을 마침.
8월 초2일	축시 재실을 악차에 임시로 안치 진시 재실을 변경하여 받들고 성빈함 재실 전체 가칠함 상자上字를 씀. 재실을 결과結裹함 혼궁을 수리함		비각의 역을 마침.
8월 초3일	축시 발인 인시 노제소(보제원) 도착 진시 묘소 정자각 도착 신시 묘소에서 찬실을 염.	축시 발인 인시 노제소 도착 진시 묘소 정자각 도착 미시 묘소습의 신시 찬실 유시 묘소墓所 해결과解結裏 봉심奉審	진시 대여大與가 묘소에 도착하여 정자각에 성빈함
8월 초4일	자시 현실을 내림. 묘시 창경궁 통화전에 반우함. 신백神帛을 통화전 서쪽 계단 위에 매안 埋安함.	자시 현실에 내려 보냄. 길유궁吉帷宮에서 제주題主함 묘시 길유궁에서 반우 오시 창덕궁 통화전에 봉안	자시 현실玄室을 내림. 축시 현실을 봉폐하고 회를 바름. 입주전立主奠을 행함. 묘시 반우 후 정광 앞면에 회를 바름.
8월 5일			편결목編結木을 철거하고 복부형으로 만드는 역을 행함.
8월 6일			묘시 복부형으로 만드는 역을 마침. 흙을 덮는 역을 행함.
8월 8일		· <u> </u>	퇴광, 분상에 흙을 덮는 역을 마침.
8월 10일			안묘전安墓奠을 지냄

국문초록

19세기 효명세자의 상례 절차와 지출 구조

왕세자의 사망은 왕실의 종통宗統을 위협하는 위태로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왕실의 흉례는 여러 정치적 고려 속에서 치러졌으며, 경비를 지출하는 문제 역시 여러 신료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순조의 장자인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의 상례 절차와 비용을 『효명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 『효명세자장례도감의궤』, 『연경묘묘소도감의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효명세자의 상례 기간은 대략 3개월로 『국조상례보편』의 소상小喪 의주儀註에 부합하였으며, 구체적인 상례 절차 역시 기본적인 틀은 『국조상례보편』을 따르되, 행례 시 의주가 일부 첨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삼도감의 제조당상 수를 『국조상례보편』에 명시된 것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상례 절차에 무게감을 실었다. 그러나 상례 비용을 줄이려는 정책적노력 또한 없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상례 시 소요되는 상복과 제구祭具, 각종 잡물은 대내大內와 공물이문에서 물력을 조달해 썼으며, 그밖에 장인匠人과 모군募軍의 역가役價를 진휼청과 같은 중앙의 재무관서와 경외 군문에 분정해 썼다.

1820년(순조 20) 이후 중앙 재정의 부족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중앙 정부는 왕실에 바치는 물품을 줄이고 왕실 가족의 출생과 혼인, 사망에 따른 왕실 의례 비용을 영조대에 작성된 「탁지 정례度支定例」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준하여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재정의 경비 지출 방식이 급가給價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각종 역사에 동원되는 물품, 역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9세기 왕실 의례에 소요되는 경비가 늘어나는 경향은 이러한 지출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례 연구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해나가도록 하겠다.

주제어: 왕세자, 상례, 예장도감, 효명세자

Abstract

Procedures and Expenditures for Funerary Rites for Crown Prince Hyomyeong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death of a crown prince posed a threat to the continuation of the royal line.

The subsequent funeral therefore required the consideration of a range political issues and the related expenditures were determined after discussions among different officials.

This paper examined the *Uigwe for the Installation of the Royal Coffin Hall and the Spirit Hall of Crown Prince Hyomyeong* (孝明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Hyomyeongseja bingung hongung dogam uigwe*), *Uigwe for the Funeral of Crown Prince Hyomyeong* (孝明世子葬禮都監儀軌, *Hyomyeongseja jangnye dogam uigwe*), and *Uigw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omb of Crown Prince Hyomyeong* (延慶墓墓所都監儀軌, *Yeongyeongmyo myoso dogam uigwe*), in order to investigate how funeral procedures were prepared and the required expenditures were financed upon the death of Crown Prince Hyomyeong (孝明世子, 1809–1830), the eldest son of King Sunjo (純祖, r. 1800–1834).

The study revealed that the funerary procedures were carried out over approximately three months, and proceeded in conformity with the manual of rituals for state funerals of crown princes. The details of the procedures followed the *Revised Manual for State Funerary Rites* (國朝喪禮補編, *Gukjo sangnye bopyeon*), but other manuals were also referred to for the performances of the rituals. The number of supervisors and staff officials for the three relevant superintendencies surpassed that prescribed in the Revised Manual for State Funerary Rites, which raised the required expenditure. However, efforts were also made to reduce costs. The mourning costumes, ritual utensils, and miscellaneous items were procured from the residences of the king and queens and the offices of tribute goods. Artisans and soldiers were mobilized for labor from central financial agencies, such as the Bureau of Relief (赈恤廳, Jinhyulcheong), and from regional army garrisons as well.

As a shortage of government funds grew apparent starting in the twentieth year of King Sunjo's reign, the central government reduced the quantity of items to be presented to the royal family, and sustained efforts to minimize the costs of conducting royal rites related to the birth, marriage, and death of royal family members by referring to the Revised Manual for State Funerary Rites and the books titled *Takjijeongnye* (度支定例) pu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英祖, r. 1724–1776), which recorded the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each government office and royal institution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However,

as the government expenditure system changed, rather than using tribute goods and public services free of charge as it had conventionally done, the government was forced to pay for the items and labor required for royal rituals. The nineteenth century witnessed a gradual increase in the costs of conducting royal rites. This appears to have mainly resulted from changes in the government expenditure system, and requires further study of individual cases for more detailed discussion.

Keywords: Royal coffers, Funerary rites (sangnye), Yejang dogam (Superintendency for a state funeral), Crown Prince Hyomyeong

19세기 효명세자의 상례 절차와 지출 구조 **143**

Abstract

Déroulement et financement des funérailles du dauphin Hyomyeong au XIX^e siècle Le décès d'un dauphin, qui empêche que succède au trône le premier fils, est un grave problème, une menace même pour la dynastie ; en conséquence le rite funéraire ne peut être réalisé sans tenir compte de la situation politique, et les dépenses encourues doivent être décidées après délibération de plusieurs fonctionnaires de haut rang. Cette étude examine la procédure du rite funéraire du dauphin Hyomyeon (1809–1830, premier fils du roi Sunjo) et les dépenses encourues, en s'appuyant sur le *Uigwe* relatif au pavillon où fut gardé le cercueil du dauphin avant sa mise au tombeau et au pavillon réservé à la tablette, celui relatif à la cérémonie funèbre et celui relatif à la construction du tombeau princier *Yeongyeongmyo*.

Voici le constat. La durée des rites funéraires, qui était de trois mois environ, correspond à celle définie pour un dauphin par le *Guide révisé des rites funéraires royaux*. Celui—ci encadre également la procédure des funérailles, à laquelle s'ajoute d'ailleurs une certaine procédure de cérémonie. Le nombre de fonctionnaires qui travaillèrent dans les trois bureaux concernant les funérailles du dauphin fut plus élevé que celui indiqué dans le *Guide*, ce qui amena la hausse des coûts. Pourtant on constate également des efforts pour réduire les dépenses des obsèques: les habits de deuil, les ustensiles pour l'offrande et d'autres objets utilisés pour les rites funéraires furent fournis par les offices au service du roi, de la reine et de la reine—mère, ainsi que par un bureau chargé de gérer le tribut ; les salaires des artisans et des ouvriers furent pris en charge en partie par des bureaux des finances de l'administration centrale comme le *Jinhyulcheong* (office ayant pour mission de donner de l'aide aux peuple suite aux mauvaises récoltes), ainsi que par les bases militaires en dehors de la capitale.

Face à une crise financière s'aggravant de plus en plus après la vingtième année du règne de Sunjo, l'administration centrale diminua le nombre d'articles dédiés à la famille royale et s'efforça de réduire le coût des rites royaux de naissance, de mariage et de décès, jusqu'au niveau indiqué dans le *Guide révisé des rites funéraires royaux* et le *Takjijeongrye*, le livre qui définit l'ampleur des revenus et des dépenses et les règles les concernant, pour tous les offices de la famille royale, sous le roi Yeongjo (qui régna de 1724 à 1776). Néanmoins, c'est à cause du changement du régime de paiement que l'on était obligé de payer en argent comptant tous les articles et la main—d'œuvre mobilisés pour les travaux. Il n'est pas faux de dire que cette évolution a principalement entraîné l'augmentation de

dépenses effectuées pour les rites royaux au XIX^e siècle. Cet aspect fera l'objet de nos prochaines recherches basées sur une analyse en profondeur de cas.

Mots-clés : finances de la famille royale, rites funéraires, bureau provisoire chargé des rites funéraires, dauphin Hyomyeong

19세기 효명세자의 상례 절차와 지출 구조 145

헌종대 수릉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06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Relocation of Sureung Tomb of King Ikjong during the Reign of King Heonjong

임혜경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사 Lim Hyekyung Assistant Curator, Cheongju National Museum

- Ⅰ. 머리말
- Ⅱ. 수릉 천릉의 배경
- 1. 수릉의 풍수 형국
- 2. 익종 추숭 사업과 천릉
- Ⅲ. 천릉의 절차와 결과
- 1. 천릉의 진행 과정
- 2. '능제'의 적용과 그 의미
- Ⅳ.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 왕릉의 조성은 능소陵所의 선택, 제반 의절儀節의 마련과 비용 조달, 민간 피해에 대한 조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각종 이해 관계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였다. 또한 왕릉이 일단 조성되어 선왕先王(또는 선조先祖)의 시신이 안치되고 나면 능역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불경한 것으로 여겨져 정자각丁字閣·비각碑閣 같은 건물이나 각종 석물石物을 수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다.! 하물며 천릉遷陵²의 경우 봉분을 파서 시신이 안치된 재궁梓宮을 꺼내야 했기 때문에 그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고 동원되는 인력과 물자의 규모도 상당했다. 그만큼 천릉은 쉽게 실행에 옮겨질 수 없는 성질의 사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천릉이 단행되기 위해서는 능역에 보수나 보완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하자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규모 공역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과 이에 대한 여러 정치세력 사이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했다. 바꾸어 말하면, 천릉이 결정되기까지의 논의 내용과실제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의 정치 형국을 일면이나마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선시대 천릉·천원遷園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천릉·천원의 진행 과정에서 노정된 정치적인 성격에 주목하여 국가 지배 체제의 정비 혹은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전기 정릉貞陵·덕릉德陵·안릉安陵·영릉英陵·소릉昭陵·희릉禧陵·정릉靖陵의 천릉과 조선 후기 목릉穆陵·장릉章陵·영릉寧陵·장릉長陵의 천릉 및 홍경원興慶園·영우원永祐園(현륭원顯隆園) 천원을 연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18세기 정조대 영우원 천원(1789)을 하한으로 이전의 천릉·천원 사례 대부분을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조대 이후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기간에도 건릉健陵·수릉綏陵·인릉仁陵·홍릉洪陵·유릉裕陵의 천릉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면, 기존의 연구가 이들 사례를 포괄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19세기의 건릉·수릉·인릉 천릉의 경우 이전 시기의 천릉·천원 사례들과 정치·제도적 측면을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조선시대 천릉·천원의 성격과 그 실제가 시기별로 어떻게 전개

^{1.} 이현진, 「1789년(정조 13) 永祐園에서 顯隆園으로의 遷園 절차와 의미」, 『서울학연구』 51(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3) 87쪽

^{2.} 조선시대에는 피장자의 위상에 따라 상장례 용어를 구분하였다. 즉 국왕과 왕후의 장례는 '국장國葬', 세자나 세자빈, 세손 등은 한 등급 낮추어 '예장禮葬'이라고 하였으며, 국왕의 상은 '대상大喪', 왕후의 상은 '내상內喪', 세자와 세손의 상은 '소 상小喪', 세자빈의 상은 '소내상小內喪'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묘소를 옮기는 것 역시 용어를 달리하였는데, '능'을 옮기는 것은 '천릉遷陵' 혹은 '천봉遷奉', '원'을 옮기는 것은 '천원遷園', '묘'를 옮기는 것은 '천묘遷墓'라고 하였다. (이현 진, 위의 논문(2013), 85쪽: 이현진, 『조선 왕실의 상장례』(신구문화사, 2017), 18쪽 참고)

되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들 사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1846년(헌종 12)에 단행된 수릉의 천릉 사례에 주목하여 천릉이 결정되기까지의 논의 내용과 그 구체적인 진행 모습을 살핌으로써 당시의 정치 형국에서 천릉 공역功役이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수릉은 순조純祖(재위 1800~1834)의 장남이자 헌종憲宗(재위 1834~1849)의 부친인 효명세자孝明世子(1809~1830)의 능이다. 효명세자는 1812년(순조 12)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827년(순조 27) 왕명에 의해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시작하여 과장科場의 폐단을 금지하고, 옥사蘇事를 신중히 하였으며, 기근이든 지역의 구휼을 위해 내당고內帑庫를 여는 등의 정책을 폈으나, 1830년(순조 30) 윤4월 22일에 각혈略血 증상을 보이더니 불과 2주 만에 창덕궁昌德宮 희정당熙政堂에서 홍서薨逝하였다. 이에 양주楊州 천장산天藏山(현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좌강左岡 유좌酉坐에 장사지내고, 묘호를 '연경묘延慶墓'라 하였으며, 1834년(순조 34)아들 헌종이 즉위하자 '익종翼宗'으로 추숭追崇하고, 묘호를 '수릉'이라고 하였다. 이후 수릉은 헌종대와 철종대 2차례에 걸쳐 천릉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본고에서 다룰 1846년(헌종 12) 천장산에서 용마산龍馬山(현 서울 광진구구의동·중곡동)으로의 천릉이다.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국왕권의 약화와 특정 가문에 의한 국정 운영으로 이야기되는 세도정치기이기 때문에 이때 단행된 수릉의 천릉은 통치 체계를 다져가던 조선 전기나 강력한 왕권을 피력하였던 정조대의 천릉·천원 사례와는 결이 다른 형국을 보여줄 것이다.

천릉의 진행 과정과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 내용, 그리고 실제로 시행된 의절의 내용을 살피는 데에는 해당 공역을 담당하였던 도감都監에서 제작한 의궤가 가장 직접적이고 또 사실상 거의 유일한 사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그 주요 자료로 『헌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의 편년 자료 외에 지난 2011년 프랑스로부터 반환된 외규장각 의궤 중 수릉 천릉과 관련된 『익종수릉 천봉도감의궤翼宗綏陵遷奉都監儀軌』 1~7과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翼宗綏陵遷奉山陵都監儀軌』 상·하를 활용하였다.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는 구릉舊陵에서 재궁을 꺼내 신릉新陵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고,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는 새로 능을 조성하는 과정과 신릉에 재궁을 안치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2종 모두 완질이기 때문에 다른 편년 자료에서는 자세히 다

루지 않은 수릉 천릉의 상세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천릉 이후의 의제儀制와 수 릉으로 추봉追封되기 전 연경묘 당시의 의제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효명세자예장도감의궤孝明世子禮葬都監儀軌』와 『효명세자연경묘묘소도감의궤孝明世子延慶墓墓所都監儀軌』도 일부 활용하였다.

Ⅱ. 수릉 천릉의 배경

1. 수릉의 풍수 형국

수릉 천릉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1846년(헌종 12) 1월 26일이었다. 이날 헌종은 경우궁景祐宮 재실齋室에서 여러 대신들을 소견하고 천릉의 뜻을 내비쳤다. 즉 자신이 일찍부터 천릉을 생각해왔으나 국내외의 정세가 불안하였던 까닭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미 대왕대비와왕대비에게도 품의稟議하여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것이었다."이후 신료들과의 논의 중에 조정 밖에서 천릉에 대한 말들이 있은 지 오래되었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생각해왔다는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알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를 여기에서는 밝히지 않았다.

헌종이 수릉의 천릉을 생각하게 된 이유로 먼저 풍수상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헌종의 「행장行狀」에서 수릉의 천릉 사실을 서술하면서 "수릉의 풍수에 대하여 형가形家의 숨은 의논이 많았기 때문에 성심聖心에 편안치 못함이 쌓였다."라고 하였으며, 헌종이 구릉舊陵의 빈전殯殿에 전알展調하면서 올린 「진향문進香文」에서도 "구릉의 풍수가 합당하지 않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형가의 말은 비록 군자가 믿을 바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자程子·주자朱子와 같은 대유大儒 이래로 간혹폐기하지 않고 설행된 바 있으니"라고 하여 당시에 풍수상으로 수릉의 묘혈墓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헌중대 수房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149

^{3. 『}순조실록』권31, 순조 30년 7월 15일 경오, 「애책문京册文」, 「지문誌文」(이하의 실록 기사 모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 터베이스-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4. 『}순조실록』 권31, 순조 30년 윤4월 22일, "藥院請診于王世子 以睿候有咯血欠安也 進加味六鬱湯"

^{5. 『}순조실록』권31, 순조 30년 7월 15일 경오, "旣飲遷于歡慶殿 成殯四日而成服 越三日戊辰 賜諡孝明 墓曰延慶 廟曰文祜 秋 八月四日己丑 葬于楊州 天藏山之左坐酉原"

^{6. 『}헌종실록』권1. 헌종 즉위년 11월 19일 경진, "追崇孝明世子諡曰敦文顯武仁懿孝明大王 廟曰璽宗 神殿曰孝和 陵曰綏陵."

^{7.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상. 「전교傳敎」, 병오 1월 26일; 『헌종실록』권13. 헌종 12년 1월 26일 임오.

^{8.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상, 「전교」, 병오 1월 26일, "**外間亦有此議者久** 臣等亦或憂悶 而事極重大 未敢發說矣.", 병오 2월 초4일, "遷奉之議 **外間之有此論已久** 而臣等之常所憧憧者也."

^{9. 『}헌종실록』권1,「행장行狀」, "**王以綏陵風水 多有形家竊議** 積不寧于聖心."

^{10. 『}헌종실록』 권13, 헌종 12년 윤5월 15일 기해, 「진향문進香文」, "惟是 **舊陵風水 多稱其未叶** 形家之言 雖非君子取信 自程朱 大儒以來 未或廢而不行 則予小予靡極之誠 驚悚憂懼 不敢遑寧 而兹事至重且大 不得不遲回而越趄 至今年大定于心 仰稟

실제로 2월 9일에 올린 관상감별단觀象監別單의 「산론山論」을 보면 수릉이 풍수상의 길지가 아 니라고 보고하고 있다.¹¹ 수릉의 간싞에는 관상감의 상지관相地官 한정후韓廷厚 방외方外의 상지관 양종화梁鍾華·김성구金成九·박채호朴琛浩 그 밖의 지사地師로서 술업術業에 밝기로 이름 난 이양 연李亮淵(1771~1853). 감찰監察 정익렬鄭翼烈(1780~?). 충청도 문의혂文義縣의 유학幼學 이황주李璜 周(1817~?))가 참여하였는데, 각자 수릉의 지세를 간심한 결과 길지가 되기에 미흡하다는 데에 의견 이 일치하였으며, 그 이유는 대체로 "청룡靑龍이 조금 낮고 안산案山이 조금 멀어서 국局을 이루지 못하고 또 용맥龍脈이 맺히지 못하여 상세山勢가 흩어지다"는 것이었다¹² 5일 후인 2월 13일에는 헌종이 영부사領府事 조인영趙寅永(1782~1850), 영의정領議政 권돈인權敦仁(1783~1859), 우의정右議 政 박회수사晦壽(1786~1861). 예조판서禮曹判書 박영워사永元(1791~1854). 관상감제조觀象監提調 홍 학연洪學淵(1777~1852)과 앞서 가심을 진행한 지사들을 거느리고 직접 수릉에 나갔는데, 이때에도 지사들의 의견은 한결같았으며 입시入侍한 대신 중에도 이견을 제시하는 자가 없었다. 이에 헌 좋은 그 자리에서 "수릉 처릉에 대한 논의가 나온 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한 친히 살피기도 하였으 나 사체事體가 지극히 중하므로 충분히 어렵게 여기고 조심하여 널리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지 않 을 수 없다 2품 이상의 시임대신時任大臣과 원임대신原任大臣들은 내일 아침 빈청窘廳에 모여 의견 을 수렴한 후에 입시하라"라고 명을 내렸고¹⁴ 이에 따라 다음 날인 2월 14일 수릇의 처릇이 결정 되고, 관련 의절儀節을 속히 거행하라는 전교가 내려졌다.

이처럼 수릉 천릉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거론된 시점부터 천릉이 결정되기까지의 논의 핵심은 수릉이 길지가 아니라는 외간外間의 설이 사실—오늘날의 일반적인 의미와 다를 수 있지만—이냐는 것이었다. 수릉의 풍수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음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헌종의 천릉 의지가 더해진 상황에서 상지관 및 지사들의 1차 간심과 헌종의 친간심 결과 풍수상 미흡한점이 있다는 데에 의견이 합치되었기에 최종적으로 천릉이 결정되었다. 『헌종실록』의 「행장」이나「진항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풍수적인 문제가 수릉 천릉의 이유였음을 알 수 있다.

兩慈 博詢群工 無待乎謀及龜筮而大遷之議已決."

- 11.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상,「전교」병오 2월 초9일, 「관상감별단觀象監別單 수릉산론綏陵山論」
- 12.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상, 「전교」, 병오 2월 초9일, "寅永曰 待諸地師齊會後奉審 則自然日晚 而臣等之見及地師之言 已具於別單矣 無容更陳 而大概地師之言 皆曰靑龍稍低 案山稍遠 不能成局 且龍脈不結 山勢渙散云矣."
- 13.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상, 「전교」, 병오 2월 13일.
- 14.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상, 「전교」, 병오 2월 13일, "上命大根書傳教曰 綏陵遷奉之議已久 亦爲親審 而事體至重 不可 不十分難愼 博詢處之 時原任大臣二品以上 待明朝來會賓廳 收議以入."

그런데 이전의 천릉·천원 사례에서는 지반이 내려앉거나 봉분에 물이 생긴다든지¹⁵ 띠가 말라 죽거나 뱀이 똬리를 틀었다든지¹⁶ 등의 피해 상황이 보고되어 논의가 점화되었던 것과 달리, 수릉의 경우 외간에 말들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징후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청룡이 조금 낮고 안산이 조금 멀어서 산세가 모이지 않는다고 한 간심의 결과 역시 이미 조성된 지 16년이나 지난 능을 옮겨야 할 만큼 심각하고 결정적인 하자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헌종은 즉위 후 5년 만인 1839년(헌종 5) 처음 수릉을 배알한 이후 해마다 봄·가을로 친제親祭를 올렸으나 그 동안 수릉의 피해나 풍수적인 문제가 언급된 적은 없었다. 특히 천릉 논의가 시작되기 3년 전인 1843년(헌종 9) 8월 익종의 탄신일을 맞아 거행한 친제 때에는 전날 밤부터 큰 비가내려 도로가 물에 잠겨 말이 건널 수 없을 정도였던 까닭에 출궁이 지체되었고, 제사를 마친 후에는 도로가 질척거려 환궁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먼저 능과 비각을 살펴본후에는 평소대로 제례를 진행하였다." 인근의 의릉懿陵과 휘경원徽慶園에 사람을 보내어 봉심奉審하게 하는 등 비로 인한 능역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었음에도 정작 수릉에 대해서는 그 후로도 어떤 언급이나 조치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천릉 논의 과정에서 보이는 신하들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수릉의 풍수 문제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미 언급한 대로 천릉 이야기는 1월 26일에 헌종이 먼저 꺼냈는데, 이에 대해 조인영, 권돈인 등은 일의 중대함을 들어 먼저 관상감과 방외의 지사들에게 널리 의견을 물어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2월 4일까지도 판부사判府事 정원용鄭元容(1783~1873), 판부사 김도희金道喜(1783~1860), 영돈녕領敦寧 조만영趙萬永(1776~1846), 영돈녕 홍재룡洪在龍(1794~1863) 등이 역시 널리 의견을 물은 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아뢰는 등 천릉에 대한 신료들의 의견이 신중론으로 수렴되는 가운데, 2월 6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수릉을 봉심할 지사들이 구성되었다.

지사들의 봉심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아서 '편안하지 못하다(未安)'거나 '허물이 없지 않다(不無祇欠)'거나 '풍수법에서는 대체로 취하지 않는다(堪興之法 多所不取)' 등의 산론을 올렸다. 이

- 15.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3월 24일 갑오.
- 16. 『정조실록』 권27, 정조 13년 7월 11일 을미.
- 17. 『승정원일기』, 현종 9년 8월 9일 기유(이하의 『승정원일기』 기사 모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 18.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상, 「전교」, 병오 1월 26일; 『헌종실록』 권13, 헌종 12년 1월 26일 임오.
- 19.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상, 「전교」, 병오 2월 초4일.

한종대 수통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151

에 대하여 헌종이 "지사들의 말이 대체로 이러한데, 장차 다시 봉심을 할 것인가?"라고 문자 조인 영이 말하기를,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하므로 마땅히 충분히 살피고 신중을 기한 연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난 번 연석筵席에서도 이미 친히 봉심하겠다는 하교가 있었으므로 1차례 친히 봉심하신 후에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였다.²⁰ 이에 2월 13일 헌종이 직접 수륭에 나가 지사들의 봉심 견해를 일일이 들은 후 신료들의 의견 수렴을 주문하게 된 것이다.

능을 옮기는 일은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 '새로운 능이 길하다고 해도 이전의 편안했던 땅에 그대로 모시는 것만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처럼' 오히려 혼백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릉에 대한 친봉심이 진행되기까지 모든 신료들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은 천릉의 필요성에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헌종이 처음 천릉 이야기를 꺼냈을 때 조인영은 "당초에 장례를 지낼 때 신이 관상감제조로 (능소의) 간심에 참여하였는데, 그 당시 지관들의 의견이 모두 '순길純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점차 이러저러한 말들이 들리기를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니, 아랫사람의 심정또한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하여 수릉이 길지가 아니라는 설이 당황스럽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2월 13일의 천봉심에서 지사들이 봉심 결과를 모두 진술한 뒤에도 "당초에 능소를 정할 때 신이 관상감제조로 간심에 참여하였는데, 당시의 합의된 의견은 오로지 혈체穴體의 견고함을 따져서 그곳으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여 수릉의 묘혈이 길하지 못하다는 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권돈인 역시 "능을 옮기는 것은 당초에 능을 정할 때와 (풍수의 해석에) 다름이 있으니, 당장 시행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널리 묻고 따져서 신중히 살펴 의논한 후 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여 수릉을 조성할 당시에는 풍수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외간에서 수릉의 입지가 풍수상 좋지 않다는 말이 돌고 있었다고 해도 물이 샌다거나 뱀이 지나다니는 등의 구체적인 변고는 언급되지 않았고, 신료들이 모두 천릉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은 수릉의 조성 당시에는 지사들의 견해가 길지라는 데에 일치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수릉의 상황은 천릉을 고려 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간심의 결과가 길지가 아니라고 나온 이상 천릉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친봉심 바로 다음 날인 2월 14일 조인영과 권돈인을 포함한 2품 이상의 시임대신·원임대신 51명이 입시하여 한결같이 수릉 천릉의 명을 내려달라고 아뢰었다. 그들의 대체적인 입장은 지사들의 의견이 이미 일치하였고 헌종이 친봉심까지 마쳤으니 자신들에게 어찌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경우이 천릉과 관련한 의절을 속히 거행하라는 전교가 내려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풍수상의 문제가 천릉의 일차적인 이유가 된 것이다.

2. 익종 추숭 사업과 천릉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릉 천릉의 이유는 풍수상의 문제였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것이 과연 천릉을 고려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수릉의 천릉 논의는 인조대의 목릉穆陵이나 현종대 영릉寧陵, 정조대의 영우원永祐園 천릉·천원 사례처럼 풍수상의 문제가불거진 후 뒤이어서 천릉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헌종에 의해 천릉이 먼저 제안된 후 그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봉심이 이루어지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때문에 헌종이 천릉 이야기를 꺼낸 배경에 풍수상의 문제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궁금해진다.

윤5월 14일 재궁을 옮기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서 망전望奠과 재궁서상자의梓宮書上字儀가 진행되었는데, 이때 헌종이 친림親臨하여 직접 향을 올리고 재궁에 '상上'자를 썼다. 이보다 앞서 11일에 헌종이 "15일에 직접 망전과 진향進香을 행하고, '상'자도 직접 쓸 것이다. 진향문은 마땅히 몸소지어 내려줄 것이니, 해당 방房은 그렇게 알라." 라고 전교를 내린 바 있어 이때 올린 진향문을 헌종이 직접 썼음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내용으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 의지할 곳 없었던 사무친 심정과 그리움, 재궁이 옮겨짐에 부친의 혼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절절하게 진술하고 있어 평소 익종에 대해 품어왔던 헌종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아래와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한중대 수통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153

^{20.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상, 「전교」, 병오 2월 초9일, "上曰 地師之言旣如此 則將更有奉審乎 寅永曰 此事至重且大 當十分審愼 然後可以決定 向來筵中 亦已有親奉審之下教矣 不得不一番親奉審後 始可定矣 上曰 當親奉審矣。"

^{21.} 이희중, 「17, 8세기 서울 주변 왕릉의 축조, 관리 및 천릉 논의」, 『서울학연구』 17(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1), 32쪽.

^{22.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상, 「전교」, 병오 1월 26일, "寅永曰 臣於當初襄奉時 以雲觀提擧 與參看審 而伊時相地官之論 皆以爲純吉矣 其後漸聞物論 則多有未洽云 故下情亦常憧憧矣."

^{23.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상, 「전교」, 병오 2월 30일, "寅永日 當初卜陵時 臣以雲觀提舉 曾參看審 而其時僉議 專取穴 體之堅固而用之矣."

^{24.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상, 「전교」, 병오 2월 13일, "敦仁曰 聖孝至當矣 大抵遷奉事體 與當初卜陵有異 實難遽然行之 惟廣詢博採 審愼議定 恐爲未晚矣."

^{25.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상, 「전교」, 병오 2월 14일.

^{26.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상, 「전교」, 병오 윤5월 11일, "丙午閏五月十一日 傳曰 十五日親行望奠 親進香 親書上字 進香 文當親 撰以下矣 該房知悉."

황고^{皇*}의 존시^{韓國}인 '효명' 두 자는 우리 황조^{皇祖}께서 내리신 것으로 백세의 징표로서 진실로 여기에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만, 융호^{隆號}로써 높이고 현^{택플册}으로써 받들며, 능^棱을 봉하고 묘 에 올리는 데에 있어서는 모두 다 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 실로 선왕^{先王}의 법이요 우리 집안의 고사이니, 어찌 만의 하나라 도 드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27

이는 익종의 홍서 당시 순조가 이미 '효명'이라는 시호를 내렸는데 자신이 시호와 능호·묘호를 고쳐 올린 것은 선조를 추숭하는 선왕의 법과 왕실의 가풍을 따른 것이라고 고하는 동시에 자신이 한 일은 만 가지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한 보잘 것 없는 정도라고 겸양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구절 바로 뒤에는 수릉의 풍수가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있어서 근심하다가 이제야 능소를 옮기게되었다는 진술이 이어진다. 이처럼 천릉을 고하기에 앞서 먼저 선조 추숭의 가풍을 언급한 것은 1834년(헌종 즉위년)에 효명세자를 익종으로 추존追尊하였던 것과 수릉의 천릉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헌종이 익종 추숭의 연장선상에서 수릉의 천릉을 생각해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효명세자에 대한 익종 추숭은 왕실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순조의 비 순원왕후純 元王后(1789~1857)의 수렴청정垂簾聽政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효명세자는 순조의 적장자로서 대리청정을 하던 중에 승하하였고, 헌종 역시 그러한 효명세자의 적장자로서 조선 후기에 보기 드믄 적통의 왕위 계승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조 승하 당시 나이가 8세에 불과하여 조선 역사상 가장어린 왕이었기 때문에 수렴청정이 전제되어야만 즉위가 가능하였고, 이에 순원왕후는 7차례의 고사 끝에 1834년(헌종 즉위년) 11월 18일 수렴청정을 받아들임으로써 헌종이 숭정문崇政門에서 즉위할 수 있었다. 같은 날 순원왕후는 효명세자에 대한 추숭의 예를 시행하도록 하교하였고, 다음날 시호謹號를 '돈문현무인의효명대왕敦文顯武仁懿孝明大王'으로, 묘호는 '익종'으로, 능호는 '수릉'으로 결정하였다. 나이가 1835년(헌종 원년)에는 종묘를 증수增修하여 순조와 익종을 새로 조성한신실神室에 봉안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헌종을 '선왕의 손자이자 왕의 아들'로 만들어 그정통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었으며, 더불어 순원왕후 자신은 대왕대비로, 세자빈 조씨는 왕대

비로 승격됨으로써 왕실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었다. 나이 어린 왕과 부녀자에 의한 수렴청정이라는 평범하지 않은 시국에 정국을 이끌어 가기 위한 명분을 다지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한종에 의한 수릉의 천릉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익종 추존에 의해 묘소도 '연경묘延慶墓'에서 '수릉'으로 격상되었지만, 이는 '묘호墓號'가 '능호陵號'로 바뀐 것일뿐 능소의 개축이나 의물儀物의 추가가 동반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여전히 '묘墓'의 상태였다. 인조仁祖(재위 1623~1649)가 사천私親인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1580~1619)과 계운궁啟運宮의 묘소를 흥경원興慶園·육경원毓慶園을 거쳐 장릉章陵으로 추숭한 뒤³² '능'의 격에 걸맞게석물을 다시 마련한 사례나 정정조正祖(재위 1776~1800)가 사도세자思悼世子(1735~1762)의 '수은묘垂恩墓'를 '영우원永祐園'으로 추숭하고, 다시 '현륭원顯隆園'으로 바꾸어 수원으로 천원하면서 병풍석屛風石·무석인武人石·사수도四獸圖 등 왕릉에 버금가는 의제를 적용한 것과 비교하면 '묘제墓制'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수릉은 추숭 작업의 미완성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후궁 소생인 정원군(정원대원군 → 원종)의 아들로서 선조의 왕통을 직접 계승한 인조나 영조의 장자인 효장세자孝章世子(1719~1728)의 후사로서 왕위에 올랐던 정조와 달리 효명세자와 헌종은 적통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수릉의 묘제를 '능제陵制'에 맞게 바꾸는 것은 친정親政후 5년이 지난 시점의 헌종에게는 자신의 위상과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5

실제로 헌종은 적통에 의한 왕위 계승으로 인해 수릉의 천릉이 이전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릉을 위한 공역이 한창이던 1673년(현종 14)4월 29일 예조에서 영릉寧陵 천릉 당시 대왕대비였던 장렬왕후莊烈王后(1624~1688)의 복제를 전거로 하여 대왕대비, 즉 순원왕후의 복제를 천담복淺淡服으로 품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헌종은 다시 상고할 것을 명하였다. 장렬왕후는 효종이 승하했을 때에 기년복朞年服이었기 때문에 천릉 때에는 천

헌종대 수통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155

^{27. 『}헌종실목』 권13, 헌종 12년 윤5월 15일 기해, "皇考尊諡之孝明二字 卽我皇祖所賜 則百世之徵信 固無以加於此 而至若薦之以隆號 奉之以顯册 封陵而躋廟 靡禮不擧 實惟先王之典我家之故事也 曷足曰揄揚萬一乎哉."

^{28.} 임혜런, 「憲宗初 純元王后 垂簾聽政期의 官人 임용 양상과 權力 關係」, 『역사와 담론』 66(호서사학회, 2013), 213~215쪽.

^{29. 『}헌종실록』 권1, 헌종 즉위년 11월 18일 기묘; 11월 19일 경진.

^{30.} 임혜런 「朝鮮後期 憲宗代 純元王后의 垂簾聽政」, 『한국인물사연구』 3(한국인물사연구회, 2005), 222~224쪽.

^{31.} 인조가 정원대원군 추숭을 위해 처음 '원園'이라는 청호를 사용한 이후 주로 왕의 사천私親 묘소에 '원제國制'가 적용되다 가 고종 대에 들어서야 세자와 세자빈이 '원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때문에 효명세자의 장례 당시에는 세자의 묘소 에 '원제'가 아닌 '묘제墓制'가 적용된 것이다. (김이순, 「조선왕실 무덤-園의 창안과 전개」, 『미술사논단』 41(한국미술연구소, 2015)).

^{32.} 김인숙, 「인조의 원종추숭」, 『역사와 담론』 36(호서사학회, 2003).

^{33. 『}인조실록』 권26, 인조 10년 4월 23일 경인; 『인조실록』 권29, 인조 12년 4월 8일 계해.

^{34.} 이현진, 앞의 논문(2013), 107~109쪽.

^{35.} 이와 관련하여 조선 전기의 천릉 사례는 왕권이 약했다고 평가되는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천릉은 풍수적 인 논란으로만 진행시킬 수 없는 사안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거나 왕권을 현시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인식되었음을 강조한 선행 연구가 주목된다. (신재훈, 「조선 전기 遷陵의 과정과 정치적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58(조선시대사학회, 2011)).

담복으로 한 것이지만, 순원왕후는 익종의 장례 당시 장자長子를 위한 재최삼년복齊衰三年服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천담복이 아닌 시마복總麻服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⁶ 익종이 선왕의 장자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예제를 적용받아야 함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종 예제가 결정되는 과정을 헌종이 직접 챙겨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부친에 대한 헌종의 개인적인 감정도 수릉 천릉을 결심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효명세자가 승하하였을 때 헌종은 불과 4세였기 때문에 평소에 부친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였고, 선원전璿源殿의 익종 어진御眞보다 자신의 모습이 익종을 더욱 닮았다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거울을 볼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등의 기록을 보면 부친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는데," 헌종 초기의 추숭 조치들은 모두 순원왕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헌종 자신이 부친을 위해 한 일은 사실상 아직 없었다. 수릉을 직접 참배한 것마저도 1839년(헌종 5)이 처음이었다. 추측이지만, 그때부터 매년 수릉 배알을 쉬지 않았던 헌종은 이후 친정을 시작하고 5년이 지나 어느 정도의 정치력이 쌓이자 마침내 부친을 위한 효행의 일환으로 천릉을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헌종이 먼저 제안하고 그 결정 과정에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추진된 수릉의 천릉은 실제의 묘제를 '묘'에서 '능'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익종의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곧 헌종 즉위 초기의 익종 추숭과의 연장선상에서 헌종 자신은 물론 왕실 전반의 권위를 높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새로 능을 조성하는 것은 막대한 인력과 물자가 소요되는 큰 공역이었고, 특히 천릉은 당초의 논의와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수릉의 경우 마침 능소의 형국과 관련하여 풍수적인 이설이 나돌고 있었기 때문에 헌종은 이를 표면적인 명분으로 삼아 천릉을 제안하였고, 간심 결과 명당을 이루지 못한다는 데에 의견이 합치됨으로써 실제로 천릉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Ⅲ. 천릉의 절차와 결과

1. 천릉의 진행 과정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의궤는 시작 부분에 오늘날의 작업 일지에 해당하는 「시일時日」(또는 「일록日錄」)항목을 설정하여 도감의 구성이 결정된 날부터 해당 도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끝나는 날까지의 작업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때문에 편년 자료에서는 왕이 직접 관계하였거나 특별한 중요성이 있는 사안만을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의궤의 「시일」을 살펴보면 공역 전체의 절차와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와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의 「시일」 내용에 기반하여 수릉의 천릉을 위한 의절의 마련과 신릉의 조성절차를 그 진행 순서에 따라 살펴보았다.

2월 14일 2품 이상의 시임대신·원임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릉의 천릉이 결정되자 헌종은 관련 의절을 속히 거행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이어서 조인영을 총호사總護使로 임명하고, 1731년 (영조 7) 장릉長陵 천릉 당시의 예에 준하여 도감의 당상관堂上官과 당청郞廳을 차출하도록 명함으로써 천릉도감遷陵都監과 산릉도감山陵都監이 구성되었다. 국장國葬이나 예장禮葬 때에는 일반적으로 빈전을 마련하여 재궁을 모시는 일을 담당하는 빈전도감殯殿都監, 발인하여 장지까지 옮기는 장례의식을 담당하는 국장도감國葬都監 혹은 예장도감禮葬都監, 왕릉의 축조를 담당하는 산릉도감 3도감이 구성되지만, 천릉에는 망자의 시신에 대한 의례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구릉舊陵에서 재궁을 꺼내 신릉新陵으로 옮기는 제반 의절을 담당하는 천릉도감과 신릉을 조성하는 산릉도감가 도감만 설치된 것이다

천릉도감은 총호사 1인, 제조提調 3인, 도청都廳 2인으로 구성되었고, 그 이하에 견여肩擧·대여大擧 등 재궁을 싣는 가마와 지방紙牓을 싣는 가마, 평교자平轎子, 향정자香亭子 등 각종 채여彩擧와 좌구座具를 담당하는 일방一房, 길의장吉儀仗·흉의장凶儀仗 등 행차 때 사용되는 각종 의장과명기明器·제복制服을 담당하는 이방二房, 애책哀册·만장輓章·지방紙牓·지석誌石·표석表石 등의 제작을 담당하는 삼방三房을 중심으로 우비雨備 등 각종 물품을 담당하는 분장흥고分長興庫, 제전祭奠과 계릉啓陵·성빈成殯, 구릉의 옹가瓮家·수도각隧道閣 등의 공사를 담당하는 빈전소殯殿所, 지방소紙牓所·지석소誌石所·표석소表石所·내외별공작內外別工作 등으로 구성되었다. 산릉도감 역시 총호사 1인, 제조 3인, 도청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이하에 봉축을 담당하는 삼물소三物所와 토목작업과 사초莎草 입히기를 담당하는 보토소補土所. 각종 건물을 축조하는 조성소造成所. 석물·석

한종대 수통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157

^{36. 『}헌종실록』 권13, 헌종 12년 4월 29일 갑인, "癸丑則以淺淡服磨鍊 蓋為當初朞服而然也 且在喪禮補編以前也 庚寅服制 旣 為齊衰三年 今番似當有總服 而乃以淺淡服磨鍊 誠甚疑眩矣.",『헌종실록』 권1,「행장」,"大王大妃 於庚寅服長子三年 禮應 服三年者 改葬服總 今與癸丑異 不當引."

^{37. 『}헌종실록』 권1, 「행장」.

^{38. 『}헌종실록』 권6, 헌종 5년 3월 11일 정미.

재를 담당하는 대부석소大浮石所·소부석소小浮石所 외에 노야소爐冶所·수석소輸石所·별공작別工作·분장흥고分長興庫 등이 설치되었고, 그 밖에 능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상지관相地官과 방외간심 인方外看審人들이 포함되었다. 양 도감의 주요 직책의 관원 임명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

[표 1] 천릉도감·산릉도감의 관리 임용 현황

직책 인원		원 천릉도감			산릉도감		
		관직	담당자	비고	관직	담당자	비고
총호사	1	영중추부사	조인영	4.10. 교체	(천릉도감과 동일)		
摠護使		領中樞府事	趙寅永				
		의정부 영의정	권돈인	_			
		議政府 領議政	權敦仁				
제조	3	예조판서	 박영원	2.15. 교체	행판돈녕부사	박기수	_
提調		禮曹判書	朴永元		行判敦寧府事	朴岐壽	
		행지돈녕부사	 서희순		지중추부사	조익영	
		行知敦寧府事	徐憙淳		知中樞府事	趙冀永	
		공조판서	 김좌근	_	 행대호군	조학년	3.19. 이배移邦
		工曹判書	金左根		行大護軍	趙鶴年	
		호조판서	이목연		행대호군	이가우	 3.20. 임명
		戸曹判書	李穆淵		行大護軍	李嘉愚	
도청	2	사복시정	김익문		홍문관교리	서상교	_
都廳		司僕寺正	金益文		弘文館校理	徐相教	
		부사직	김진우		부사과	김병규	
		副司直	金鎭右		副司果	金炳奎	
낭청		장악원첨정	 심의복	삼물소	호조정랑	조병위	일방
郎廳		掌樂院僉正	沈宜復	三物所	戸曹正郎	趙秉緯	一房
		호조정랑	 김기묵	 조성소	 사복시판관	김교성	_
		戸曹正郎	金箕默	造成所	司僕寺判官	金教性	
		예조정랑	 김현복	대부석소	선공감부정	오현갑	이방
		禮曹正郎	金鉉復	大浮石所	繕工監副正	吳顯甲	二房
		부사과	박제소	- 3.4. 교체	예조정랑	조예근	이방
		副司果	朴齊韶		禮曹正郎	趙禮根	二房
			 윤치성	노야소	부사과	김형순	- 3.4. 교체
		司宰監僉正	尹致誠	爐冶所	副司果	金亨淳	
		부사과	 조문화	— 3.17. 교체	 충훈부도사	김재중	 삼방 빈전소
		副司果	趙文和		忠勳府都事	金在重	三房 殯殿所

직책	인원	천릉도감			산릉도감		
		관직	담당자	비고	 관직	담당자	비고
낭청		돈녕부판관	임형진	보토소	의빈부도사	홍종화	삼방 빈전소
郎廳		敦寧府判官	林迥鎮	補土所	儀賓府都事	洪鍾華	三房 殯殿所
		형조좌랑	성원호	소부석소	_		
		刑曹佐郎	成元鎬	小浮石所			
감조관		 부사용	 이종상	삼물소	 부사용	 신석관	 일방
監造官		副司勇	李鍾祥	三物所	副司勇	申錫寬	一房
		전참봉	 이 종 상	 조성소	 장흥고봉사	 김준근	_
		前參奉	李鍾祥	造成所	長興庫奉事	金俊根	
					종묘서부봉사	이인정	
					宗廟署副奉事	李寅正	
		장원서봉사	엄석겸	대부석소	부사용	김재헌	이방
		掌苑署奉事	嚴錫謙	大浮石所	副司勇	金在獻	二房
		부사용	송달수	노야소	부사용	이상종	
		副司勇	宋達洙	爐冶所	副司勇	李象宗	
				3.11. 교체	광흥창봉사	 이용소	 삼방
					廣興倉奉事	李龍沼	三房
		부사용	 정철용	_	전참봉	 권명규	
		副司勇	鄭喆容		前參奉	權命奎	
		부사용	 박경수	보토소	봉상시정	 김규서	 지방소
		副司勇	朴京壽	補土所	奉常寺正	金圭瑞	紙牓所
					봉상시봉사	박현해	지석소
					奉常寺奉事	朴賢楷	誌石所
		부사용	심교진	_	봉상시부봉사	 백 용 주	 표석소
		副司勇	沈教鎭		奉常寺副奉事	白龍周	表石所
		돈녕부참봉	이조흠	 소부석소	 부사용	 유정동	 빈전소
		敦寧府參奉	李祖欽	小浮石所	副司勇	柳鼎東	殯殿所
		부사용	 정재기	 수석소	 선공감감역	 홍일순	 내별공작
		副司勇	鄭在箕	輸石所	繕工監監役	洪一純	内別工作
					선공감감역	 조병정	 외별공작
					繕工監監役	趙秉正	外別工作

[※]천릉도감 현황: 「수릉천봉도감의궤」1, 「좌목座目」 및 3~7 각 소所 「좌목」 참조 산릉도감 현황: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상. 「좌목」 및 하 각 소 「좌목」 참조

2월 15일 양 도감이 제용감濟用監에서 회동하고 바로 다음 날 산릉도감에서 신릉의 능소 선택을 위한 간심을 시작하였다. 먼저 도성의 서쪽으로 창릉昌陵·희릉禧陵의 좌강左岡, 명릉明陵·영릉永陵 일대, 고양高陽 읍내를 간심하고, 24일에는 동남쪽으로 휘경원徽慶園·헌릉獻陵 일대, 숭릉崇陵 우강右岡, 용마봉龍馬峯 아래, 영릉英陵 구기舊基, 용인과 수원 일대를 간심한 후 후보지를 희릉·창릉 좌강, 휘경원·헌릉 일대, 영릉 구기, 용마봉 아래로 좁혀서 29일에 재간심을 시행하였다.

158 현종대 수릉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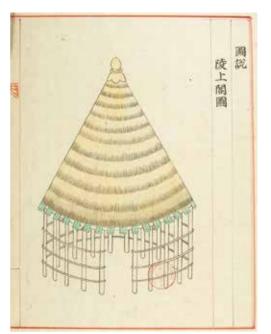
도1, 『여지도』, 「경기도 양주목」, 〈수릉의 구릉과 신릉 위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워



도2.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 6, 「빈전소의궤」, 〈옹가〉(수릉 구릉)

산릉도감에서 간심 결과를 보고한 별단을 바탕으로 3월 2일 총호사 조인영 이하 신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릉의 능소가 용마봉 아래 계좌癸坐로 결정되자 3월 7일 삼간심을 시행하고 봉표對標를 세웠다. 용마봉은 현재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과 중곡동에 걸쳐 있는 산으로 아차산의 최고봉이다. 구릉이 위치한 천장산天藏山에서는 10리 정도 떨어져 당일에 재궁을 옮기고 환궁할 수 있는 거리였다^{도1}

신릉의 능소가 확정되자 3월 8일에는 빈청회의實廳會議에서 각종 공역과 의례를 거행할 날짜를 정하였고, 10일부터 천릉도감이 본격적인 공역을 시작하면서 이후로는 구릉과 신릉에서 동시에 공역이 진행되었다. 3월 18일 신릉에서 후토제后土祭를 지낸 후 풀베기와 흙 파기를 시작하였고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정자각과 재실, 비각의 기초 공사가 이루어졌다. 4월 16일에는 구릉의 봉분 위에 옹가甕家를 설치하고 정자각에 첨보각添補閣을 덧붙였다. 52 첨보각은 찬궁橫宮을 봉안하는 빈전 건물이 '정丁'자형을 갖추도록 덧대는 가설물인데, 영우원 천원 당시에 찬궁을 향대청香大廳에 봉안하면서 첨보각을 설치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찬궁을 정자각에 봉안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정자각의 월랑月廊과 전석縣石을 신릉으로 옮기기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첨보각을 덧대는 작업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도3,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하, 「삼물소의궤」〈옹가〉(수 릉 신릉)



도4.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하,「조성소의궤」,〈정자각〉(수 릉 신릉)

4월 18일 구릉을 여는 의례인 계릉의啓陵儀가 설행된 후 재사용할 석물石物들이 속속 신릉으로 옮겨졌다. 이 무렵 신릉에서는 재실, 수도각, 비각 등 목조 건물의 조영이 진행되어 4월 28일에 옹가가 먼저 완성되었고, 5월 8일에 정자각의 단청 작업을 시작하였다. 도3·4 5월 4일부터 28일까지는 다른 능에 비해 크기가 더 컸던 혼유석魂遊石을 알맞은 크기로 깎아내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5월 18일에 정자각의 좌우 첨계석簷階石·월대석月臺石의 배설排設을 마쳤으며, 19일 마침내 묘혈에 금정기金井機를 설치하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였다. 5월 24일 난간석의 일부인 동자석주童 子石柱와 난간석주欄干石柱 아래에 놓이는 면전석面磚石과 우전석隅磚石의 배설을 시작으로 25일에 정자각 안팎과 계단 아래에 전석 배설이 완료되었고, 29일에는 문석인文人石·양석羊石·호석虎石·마석馬石 등이 배설되었다.

그 사이 천릉도감에서는 4월 27일에 정자각의 상량문, 5월 10일에 애책문, 13일과 18일에 지석과 표석 후면에 새길 내용을 지어 올리고, 24일에는 〈발인반차도發朝斑次圖〉를 제작하여 올렸다.^{도5} 25일과 28일에는 총 3차례에 걸쳐 발인 행차를 연습하기도 하였다.

윤5월 4일에 신릉의 구덩이 깊이가 6척에 이르자 이어서 바닥에 석회[지회地灰]를 쌓기 시작하였다. 다음 날 찬궁을 배설하였으며, 6일에는 향어로香御路의 계단을 축조하고 구릉에는 없었던 무석인

헌종대 수통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161

^{39.} 이현진, 앞의 논문(2013), 100쪽.

^{40.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상, 「전교」, 병오 3월 초3일, "寅永曰 依經法 當用丁字閣 而丁字閣欑宮排設後 石儀當退出 而 至於丁字 閣月廊甎石皆退出 以薄木補之矣"



도5.『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3,「일방의궤」,〈발인반차도〉중 대여 부분

을 배치하였다. 8일에 외재궁外梓宮을 내린 후 3면에 방회傍灰를 쌓고, 9일에는 금정기를 철거하고 정 광正壙 위쪽에 삼물三物을 복부형覆釜形으로 채웠다. 11일에 반월분半月墳의 조성을 마치고 12일에 뒤 쪽의 난간석을 배설하였으며, 13일에는 퇴광退墳에 금정기를 설치하고 구덩이를 팠다.

구릉에서는 윤5월 11일 묘시卯時에 재궁을 꺼내 정자각에 모셨다. 이날부터 14일까지 4일에 걸쳐 재궁에 총 5차례의 가칠을 한 후 15일에 헌종이 친림한 가운데 망전望冥과 진향의進香儀를 행하였는데, 이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종이 직접 향을 올렸으며, 재궁에 '상上'자를 쓰는 의례도

직접 행하였다. 다음 날 재궁을 옮기기 위해 싸고 묶는 결과結裹를 행하였고, 18일에 찬궁을 열고 (啓攢宮), 19일에 견전遺奠을 올린 후 인시寅時에 재궁을 실은 대여大擧가 구릉을 출발하였다.

대여가 신릉에 도착하자 정자각에 빈소를 차리고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20일에는 조전朝奠과 조상식朝上食을 때에 맞춰 올린 후 오시午時에 재궁을 안치한 찬궁을 열고[啓欑宮] 주다례畫茶禮와 천전遷奠을 올렸다. 이어서 영여靈擧를 받들어 능 위로 올라가 신시申時에 재궁을 현궁玄宮에 내린 후(下玄宮) 현궁을 봉하고 격회隔灰를 쌓았으며, 우제虞祭를 설행한 후 지방紙牓을 묻었다. 이로써

현종대 수릉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163

현궁을 옮기는 절차가 마무리되자 헌종은 당일 환궁하였고, 천릉도감의 공역도 마무리되었다.

21일 산릉도감에서는 능역의 마무리를 위해 금정기에 이르기까지 흙을 메우고(限金井) 천회天 灰를 덧발랐으며, 퇴광 역시 복부형으로 다듬은 후 전체 봉분을 합원형合圓形으로 쌓고 신·구지석 과 좌향석坐向石을 안배하였다. 23일에는 앞쪽의 난간석을 모두 세운 후 옹가를 철거하고 혼유석, 장명등, 망주석을 순서대로 세웠다. 마지막으로 25일에 안릉전安陵奠을 설행함으로써 약 4개월에 걸친 천릉의 공역이 완료되었다. 부표

2. '능제'의 적용과 그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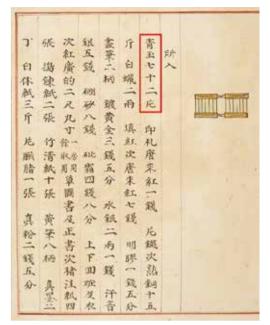
다음으로 천릉의 결과 구릉과 신릉의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신릉의 각종 의절에 대해서는 그 규격이나 재질 등의 상세한 내용이 앞서의 외규장각 의궤의 『익종수릉천 봉도감의궤』와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에 실려 있으며, 더불어 구릉을 조성할 당시, 즉 효명세자의 예장 당시의 과정을 기록한 『효명세자예장도감의궤』와 『효명세자연경묘묘소도감의궤』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전하고 있어 이들 자료의 비교가 가능하다. 특히 여기에 수록된 도설圖說은 대상물의 모습을 그림으로 직접 보여줌으로써 형태나 조형 비율, 색감 등 설명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밀한 부분까지도 전달하고 있어 천릉 전후의 변화 모습을 살피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더군다나 수릉은 철종대에 한 번 더 천릉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능역에서 헌종 대천릉 전후의 모습을 유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궤 자료의 활용 가치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첫 번째로 비교할 대상은 애책哀冊이다. 구릉에 매입되었던 애책은 익종이 추숭되기 전 세자 신분으로 사망하였을 때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추존으로 인해 존격이 달라진 후에는 그 내용 또 한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3월 16일 담당관들의 일치된 청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책문을 다시 짓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판부사^{判府事}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애책문에는 마땅히 위호^{位號}를 적어야 하니, 지금 어찌 구본^{舊本}을 그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신해년(1731, 장릉 천릉)과 신사년(1821, 건릉 천릉)에 다만 천릉 내용을 덧붙 이기만 하였던 사례와는 사체^{事體}가 다르니, 고쳐 짓는 것이 의절에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중 략)… 판부사 김도희^{金道喜}가 아뢰기를, "수릉의 애책문은 추존하기 이전에 찬술한 것입니다. 추존한 이후 에는 새로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천릉을 하면서 어찌 구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체를



도6-1. 「효명세자예장도감의궤」, 「삼방의궤」, 〈효명세자 애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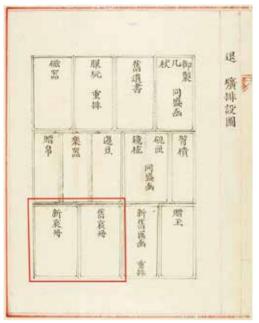
도6-2.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 5, 「삼방의궤」, 〈익종 애책〉

헤아리고 전례樂體를 참작하여 고쳐 지어 올리면 다시 논란이 없을 것이니, 널리 물으신 후 처분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우의정 박회수^{林鳴壽}가 아뢰기를, "신해년과 신사년의 애책문은 구본을 사용하되 다만 추기^{造記}만 덧붙였으니, 구본의 내용 중에 고쳐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땅히 위호를 적어야해서 사체가 전과 같지 않으니, 고쳐 지어 올리는 것이 전례에 부합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잘 알았다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 애책문을 고쳐 짓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애책문은 그 형식상 대상자의 위호를 서두에 밝히게 되어있기 때문에 효명세자 승하 당시의 애책문을 그대로 신릉에 묻을 수 없으니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숭 전후의 위상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달라진 위상에 맞추어 격식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효명세자 장례 당시의 애책문은 "유세차維歲次 경인庚寅(1830) 5월 정사 삭丁巳朔 초6월 임술壬戌, 왕세자王世子께서 창덕궁昌德宮 희정당熙政堂에서 홍서하셨습니다. 환경 전歡慶殿에 옮겨 모셨다가 금년 가을 8월 병술삭內戌朔 초4일 기축근표에 연경묘延慶墓로 영영 옮

현종대 수통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165

^{41.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1, 「승전」, 병오 3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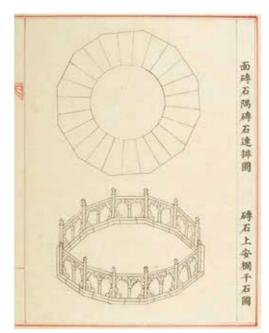


도7.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하,「대부석소의궤」,〈퇴광 배설도〉(수릉 신릉)

기니, 곧 예禮에 따른 것입니다. ¹¹²라는 구절로 시작함으로써 '왕세자'의 '초상初喪'임을 명시하고 있는 데에 비해 새로 지은 애책문은 "유세 차 병오년(1846) 윤5월 18일 임인王寅, 우리 익 종돈문현무인의효명대왕翼宗敦文顯武仁懿孝明 大王의 재궁을 양주 수릉의 구침舊寢에서부터 20일 갑진甲辰에 용마봉龍馬峯 아래 좌계坐癸 로 천릉하니, 곧 예에 따른 것입니다. ¹¹³라고 하여 위호가 추존호로 바뀌었고 사안도 능침을 옮기는 의례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애 책의 재질 또한 기존에는 왕세자의 격에 맞추 어 청죽靑竹을 사용하였던 것에 비하여 새로 제작한 애책은 국왕의 위상에 걸맞게 청옥靑 표으로 바뀌어 적용되었고 ⁵⁶ 퇴광退墻에 배설

할 때에는 신·구애책을 함께 납입하였다.^{도7}

석물 또한 구릉에는 없던 난간석과 무석인이 추가되고, 양석羊石과 호석虎石, 마석馬石의 수량이 2배로 늘어났다. 난간석은 봉분을 보호하기 위해 봉분 아랫면에 대는 병풍석을 둘러싼 난간 형태의 석재로서 기둥에 해당하는 난간석주欄干石柱와 동자석주童子石柱, 그리고 석주 사이를 가로로 있는 죽석竹石으로 구성된다. 왕의 능인 경우 대체로 난간석이 설치되었으나, "조현세자묘소도 감의궤昭顯世子墓所都監儀軌』나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 등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자의 묘소에는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효명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연경묘 조성 당시에는 난간석이 제작되지 않았다가 이번 천릉 때에 석주의 지대석이되는 면전석面磚石·우전석隅磚石과 더불어 석주·동자석주·죽석 일체가 모두 설치된 것이다. 58 이는 다른 추존왕이나 복위된 왕의 경우와도 구별되는 모습이다. 난간석을 추가로 시설하기 위해서



도8.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 하, 「대부석소의궤」, 〈전석과 난간석 배설도〉



도9.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하,「대부석소의궤」〈무석 인〉(수릉 신릉)

는 봉분을 파서 석물을 배설할 부분의 지반을 다져야 하기 때문에 현궁과 봉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 이에 추존이나 복위 후 그 무덤을 가봉加封하더라도 난간석이나 병풍석은 대체로 추가되지 않았다. 15 이와 달리 수릉은 연경묘 상태에서 가봉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 능을 조성하는 천릉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왕릉의 격에 맞추어 난간석을 시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병풍석은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는 현종 및 정조대 이후의 수교垂教에 따른 것이다. 병풍석은 이미 조선 전기부터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다가 현종 때 효종의 능인 영릉寧陵을 옮기면서부터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1673년(현종 14), 영릉 천릉을 단행할 때 병풍석이 석역石役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보기에만 아름다울 뿐 봉분의 보호에는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현종이 수용하면서 이후로는 왕릉 조성에 병풍석의 설치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예외적으로 정조가 현륭원顯隆園을 조성할 때 장릉長陵 천릉 당시 기존의 병풍석을 옮겨 재사용한 전례를 변용하여 봉분에 병풍석을 설치하였고,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능인 홍

헌종대 수릉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167

^{42. 『}효명세자예장도감의궤』3,「삼방의궤三房儀軌・애책是哀册文」, "維歲次庚寅五月丁巳朔初六月壬戌 王世子薨逝于昌德宮之 熙政堂 移嬪于歡慶點 以是年秋八月丙戌朔初四日己丑 永遷于延慶墓 禮也."

^{43.『}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5,「애책문」,"維歲次丙午閏五月十八日壬寅 我翼宗敦文顯武仁懿孝明大王梓宮 啓自楊州綏陵舊寢 以二十日甲辰 遷奉于州之龍馬峯下坐癸之原 禮也."

^{44.}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 석물 현황표」, 『조선왕릉 석물조각사Ⅱ-석수 등 기타석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452~454쪽.

^{45.} 정해득, 『조선 왕릉제도 연구』(신구문화사, 2013), 157쪽.

^{46.} 이희중, 앞의 논문(2001), 3~4쪽.



도10-1. 『효명세자연경묘묘소도감의궤』하,「대부석소의궤」, 〈문석인〉(수름 구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10-2.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하,「대부석소의궤」, 〈문석인〉(수릉 신릉)



도11-1. 「효명세자연경묘묘소도감의궤」하,「대부석소의궤」, 〈양석〉(수릉 구릉),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11-2.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하,「대부석소의궤」, 〈양석〉(수릉 신릉)



도12-1. 『효명세자연경묘묘소도감의궤』하,「대부석소의궤」, 〈호석〉(수릉 구릉),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12-2.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하,「대부석소의궤」,〈호석〉(수릉 신릉)



도13-1. 『효명세자연경묘묘소도감의궤』하,「대부석소의궤」、 〈마석〉(수릉 구릉),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13-2.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하,「대부석소의궤」, 〈마석〉(수릉 신릉)

헌종대 수릉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169

릉洪陵과 순종황제·순명황후·순정황후의 능인 유릉裕陵에 병풍석이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고종황 제과 순종황제의 능은 대한제국의 황제릉으로서 조성된 것으로 기존의 왕릉과는 위계를 달리 한 것이고, 47 정조 역시 이후로는 병풍석을 다시 사용하지 말도록 명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릉에 병풍석이 제외된 것은 현종대 이래의 변경된 의제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석인 역시 당초 연경묘에는 배설되지 않았던 석물이다. 조선 왕릉에는 문석인과 무석인이 1 쌍씩 마주보게 배설되는데, 이는 국상國喪 때의 문무백관文武百官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한다.

중계^{中階}의 정중앙에 북쪽 가까이 장명등長明燈을 세우고, 좌우에 문석인^{文石人} 1쌍과 석마^{石馬} 1쌍을 배설한다[문석인의 남쪽 약간 뒤에 세운다]. 하계下階의 좌우에 무석인^{武石人} 1쌍과 석마 1쌍을 세운다[무석인의 남쪽 약간 뒤에 세운다]. 모두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마주보게 한다[소상^小豊인 경우 초지대석^{初地臺石}, 난 간欄干, 하지대석下地臺石, 우석陽石, 석주石柱, 동자석주童子石柱, 죽석竹石, 무석인과 무석인 남쪽의 석마는 모두배설하지 않는다].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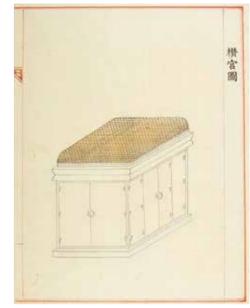
이에 따르면 '능陵'에는 문석인과 무석인이 모두 배설되지만, '원園'이나 '묘墓'에는 문석인만 배설되어 무석인의 유무가 '능'과 '원'·'묘'의 제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⁴⁹ 이러한 규정에 따라 당초 연경묘에는 1쌍의 문석인만 세웠기 때문에 수릉 천릉시에는 높이 8척 3촌, 너비 2척 7촌, 두께 2척 4촌 크기의 무석인 1쌍을 새로 제작하여 추가하였고, 문석인은 연경묘의 것을 그대로 이전하여 배설하였다.^{도9·10}

양석과 호석, 마석도 기존에 2기씩 총 6기였던 것을 2배로 늘려서 4기씩 배설하였다. 석수石獸의 수량이 2배로 늘어난 것 역시 '묘제'와 '능제'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국조상례보편』에 차등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답 안쪽에 석양^{石‡} 4기(소상의 경우 2기)를 세우는데, 동쪽과 서쪽에 각각 2기씩 배설한다(소상의 경우 각각 1기씩), 석호^{石虎}도 4기를 세우는데, 북쪽에 2기, 동쪽과 서쪽에 각각 1기씩 배설한다(소상의 경우 석호 2기 모두 북쪽의 석양 사이에 배설한다). 모두 바깥쪽을 향하게 한다.⁵⁰

이처럼 왕릉에는 석양, 석호를 각각 4기씩, 원·묘에는 각각 2기씩 설치하게 함으로써 묘소 의 위격에 따라 석물의 의제를 차등 있게 적용하 고 있다.⁵¹

신릉의 석수石獸는 각각의 종마다 2기는 연경묘의 것을 재사용하고 부족한 2기만 새로 제작하였는데, 구舊 양석은 높이 2척 5촌, 길이 4척 5촌, 폭 1척 4촌인 것에 비해 신新 양석은 높이 3척, 길이 4척 7촌, 폭 1척 6촌으로, 구 호석은 높이 3척 1촌, 길이 1척 9촌, 폭 1척 6촌인데 비해신 호석은 높이 4척 4촌, 길이 3척 3촌, 폭 1척 5



도14.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하, 「조성소의궤」, 〈찬궁〉 (수릉 신릉)

촌으로, 구마석은 높이 3척 1촌, 길이 5척 4촌, 폭 1척 6촌인데 비해 신 마석은 길이 3척 5촌, 높이 5척, 폭 1척 7촌으로 새로 추가된 석수의 크기가 기존의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제작되었다.^{도11·12·13}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찬궁橫宮에 사수도四獸圖가 추가된 점이다. 사수도는 시신을 지키는 의미로 청룡靑龍·백호白虎·주작朱雀·현무玄武 네 마리의 동물을 찬궁의 안쪽 사방 벽면에 방위에 맞추어 붙였던 그림이다. 국왕이나 왕후의 국장에서는 사수도를 붙이는 것이 통례이지만, 왕세자의 경우 국장과 차등을 두기 위해 사수도를 그릴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1752년(영조 28) 의소세손懿昭世孫(1750~1752)의 예장에서 주작·백호·현무를 그린 종이를 찬궁에 붙였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예장에는 사수를 그리지 않는다는 것이 『국조상례보편』에 규정되어 있어서 효명세자의 장례 당시에도 사수도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릉 천릉때에는 효명세자의 존격이 이미 왕으로 추존된 이후이기 때문에 국장의 규정에 따라 사수도가 추가된 것이다.

헌종대 수통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171

^{47.} 차문성, 「인조舊長陵의 위치비정과 석물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 44(한국고전번역원, 2014), 57쪽.

^{48. 『}국圣상례보편』 권1,「치장治葬」, "中階正中 近北設長明燈 左右文石人各一 石馬各一[在文石人之南差後] 下階左右 立武石 人各一 又立石馬各一[在武石人之南差後] 俱東西相對[小喪則初地臺石 欄干 下地臺石 隅石 石柱 童子石柱 竹石 武石人 及武石南石馬 并不設]."

^{49.} 김이순, 「조선왕릉 석물조각 개관」, 『조선왕릉 석물조각사 I -석인·비석』(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58~59쪽.

^{50. 『}국圣상례보편』 권1, 「치장」, "北墻下設二階 墻內設石羊四[小喪則二] 東西各二[小喪則各一] 石虎四 北二東西各一[小喪則石虎二 皆北在石羊之間] 皆外向南設."

^{51.} 김은선, 「조선왕릉의 석수: 석양, 석호, 석마」, 『조선왕릉 석물조각사Ⅱ-석수 등 기타석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112쪽.

^{52.} 이현진, 앞의 책(2013), 257쪽.

^{53.} 이현진, 위의 책(2013), 257~258쪽.

수릉의 사수도는 찬궁의 내부 4면에 그려졌는데,^{도14} 그 도상을 보면 1757년(영조 33)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貞聖王后弘陵山陵都監儀軌』이후의 도상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찬궁 사수도는 『국조오례의서례國朝伍禮儀序例』의 도설에 기반한 도상이 임진왜란 이후까지 이어지다가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부터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청룡은 구불거리는 몸의 표현이 'J'자 형태에서 'S'자 형태로 바뀌고, 백호는 불꽃 모양의 서기瑞氣가 사라져 평범한호랑이의 모습으로 바뀌었으며, 주작은 서 있는 삼두삼족三頭三足의 모습에서 날아가는 붉은 참새의 모습으로, 현무는 거북과 뱀이 뒤엉킨 형태로 입에서 영기靈氣를 토하는 모습에서 뱀이 사라진 거북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도상은 이후 순종의 유릉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5년 도15수 등의 찬궁에 그려진 사수도 역시 현무의 입에서 나오는 영기가 표현된 점을 제외하면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의 도설과 거의 차이가 없어서 이러한 경향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16

이상의 사례들은 단편적인 예시이기는 하지만, 청옥제靑玉制 애책, 난간석과 무석인, 종류마다 4기씩 배설한 석수, 찬궁에 그려 넣은 사수도는 모두 왕의 상례인 대상大喪에만 적용되는 의제로 서 묘소의 위격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요소이기 때문에 천릉을 통해 수릉에 적용된 의제가 기



도15. 사수도 도상의 변화, (본 총서의 명세라, 「조선시대 흉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표의 1번, 19번 항목 참조)



도16.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하, 「조성소의궤」, 〈사수도〉(수릉 신릉)

존의 '묘제'에서 '능제'로 격상되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세심히 살피지 못하였으나, 이들 의물儀物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갖는 다른 의물들이나 의궤 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헌종대 수릉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173

^{54.} 김이순, 「조선왕릉 석물조각과 문헌기록」, 『조선왕릉 석물조각사II-석수 등 기타석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33쪽.

실제의 의식 내용 등 기타 의제에도 위격의 격상이 적용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기록상에 나타난 풍수상의 문제가 천릉이라는 실질적인 사안으로 직접 연결되기에는 그 심각성이나 필연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앞서 지적하였는데, 의궤를 통해 확인한 실제의 공역 내용이 애책문을 고쳐 짓는 것에서부터 난간석, 무석인 등 작업 부담이 큰 석물들까지 새로 제작할 정도의규모였다는 것은 그러한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묘역의 위격에 변동이 없어서 능역을 옮기더라도 각종 의물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일반적인 천릉의 경우와 달리, 수릉의 천릉은 세자에서 추존왕으로의 존격 변동으로 인해 어쩌면 새로 장례를 치르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전반적인의제 변경과 적지 않은 인력 및 비용의 조달 문제가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예상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감안하고도 천릉을 단행한 데에는 풍수적인 이설들보다 더중요한 이유,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실의 적통 후계자 익종, 나아가 그의 적장자로서 왕위에오른 헌종 자신과 왕실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수릉이 이미 '능'으로 격상된 만큼 새로 능을 조성할 때에는 '능제'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능을 옮기는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찬실橫室이나 애책 등 봉분 아래에 묻혀있는 의물들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의제의 격상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추존왕으로서의 익종의 위상에 온전히 부합하는 의제를 갖추고자 한 현종의 노력이 수릉의 천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릉이 천릉으로 인해 '능'으로서의 위격을 갖추게 되면서 헌종 즉위년부터 시작된 익종에 대한 추숭 사업이 명실상부하게 완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IV. 맺음말

수릉의 묘혈이 풍수상 길지가 아니라는 외간의 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헌종의 제안으로 시작된 천릉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중론에도 불구하고 헌종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공역을 실행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그 이유로 거론된 풍수 문제가 곧장 능역을 옮겨야 할 만큼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보다는 대리청정 중에 승하한 효명세자, 즉 익종에 대한 추숭 사업의 완성이라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헌종이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순원왕후가 대비의 자격으로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헌종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왕실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효명세자를 익종으로 추존하고 '연경묘'를 '수릉'으로 추봉하는 일련의 추숭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능역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는 가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부친에 대한 효행이라는 의미도 더해져 현종은 친정親政 6년차에 접어드는 1846년(현종 13) 수릉의 천릉을 단행하였고, 이를 통해 능역의 석물에서부터 퇴광에 납입되는 의물과 찬실의 사수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묘제를 '능'의 위격에 맞출 수 있었던 것이다. 즉위 초기의 추숭 사업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던 묘제의 격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익종 추숭의 의절儀節이 완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천릉·천원을 다룬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이 주로 조선 전기와 17·18세기의 사례에 집중하였던 것에 비하여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았던 19세기 헌종대 천릉의 과정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규장각 의궤의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와 『익종수릉천봉산릉도감의궤』를 주요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일부이나마외규장각 의궤 자료의 내용 분석을 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종 대에 수릉을 현재의위치로 재차 천릉한 과정까지 다루지는 못하였으며, 헌종 이전의 다른 천릉 사례들과 면밀히 비교함으로써 그 상관관계를 살피는 작업을 과제로 남긴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헌종대의 정국에 대해 기존의 일반적인 인식은 순조대부터 시작된 세도정치의 극성기로서 외 척세력의 전횡과 실권이 없는 왕이라는 도식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러나 수릉의 천릉 과정을 보면 본론에서 살핀 바와 같이 왕실의 권위를 지키고 왕위 계승의 정통 성을 강조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명분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의절 내용에서는 예전禮典과 전례前例라고 하는 종래의 국정 운영 원리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 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수릉의 천릉은 단편적이고 특수한 하나의 사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바 탕으로 헌종 대의 정치 전반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헌종 대의 정치 성격을 살 피는 데에 하나의 시사점은 줄 수 있을 것이다.

[부표] 산릉도감 · 천릉도감 시일時日

월	일	산릉도감	천릉도감
2	14	천릉도감遷陵都監 · 산릉도감山陵都監 당랑堂郎 차출	
	15	제용감濟用監에서 도감都監 회동	
	16	서도 초간심 西道 初看審	
	24	동남도 초간심 東南道 初看審	
	29	재간심再看審	
3	2	용마봉龍馬峯 아래로 결정	
	4	혈처穴處를 점침 / 민가民家 철훼撤毀	

헌종대 수통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175

월	일	산릉도감	천릉도감
3	7	삼간심三看審 / 봉표封標	
	8	빈청회의賓廳會議에서 택일擇日	
	10		형조刑曹·공조工曹·사역원司譯院에 도감都監 설치 공역 시작
	12	화소火巢 / 정계定界	
	17	도감都監 당랑堂郎 이하 관원 능소陵所 도착	
	18	후토제后土祭 / 공사 시작(풀베기 흙파기)	
	21	개영역開塋域 / 부토浮土 제거	
	24	정자각丁字閣 · 재실齋室 터 잡고 흙 파기	
	26	능陵 동구洞□와 어로御路 좌우에 버드나무 식목	
	29	정자각丁字閣 기초 결구 / 패각牌閣 터 굴토掘土	
4	4	패각牌閣·재실齋室 기초 결구	
	6	(우천으로 작업 중단)	
	9	왕이 산릉山陵에 행차幸行 / 친간심親看審 패장牌將 · 공장工匠 등에게 호궤犒饋	
	12	나인가가內人假家 공사 시작	
	16	재실齋室 정초定礎	옹가甕家와 정자각丁字閣 첨보添補 제작
	17	삼제조三提調가 구릉舊陵 도착 / 구릉를 열 때 수복受服	
	18		계구릉啓舊陵
	19	정자각丁字閣 정초定礎 / 각종 석물石物 운입運入	
	21	재실齋室 입주立柱 / 용호龍虎 안 쪽에 피사被莎	
	24	월대석月臺石·마석馬石 운입運入	
	25	옹가甕家 제작 시작	
	27	재실齋室 상량上樑/문석文石 운입運入	정자각丁字閣 상량문上樑文 초도서草圖書 입계入啓
	28	용가甕家 설치 완료 / 수도각隧道閣 공사 시작 정자각丁字閣 입주立柱 / 양석羊石·호석虎石 운입運入	
	29	수도각隊道閣 공사 완료 전석磚石을 차례로 운입運入	
5	2	재실齋室·향대청香大廳 개와蓋瓦 혼유석魂遊石 운입運入	
	4	혼유석魂遊石 가는 작업 시작	
	7	정자각丁字閣 상량上樑, 괘연掛椽 / 개판蓋板 배설	
	8	정자각丁字閣 개와蓋瓦, 단청丹靑 시작 월대석月臺石, 계석階石 배설	_
	10		
	12	정자각丁字閣 개와蓋瓦/양상樑上도회塗灰 문석文石·양석羊石·호석虎石·마석馬石.	
		장명등석長明燈石, 농대가첨석籠臺加簷石 운입運入	
	13		

월	일	산릉도감	천릉도감
5	14	정자각丁字閣에 중방中防 축조 / 비각碑閣 정초定礎 수라간水剌間 · 수복방守僕房 공사 시작	
	17	혼유석魂遊石 감삭減削	
	18	정자각丁字閣 좌우첨계석左右簷階石 · 월대석月臺石 배설 완료 / 방벽傍壁, 재실齋室 · 향대청방벽香大廳傍壁 도기塗壁	표석表石 후면後面의 초도서草圖書 입계入啓
	19	개금정開金井 / 구덩이를 팜	
	20	정자각丁字閣 단청丹靑 완료 석난간石欄干ㆍ하전석下磚石의 기초 축조	
	22		각방各房 공역工役 완료
	23	석난간石欄干·하전석下磚石 배설	
	24	면우전석面隅磚石 배설	발인반차도發靷班次圖 모사摹寫 입계入啓
	25	정자각丁字閣 안팎에 방전方甎 배설 좌우 계단 아래에 전석磚石 배설 삼문三門과 대홍전문大紅箭門 설치	발인 1차 습의習儀
	27	면우전석面隅磚石 배설 완료 / 곡장曲墻 기초 구성	
	28	곡장曲墻 공사 시작 / 혼유석魂遊石 다듬기 완료	발인 2차 습의習儀 및 3차 습의習儀
	29	문석文石·양羊·호虎·마석馬石, 초계석初階石 배설 정자각丁字閣 좌우 계단 앞뜰과 홍살문 안쪽에 피사被莎	
윤5	3	별군직別軍職 허습許熠이 약물藥物을 가지고 위로 내방	
	4	천광穿壙(6尺) 완료 / 지회地灰 쌓기 시작	
	5	지회地灰(3寸) 완료 / 찬궁欑宮 배설	
	6	정자각丁字閣·재실齋室 도배 향어로香御路 계단 축조 / 무석武石 배설	
	7	곡장曲墻 개와蓋瓦 / 수라간水剌間·수복방守僕房 공사 완료 / 외재궁外梓宮 능소陵所 도착, 수도각隊道閣에 봉안	예비預備 내재궁內梓宮과 외재궁外梓宮 배설
	8	외재궁外梓宮을 내리고 삼면三面에 방회傍灰를 쌓음 삼면방회三面傍灰 완료 / 횡대판橫臺板 상면上面 축회築灰 시작 / 정자각丁字閣 공사 완료 / 노렴蘆簾 배설	각 항項 의주儀註 정서正書 입계入啓
	9	금정기金井機 철거 / 전면前面에 편결編結 배설 정광正壙 복부형覆釜形 공사 시작 표석表石 · 지석誌石 능소陵所 도착 표석表石은 비각碑閣 자리 근처에 봉안하고 유장油帳 설치 / 지석誌石은 향대청香大廳에 봉안	
	10	반월분半月墳 축토築土 시작 / 농대석籠臺石 배설 표석表石을 세움 / 가첨석加簷石 안치 비각碑閣 입주立柱 상량上樑, 괘연掛椽	광중명정擴中銘旌과 행로명정行路銘旌 서사書寫 정자각丁字閣 행차 습의習儀
	11	반월분半月墳 공사 완료 / 피사被莎	지방紙牓을 지음 / 현궁玄宮을 꺼내 정자각丁字閣에 성빈成殯 / 재궁梓宮에 1차 가칠加漆

일	산릉도감	천릉도감
12	후면後面 난간석欄干石 배설	재궁梓宮 2차 가칠加漆
	재실齊室 · 향대청香大廳 공사 완료	지문誌文과 애책문哀册文을 작첩作貼
	지각碑閣 개외蓋瓦, 단청丹靑	표석음기表石陰記를 족자로 만들어[粧簇] 입계入험
	구지석舊誌石·어제궤御製樻·애책궤哀册樻	
	능소陵所 도착, 향대청香大廳에 봉안	
13		재궁梓宮 3차 가칠加漆 / 애책哀册 내입內入
	재계석再階石 배치 / 비각碑閣의 들보 위에 회를 바름	재궁梓宮 4차 가칠加漆
14	퇴광退壙 파는 공사를 마친 후 다듬기	재궁梓宮 5차 가칠加漆
	곡장曲墻 안쪽에 피초被莎	애책내출哀册內出 후 정자각丁字閣에 봉안
	퇴광退壙에 지회地灰를 쌓은 후 임시로 우판隅板을 내림 정	
	식으로 우판隅板을 내림 / 가칠加漆 시작	
15		재궁서상자梓宮書上字
16	퇴광退壙 위에 구봉기鉤捧機를 세움	재궁결과梓宮結裹
	녹로轆轤 설치 / 비각碑閣 공사 완료	
17	오도五度를 맞추어 우판隅板을 정식으로 내림	
	가칠加漆 완료	
18		계찬궁啓欑宮
19	대여大擧가 산릉山陵 정자각丁字閣에 도착 / 성빈成殯	견전遣奠 / 대여大擧 출발
	산릉山陵에 올라가는 의례 연습 / 석상식夕上食	
20	조전朝奠 / 조상식朝上食 / 계찬궁啓欑宮	천전遷奠 / 하현궁下玄宮 / 우제虞祭
	주다례畫茶禮 / 천전遷奠 · 석상식 夕上食 · 석전夕奠	지방紙牓 매안埋安
	영여靈擧를 받들어 산릉山陵에 올라감	
	하현궁下玄宮 / 현궁玄宮을 봉함 / 격회隔灰	
	우제지방虞祭紙牓을 곡장曲墻에 매립	
	사초기事草記 소각, 국왕 당일 환궁	
	정광正壙 전면에 격회隔灰(21차)	
	횡대판橫臺板 위의 가장자리 정비	
	퇴광退壙 안에 각종 석함石函 배설	
21	한금정限金井 / 구봉기鉤捧機 · 녹로轆轤 설치 완료	
	금정기金井機를 연결한 나무 철거	
	천회天灰를 덧바름 / 복부형覆釜形 공사 시작	
	수도각隧道閣 철거 / 퇴광退壙 복부형覆釜形 공사 완료	
	합원合圓으로 흙 쌓기 완료 / 신新 · 구舊 지석誌石과	
	좌향석坐向石 안배 / 혼유魂遊·하전석下磚石 배설	
22	합원피사合圓被莎 / 대홍전문大紅箭門 철거	
	영배홍전문永排紅箭門 건립	
23	전면前面 석난간石欄干 배설 완료 / 옹가甕家 철거	
	혼유석魂遊石 배설 / 장명등長明燈·망주석望柱石	
	배설 / 초재계初再階 아래에 피사被莎	
25		
	안릉전安陵奠	

국문초록

헌종대 수릉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조선시대 천릉遷陵 · 천원遷園을 다룬 지금까지의 연구가 주로 정조대 영우원永祐園(현륭원 顯隆園) 천원(1789) 사례를 하한으로 조선 전기와 17 · 18세기에 집중하였던 것에 비하여 본 고는 기존 연구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았던 19세기의 천릉 사례에 주목하여 그 진행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즉 1846년(헌종 12)에 단행된 수릉綏陵 천릉 당시의 논의 내용과 그 구체 적인 진행 모습을 살핌으로써 당시의 정치 형국에서 수릉의 천릉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 이었는지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다불어 외규장각 의궤의 「익종수릉천봉도감의궤翼宗經陵遷奉都監儀軌」와 「익종수릉천봉산 릉도감의궤翼宗經陵遷奉山陵都監儀軌」를 주요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일부이나마 외규장각 의궤 자료의 내용 분석을 겸하였다. 편년 자료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천릉 논의의 상세 한 내용과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새로 조성한 능에 적용된 각종 의제의 구체 적인 모습을 살피는 작업은 전적으로 이들 의궤에 수록된 도설圖說에 근거한 것이다. 수릉은 철종대에 한 번 더 천릉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능역에서 철종대 이전의 모습을 직접 유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헌종에 의해 천릉된 수릉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피는 데에 있 어서 위의 의궤 자료의 활용 가치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수릉의 형국이 풍수상 길지가 아니라는 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헌종의 제안으로 시작된 천릉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중론에도 불구하고 헌종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으로써 실행에 옮겨졌다. 그러나 그 풍수상의 이유가 능역을 옮겨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보다는 대리청정 중에 승하한 헌종의 부친 효명세자孝明世子에 대한 추숭 사업의 완성이라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헌종이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함에 따라 수렴청정을 하게 된 대비 순원왕후純元王后는 헌종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왕실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효명세자를 익종翼宗으로 추존하고 '연경묘延慶墓'를 '수릉'으로 추봉하는 일련의 추숭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능역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부친에 대한 효행이라는 의미도 더해져서 친정親政 6년차에 접어든 1846년 헌종은 수릉의 천릉을 단행하였고, 그 결과 능역의 석물에서부터 퇴광에 납입되는 의물과 찬실의 사수도四點圖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묘제를 '능'의 위격에 맞출 수 있었던 것이다. 즉위 초기의 추숭 사업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던 수릉의 의제 격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익종 추숭의 의절儀節이 완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천릉, 수릉, 헌종, 익종(효명세자), 산릉도감, 천봉도감, 의궤

헌종대 수류 천붕의 배경과 그 의미 179

Abstract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Relocation of Sureung Tomb of King Ikjong during the Reign of King Heonjong Construction of a royal tomb during the Joseon period was an important state affair that required the consideration and coordin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in diverse aspects, including in the selection of the site scale of the tomb, its financing, and compensation for related damages.

The relocation of a royal tomb was a sensitive matter since it was a reversal of a former decision. It required the reconsideration of issues raised at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of the original tomb, and additional financing was demanded. Therefore, it allows a closer glimpse into the state administration and major issues related to the rituals of the time than does the construction of the original tomb.

For this reason, research into cases of the relocation of royal tombs has been on the rise.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 covers periods no later than the reign of King Jeongjo (正朝, r. 1776–1800) and interprets the relocation as a political means of rearranging the state governance system or reinforcing royal authority. However, cases from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after the reign of King Jeongjo must also be studied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 meaning of the relocation of royal tombs changed over time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relocation of royal tombs changed over time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view of the limitations of preceding studies, the author focused on the relocation of the original tomb of King Ikjong (翼宗, 1809-1830) to a new tomb in 1846 during the reign of King Heonjong (憲宗, r. 1834-1849). King Ikjong, the occupant of the tomb, died as Crown Prince Hyomyeong (孝明世子) but was given the posthumous title of King Ikjong. The main references for the study are the Uigwe for Relocating the Tomb of Crown Prince Hyomyeong (翼宗綏陵遷奉都監儀 軌, Ikjong sureung cheonbong dogam uigwe) consisting of seven volumes and the Uigwe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Tomb for the Relocation of Sureung Tomb of King Ikjong (翼宗綏陵遷奉山陵都監儀軌, Ikjong sureung cheonbong salleung dogam uigwe) in two volumes, which allow a close investigation of the relocation process. Few of these details are available in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實錄, Joseon wangjo sillok) and other chronological documents. The relocation of King Ikjong's Tomb, named Sureung (綏陵), was initiated by his son King Heonjong. He was determined to pursue the relocation, probably in order to pay due reverence to his deceased father. Upon ascending the throne at the very early age of eight, King Heonjong granted his father the posthumous title of King Ikjong and elevated the status of his father's tomb accordingly. However,

the physical appearance of the tomb remained unchanged since the elements of the tomb were not upgraded. Therefore, when he reached his majority and assumed control over state affairs, King Heonjong ordered the relocation of his father's tomb in order to construct a new version befitting the status of a king. The records on the relocation process in the relevant Uigwe titles show that the rules and regulations and elements reserved for kings' tombs were appli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new tomb.

Keywords: Relocation of royal tombs, Sureung, King Heonjong, King Ikjong (Crown Prince Hyomyeong), *Salleung dogam* (Superintendency for the construction of a royal tomb), *Cheonbong dogam* (Superintentency for the relocation of a royal tomb), Uigwe

현종대 수통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181

Abstract

Le contexte et la signification du transfert de la tombe du roi lkjong sous le règne du roi Heonjong Sous la dynastie Joseon, la construction de tombes royales (destinées aux rois, reines, princes ou princesses) nécessite de trouver un compromis entre divers intérêts sur plusieurs aspects: le choix d'un lieu, la dimension du monument, le financement, les mesures pour faire face à d'éventuels dommages civils causés par les travaux. Le transfert d'une sépulture est une question d'autant plus sensible, qu'on revient sur une décision déjà prise et qu'il faut réexaminer diverses questions soulevées lors de la construction initiale, et financer de nouveaux travaux. De ce fait, il est possible de dire que le déplacement d'une tombe royale met au jour la gestion du royaume et certains enjeux liés aux rites, mieux que fait sa construction initial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se sont récemment multipliées les recherches sérieuses sur le transfert de tombes de quelques rois, reines, princes et princesses. Les études se focalisent sur les déplacements effectués jusqu'à l'époque du roi Jeongjo (qui régna de 1776 à 1800) et sur la nature politique de ces travaux : ils sont perçus comme des aménagements du système dynastique ou un moyen de renforcer le pouvoir royal. Mais si l'on cherche à comprendre comment la signification des transferts de sépultures royales a évolué au fil du temps, il convient d'observer attentivement les cas postérieurs au règne de Jeongjo, c'est à dire des XIX^e et XX^e siècles.

Cette étude examine le déplacement de la tombe du dauphin Hyomyeong (qui à titre posthume fut nommé roi Ikjong) en 1846 (la 12e année du règne du roi Heonjong). Les principaux documents analysés sont le *Uigwe* relatif au transfert de la tombe du roi Ikjong et celui relatif à la construction de la seconde sépulture. Ces protocoles royaux permettent de suivre la procédure du transfert de sépulture, dont ne traitent pas de façon détaillée les documents historiques chronologiques comme les *Annales de la dynastie Joseon*.

Le transfert de la tombe fut réalisé grâce à la volonté très forte du roi Heonjong, qui souhaitait élever son père (qui était encore dauphin lors de son décès) à la dignité de roi à titre posthume, sous le nom de Ikjong. Lorsque le très jeune Heonjong devint l'héritier du trône, il conféra à son père prématurément mort le titre de roi et éleva sa tombe princière au rang de tombe royale, afin de renforcer l' autorité royale. Cependant, les objets déposés à l'intérieur de la tombe restèrent identiques après le changement du statut du défunt : s'ils ne correspondent pas à ceux consacrés à la sépulture d'un roi, c'est que la tombe ne subit à ce moment

aucune modification visible. C'est lorsque le roi Heonjong atteignit la majorité et dirigea lui—même le pays, qu'il fit déplacer la tombe du roi Ikjong pour la transformer en une sépulture digne d'un roi. Les *Uigwe* qui illustrent cette procédure du transfert tombal laissent voir que la nouvelle tombe fut construite suivant le procédé et avec les objets réservés à la sépulture d'un roi.

Mots-clés : transfert de la tombe d'un roi, *Sureung* (tombe du roi lkjong et de son épouse), transfert d'une tombe princière, roi Heonjong, roi lkjong (dauphin Hyomyeong), bureau chargé de la construction de la tombe royale, bureau chargé du transfert de la tombe royal, *Uigwe*

현종대 수릉 천봉의 배경과 그 의미 183

조선시대 흥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07

Study of the Four Directional Deities Painted on *Changung* as Illustrated in Uigwe for Funerary Rites of the Joseon Dynasty

명세라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사 | Myeong Sena Assistant Curator, Gongju National Museum

- Ⅰ. 머리말
- Ⅱ. 찬궁 제도와 찬궁 사수도
- 1. 빈전과 산릉에 설치된 찬궁
- 2. 찬궁 사수도 제작 전통
- Ⅲ. 찬궁 사수도 도상의 제 양상
- 1. 찬궁 사수도 도상의 전개
- 2. 주작 도상의 지속과 변용
- Ⅳ.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 왕실 상장례인 흉례의禮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물력物力과 공력功力이 투입되는 의식이다. 조정朝廷에서는 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장례 전반을 총괄하는 국장도감國葬都監과 빈소殯所를 차리고 혼전魂殿을 만드는 빈전(혼전)도감殯殿(魂殿)都監, 산릉山陵의 조성 업무를 맡은 산릉도감山陵都監의 3도감都監을 임시로 설치하였으며, 의례가 종료된 후 각 도감은 의식의 전 과정을 세세하게 정리하여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 빈전(혼전)도감의궤殯殿(魂殿)都監儀軌,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로 편찬했다.

그런데 이러한 흉례 의궤 중 빈전도감의궤와 산릉도감의궤에는 청룡靑龍,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의 사수도四獸圖 도설圖說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수도는 찬궁攢宮에 그려진 것으로, 찬궁은 왕王과 후비后妃의 관棺인 재궁梓宮이 능침에 안장되기 전 빈전과 능침陵寢 정자각丁字閣에 재궁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해 설치된 곽槨의 개념이다. 대개 찬궁은 소용이 다하면 불태워지나, 다행히 의궤에 찬궁 '사수도' 도설이 남아 있어 그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어 주목된다.

고동안 찬궁 사수도는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로 다루어져 18세기 회화의 사실주의적경향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되거나, 청룡과 같이 개별적인 도상을 운룡문雲龍文과 비교·분석한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호도虎圖와 비교하여 당시 화원 양식을 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이와 같은 연구들은 찬궁 사수도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보다는 양식 분석을 위한 기년작紀年作으로 활용된 부분이 없지 않다. 찬궁 사수도 자체를 조명한 연구는 2007년 조선후기산릉도감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를 시기별로 분석하여 당대當代의 회화와 비교한 것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 연구 성과에 더하여 현전하는 총 43종의 흉례 의궤에 나타난 사수도 도상을 분석하여 찬궁 체제와 사수도의 전통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조선시대 흉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의 제 양상을 살피되, 특히 사수도 도상 중 삼수삼족三首三足에 개의 머리와 세 개의 다리)에서 비상하는 붉은 새로 가장 극적인 변화가 보이는 주작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사수四獸는 사신四神과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되며, 청룡靑龍은 창룡蒼龍, 주작朱雀은 주조朱鳥라고도 칭하나 본 연구에 서는 편의상 청룡, 주작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2.} 강관식, 「진경시대 후기 화원화의 시각적 사실성」, 『간송문화』 49(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95)

^{3.} 방병선, 「雲龍文 분석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백자의 편년 체계」, 『미술사학연구』 220(한국미술사학회, 1998), 45~78쪽.

^{4.} 윤진영, 「조선 중·후기 虎圖의 유형과 도상-기년작을 중심으로」, 『장서각』 28(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192~234쪽.

^{5.} 윤진영, 「조선왕조 산릉도감의궤의 사수도」, 『인조산릉도감의궤』(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477~4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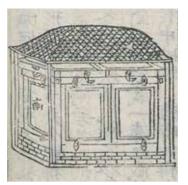
Ⅱ. 찬궁 제도와 찬궁 사수도

1. 빈전과 산릉에 설치된 찬궁

찬궁^{도1}은 앞서 언급한대로 재궁이 능침에 안장되기 전 빈전과 능침 정자각에 재궁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해 설치된 곽과 같은 개념이다. '찬도横塗' 혹은 '추도載塗'라고 불렸으며, '그 기원은 『예 기禮記』·「단궁檀弓」에 "천자의 빈소에는 관 주위에 나무를 쌓아 놓고 진흙을 바르고 상여 끌채에 용을 그려 곽처럼 만든다"고 하여 중국 한대漢代 이전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국에서 기원한 찬궁 제도가 어떤 경로로 한반도에 유입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삼국시대의 문헌에도 찬궁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고려시대의 「순덕왕후애책順德王后哀册」에 찬궁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 찬궁 제도가 늦어도 고려시대에는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격적으로 찬궁 제도가 성립된 것은 조선시대 들어서 인듯한데, 세종世宗(재위 1418~1450) 대에는 찬궁을 '가실假室'로 부르는 등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이후 예제禮制가 정비되면서 태종~세종 대 예제를 종합한 『세종실록世宗實錄』의 「오례五禮」에서 찬궁이란 용어와 제도가 확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 찬궁은 흉례 의식 중 빈전과 산릉에 각각 설치되었다. 빈전은 궁궐 내 전각을 이용해 빈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왕이 승하한 외상外喪일 경우에는 편전便殿에, 왕후가 승하한 내상內喪일 경우에는 침전寢殿에 설행設行하는 원칙이 있었으므로 찬궁도 각각 편전과 침전에 주로 설치되었다." 산릉의 경우 빈소는 '영악전靈解殿'이라 하여 조선 초기에는 장막의 형태로, 중기에는



도1. 『국조오례의서례』, 「도설」, 〈찬궁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자각丁字閣과 유사한 목구조의 형태에 마련되었으나, 1674 년(숙종 즉위년) 영악전 제도가 폐지되고 빈소의 기능이 정 자각으로 이전되면서 정자각에 찬궁이 배설排設되었다.¹² 대 게 찬궁은 흉례 의식이 끝나면 모두 소각되었는데, 빈전에 설 치된 찬궁은 발인 후 영좌靈座·영침靈寢과 함께 불태워졌으 며,¹³ 산릉의 찬궁은 재궁을 현궁玄宮에 내린 뒤 소각되었다.¹⁴

빈전과 산릉에 설치된 찬궁은 각각 빈전도감과 산릉도감에 의해 제작되었다. 15 양雨 도감에서 개별적으로 찬궁을 만들었지만, 그 구조는 전례서典禮書에 범본範本을 두었으므로

양 도감에서 만들어진 찬궁의 체제體制는 같았다. 찬궁의 구조는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 例』·「염빈도설斂殯圖說」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벽돌을 사용하여 찬궁의 기단을 정전正殿 가운데 조금 서쪽에 만드는데, 높이는 5촌 가량 되고, 그 길이와 너비는 재궁에 따라 하되, 사면啞面에 각각 2척을 더하고, 석회전 로써 그 틈을 바른다. 먼저 지방목地防木을 기단 위의 사방에 설치하고, 다음 4개의 기둥을 그 위에 세우는데, 기둥의 높이는 5척이며, 들보深를 얹고 연목棒木을 걸쳐서 지붕을 만든다. 다음에 가노機 와 세목細木으로써 벽을 만드는데, 그 동쪽을 비우고 갈대자리[蘆鲫와 유문으로써 그 안의 3면과 위에 붙이고, 편죽片 사용하여 이에 끼우고, 모두 철정難 으로써 박고 두꺼운 종이를 유둔 현 위에 바르고, 별도로 종이로써 주작, 백호, 현무를 그려서 방위에 따라 벽 안에 붙인다. 그 외 3면과 지붕 위에는 먼저 진흙을 바르고, 다음에 베를 바르고, 그 다음에 두꺼운 종이를 바른다. …(중략)… 곧 동벽寒壁을 들어서 이를 막고 [그 안에 바르는 것은 삼벽 로 가 같이 하고, 또한 종이에 청룡 하는 그려서 벽 안에 붙인다! 못을 박아 튼튼하게 하고, 그 밖에 바르는 것도 또한 위의 삼벽과 같이 한다.…(중략)… 이를 마치면, 그제야 휘장을 설치한다[흰 것을 사용한다]. 16

- 12. 신지혜, 위의 논문(2010), 122쪽.
- 13. 이현진,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글항아리, 2015), 131쪽.
- 14. 이현진, 위의 책(2015), 121쪽.
- 15. 빈전과 산룡의 찬궁은 개별적으로 제작되었으나, 견양見樣은 공유하기도 했다.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 「빈전일방殯殿一房」, 기해 5월 29일, "同日 山陵都監爲相考事 靈幄殿欑宮一依殯殿欑宮體制造作事是置同 欑宮長廣及高幾尺幾寸是喩詳細見樣移文俾無臨時生事之弊向事", "同日山陵都監了 一都監爲相考事 節到付關內節該 欑宮長廣 詳細移文 見樣事關是置有亦 欑宮體制長廣尺數 都監無置簿之事 其時邊手郭起宗招問後 且考別工作文書 則可知是置 相考施行向事"
- 16. 『국圣오례의서례』 권5, 「흉례凶禮·염빈도설斂殯圖說」,"用磚作欑宮基于正殿中稍西 高五寸許 其長廣從梓宮 四面各加二尺以石灰塗其隙 先排地防木于 基上四方 次立四柱於其上[柱高五尺] 架梁施椽爲屋 次以椵繩細木作壁 虛其東 以蘆簟及油芚

조선시대 흉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187

^{6.} 공영달孔穎達, 『예기정의禮記正義』, "菆 叢也 謂用木菆棺而四面塗之 故云菆塗也"; 김장생金長生, 『사계전서沙溪全書』, 「경 서변의經書辨疑·단궁상檀弓上」, "韻會 菆通作攢積木以殯也."

^{7. 『}예기』、「단マ」、"天子之殯也 菆塗龍輴以槨"

^{8. 『}동문선東文選』권28,「책册·순덕왕후애책」,"維歲在戊戌九月朔庚辰五日甲申 王后李氏薨于某殿之東旋 殯于某殿之西階 粤十八日辛丑將遷座于綏陵禮也 欑宮高峙 丹旐飛揚";『동인지문사륙東人之文四六』권5,「책문·순덕왕후애책」.

^{9. 『}州零실록』 过16, 州零 4过 5월 14일 경오, "薄石築假室基于正殿中間 以石灰塗其隙 布地衣 安平床 床上又布竹席地衣褥席 又設帳褥席屛風於殿中近北空處 以備魂帛冊寶假安之地 時至 諸小臣共舉權 安於床上南首 覆棺衣 以油單裹之 用白正布束 之 用煎黍稷稻粱各二筐 手足置四筐 其餘則設於左右 諸小臣共舉假室 加於稗 假室之制 度柩床長短廣狹 先設四面地防木 次立四柱於其上 架梁拘椽 用椵繩細木作壁 以葦簟帖其內 又以片竹挾之下釘 以厚紙再三塗之 次以朱雀玄武青龍白虎帖四 面 次以圓環下地防四旁 次以熟麻大繩穿環結之。"

^{10. 『}세종실록』 권134,「오례五禮・흉례의식凶禮儀式・성빈成殯」, "高五寸許 其長廣從梓宮 四面各加二尺 以石灰塗其隙…(중략)… 塗厚紙於其上 別以紙畫朱雀白虎玄武 隨方貼于壁内…(중략)…卽擧東壁 塞之.[其內塗如三壁 亦以紙畫青龍 貼于壁内]"

^{11.} 신지혜, 『조선 숙종대 왕실 상장례 설행공간의 건축특성-빈전·산릉·혼전을 대상으로-』(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위와 같은 찬궁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동안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 제작 방식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이 편찬된 영조英祖(재위 1724~1776) 시기에 이르면 벽돌과 석회를 사용하고 진흙을 발라 마감하는 습식 공법에서 건식 공법으로 간소하게 변했으며, 바닥의 기초를 간략화 하여 방전方甎을 깔고, 동서쪽의 장지를 2개에서 4개로 늘려 개폐開閉를 용이하게 했다." 또한 조선 초기에는 사면 흙벽에 사수도를 그려 붙였으나, 의인왕후懿仁王后 빈전의 찬궁에는 사면에 장지를 달아 사수도를 붙였다. 뿐만 아니라 지붕 구조 역시 죽망竹網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가볍게 변했다. 이에 비해 찬궁의 크기는 점차 커지는데, 세종 대에는 찬궁 기둥의 높이가 5척이었으나 선조 대에는 5척 5촌, 숙종 대에 이르면 6척 5촌으로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찬궁이나 재궁을 영조척으로 하여 제작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세종 대보다 숙종 대 이후 찬궁 기둥의 높이는 1척 5촌, 약 45cm가 더 높아진 것이다.

2. 찬궁 사수도 제작 전통

찬궁 내부 사면四面에는 방위에 맞게 각각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그렸다. 이와 같은 전통이 정확히 언제 확립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중국 고대古代 사방위四方位의 행군 의식이 점차 장의葬儀 에 적용된 결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²²

貼其內三面及上 用片竹夾之 皆以鐵釘釘之 塗厚紙於油芚上 別以紙畫朱雀白虎玄武 隨方貼于壁內 其外三面及屋上 先塗泥 次塗布 次塗厚紙畢…(중략)…即舉東壁塞之 [其內塗如三壁 亦以紙畫靑龍貼于壁] 加釘 務令牢固 其外塗 亦如上三壁訖… (중략)…乃設幄[用素]."

- 17. 신지혜, 앞의 논문(2010), 105쪽.
- 18. 신지혜, 앞의 논문(2010), 54쪽.
- 19. 신지혜, 앞의 논문(2010), 106쪽.
- 20. 세종대 찬궁의 기둥 높이는 본고 각주9 참고. 선조 대의 기록은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 「각소응행조건各所應行條件·조 성소造成所」, "橫宮體制四面地臺木厚三寸五分高五寸四隅立柱高五尺五寸次方三寸五分" 등이 있으며, 숙종대는 『현종빈전도감의궤』, 「도설圖說·찬궁도橫宮圖」, "內長十二尺 廣七尺五寸 柱高六尺五寸 圓徑五寸 地方木厚 五寸 廣六寸" 등이 있다. 영조대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에는 기둥의 높이를 6척으로 조정하였으나(先排地防木于四方[長廣從梓宮四面各加二尺]次立四柱於其上[柱高六尺]"), 실제 운용은 6척 5촌이었다(신지혜, 위의 논문(2010), 185쪽 표39 참고)
- 21. 『승정원일기』, 경종 4년 8월 기해, "王世弟令曰 五禮儀 鋪秫灰四寸厚 而太厚 且造梓宮 旣用營造尺 則鋪灰宜達前例 而亦當 用營造尺矣。"
- 22. 『예기』, 「단궁」에서는 추도蔵塗에는 용을 그린다고 했지만, 「곡례曲禮」에는 "行前朱鳥 而後玄武 左青龍 而右白虎 招搖在上 急勁其怒"고 하여 노부제鹵簿制가 점차 찬궁 제도에 채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 외 곽에 사수도를 그린 예는 후한~위 진 대 사천 지역에서 발견된 석관 화상과(전호태, 「한~당 사신도 연구」, 『성곡논총』 31(성곡언론문화재단, 2000), 327~328 쪽) 당대 청해 토번 관관官版(霍巍, 「西域风格与唐风染化」, 『丝绸之路』 1, (科学出版社, 2017), 197쪽)에서 찾을 수 있다.



도2. 〈사신도〉, 고구려, 평남 강서군 강서대묘, 모사도(1930년 무렵 모사), 국립중앙박물관(K82)

사수도가 한반도에서 장의 예술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며, 고구려 고분 벽화가 대표적이다. 도구려 고분의 사수도 벽화는 석실石室 내부에 채색하여 표현되었으며, 4~5세기경 나타나기 시작하여 6세기 말에서 7세기 전반에 고분 벽화의 주요 화제畫題가 되었다. 이후 사수도는 고려시대 고분 벽화 및 석관石棺에도 나타나지만 고려 태조太祖(재위 918~943)의 왕릉인 현릉顯陵의 사수도처럼 부수적인 모티프로 묘사되거나, 23 석관 외부에 표현된 사수도처럼 음각陰刻으로 간략하게 처리되었다. 도3 이처럼 고려시대의 사수도는 그 의미가 축소되긴 하였으나, 고분 벽화나 석관 등을 장엄하는 장의 예술로서 전통을 이어갔다. 44

조선시대 찬궁에 그려진 사수도도 이런 오랜 장의 전통이 이어져 온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조선 초기에는 찬궁뿐만 아니라 산릉의 석곽石槨(혹은 석실)에도 사수도를 그렸다.

조선시대 흉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189

^{23.} 지민경, 「10~14세기 동북아 벽화고분 예술의 전개와 고려 벽화고분의 의의」, 『미술사연구』 25(한국미술사학회, 2011), 80~85쪽 참조.

^{24.} 고려시대 찬궁이 사용된 기록은 있으나(본고 각주8 참고), 당시 찬궁에 사수도가 표현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격석隔石 창窓 밑에는 백호를 그리고, 북우석^{北隅石}에는 현무를 그리고, 방석^{像石}에는 청룡을 그리고, 문비양 석^{門屏兩石}에는 주작을 그리는데, 두 문짝에 나누어 그려서, 문짝을 합하면 하나의 형상을 이루게 한다. 백 호와 청룡은 머리가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현무와 주작은 머리가 서쪽으로 향하게 한다.²⁵

이러한 사수의 수미首尾에 관한 방위 규정은 『이아爾雅』, 「석천釋天」의 주注에 나오는 "청룡과 백호는 남수북미南首北尾, 주작과 현무는 서수동미西首東尾"에서 연원한 것으로, 늦어도 북송 대에 일반화된 것이며, 6 하늘의 별자리를 묘실의 사방 벽면으로 환원하여 그 방향을 도출한 것이다. 7 이처럼 찬궁 제도와 동일하게 석실(혹은 석곽)에 사수도를 그리는 규정은 『세종실록』의 「오례」와 『국조오례의』에 성문화되었으나, 20 전례서의 규정과 달리 기록상 조선 왕릉 42기 중 석실(혹은 석곽)로 조성된 경우는 7기 이하이며, 나머지는 회격灰隔으로 만들어졌다. 9 이는 1468년(예종즉위년) 석실을 만들지 말라는 세조의 유언에 따른 것으로, 30 회격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사수도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제로 왕릉이 발굴된 사례가 없으므로 사수도의 기화起畫 여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이유원季裕元(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 다음과 같이 석실(혹은 석곽)에 기화된 사수도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31

인릉仁陵을 교하^{交河}로부터 광주에 천봉하였는데, 곧 영릉奏陵의 구광舊曠이다. 그 일을 시작할 때 봉심을 해보니, 광중曠中은 석곽을 썼고, 천개^{天蓋}는 합봉合繼한 곳이 없이 돌 하나를 순전히 썼고, 은정^{銀釘}은 쇠로 주조하였고, 곽 안에는 왼쪽에 청룡, 오른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는 곧 찬궁의 제도였다. 위쪽은 유기^{雲氣} 아래쪽은 철망鐵網으로 2층을 만들어 지기^{地氣}가 위로 올라가게 하

- 25. 『세종실록』 권113, 세종 28년 7월 19일 을유, "隔石窓下畫白虎 北隅石畫玄武 旁石畫青龍 門扉兩石畫朱雀[分畫兩扉, 合成一形] 白虎青龍頭向南 玄武朱雀頭向西."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방위에 대한 용례는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하, 「조성소의 刑造成所儀軌・찬궁도櫕宮圖」, "四面設障子[南北各二隻東西各四隻皆施鑞染赤貼以備開闔] 內外塗紙[用搗錬紙] 另畫青龍白虎朱雀玄武各隨其方貼于內面[龍虎南頭雀武西頭]" 참고.
- 26. 김일권, 「사신도 형식의 성립 과정과 한대의 천문성숙도 고찰., 『고구려발해 연구』 11. (고구려발해학회, 2001), 129쪽 재인용.
- 27. 김일권, 위의 논문(2001), 130쪽 재인용.
- 28. 『세종실록』, 「오례·흉례·치장조治葬條」, 『국조오례의』 권7, 「흉례·치장조」 참고.
- 29. 전나나, 「조선왕릉 봉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일고-문헌에 기록된 석실과 회격의 구조를 중심으로-」, 『문화재』 45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54쪽.
- 30. 『예종실록』권1, 예종 즉위년 9월 19일 을해, "傳旨禮曹曰 陵寢皆用石室 而大行大王命不作石室 今宜遵奉遺命 以成美德"
- 31. 인릉은 세종과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의 합장릉合葬陵으로 1469년(예종 1) 인릉의 터가 좋지 않아 능을 천봉遷奉하였는데, 천봉 당시 능실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도3. 〈허재 석관〉, 고려 1144년, 1⋅3면 33×37cm, 2⋅4면 82×37cm, 국립중앙박물관(신수 5877)

조선시대 흥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191

고 벌레나 뱀 따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화법이 신동神動하고 채색이 새것과 같았으며, 그 안에는 수 골^歐하이 있었다. 대체로 고려 때의 풍속에는 버려진 광중에다가 소나 말의 뼈를 던져서 더럽히곤 하였는 데 국초^{國初}의 일은 고려 말과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본광^{本壙}을 무너뜨리고 다시 신광^{新壙}을 만 들었는데. 식자들이 이를 애석하게 여겼다.³²

이처럼 인릉의 석실(혹은 석곽)에 그려진 사수도는 천봉을 하면서 사라졌고, 세조대 이후 능묘에는 석실을 조성하지 않음에 따라 사수도를 그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찬궁에는 사수도를 그리는 전통이 지속되어 영조 대에 이르러서는 사수도의 유무有無에 따라 왕과 왕후의 상喪인 대상大喪과 내상內喪, 왕세자나 왕세손, 비빈妃嬪 등의 상인 소상小喪과 소내상小內喪의 위계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었다. 즉 영조는 1752년(영조 28) 『국조상례보편』을 편찬하면서 소상과 소내상의 찬실横室에는 사수도를 그리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시켜³³ 사수도의 유무를 통해 찬궁과 찬실의 위계를 정한 것이다

Ⅲ 찬궁 사수도 도상의 제 양상

1. 찬궁 사수도 도상의 전개

흉례 의궤 중 찬궁 사수도 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장도감의궤와 빈전도감의궤, 산릉도 감의궤이다. 산릉도감의궤에는 산릉 정자각(혹은 영악전)에 설치된 찬궁 사수도를 수록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39종의 산릉도감의궤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반해 빈전(빈궁)도감의궤에는 사수도가 실려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순조 대 편찬된 빈전(빈궁)도감의궤 3종에만 찬궁 사수도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장도감의궤에 수록된 경우는 원종元宗으로 추존追尊 된 인조 부친의 묘소를 이장移葬할 때의 기록인 『원종예장도감의궤元宗禮葬都監儀軌』 1종만 남아있다. 이렇게 총 43종의 흉례 의궤 중 대·내상은 38종, 소상과 소내상은 5종이 있으며, 이 중 추존 및 복

호復號의 사례가 6종이 있다. 그 변화상을 요약하면 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청룡은 횡橫에서 S자형으로, 백호는 비호飛虎[날고 있는 호랑이]에서 출산호出山虎[산을 나오는 호랑이]로, 주작은 삼수삼족 三首三足[세 개의 머리와 세 개의 다리]에서 비상하는 붉은 새로, 현무는 귀사합체龜蛇合體[거북과 뱀이어우러진 모습]에서 거북만 남은 형태로 바뀌었다. 이번 절에서는 그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되. 상장례가 대대적으로 정비된 영조 대를 기점으로 그 전후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1) 영조대 이전

조선시대 찬궁에 그려진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했을까? 조선 전기의 흉례 의궤는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되었고, 조선 중기 이후 의궤만이 현전한다. 그러므로 현재 찬궁 사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의궤는 조선 중기 이후만 해당된다.

비록 조선 전기의 찬궁 사수도의 모습은 남아 있지 않지만, 태종~세종대 예제를 종합한 『세종 실록』·「오례」와 성종成宗(재위 1469~1494) 대 편찬된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의 「노부도鹵 簿圖」에 보이는 사수기四獸旗를 통해 당시 찬궁 사수도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노부는 왕실 행 차시 사용된 깃발과 각종 의장물을 뜻하는데, 목적은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 다. 노부도의 각종 기치旗幟 중에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그린 사수 깃발이 있어 이를 통해 조 선 전기의 찬궁 사수도 도상을 추측할 수 있다.

위의 두 전례서典禮書에 나타난 사수깃발의 도상^{도4}은 청룡은 횡橫으로 날고 있는 사조룡四爪龍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수神獸의 표상인 화염문火焰文이 온 몸을 뒤덮고 있다. 백호 역시 화염을 두르고 비상飛上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고려시대 석관에 나타난 백호가 몸통이 길어용의 형상과 유사한 것과 달리 조선시대 백호는 호랑이의 형상이 뚜렷해진다. 현무는 거북과 뱀이 몸을 틀어 서로를 응시하는 귀사합체의 모습으로, 주작은 삼수삼족의 봉황이 날개를 펼치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 전기 전례서에 나타난 노부도의 사수도 도상은 『인목왕후산릉도 감의궤仁穆王后山陵都監儀軌』(1632)에 그려진 찬궁 사수도 도상과 일치하여 조선 전기 찬궁 사수도의 도상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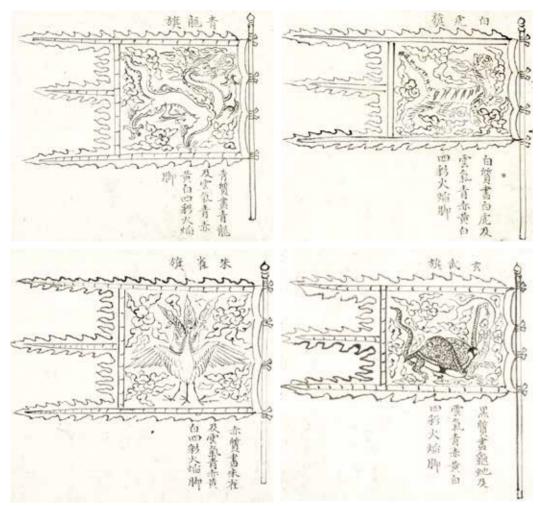
그러나 효종孝宗(재위 1649~1659) 대에 이르면 사수도 도상 중 청룡과 백호의 변화가 감지된다. 청룡은 횡으로 날고 있는 사조룡에서 ⊃자형의 오조룡五爪龍으로 표현되고, 바탕에 오색운五色雲

조선시대 홈레 의케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193

^{32. 『}임하필기』 권26, 「춘명일사春明逸史·인릉천봉仁陵遷奉」,"仁陵自交河遷奉廣州 即英陵舊壙也 其始役也 奉審則擴中用石槨 天蓋無合縫 純用一石 銀釘以鐵鑄之 槨內畵左青龍右白虎南朱雀北玄武 乃攢宫制也 上雲氣 下鐵網爲二層 使地氣升而防蟲蛇之 屬畫法神動 彩色如新 其中有獸骨 盖俗於壙投牛馬骨 檅之 國初事去 麗末遠故也 破本壙更做新壙 識者惜之."

^{33. 『}국圣公례보편』,「성빈成殯」,"別以紙畫朱雀白虎玄武青龍」小喪欑室不畫四獸]隨方貼于障子內."

^{34.} 청룡이 사조룡으로 표현된 것은 명明과의 사대질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세종은 한동안 사조룡의 옷을 입었다. (『세종실록』권125, 세종 31년 9월 2일 기묘, "昔予服四爪龍衣 後聞中朝親王服五爪龍 予亦服之 以待天使 其後 帝賜五爪龍服 今令世子服四爪龍 則於我無嫌 於朝廷法制 亦無妨焉.")



도4. 『세종실록』 「오례」 〈사수기〉.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이 더해져 상서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표(4)} 또한 백호는 화염이 사라지고 앉아 있는 모습(坐虎)^{표(4·5)}으로 나타난다. 백호가 앉아 있는 모습은 준거蹲踞의 자세로, 무릎을 세우고 웅크려 앉아 있는 자세이다. 화염이 표현되지 않은 채 앉아 있는 모습은 흉배에 그려진 호랑이와 유사하며,³⁵ 이는 위협적인 맹수가 아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⁶

그러나 백호는 숙종肅宗(재위 1674 ~1720) 대에 이르면 출산호出山虎의 모습 으로 변화한다. 출산호는 산을 나오는 호 랑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와 돌아다닌다(橫行, 巡遠) 는 의미까지 포함한 것이다³⁷ 대개 측면으 로 걸어가고 있는 동세動勢에 정면을 향 한 얼굴을 하고 있다. 북송北宋의 조막착 趙邈齪에 의해 창안되었다고 여겨지는 출 산호 형식은 이후 송말원초宋末元初 목계 牧谿(?~1281)의 전칭작傳稱作으로 알려진 〈용호도龍虎圖〉로 이어지고 55 원元 대에 까 치와 접목된 그림으로 정립된 뒤38 17세기 초 명대 화풍이 반영되어 조선으로 유입되 었다. 백호의 출산호 형식은 이러한 당대當 代 화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³⁹ 특히 어람 용인『명성왕후숭릉산릉도감의궤明聖王后 崇陵山陵都監儀軌』(1684)^{표 (9)}에는 화염조차 두르지 않은 출산호 자세의 백호가 일시적 으로 등장하여 당대 화풍의 영향을 확인시



도5. 전목계 〈용호도〉, 남송 13세기, 비단에 수묵, 187.0×111.8cm, 일 본 도쿠가와미술관

켜준다. 그러나 같은 명성왕후의 산릉의궤이지만, 분상용인 의정부본과 적상산본의 백호는 마치 하늘을 응시하며 걷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표(10)} 이와 유사한 예는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貞純王后 (1440~1521)의 『사릉봉릉도감의궤思陵封陵都監儀軌』(1699)에도 재현된다. 즉 어람용의 백호 도상은 화염을 두른 출산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표(12)}, 분상용인 의정부본과 적상산본은 하늘을 응시하며 마치 걷는 모습을 하고 있다.^{표(13)} 이는 당시 출산호 자세가 백호의 도상으로 수용되는 과도기적인 모습이라고 추측된다.

조선시대 흥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195

^{35.} 윤진영, 앞의 논문(2012), 207쪽.

^{36.} 이제원, 「동아시아 호랑이 그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4쪽.

^{37.} 이제원, 위의 논문, (2005), 10쪽.

^{38.} 홍선표, 「개인소장의 〈出山虎鵲圖〉 까치호랑이 그림의 원류」, 『미술사논단』 9, (한국미술연구소, 1999), 349쪽.

^{39.} 윤진영, 위의 논문(2012), 212쪽.

이상 영조대 이전 사수도 도상 변화를 정리하면 주작과 현무에 비해 청룡과 백호의 변화가 비교적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두 도상의 화면이 모두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변화된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찬궁 체제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세종대와 숙종대 찬궁 기둥 높이가 1척 5촌, 약 45cm 높아지면서 화면도 점차 길어졌고, 사수도의 도상도 화면의 비율에 따라 점차 세로형으로 변화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 영조대 이후

영조대에는 국가 의례 정비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로 상장례에 대한 정리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 결과 1752년(영조 28)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은 『국조오례의』에 규정된 예제 중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행하기 어려운 의식이나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예법을 개정하였고, 이후 조선 왕실에서 행해지는 모든 상장례의 범본으로 역할 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는 1757년(영조 33) 정성왕후貞聖王后의 장례를 기록한 『정성왕후산릉도감의궤貞聖王后山陵都監儀軌』이다. ^{표(19)} 이 책에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찬궁 사수도 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청룡은 ⊃자형에서 S자형으로 변해 보다 역동적이고 넓은 화면을 사용한다. 백호는 화염이 사라진 출산호의 모습이 확립되고, 현무도 거북만 표현되어 신수神獸로서의 요소가 제거되었다. 주작은 삼수삼족을 한 봉황의 모습에서 붉은 새가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나타나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신—新된 도상의 특징은 청룡을 제외하고, 보다 현실에 존재할 법한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백호는 화염이 사라지고, 당시 유행했던 출산호의 도상과 양식이 확립되었으며, 뱀이 제거되고 거북만 표현된 현무는 이미 경종대 『승정원일기』에서 현무를 대귀大龜, 즉 큰 거북을 의미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변화의 징조를 발견할 수 있다.⁴

이렇듯 사실성과 현실감이 부여된 사수도 도상의 변화 원인을 기존 연구에서는 당시 사회상에서 찾고 있다. 즉 18세기에는 사수를 현실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사수도 도상의 변화는 회화의 시각적 사실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사수를 상상의 동물이 아닌 현실 세계 동물과 대응하는 관념은 이미 한대漢代부터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왕충王充

(27~104)은 하늘에 있는 사성四星의 정기가 강생降生하여 사수의 체體가 되었다고 보아 하늘의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땅에서는 용, 호랑이, 새, 거북으로 형形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사신四神은 하늘에 존재하는 것이며, 사수는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념은 후한後漢 이후 널리 퍼져 있던 것으로, 조선시대 서유구徐有榘(1764~1845)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서도 "백 가지 창성한 정기가 위로 올라가 무수히 벌려진 별이 되었으니,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었고, 땅에서는 형을 이루었다"는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처럼 18세기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의 변화가 시각적 사실성을 획득하기 위함 보다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신적인 사상四象의 관념으로 볼 것인가 혹은 형체를 중시한 사수의 관념으로 볼 것인가의 선택의 차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새로운 사수도 도상은 순조 연간에 일시적으로 조선 중기 이전의 도상으로 회귀하기도 한다. 『현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궤獻敬惠嬪殯宮魂宮都監儀軌』(1816)^{표(27)}와 『효의왕후빈전혼전도 감의궤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821),^{표(28)}『현목수빈빈궁혼궁도감의궤顯穆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1823)^{표(29)}에 실려 있는 사수도는 모두 조선 중기 이전의 도상을 따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찬궁의 4면 장지에 각 방위에 맞도록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수를 그리는데 항상 급박한 시기에 이르면 그 도형의 옛 제도를 잊기 쉬운바, 마땅히 먼저 도식을 보아 따르되, 현무는 속갑寒甲(거북등껍질을 의미함)이 있는 뱀, 주작은 삼수삼족=首=足, 용과 호랑이는 비등분약飛騰奮躍하는 모습을 따른다. 필시 용, 호랑이는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작과 현무는 서쪽으로 머리를 둔다.

위의 기록은 『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궤』에 나타난 것이다. 『효의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와 『현목수빈빈궁혼궁도감의궤』에도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두 의궤 모두 『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 궤』를 참고하여 사수도를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들 모두 산릉도감의 궤가 아닌 빈전(빈궁)도감의궤에 나타난 사수도이며, 『효의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을 제외하고 모

조선시대 홈레 의케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197

^{40.} 찬궁 가로의 길이가 재궁 크기에 각각 2척을 더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신의 키에 좌우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5촌 내외였다. 찬궁의 높이는 재궁의 크기에 상관없이 제작되었으므로, 점차 세로형 찬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41. 『}승정원일기』, 경종 4년 8월 29일 기해, "東畫青龍 南畫朱雀 西畫白虎 北畫玄武 玄武即大龜."

^{42.} 강관식, 앞의 논문(1995) 참고

^{43.} 왕寺王充『と啓論衡』、「暑州物勢・용허龍虚」、"天有倉龍白虎朱鳥玄武之象也 地亦有龍虎鳥龜之物 四星之精 降生四獸"

^{44.} 김일권, 앞의 논문(2001), 125쪽.

^{45.} 서유구 『임원경제지』, "百昌之精 上爲列星 在天成象 在地成形"

^{46. 『}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利』하,「도설圖說」,"欑宮四障內 各按其方 畵青龍白虎朱雀玄武四獸 而每當震迫急遽之時 其所圖形 易失古制 宜先看圖式 倣其玄武束甲之蛇 朱雀三首三足 龍虎飛騰奮躍之狀 而模出必乎龍虎南首 雀武西首."

두 소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수도를 그렸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수도의 도상도 다른 도상들과 달 랐다. 청룡은 오조룡이 아닌 사조룡으로 표현되어 효종대 이전의 도상을 따랐으며, 긴 몸통의 백 호는 고려시대 석관에 나타난 사수도와 유사하다 주작은 삼수삼족의 봉황으로 나타나고, 험무는 귀사항체의 형상으로 서기瑞氣가 뚜렷하다 그러나 같은 헌경혜빈의 장례에 관한 기록이지만 분상 용인 춘추관본 『혜빈현륭원원소도감의궤惠嬪顯隆園園所都監儀軌』(1816) 표(26)에 수록된 찬궁 사수 도는 1757년(영조 33) 이후 변화된 도삿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람용이 외규장각본표(25)에는 청룡 과 주작은 1757년 이후 도상으로 백항와 혀무는 효종대 이저의 도상으로 그려져 호란을 아기하 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빈정과 산릉의 찬궁을 빈정도감과 산릉도감에서 개별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각 도감이 찬궁의 크기와 구조 등의 체제를 공유하긴 했지만 사수도의 도상까지는 공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그리고 앞서 명성왕후와 정순 왕후의 산릉의궤에 나타난 백호의 도상이 어람용과 부상용이 달랐던 것처럼 헌경혜빈의 현륭워 찬궁 사수도도 어람용과 분상용이 달라 두 의궤의 사수도를 그린 화원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지 만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차후의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만 『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궤』에 기재된 내용으로 미루어 조선 중기 이전의 도상을 '옛 제도[古制]'라 표현하고 '도식'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헌경혜빈의 빈정(빈궁) 사수도를 그린 화워은 1757년(영조 33) 이후 변화된 도상을 인지하 고 있었으며, 기화 당시 옛 제도에 따른 도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주작 도상의 지속과 변용

조선시대 찬궁 사수도 속에 나타난 주작 도상의 전통은 무엇이며, 영조대 변용變容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고대인들은 새를 태양과 신생, 풍요, 신령과 영귀, 승천의 사자 등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삼족오와 같은 현조玄鳥, 봉황과 같은 서조瑞鳥, 주작과 같은 신조神鳥 등의 관념을 생산해 냈다. 오행五行 중 화火를 상징하는 주작은 남방을 수호하는 신이자, 남방성숙南方星宿으로서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 이러한 주작의 관념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삼수삼족의 주작으로 형상화되었고,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조선시대 독창적인 도상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영조 대에 이르면 비상하는 붉은 새로 일신—新되는 변용이 일어난다. 이번 절에서는 조선시대 찬궁 사수도 중

삼수삼족의 주작과 비상하는 붉은 새의 도상적 전통과 변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삼수삼족의 주작도 전통

신령스러운 동물로서 주작은 역사적으로 봉황이나 닭, 때로는 매로 형상화되었으며, 특히 봉황은 주작의 형태적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주작은 봉황과 마찬가지로 암수로 나타나거나 오채五彩로 표현되기도 하였으며, 붉은 벼슬이 달린 수탉과 화려한 공작의 모습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주작이 고려시대 들어서는 매와 같은 맹금류로 형상화되는데, 이는 서궁徐兢 북송北宋, (1091~1153)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기록된고려의 신기神旗 중 응준기鷹準旗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준기는 둘이며 몸체와 몸체에 달린 수술 모두 붉은색인데, 붉은색은 화수火數를 상징하는 것이다. 기가운데 매가 날아오르는 모양을 그렸는데 이것은 빠르다는 뜻을 나타낸다. 주관^{周官}에 "새와 매로 기를 만든다" 하였으니, 지금 이 붉은 기에 매를 쓴 것도 또한 우연히 옛 제도에 부합한다. 행렬 시에는 상기^{象旗}다음에 위치한다.⁵¹

여기에서 응준기는 사방기四方旗 중 화火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경집전詩經集傳』에서는 조준鳥 隼을 주작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깃발 가운데 매가 날아오르는 형상은 맹금류의 특징적 모습을 반영한 삼족오三足鳥가 주작으로 변이되어 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 다. 사실 역사적으로 현조인 삼족오와 서조인 봉황, 신수인 주작 사이에는 빈번하게 습합과 변용 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지만 한편 으로는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했다. 따라서 봉황은 현실의 닭이나 공작의 모습을 차용하고, 삼족오는 매를 비롯한 맹금류를 도상화 하였지만, 이들 사이에 오랜 습합과 변용이 일어 나 고려시대에 이르러서 법천사法泉寺 지광국사현묘탑비智光國師玄妙塔碑나 영취산靈鷲山 현화사비

조선시대 흉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199

^{47.} 김주미, 「봉황문과 한민족의 천신사상」, 『문화사학』 21(한국문화사학회, 2004), 137쪽.

^{48. &#}x27;주작'은 불을 보면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의 특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설문의증說文義證』 "見火卽飛 故得朱雀稱也"), '작雀'은 곧 '조鳥'라고 하여 주작은 주조라고도 불렀다.(『상서정의尚書正義』, 「상서주소尚書註疏·요전堯典」1, "鳥南方朱鳥七宿…(중략)…雀卽鳥也")

^{49.} 전호태, 「고구려의 오행신앙과 사신도」, 『국사관논총』 48(국사편찬위원회, 1993), 53쪽, 각주54 참고. 또한 『산해경』이나 『설문해자』에도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50.} 김주미, 「삼족오, 주작, 봉황 도상의 성립과 친연성 고찰」, 『역사민속학』 31(한국역사민속학회, 2009), 256쪽.

^{51.} 서궁, 『선화봉사고려도경』 권14, 「기치旗幟・응준기」, "鷹隼旗二 其制 身與旒皆赤 法火數也 中繪鷹隼騫騰而上 有疾而速之 意 周官鳥隼爲旗 今此赤旗用鷹 亦偶合古制也 其行 在象旗之次"

^{52. 『}시경집전』、「全아小雅·녹명지십鹿鳴之什·출거出車」、"鳥隼曰旟 鳥隼 龜蛇 曲禮所謂前朱雀而後玄武也."

^{53.} 김주미, 앞의 논문(2009), 269쪽.



도6. 〈삼족오〉, 고려,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국 보 제59호



도7. 〈목제부적판〉, 조선, 28.3×21.9 cm, 국립중앙박물관(신수 15770)



도8. 〈지본판화도〉, 19세기, 37.3 ×28.4cm. 일본 고려미술관

玄化寺碑에서와 같이 봉황의 형상을 한 삼족오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⁵⁶ 따라서 조선시대 삼 수삼족의 주작도도 봉황의 모습을 기본으로 하되 다리가 셋인 삼족오의 특징적 요소를 가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주작이 머리가 세 개인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시대 삼수삼족의 주작과 같이 머리가 세 개로 표현된 새는 거의 없으나 멀리 서한대 낙양 복천추묘卜千秋墓 벽화에서 머리가 셋 달린 봉황, 즉 삼두봉三頭鳳이 나타난다. 벽화에서 한 여인은 삼두봉을 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며, 학자들은 이 장면을 묘주墓主의 혼이 승선升仙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여기에 나타난 삼두봉을 승선을 돕는 매개체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지역과 시대가 다른 조선시대 삼수삼족의주작을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조선시대 삼재부적인 삼두매(三頭鷹)에서 그 연원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 한다. 57

삼두매는 세 개의 머리와 한 개의 다리로 흔히 삼두일각조三頭一脚鳥 혹은 삼두일족응三頭一足鷹이라 불린다. 삼두매의 그림은 삼재를 막는 벽사적인 성격의 그림으로, 이규경李圭景(1788~?) 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다음과 같이 그 주술성을 이야기한다.⁵⁵

지금 재앙을 물리치는 데 으레 매를 그려 붙이고 액막이를 한다. ···(중략)··· 옛적의 이름난 그림이 가끔 영험을 보였다는 말은 이전의 기록에 흔히 보이고 있으니, 도군^{適君}의 매 그림도 그런 영험이 있게 마련이 다. 어찌 그러한지 여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나라 세속의 옛말에도 "그림 속의 매가 산 여 우를 잡는다"란 말이 있는데, 내가 그만 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⁵⁶

이렇듯 벽사적인 성격의 삼두매가 삼재부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인데, 그 연원에 대해서 이규경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정월 초하루에 닭[鷄]을 그려서 방문 위에 붙이는데, 우리나라 항간에서는 정월 초하루가 아니더라도 세 마리의 매를 그려서 방문 위에 붙여놓고 삼재三災[크게는수재水災·화재·풍재風災를 말하고 작게는도병까兵·기근·역려재疫癘災를 말한다]를 물리친다고 하는데, 이는 삼재가 드는 해에 붙여야 한다. 사람마다 각기 삼재가 드는 해가 있으므로 해당되는 해에 붙인다고 하였다. 이 풍속이 고려의 풍속에서 비롯된 듯한데, 송宋·원元의 풍속과도 같으므로 일차 변증할 필요가 있다. 57

위의 기록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삼재부적으로 삼두매를 사용한 것은 고려시대 풍속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둘째, 본래 삼두매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삼두일족응이 아니라 세 마리의 매를 그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삼두매 부적은 세 마리의 매가 한 곳에 모여 앉아각기 다른 곳을 응시하는 모습이며,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족—足으로 보인다. 이는 세 마리 매가 표현되어 있는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삼재부적 판화〉도8에서도 확인할수 있다. 게다가 이런 삼두매의 모습과 유사한 도상이 1823년(순조 23) 『현목수빈반궁혼궁도감의 궤』의 찬실 그림에서도 발견되어 흥미롭다. 표(29) 현목수빈의 찬실 사수도는 영조 대 이후 옛 제도가 일시적으로 회귀했던 그림으로, 삼수삼족의 주작은 양 날개를 펼친 매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깃털과 꽁지의 표현은 실제 매와 흡사하다.

이상 삼수삼족의 주작 도상의 전통을 정리하면 조선시대 삼수삼족의 봉황으로 표현된 찬궁의 주작은 고대부터 전승된 삼족오와 봉황, 매 사이에 이루어진 꾸준한 습합과 토착화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로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독창적인 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0

^{54.} 贺西林、「洛阳卜千秋墓墓室壁画的再探讨」、『故宫博物院院刊』(故宫博物院, 2000), 73季.

^{55.} 고연희, 「휘종의 매 그림, 복제와 파생의 회화문화」, 『동아시아의 궁중미술』(한국미술연구소, 2013), 172쪽.

^{56.}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經史篇·논사류論史類·풍속風俗」, "今辟災惡 必畫此黏之以禳之矣 或云 何不畫虎 此不然也 虎何嘗飛衝碧空 明見秋毫耶 古之名畫 種種顯靈者 多載往牒 則道君畫鷹 自有其神 何必强論其然否 我東俚俗古談亦有畫鷹搏狐之說 予已忘之矣."

^{57.}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논사류・풍속」, "祓禳之法 自古有之 故歲時記 中原 則元日畫雞黏戶云 而我東 則閭巷間 雖非元日 畫三鷹黏楣上 稱以辟三災 三災年黏之云[毎人各有三災年 故以其當年貼之云矣] 其俗似昉自麗俗者 奥宋元同俗 故有一證可辨"



도9. 『속병장도설』,〈주작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10. 〈화성원행반차도〉의 〈주 작가〉 부분, 조선 1759년, 종이 에 색, 46.5×4,483.0cm, 국립 중앙박물관(덕수 2507)



도11. 『기효신서』, 〈주작기〉, 서울대학교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2) 도상의 변용, 비상하는 붉은 새

찬궁 사수도 속 주작의 도상은 1757년(영조 33)을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변한다. 바로 삼수삼 족의 주작이 비상하는 붉은 새로 변모한 것이다. 즉 주작은 상상 속의 새에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새로 바뀌었다. 변화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조는 1749년(영조 25)에 편찬된 『속 병장도설續兵將圖說』의 주작 깃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59 깃발 속의 주작은 오색운 사이를 비상하는 붉은 새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하늘을 향해 큰 날개 짓을 하며 날아오르는 모습은 영조 대 이후 찬궁 주작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며, 이러한 깃발을 1795년(정조 19)에 제작된 〈화성원행반차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실제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510 이러한 『속병장도설』의 그림은 척계광戚繼光(명明, 1528~1588)이 저술한 『기효신서紀汝新書』의 도설을 따른 것이며, 찬궁 주작도 도상도 주작 깃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511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례는 영조 중반에 편찬된 『기제旗制』에 나타난 주작 깃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512 전체적으로 채색된 주작 깃발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동세뿐 아니라 붉은 깃털과 대비되는 초록색 부리, 황색의 눈과 눈 주변의 푸른 깃털까지 찬궁 주작도와 동일하다.

이렇듯 조선의 깃발과 심지어 찬궁 사수도 도상에도 영향을 미친 『기효신서』에 나타난 주작의 도상적 전통은 어디에서 왔는가? 우선 비슷한 시기 명나라에서 편찬된 『삼재도회三才圖會』속 〈주작기〉^{도13}는 『기효신서』의 〈주작기〉와 달리 봉황을 형상화했다. 앞서 살펴 본대로 봉황은 주작



도12. 「기제」、〈주작기〉,일본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 마도서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제공



도13. 『삼재도회』、〈주작기〉, 서 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14. 〈대가노부도〉의 〈주작기〉 부분, 북 송. 51.4×1481.0cm. 중국 국가박물관

의 형태적 기원으로 주작을 봉황으로 표현하거나 두 새를 동일시하는 기록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결국 명대에 주작기는 『기효신서』에 나타난 비상하는 붉은 새와 『삼재도회』에 수록된 봉황으로 형상화된 두 개의 도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명明의 깃발은 모두 송宋의 깃발 제도를 따랐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도 명대 『삼재도회』에 나타난 주작기는 중국 국가박물관 소장 북송北宋의 〈대가노부도서大駕鹵簿圖書〉행렬에 나타난 주작 깃발과 상당히 유사하다. 도14 주작을 봉황으로 묘사한 것뿐 아니라 하늘을 향한 날개 짓과 꼬리의 흩날림도 같다. 이에 비해 『기효신서』에 나타난 비상하는 붉은 새로 표현된 주작 깃발은 송대의 『삼례도三禮圖』에 나오는 '여旟'라는 명칭의 깃발과도15 같은 시대에 편찬된 『예서禮書』에 수록된 '대적기大赤旗'라는 깃발에 비견될 수 있다. 이들 모두 조준鳥隼이 그려져 있는데, 조준은 주작을 지칭하며 불을 뜻한다고 도설은 설명하고 있다. 5 비록 두 깃발 모두 명칭은 주작기가 아니지만, 깃발에 그려진 도상은 『기효신서』의 주작과 유사하게 하늘을 날고 있는 새로 표현되었다.

사실 주작기와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여' 깃발은 이미 『주례周禮』의 「춘관春官」에 나타나고 있어 그 역사가 길다. 불(火)과 남방南方을 상징하는 '여' 깃발은 일반적으로 『예기』의 「곡례」에 나타

202

^{58.} 陈鹏程,「旧题《大驾卤簿图书·中道》研究一"延祐卤簿"年代考」,『故宫博物院院刊』1996年2期,(故宫博物院, 1996) 社卫.

^{59.} 丁鼎 译·聂崇义, 『新定三礼图』(清华大学出版社, 2006), 267쪽, "輈人云 鳥族七斿 以象鶉火 注云 鳥隼為旟鶉火 朱鳥宿之栁 其屬有星 星七星."



도15. 『신정삼례도』、〈여〉, 중국 청화대학출판사, 2006, 267쪽 재인용



도16. 『자경전진작정례의궤』, 〈주작기〉, 조선 1827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17. 〈주작기〉, 132.5×135.5cm, 국립 고궁박물관

난 주작기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⁶⁰ 송나라에서는 '대적기'로 불리고, 고려에서는 '응준기'로 변용되었음은 이미 확인하였다. 하지만 명대에 이르러 '여' 깃발의 도상이 주작기에 차용되어 주작이 비상하는 붉은 새로 묘사되었고, 이는 봉황을 형상화한 주작기와 병존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명대의 비상하는 붉은 새로 표현된 주작 도상이 훗날 조선시대 영조 대 편찬된 『속병장도설』 주작 깃발의 도상에 수용되고, 아울러 1757년(영조 33) 이후 변화된 찬궁 사수도 중 주작도 도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도상은 찬궁 사수도 속 주작도의 범본으로써 1926년 순종황제 찬궁 사수도까지 지속되었다.

그렇다면 왜 영조가 상장례를 정비하면서 조선의 독자적인 삼수삼족의 주작 도상 대신 중국의 노부제에 표현된 주작의 도상을 따랐을까? 안타깝게도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았다. 다만 영조대 『속병장도설』이 편찬된 이후에도 주작 깃발의 도상으로 비상하는 붉은 새뿐만 아니라 삼수삼족의 주작도 여전히 그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경전진작정례의 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에는 삼수삼족의 주작 깃발이 수록되어 있고, 516 국립고궁박물관에 현전하는 주작 깃발도 매의 모습을 한 삼수삼족의 주작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경전진작정계의 다.517 결국 삼수삼족의 주작 도상은 1757년(영조 33) 이후 순조 대 일시적으로 회귀한 것을 제외하고 찬궁 주작도에 계승되지 않았지만, 노부의 주작 깃발에 한해서는 여전히 사용되어 같은 시기중국 청대에 봉황이 형상화된 주작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61

이상을 정리하면, 1757년(영조 33) 찬궁 주작도에 나타난 비상하는 붉은 새 도상은 중국 고대 깃발 중 하나인 '여'의 도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명대에 이르러 주작기 도상에 수용되었고, 이러한 명대의 도상을 조선에서는 1749년(영조 25) 기제에 받아들였으며, 1757년 이후 찬궁 사수도 중 주작도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찬궁 주작도 도상의 전통을 찬궁 사수도 전체에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이유는 찬궁에 표현된 청룡, 백호, 현무는 척계광의 『기효신서』에 나타난 도상과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영조 대 변화된 찬궁 사수도의 도상이 한권의 책이나 하나의 흐름에 의해 일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닌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이며, 당시 도상 선택의 기준은 예제의 전통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IV. 맺음말

조선시대 왕과 왕후의 재궁을 둘렀던 찬궁에는 방위에 따라 사수도를 그렸다. 이는 능침의 석실 (혹은 석곽)에도 그대로 채용되었다. 사수도는 고대부터 내려온 장의 예술의 한 형식으로 상장례가 가지는 보수성에 따라 사수의 방위와 위치 등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표현하는 도상과 양식은 달랐다. 조선시대 찬궁에 나타난 사수도도 마찬가지이다. 좌청룡, 우백호는 남수북미南首北尾, 남주작와 북현무는 서수동미西首東尾로 한결같이 나타나지만, 그세부적인 도상은 청룡은 횡에서 S자형으로, 백호는 비호에서 출산호로, 주작은 삼수삼족에서 비상하는 붉은 새로, 현무는 귀사합체에서 거북만 남는 모습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찬궁에 나타난 사수도 중 삼수삼족의 주작은 조선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조선의 독창적인 도상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상장례가 정비된 영조 대에 이르러 찬궁 속 주작은 명대 『기효신서』에 수록된 주작 깃발 도상에 따라 비상하는 붉은 새로 변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시대 찬궁 주작도의 변화 양상을 찬궁 사수도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다. 청룡과 백호, 현무는 개별적으로 도상이 변용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의궤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 한 자료이다. 다만 의궤가 가진 "상고하여 취한다"는 보이지 않는 원칙에 따라 같은 도상이 반복적 으로 나타나는 의궤만을 가지고 사수도 도상을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궁궐 전반에 나타난 사수도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흉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205

^{60.} 김일권, 앞의 논문(2001), 115쪽.

^{61. 1748}년(건륭 13)에 편찬된 『황조예기도식皇朝禮器圖式』, 1764년(건륭 29) 완간된 『대청회전大淸會典』, 1806년(일본 분카 3)에 출간된 건류제 당시 깃발 제도를 수록한 『당토명승도회唐土名勝馭会』의 주작기도 모두 봉황의 형상을 하고 있다.

[표] 흉례 의궤에 기록된 사수도

	서명	제작 연대/ 원소장처/ 현소장처	청룡	백호	주작	현무
1	원종예장 도감의궤 元宗禮葬 都監儀軌	1627년 (인조 5)/ 강화부/ 奎 13518	The same of the sa		W. M.	L.
2	선조목릉 천장산릉 도감의궤 宣祖穆陵 遷莽山陵 都監儀軌	1631년 (인조 9)/ 외규장각/ 외규 002	The second second	- Contraction of the Contraction		Jef.
3	인목왕후 목릉산릉 도감의궤 仁穆王后 穆陵山陵 都監儀軌	1632년 (인조 10)/ 춘추관/ 奎 13517			T	PS.
4	인조장릉 산릉의궤 仁祖長陵 山陵都監 儀軌	1649년 (효종 즉위년)/ 적상산/ K2-2367			THE STATE OF THE S	1
5	京会会会 산号도감 의궤 孝宗寧陵 山陵都監 儀軌	1659년 (현종 즉위년)/ 적상산/ K2-2320				5
6	인선왕후 영릉산릉 도감의궤 仁宣王后 寧陵山陵 都監儀軌	1674년 (현종 15)/ 외규장각/ 외규 031		A CONTRACTOR OF THE PARTY OF TH	The state of the s	Jas

	서명	제작 연대/ 원소장처/ 현소장처	청룡	백호	주작	현무
7	현종숭릉 산릉도감 의계 顯宗崇陵 山陵都監 儀軌	1674년 (숙종 즉위년)/ 외규장각/ 외규 039				3
8	인경왕후 익릉산릉 도감의궤 仁敬王后 翼陵山陵 都監儀軌	1681년 (숙종 7)/ 외규장각/ 외규 048		· ()	W T	3
9	명성왕후 숭릉산릉 도감의궤 明聖王后 崇陵山陵 都監儀軌	1684년 (숙종 10)/ 외규장각/ 외규 057			THE PARTY OF THE P	3
10	명성왕후 숭릉산릉 도감의궤 明聖王后 崇陵山陵 都監儀軌	1684년 (숙종 10)/ 의정부/ 奎 14832			W.	3
11	장렬왕후 휘릉산릉 도감의궤 莊烈王后 徽陵山陵 都監儀軌	1689년 (숙종 15)/ 외규장각/ 외규 065		The second second		1
12	정순왕후 사릉봉릉 도감의궤 定順王后 思陵封陵 都監儀軌	1699년 (숙종 25)/ 외규장각/ 외규 078	A THE RESERVE TO THE	66	TY I	S

조선시대 흥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207

	서명	제작 연대/ 원소장처/ 현소장처	청룡	백호	주작	현무
13	정순왕후 사릉봉릉 도감의궤 定順王后 思陵封陵 都監儀軌	1699년 (숙종 25)/ 적상산/ K2-2318		美	***	3
14	단종장릉 봉릉도감 의궤 端宗莊陵 封陵都監 儀軌	1699년 (숙종 25)/ 외규장각/ 외규 079	The state of the s		*	S)
15	인현왕후 명릉산릉 도감의궤 仁顯王后 明陵山陵 都監儀軌	1702년 (숙종 28)/ 외규장각/ 외규 082			**	53
16	숙종명릉 산릉도감 의궤 肅宗明陵 山陵都監 儀軌	1721년 (경종 즉위년)/ 외규장각/ 외규 104	ESTE	33		53
17	경종의릉 산릉도감 의궤 景宗懿陵 山陵都監 儀軌	1725년 (영종 즉위년)/ 적상산/ K2-2329		3	NV.	500
18	선의왕후 의릉산릉 도감의궤 宣懿王后 懿陵山陵 都監儀軌	1730년 (영조 6)/ 적상산/ k2-2362		1		33

	서명	제작 연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원소장처/				
19	정성왕후	현소장처 1757년	ple me	6	-	111111
	홍릉산릉 도감의궤	(영조 33)/ 오대산/	*	Rin		-
	上台	호대전/ 奎 13591	8 E A 2			G
	弘陵山陵		1	The state of the s		Janes
	都監儀軌		A CONTRACTOR	8 0	1 3	
20	인원왕후	1757년	100	any		
	명릉산릉 도감의궤	(영조 33)/ 외규장각/	57	FIFE		6
	仁元王后	외규 196	20 6	A COMPANY		
	明陵山陵 都監儀軌		View		The same of the sa	-03
					N.	from the contract of
21	영조원릉 산릉도감	1776년 (정조	3 000	P	4	P
	의궤	~위년)/	TERROR OF	Sallen		P
	英祖元陵	오대산/	55 361			13
	山陵都監	奎 13586	-	5.84		Yanna .
	儀軌		一	15 15	M	3
22	장헌세자	1789년	and we	S	1	6 y 135
	현륭원원소	(정조 13)/	4	and .		-
	도감의궤 莊獻世子	외규장각/ 외규 220	15 - 1 -	"INGTON		
	顯隆園園所	±111 ZZ0		ulle /		
	都監儀軌		100000	The state of the s		June 1
			AND THE PERSON OF THE PERSON O	3		
23	정조건릉 산릉도감	1800년 (순조	-	-	1	f
	의궤	(문고 즉위년)/	CAL CO	Freeze		100
	正祖健陵	오대산/	SE - E			A STATE OF THE PARTY OF THE PAR
	山陵都監	奎 13640	27			ALTERNA
	儀軌		ティン	1 1 3	1	
24	정순왕후	1805년	Non.	4-7		70
	원릉산릉 도감의궤	(순조 5)/ 정족산성/	Tan -	400	1000	
	五名 貞純王后	会 全 13596		18		
	元陵山陵		SALE OF	150000		30000
	都監儀軌			(Among	97	all the contract of
			21 27000		V 9	10
				-	-	-

조선시대 흥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209

	서명	제작 연대/ 원소장처/ 현소장처	청룡	백호	주작	현무
25	헌경혜빈 현륭원원소 도감의궤 獻敬惠嬪 顯隆園園所 都監儀軌	1816년 (순조 16)/ 외규장각/ 외규 226			×	
26	혜빈 현륭원원소 도감의궤 惠嬪 顯隆園園所 都監儀軌	1816년 (순조 16)/ 춘추관/ 奎 13617		and the second	ملا	
27	헌경혜빈 빈궁혼궁 도감의궤 獻敬惠嬪 殯宮魂宮 都監儀軌	1816년 (순조 16)/ 외규장각/ 외규 229				3
28	恵의왕후 빈전혼전 도감의궤 孝懿王后 殯殿魂殿 都監儀軌	1821년 (순조 21)/ 미상/ 奎 13650	A STA	We want	No.	
29	현목수빈 빈궁혼궁 도감의궤 顯穆綏嬪 殯宮魂宮 都監儀軌	1823년 (순조 23)/ 외규장각/ 외규 252		F	The state of the s	3
30	순조인릉 산릉도감 의궤 純祖仁陵 山陵都監 儀軌	1834년 (순조 34)/ 춘추관/ 奎 13678				

	서명	제작 연대/ 원소장처/ 현소장처	청룡	백호	주작	현무
31	효현왕후 경릉산릉 도감의궤 孝顯王后 景陵山陵 都監儀軌	1843년 (헌종 9)/ 외규장각/ 외규 272			×-	
32	익종수릉 천봉산릉 도감의궤 翼宗綏陵 遷奉山陵 都監儀軌	1846년 (헌종 12)/ 외규장각/ 외규 280			A	
33	헌종경릉 산릉도감 의궤 憲宗景陵 山陵都監 儀軌	1849년 (철종 즉위년)/ 외규장각/ 외규 289		Pa	L	
34	순조인릉 천봉산릉 도감의궤 純祖仁陵 遷奉山陵 都監儀軌	1856년 (철종 7)/ 오대산/ 奎 13706			X	
35	순원왕후 인릉산릉 도감의궤 純元王后 仁陵山陵 都監儀軌	1857년 (철종 8)/ 오대산/ 奎 13694			علم	
36	철종예릉 산릉도감 의궤 哲宗睿陵 山陵都監 儀軌	1863년 (고종 즉위년)/ 정족산성/ 奎 13852				

210 조선시대 흥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촬 211

	서명	제작 연대/ 원소장처/ 현소장처	청룡	백호	주작	현무
37	철인왕후 예릉산릉 도감의궤 哲仁王后 睿陵山陵 都監儀軌	1878년 (고종 15)/ 정족산성/ 奎 13873		Z	X	
38	신정왕후 수릉산릉 도감의궤 神貞王后 綏陵山陵 都監儀軌	1890년 (고종 27)/ 규장각 혹은 시강원/ 奎 13749			×	
39	명성황후 홍릉산릉 도감의궤 明成皇后 洪陵山陵 都監儀軌	1895년 (고종 32)/ 오대산/ 奎 13891	S	PA	2	
40	효정왕후 경릉산릉 도감의궤 孝定王后 景陵山陵 都監儀軌	1904년 (광무 8)/ 정족산성/ 奎 13832			A.	
41	を명비 유강원원소 도감의궤 純明妃 裕康園園所 都監儀軌	1904년 (광무 8)/ 정족산성/ 奎 13917		32	مكر	5
42	고종태황제 산릉주감 의궤 高宗太皇帝 山陵主監 儀軌	1919년/ 봉모당/ K2-2284			×	5
43	セミュリック セラック できます かいます かいます かいます かいます かいます かいます かいます かい	1926년/ 봉모당/ K2-2339		AN	1	

[※]奎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K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외규는 외규장각 의궤이다.

국문초록

조선시대 흉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찬궁'은 왕과 후비의 관인 '재궁'이 왕릉에 정식으로 안장되기 전 재궁을 담아서 보관하는 집 모양의 구조물이다. 조선시대에는 찬궁 내 사면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그렸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흉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을 알아보되, 가장 극적인 도상 변화가 나타난 주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찬궁에 사수도를 그렸다는 가장 이른 기록은 『세종실록世宗實錄」의 「오례五禮」에 나타나며 그 도상은 흉례 의궤의 도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조대 이전 청룡은 화염을 두른 채 발톱이 네 개인 사조룡 혹은 ⊃자형의 오조룡으로 표현되며, 백호는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 앉아 있는 모습, 화염을 두르고 산을 내려오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반면 주작은 세 개의 머리와 세 개의 다리를 가진 봉황으로, 현무는 뱀과 거북이가 서로를 응시하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찬궁 사수도의 도상이 극적으로 변하는 시기는 영조(재위 1724~1776)대이다. 1757 년 『정성왕후산릉도감의궤』에서 청룡은 S자형으로 변화하여 보다 역동적으로 표현되며, 백호 는 화염이 사라진다. 주작은 붉은 새가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현무는 거북만 나타난 다. 이렇게 변화된 도상은 1926년 순종황제(재위 1907~1910) 찬궁 사수도까지 지속되었다. 주작은 회화에서 봉황이나 닭. 때로는 매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찬궁에 그려진 주작 은 세 개의 머리와 세 개의 다리를 한 봉황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대부터 전승된 삼족오와 봉황. 매의 도상을 모두 차용한 결과물이다. 특히 재앙을 물리치는 부적에 나오는 머리 셋 달 린 매와 봉황의 모습을 한 삼족오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검토된다. 이러한 주작의 도상은 영조 대 들어서 획기적으로 변한다. 즉 붉은 새가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 다. 이러한 변화의 징조는 『속병장도설』(1749)에 나오는 왕실의 의장품을 그림으로 설명한 노 부도 중 주작을 그린 깃발(주작기)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도상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기 이후에 제작된 사수기는 백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영조대 이전 사 수도 도상을 따르고 있으며, 오직 백호기만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도상이다. 이는 사수도의 표 현양식은 당대의 회화 양식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도상의 선책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각 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예제의 전통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다.

주제어: 흉례, 의궤, 찬궁, 재궁, 사신, 사수, 청룡, 주작, 현무, 노부(왕실 깃발)

조선시대 흥례 의궤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213

Abstract

Study of the
Four Directional
Deities Painted on
Changung as
Illustrated in
Uigwe for Funerary
Rites of the
Joseon Dynasty

Changung (欑宮) refers to house—shaped structures used to preserve jaegung (梓宮), the coffins of kings or queens, prior to their official burial in royal tomb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four directional deities referred to as sasu (四獸) or sasin (四神)—i.e., the azure dragon (靑龍, cheongnyong), white tiger (白虎, baeko), vermilion bird (朱鳥, jujo), and black tortoise (玄武, hyeonmu)—were painted on the four walls of a changu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conographies of these four directional deities as featured on changung illustrated in Joseon—period Uigwe titles on funerary rites,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iconography of the vermilion bird since it shows the most dramatic change over time.

The earliest Joseon dynasty record of painting the four directional deities on *changung* appears in the Five Rites (五禮, *Orye*) section of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世宗實錄, *Sejong sillok*). The relevant iconographies can be found in illustrations in the Uigwe titles for funerary rites. Prior to the reign of King Yeongjo (英祖, r. 1724–1776), the azure dragon was depicted either as having four claws and surrounded by fire or as a five—clawed creature curved into the shape of a reversed C (\supset). The white tiger was portrayed as flying in the sky, seated, or climbing down a mountain while wrapped in flames. The vermilion bird was represented as a mythical *bonghwang* (鳳凰) bird with three heads and three legs, while the black tortoise consisted of a snake and a tortoise facing each other.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the iconographies of the four directional deities featured on *changung* underwent drastic changes. In the *Uigw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omb of Queen Jeongseong* (貞聖王后山陵都監儀軌, *Jeongseongwanghu salleung dogam uigwe*) compiled in 1757, the azure dragon looks more dynamic, with an S curve in its body, the white tiger is represented without flames, the vermilion bird is depicted flying in the sky, and the black tortoise is alone minus the snake. These altered iconographies for the four directional deities continued to appear on *changung* until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s evidenced by the images of these four directional deities on the *changung* of Emperor Sunjong (純宗, r. 1907–1910) produced in 1926. The vermilion bird was frequently represented as either a *bonghwang*, rooster, or hawk. As mentioned above, the vermilion bird as depicted on *changung* prior to the reign of King Yeongjo has three heads and three legs, which is a combination of the images of a three–legged crow found in ancient mythology, a *bonghwang*, and a hawk. In particular, it appears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iconography

of the three—legged bird that appeared in talismans against disaster, which was depicted as having three hawk heads and the body of a *bonghwang*.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the iconography of the vermilion bird changed considerably to become a bird flying in the sky with its wings open wide, reflecting an apparent Chinese influence. This change can be witnessed in the illustration of the vermilion bird flag included in the *nobudo* (鹵簿圖, "illustration of the instruments used in royal events") in the *Revised Illustrated Manual of Military Training and Tactics* (續兵將圖說, *Sok byeongjang doseol*) (1749). Flags of the four directional deities produced after the late nineteenth century, however, all follow the iconographies conventional prior to the reign of King Yeongjo, with the exception of the white tiger flags, which feature a Chinese version.

This indicates that representations of the four directional deities were influenced by contemporaneous painting techniques, but the style of iconography differed between individual deities according to which convention was followed as the standard for rites.

Keywords: Funerary rites (*hyungnye*), Uigwe, *Changung*, *Jaegung*, Four directional deities (*sasu; sasin*), Azure dragon, Vermilion bird, Black tortoise, *Nobu* (royal flags)

조선시대 홈례 의례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215

Abstract

Étude sur les
peintures des
quatre animaux
de la *Changung*,
dans les *Uigwe*relatifs aux rites
funéraires sous
la dynastie Joseon

La Changung est une structure en forme de maison, où on place le Jaegung cercueil d'un roi ou d'une reine, avant de l'inhumer définitivement dans un tombeau royal. Sous la dynastie Joseon, chacun des quatre murs de la Changung a une porte coulissante décorée d'un motif : un dragon bleu, un tigre blanc, un oiseau vermillon et une tortue noire. Cette étude examine les peintures des quatre animaux présentes dans les *Uigwe* relatifs aux rites funéraires, et vise surtout à analyser celles de l'oiseau vermillon, qui montrent un changement radical au niveau iconographique.

C'est dans « Les Cinq rites royaux » des *Annales du roi Sejong* (qui appartiennent aux *Annales de la dynastie Joseon*) que l'on peut trouver le premier document sur les peintures des quatre animaux de la *Changung*. Cette iconographie apparaît dans un texte illustré des *Uigwe* relatifs aux rites funéraires. Avant Yeongjo, le 21e roi de la dynastie Joseon, le dragon bleu ressemble au dragon à quatre griffes ou à celui à cinq griffes et en forme de ⊃, et il est entouré d'une flamme. Dans les images, le tigre blanc marche sur le sol, est assis ou descend d'une montagne, entouré d'une flamme ; l'oiseau vermillon est représenté comme un phénix à trois têtes et trois pattes ; la tortue noire est peinte en compagnie d'un serpent, l'un et l'autre se contemplant.

L'iconographie des quatre animaux de la *Changung* change d'une façon radicale sous le règne du roi Yeongjo (1724–1776). En 1757, le *Uigwe* relatif à la construction de la tombe de la reine Jeongseong laisse voir cette évolution iconographique: le dragon bleu est représenté dans un mouvement corporel en forme de S, ce qui le rend plus dynamique; le tigre blanc est privé de flamme; l'oiseau vermillon s'envole dans le ciel; la tortue reste seule, le serpent ayant disparu. L'iconographie qui a ainsi changé subsiste jusqu'aux peintures des quatre animaux de la *Changung* construite en 1926 pour Sunjong, le 2nd empereur de l'empire de Corée (qui régna de 1907 à 1910).

Dans certaines peintures, l'oiseau vermillon est représenté comme un phénix, un coq ou un faucon. Dans celles des *Changung* de la dynastie Joseon, il apparaît sous la forme d'un phénix à trois têtes et trois pattes, soit un composé d'oiseau à trois pattes (transmis depuis les temps anciens), de phénix et de faucon. L'image de l'oiseau vermillon aurait été influencée surtout par celle de l'oiseau à trois pattes ressemblant à un phénix ou à un faucon à trois têtes peint sur un talisman contre le malheur. La forme de l'oiseau vermillon change considérablement

sous le règne du roi Yeongjo : déployant les ailes, il s'envole désormais dans le ciel. Avant même le règne de Yeongjo, une telle transformation s'observe sur un drapeau royal portant ce motif, peint dans la *Nobudo*, illustration d'une procession royale montrant les objets de cérémonie, dans la *Suite du livre illustré de l'Art de la Guerre* (1749). Cette évolution iconographique révèle une influence chinoise. Cependant, les drapeaux à oiseau vermillon, à tortue noire et à dragon bleu, façonnés depuis la fin la fin du XIXe siècle, reprennent l'iconographie des peintures des quatre animaux, antérieures au règne du roi Yeongjo, alors que les drapeaux à tigre blanc témoignent de l'influence chinoise. Cela nous apprend que le style des peintures des quatre animaux est influencé par celui des tableaux d'une époque donnée, tandis que la sélection de l'iconographie varie selon les quatre figures et les traditions des rites à suivre.

Mots—clés: rites funéraires, *Uigwe*, *Changung* (structure en forme de maison où on place le cercueil d'un roi ou d'une reine avant de l'inhumer définitivement dans un tombeau royal), *Jaegung* (cercueil de roi ou de reine), quatre dieux, quatre animaux, dragon bleu, oiseau vermillon, tortue noire, *Nobu* (drapeau royal)

조선시대 홈레 의케에 나타난 찬궁 '사수도' 도상 고찰 217

17~19세기 흉례 의궤의 혼전제기 기록에 대한 고찰

 $\bigcup \{$

Study of Ritual Vessels Used in Spirit Halls as Recorded in Uigwe for Funerary Rites from the Seven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y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Lee Jaejeong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 Ⅰ. 머리말
- Ⅱ. 혼전제기에 대한 의궤의 기록
- Ⅲ. 혼전제기의 구성
- Ⅳ. 혼전제기의 시기별, 의례별 특징
- 1. 제기의 구성
- 2. 제기의 무게
- 3. 제기의 재질
- Ⅴ. 맺음말

I. 머리말

유교 국가 조선에서 제사祭祀는 유교적 통치 체제의 유지 기반인 예제禮制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 장치의 하나였다. 특히 조선 왕실의 조상에 대한 제사는 왕실 스스로 유교 의례를 실천하고 그로써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는 의례로서, 통치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제사에서 신神과 소통하는 매개물인 제수祭需를 담거나 제사 의례 집행에 사용하는 제기祭器는 제사를 예에 맞게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 왕실에서는 왕실 제기를 만들때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정승을 도제조都提調로 삼아 관리 조직을 감독케 하였고 최상의 재료를 선택하여 최고의 솜씨를 지닌 장인匠人을 동원하였다.

지금까지 조선 왕실의 제기에 대한 연구는 제기에 관련된 도설圖說과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한 제기의 사용례와 양식 변화에 대한 연구, 제기를 만든 장인에 대한 연구, 현존하는 금속 제기에 대한 과학적 성분 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주로 종묘제기宗廟祭器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² 종묘 제사는 국가 제사 중에서도 대사大配에 속하는 제사로 규모가 커서 모든 제기가 다 사용되었고 기록도 많이 남아 있으며,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기의 종류와 수량에만 차이를 보일뿐 제기의 형태에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³

하지만 제사의 종류나 대상에 따라 제수가 달라지거나 의례의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기의 종류와 구성이 달랐다. 왕실 구성원들에 대한 제사 가운데 종묘 대제는

- 조선시대 제사 의례의 정비와 의미 등에 대한 연구는 이욱, 「조선 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한국사연구회, 2002. 12.); 「조상제사의 의미와 기억의 의례화儀禮化」, 『국학연구』 19(한국국학진흥원, 2011. 12); 한 형주, 「조선시대 국가제사의 시대적 특성」, 『민족문화연구』 4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12); 「조선초기 왕릉제사의 정비와 운영」, 『역사민속학』 33(역사민속학회, 2010. 7.); 임민혁, 「조선 초기 국가의례와 왕권-국조오례의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43(역사실학회, 2010. 11.); 강제훈, 「조선왕릉과 왕릉 의례의 특징」, 『한국사학보』 54(고려사학회, 2014. 2.)등 참조.
- 2. 왕실의 제기 관련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장경희, 「조선후기 王室祭器 鑄成 鍮器匠 연구」, 『한국공예논총』 11(한국공예학회, 2008. 여름): 김종임, 「朝鮮王室 金屬祭器 研究-宗廟祭器를 中心으로」 『미술사학연구』 277(한국미술사학회, 2013. 3.): 하은미, 「宗廟祭器와 朝鮮時代 祭器圖說 研究」(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2); 「장서각 소장〈진설도陳設圖〉와 조선후기 왕실 제례 정비」, 『미술사학』 30(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5. 8.): 박봉주, 「조선시대 국가 祭禮와 尊・疉의 사용」, 『조선시대사학보』 58(조선시대사학회, 2011.9.); 「조선시대 국가 祭禮와 遵・豆의 사용」, 『동방학지』 159(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9.); 사공영애, 「朝鮮 王室 香爐 研究 -古銅器形 香爐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석사학위논문, 2007.8.); 장은혜・박용수, 「중묘 출토 제기의 보존처리」, 『문화재보존연구』 8(서울역사박물관, 2011. 12.) 등이 있다.
- 3. 김종임, 앞의 논문, 133쪽 주 3에서 금속 제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 4.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권1,「길례吉禮·찬실준뢰도설饌實尊罍圖說」에서 제사의 종류에 따라 소용되는 제기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했다.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국가제례』(국립고궁박물관, 2016)에서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례 절차, 상차림, 제기의 종류 등을 망라하여 정리하였다.

오례 중 길례吉禮에 속하고 선왕이나 왕실 가족의 사망에 따라 빈전殯殿과 혼전魂殿, 능묘陵墓 등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의례는 흉례凶禮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례의 차이에 따라 제수의 내용이나제사상의 구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제사의 대상에 따라,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기의구성이나 모양, 제작법 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상國喪의 절차를 다룬 흉례凶禮 의궤義軌에는 제기의 제작 과정이나 의례별 제기의 구성과 수량 등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 있어 제기의 제작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나 시기별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흉례 의궤에는 혼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혼전제기魂 殿祭器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현존하는 흉례 의궤에 나와 있는 혼전제기와 혼궁제기魂宮祭器를 대상으로 신분에 따른 차이와 시기별 변화 추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혼전제기에 대한 의궤의 기록

조선은 유교적 예제의 전범이 되는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에 「제기도설祭器圖說」을 수록하는 등 제기祭器의 법식과 제도를 갖추는 데 주의를 기울였으며, 초기부터 국가 전례에 필요한 제기를 완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제기를 제작하였다. 16~17세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전란을 거치면서 많은 제기들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자, 왕실에서는 종묘와 사직 등의 제사에 사용될 제기를 여러 차례 다시 제작했으며, 17세기부터는 국상이 있을 때마다 혼전제기와 산릉제기山陵祭器를 만들었다.6

혼전은 국상 즉 국왕이나 왕비가 승하했을 때 그 신주를 봉안하는 전각이다. 장례를 마친 후 신주神主(虞主)를 모셔와 혼전에 봉안하고, 이를 종묘에 모시는 부묘祔廟를 행할 때까지 이곳에서 상례와 관련된 제반 의식과 제례가 행해졌기 때문에, 혼전은 왕실 의례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곳이었다. 혼전의 제사는 산릉에서 장사를 지내고 반우返虞한 뒤 우제虞祭를 지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서 칠우제七虞祭 뒤에 이루어지는 졸곡제卒哭祭, 승하한 후 1년이 되는 첫 번



도1. 『헌종빈전혼전도감의궤』, 『진설도식』의 〈우제찬도〉와 〈혼전속절삭망제찬도〉 『국조상례보편』의 도설과 동일하다.

째 기일로 에 올리는 연제練祭, 승하한 후 2년이 되는 두 번째 기일에 올리는 상제祥祭, 상제를 올린 후 만 2개월 뒤에 올리는 담제禪祭를 차례로 행하였다. 이 외에도 춘하추동 사시四時에 이루어지는 사항대제四享大祭와 납일臘日에 이루어지는 납일대제臘日大祭, 명절에 이루어지는 속절별제俗節別祭, 삭망제朔望祭, 탄신제誕辰祭 등이 거행되었다. 7 도 1

이처럼 혼전에서 거행되는 다양한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제기가 혼전제기이다. 혼전제기는 도감을 두어 제작했으며, 흉례 의궤에는 혼전제기가 제작되는 과정과 제기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현존하는 의궤 중에서 혼전제기와 함께,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손 등의 신주를 모신 혼궁魂宮에서 사용한 혼궁제기를 언급한 의궤들을 뽑아 [표1]로 정리하였다.(이하 별도로 구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혼전제기라는 표현은 혼궁제기를 포괄한다.)

220

^{5.} 강제훈, 「조선 초기 俗祭祭祀床의 구성과 그 특징」, 『한국사학보』 60(고려사학회, 2015. 8.)에서 종묘 제사인 정사正祀와 구분되는 문소전文昭殿, 진전眞殿, 산릉山陵에 제사를 지내는 속제俗祭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속제의 제수와 제사상은 흉례의 혼전과 산릉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종묘의 것과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6.} 조선 왕실의 제기 제작에 대해서는 장경희, 앞의 논문(2008), 8~14쪽 참조.

윤정, 「조선시대 魂殿 운영에 대한 기초적 정리」, 『규장각』 28(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12.) 99~104쪽. 4장 혼전의 제례 참조.

[표 1] 혼전제기를 기록한 흉례 의궤

	서명	제작 연도	제기 관련 기록 부분	소장차
1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601년	혼전배비魂殿排備	奎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선조 34)		14845
2	인목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632년	혼전魂殿/배비排備/별공작別工作/	奎
	仁穆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인조 10)	주성소 소장조작급각사진배鑄成所 所掌造作及各司進排	1351
3	소현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	1645년	혼궁삼방魂宮三房/제기주성질祭器鑄成秩	외규
	昭顯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인조 23)		7
4	 인조빈전혼전도감의궤	1649년	혼전삼방魂殿三房/제기주성수祭器鑄成數	외규
	仁祖殯殿魂殿都監儀軌	(효종 즉위년)		10
5		 1659년	혼전삼방소장魂殿三房所掌(제기주성祭器鑄成)/	외규
	孝宗殯殿魂殿都監儀軌	(현종 즉위년)	감결질甘結秩 올해己亥 5월 15일/제기주성수祭器鑄成數	18
6	 인선왕후혼전도감의궤	 1674년	혼전삼방소장魂殿三房所掌(제기주성祭器鑄成)/감결질甘結秩	외규
	仁宣王后魂殿都監儀軌	(현종 15)	갑인甲寅 4월 11일/제기주성수祭器鑄成數	34
7	 현종혼전도감의궤	 1675년	혼전삼방소장魂殿三房所掌(제기주성祭器鑄成)/	외규
	顯宗魂殿都監儀軌	(숙종 1)	품목질稟目秩/제기주성수祭器鑄成數	41
8	 인경왕후혼전도감의궤	 1681년	혼전삼방魂殿三房/감결질甘結秩/	외규
	仁敬王后魂殿都監儀軌	(숙종 7)	利기주성수祭器鑄成數	51
9		1684년	혼전삼방魂殿三房/수본질手本帙/	외규
	明聖王后魂殿都監儀軌	(숙종 10)	利 기주성수祭器鑄成數	60
10	 장렬왕후혼전도감의궤	1689년	혼전삼방魂殿三房/수본질手本秩/	외규
	莊烈王后魂殿都監儀軌	(숙종 15)	무진戊辰 9월 6일/제기주성수祭器鑄成數	68
11	 인현왕후혼전도감의궤	1702년	혼전삼방魂殿三房/수본질手本秩/	외규
	仁顯王后魂殿都監儀軌	(숙종 28)	신사辛巳 11월 14일/제기주성수祭器鑄成數	85
12		1718년	호궁삼방魂宮三房/수본질手本秩/	외규
-	端懿嬪魂宮都監儀軌	(숙종 44)	利기 주 성수祭器鑄成數	96
13	숙종혼전도감의궤	1721년	호전삼방魂殿三房/수본질手本秩/	외규
	肅宗魂殿都監儀軌	(경종 1)	利기주성수祭器鑄成數	107
14	경종혼전도감의궤	1725년	혼전삼방소장魂殿三房所掌(제기주성祭器鑄成)/	외규
'-	景宗魂殿都監儀軌	(영조 1)	수본질手本秩/제기주성수祭器鑄成數	117
15	선의왕후혼전도감의궤	1731년	혼전삼방소장魂殿三房所掌(제기주성祭器鑄成)/	외규
10	宣懿王后魂殿都監儀軌	(영조 7)	품목질稟日秩 경술庚戌 7월 9일/제기주성수祭器鑄成數	135
16	효순현빈빈궁혼궁도감의궤(하)	1752년	字 オティン・マー・マー・マー・マー・マー・マー・マー・マー・マー・マー・マー・マー・マー・	외규
10	孝純賢嬪殯宮魂宮都監儀軌(下)	(영조 28)	苦목 马 稟目秩	172
17	의소세손빈궁혼궁도감의궤(하)	1752년	をオール を	외규
17	懿昭世孫殯宮魂宮都監儀軌(下)	(영조 28)	〒4月10年0十月11号10日 日本 1月1日 日本 1	180
18	정성왕후혼전도감의궤	1757년	로전삼방소장魂殿三房所掌(제기주성祭器鑄成)/수본질手本秩	외규
10	1000 字子でエピュー 利 貞聖王后魂殿都監儀軌	(영조 33)	정축丁丑 3월 25일/제기주성명색수克祭器鑄成名色數爻	194
19	인원왕후혼전도감의궤	1757년	혼전삼방소장魂殿三房所掌(제기주성祭器鑄成)/	외규
17	1000年2011年1日 1000日 1000日	1757년 (영조 33)	본산암왕조영(明熙三方)[부(제기구영宗益鑄成]] 수본질手本秩/제기주성명색수효祭器鑄成名色數爻	199
20	사도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하)		字子となるという。	
20	ストングライス という	1762년 (영조 38)	온궁도감심영주정조의 혜택, 본 하는 - 房籍以所領判, 기 등	외규 207
21				
21	영조혼전도감의궤	1776년 (저도 즈이크)	혼전삼방소장魂殿三房所掌(제기주성祭器鑄成)	奎 1250
	英祖魂殿都監儀軌	(정조 즉위년)		1358

	서명	제작 연도	제기 관련 기록 부분	소장처
22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하)	1786년	삼방주성소三房鑄成所/제기별단祭器別單	외규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下)	(정조 10)		215
23	정조국장도감의궤(3)	1800년	국장도감삼방의궤國葬都監三房儀軌/	奎
	正祖國葬都監儀軌(三)	(순조 즉위년)	조작질造作秩(제기질祭器秩)	13634
24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하)	1800년	정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삼방正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三房/	奎
	正祖殯殿魂殿都監儀軌(下)	(순조 즉위년)	제기주성 祭器鑄成	13637
25	정순왕후국장도감의궤(3)	 1805년	가경십년을축정월국장도감삼방의궤	奎
	貞純王后國葬都監儀軌(三)	(순조 5)	嘉慶十年乙丑正月國葬都監三房儀軌/내관질來關秩, 제기질祭器秩	1359
26		 1805년	정순왕후빈전혼전도감삼방의궤	奎
	貞純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四)	(순조 5)	貞純王后殯殿魂殿都監三房儀軌 /01是 移文	13594
27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3)	 1816년	 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삼방	외규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三)	(순조 16)	敬惠嬪殯宮魂宮都監三房/01是移文	232
28	 헌경혜빈빈궁혼궁도감의궤(하)	 1816년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권지삼	외규
	獻敬惠嬪殯宮魂宮都監儀軌(下)	(순조 16)	獻敬惠嬪襄禮都監儀軌卷之三/내관來關/혼궁제기, 제기질祭器秩	229
29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3)	1821년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권지삼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卷之三/	외규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三)	(순조 21)	삼방의궤三房儀軌/품목질稟目秩, 제기질祭器秩	242
30		 1821년	효의왕후빈전혼전도감삼방의궤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下)	(순조 21)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三房儀軌/01是移文	외규 239
31	현목수빈장례도감의궤(3)	 1823년	현목수빈장례도감의궤권지삼	외규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三)	(순조 23)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卷之三 삼방의궤三房儀軌/품목稟目	256
32		 1823년		외규
	顯穆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下)	(순조 23)	顯穆綏嬪殯宮魂宮都監三房儀軌 /0 是 移文	253
33		 1830년		奎
	孝明世子葬禮都監儀軌(三)	(순조 30)	삼방의궤三房儀軌/품목稟目/조작질造作秩	1371
34		 1830년		奎
	孝明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下)	(순조 30)	孝明世子殯宮魂宮都監三房儀軌	1372
35		 1835년		외규
	純祖國葬都監儀軌(三)	(헌종 1)	삼방의궤三房儀軌 낭청郎廳/	266
			품목稟目, 조작질造作秩의 제기명질祭器皿秩	
36		 1835년	순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목록	奎
	純祖殯殿魂殿都監儀軌(下)	(헌종 1)	純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目錄, 삼방三房	1367
37		 1844년		외규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三)	(헌종 10)	삼방의궤三房儀軌/품목稟目, 제기명질祭器皿秩	277
38		 1843년		奎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下)	(헌종 9)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三房儀軌/0 是移文	1380
39	헌종국장도감의궤(3)	 1849년	 헌종대왕빈전혼전도감삼방의궤	외규
	憲宗國葬都監儀軌(三)		憲宗大王殯殿魂殿都監三房儀軌/01是移文	294
40	헌종빈전혼전도감의궤(하)	1849년	헌종대왕국장도감의궤권지삼憲宗大王國葬都監儀軌卷之三	외규
-	憲宗殯殿魂殿都監儀軌(下)	(철종 즉위년)		292

[※]奎는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외규는 외규장각 의궤이다.

제기 관련 기록 부분의 '제기도설'은 도설과 함께 수록된 제기 목록을 의미하며 실제 의궤에는 이렇게 표기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40종의 의궤는 1601년(선조 34)부터 1849년(철종 즉위년)까지 약 250년간의 혼전 제기에 대한 기록을 포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외규장각 의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외규장각 의궤의 내용을 조사하고, 외규장각 의궤에 없는 것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의궤로 조사하였다. 헌종 이후 철종哲宗의 국장(1865), 순원왕후純元王后의 국장(1857), 철인왕후哲仁王后의 국장(1880), 신정왕후神貞王后의 국장(1892), 명성황후明成皇后의 국장(1898), 효정왕후孝定王后의 국장(1905) 때의 혼전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않았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조正祖(재위 1775~1800)의 국장부터는 '(빈전)혼전도감의궤(殯殿)魂 殿都監儀軌'와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 두 곳에서 혼전 제기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정조 국장부 터 혼전제기를 국장도감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조국장도감의궤』에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혼전도감이 상고하는 일이다. 본 도감(혼전도감) 낭청^{師順}이 총호사^{總護使}의 뜻으로 아뢰기를, "산릉의 제기는 국장도감에 소속시켜서 만들게 해 달라는 초기^{草配}에 윤허가 있었습니다." 혼전제기도 별도로 주성 소^{鑄成所}를 설치할 필요 없이 함께 주성하라는 뜻으로 국장도감에 분부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왕이 윤 허하신다"고 했으니 초기의 사연과 비지^批의 뜻을 받들어 (국장도감은 이를) 시행할 일이다."

즉 정조의 국장에서 산릉제기를 국장도감에서 주조하게 했는데, 혼전제기도 국장도감에서 함께 주조하자고 국왕에게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는 뜻이다. 동 의궤 「조작질造作秩」의 산릉유주제기 山陵鍮鑄祭器에 대한 세주細注에서 "산릉의 유주제기를 병신년丙申年부터 본방本房(국장도감 삼방)에서 주성했다."라고 하고 혼전유주제기魂殿鍮鑄祭器의 세주에서 이번부터 본방 즉 국장도감 삼방에서 주성한 것으로 기록했다.¹⁰

병신년은 영조英祖(재위 1724~1776)의 국장이 있었던 1776년이다. 영조가 승하한 이 해에 영조의 큰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1719~1728)를 진종眞宗으로 봉하고 둘째 아들이자 정조의 친부인 사

8. 본고의 주 고찰 대상 의궤는 외규장각 의궤이다. 외규장각 의궤에는 현종 국장 이후의 의궤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후의 흉례 의궤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다.

9. 『정조국장도감의刊』3,「내관질來關秩」, 경신 7월 일,"魂殿都監爲相考事 本都監郎廳以總護使意啓曰 山陵祭器屬之國葬都監鑄成事草記允下矣 魂殿祭器不必別設鑄成所 亦爲一體鑄成之意分付 國葬都監何如 傳曰允亦教是置 草記內辭緣及批 旨內辭意奉審施行向事。"

10. 『정조국장도감의궤』3. 「조작질造作秩」, "山陵鍮鑄祭器 丙申爲始 自本房鑄成" "魂殿鍮鑄祭器 今番自本房鑄成"

도세자思悼世子(1735~1762)의 묘소를 영우원永祐園으로 봉하면서 봉릉봉원양도감封陵封園兩都監의 제기를 만들 때, 영조의 혼전도감에서 함께 만들도록 했다. 아울러 진종(효장세자)의 혼전인 연복전延福殿, 사도세자의 혼궁인 경모궁景慕宮의 제기 역시 영조의 혼전도감에서 함께 만들도록 했으니 진종의 능인 영릉永陵과 사도세자의 묘인 영우원의 제기 주성도 영조의 산릉제기와 함께 국장도감에서 그 일을 함께 하고 혼전제기와 같이 부족한 것만 주조하도록 했다.¹¹ 즉 이 때 영조의 국상에 사용할 산릉제기를 국장도감에서 제작했고 아울러 진종과 사도세자의 산릉제기(묘소제기墓所祭器)도 영조의 국장도감에서 함께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786년(정조 10)에 거행된 문효세자文孝世子(1782~1786)의 장례에서는 묘소제기를 혼궁 도감에서 주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왕이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이전에 빈전의 제기는 본도감에서 주성하여 주성소라 일컬고, 산릉에서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주성청^{編成廳}을 설치하여 호조와 공조의 당랑^{堂郎}이 주관하였다. 그 사이에 간간이 수교^受執로 인하여 산릉제기를 별도로 주조하는 규칙을 특명으로 감하고 국장도감에 부속시켜 거행하게 했다. 지금 비로소 생각해보니 혼궁에서 사용되는 제기는 묘소에 비해 많으니, 묘소의 제기를 만드는 일을 혼궁주성소에서 함께 하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또한 사체^{事體}로 말하자면 묘소에서 필요한 것을 혼궁도감에서 만들면, 소속을 옮기는 것과 다름이 없고, 폐해를 없애므로 도리어 이득이 있다. 내궁^{內宮}과 외묘^{外墓}의 기물의 모양도 달라지는 폐단이 없을 것이니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모두 비용을 줄이고 폐단을 없애는 성의^{城意}를 우러러 받드는 것이다. 예장도감^{種葬都監}에 만일 주성소 명색으로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감하도록라.¹²

이 기록을 통해 산릉제기의 제작처가 때마다 달랐으며, 문효세자의 장례에서는 묘소제기를 혼궁도감에서 만들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묘소제기와 혼궁제기를 함께 만든 이유는 도감별로 각각 만드는 것에 비해 함께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기물의 모양이 달라지는 폐단이 없기 때

^{11. 『}영조국장도감의刊』상、「국장도감도청의刊國葬都監都廳儀軌」、「계사질啓辭秩」、병신 3월 27일、"領相吏判入侍 領議政金陽 澤所啓 封陵封園兩都監鍮器鑄成 合設於魂殿都監事 命下矣 延福殿・景慕宮祭器鑄成 方依下教 合設於魂殿都監 則永陵・永祐園祭器鑄成 亦宜與山陵祭器 合役於國葬都監 而且皆有本祭器 依魂殿都監例 只鑄其不足之數 何如? 上曰 依為之"

^{12. 『}是意州자민궁혼궁도감의刊』 상, 「入皇時日· 子성鑄成· 令전承傳」, 병오 6월 초10일, "在前殯宮祭器則自本都監鑄成 稱以鑄成所 山陵所用 別設鑄成廳 戶工曹堂郎主管 間因受教 山陵祭器別鑄之式 特命除減 伊後屬之 國葬都監舉行矣 今番始思之 魂宮所用鑄器 比墓所為倍簁 以墓所鑄器鑄成 合設於魂宮鑄成所 此甚輕便 且以事體言之 墓所所用之 鑄成於魂宮都監 其為移屬則無異而除弊反有勝焉 內宮外墓器用之制樣 亦無差殊之歎 足可謂一擧兩便 此蓋仰體省費祛弊之聖意也 禮葬都監 如有鑄成所名色之存者 除減事 分付。"

문이라고 하였다. 문효세자의 묘소제기와 혼궁제기를 함께 만들게 됨에 따라 혼궁과 묘소의 제기에 각각 묘廟자와 묘墓자를 새겨 구분하게 했다.¹³

한편 정조의 국장에서부터 국장도감에서 혼전제기를 만들도록 했지만, 혼전제기 가운데 어반 御盤·어이御匜·향로香爐·향합香盒·이선耳膳·마날개[万飛介]·중화로中火爐 각 1개와 집사관執事官 소용의 관세대아盥洗大也·마날개·이선 각 2개를 혼전도감에서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서 사용하고 중복해서 만들지 말도록 하였다.14

1601년(선조 34) 의인왕후의 상례에서부터 1786년(정조 10) 문효세자의 상례까지 총 22건의 상례에서는 혼전도감(혼궁도감)의 혼전(혼궁) 삼방에서 제기를 만들었으며, 제기 제작 관련 기록도 (빈전)혼전도감의궤 또는 (빈궁)혼궁도감의 혼전(혼궁)삼방의궤에 나와 있다. (이하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한 혼전도감의궤라는 표현은 혼궁도감의궤를 포괄한다) 혼전삼방에는 "제기주성소祭器鑄成所" 또는 "제기주성"이라는 설명이 붙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혼전제기는 종묘제기 등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금속 제기를 의미한다.

[표 1]에 수록된 의궤 중 의인왕후, 소현세자, 인조, 효종의 경우는 빈전도감과 혼전도감의 의 궤가 함께 제작된 빈전혼전도감의궤이다. 이후 인선왕후, 현종, 인경왕후, 명성왕후, 장렬왕후, 인현왕후, 단의빈, 숙종, 경종, 선의왕후의 경우는 어람용의 경우 혼전도감의궤가 분리되어 있다. 이후 혼전제기를 국장도감에서 만들기 전 효순현빈, 의소세손, 사도세자, 문효세자의 상례까지는 빈궁도감의궤와 혼궁도감의궤가 함께 제작되었으나, 정성왕후, 인원왕후, 영조의 경우는 혼전도감의궤가 분리되어 있다. 즉, 현종, 숙종 연간에는 빈전도감의궤와 혼전도감의궤를 분리했으며, 이는 영조 1년의 경종 국상까지 이어졌다. 영조, 정조 연간에는 국왕과 왕비의 상례인 선의왕후, 정성왕후

후, 인원왕후, 영조의 상례에서는 혼전도감의궤를 분리했고, 효순현빈, 의소세손, 사도세자, 문효세자의 상례에서는 빈궁도감의궤와 혼궁도감의궤는 합쳐져 있다. 이는 어람용과 분상용에 모두 해당된다.

빈전혼전도감의궤를 분리하거나 합친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제작 시기를 기준으로 현종 이전, 그리고 혼전도감의궤와 빈전도감의궤를 다시 합치게 된 순조 이후의 흉례 의궤에서는 빈전혼전도감의궤로 합철合綴되어 있다. 숙종, 경종, 영조, 정조대에는 합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했다. 혼전도감과 빈전도감의궤를 다시 합철하게 된 효순현빈의 상례 당시 두 도감의 명칭이 다르지만 당상과 낭청이 같으며 의궤를 둘로 나누면 고열考閱하는데 불편하다 하여 합쳤다는 기록이 있다. 일반적으로 빈전도감과 혼전도감의 일이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혼전도감의궤를 분리해서 제작한 경우도 혼전일방의궤는 없다. 그러므로 영조 연간에 상례를 간소화하면서 두 도감의 의 궤를 합치되, 국왕과 왕비의 상례에서는 종전대로 혼전도감의궤를 분리한 것으로 짐작된다. 정조 국장부터는 빈전혼전도감의궤가 모두 합해져 있다. 이때부터 혼전제기를 국장도감에서 만들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짐작된다.

17세기 초기의 의궤인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1601, 선조 34)와 『인목왕후빈전혼전도감 의궤』(1632, 인조 10)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제기의 명단이 정형화되지 않았다. 『소현세 자빈궁혼궁도감의궤』(1645, 인조 23)부터는 의궤의 기본적인 체제를 갖추었다. 의궤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도감에서 생산한 문서를 「품목질稟目秩」, 「감결질甘結秩」 등 항목별로 분류해서 수록 했으며, 제기의 제작과 관련된 내용의 서술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추었다.

혼전도감의궤가 최초로 분리된 의궤인 『인선왕후혼전도감의궤』(1674, 현종 15)를 예로 들어 「혼전삼방의궤」에 수록된 제기 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좌목座目에 이어 도 감에서 다른 관청에 보낸 「이문질移文秩」에 제기 제작에 필요한 물자와 필요한 장인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서 나오는 「품목질」은 기존의 제기의 무게와 수량에 다소의 차이가 있어 어떤 것을 근거로 할지를 당청郞應이 도청都應에 묻는 내용과 총호사로부터 효종 국장의 제기의 예에 따르라는 답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서 도감이 하급 관청에 지시한 내용을 담은 「감결질」에는 장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물자와 함께 제기 제작에 필요한 실제 물자와 호

^{13.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상, 「시일·주성·승전」, 병오 6월 초10일, "鑄成郎廳入侍時 魂宮墓所各樣祭器 各刻廟墓字標 事下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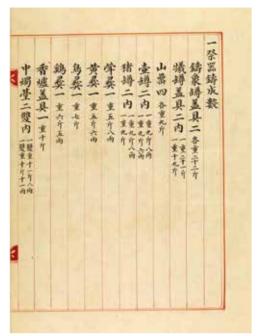
^{14. 『}정조국장도감의궤』3,「제기질」, 경신 7월 일, "魂殿都監爲相考事 魂殿所用祭器 自貴都監鑄成是在果 其中御盤御匜香爐香盒耳膳亇飛介中火爐各一坐 盥洗大也亇飛介耳膳各二坐 自本都監業已造成內入 而以此移用事停當是如乎 上項各物種勿爲疊鑄爲有矣。"『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하,「품목」에서는 "一魂殿所用各樣驗鑄器皿 自國葬都監鑄成事草記蒙允矣 其中殯殿所排香爐香合中火爐各一坐 及御盥洗大也二坐 耳鐥亇飛介 各一坐 執事官所用盥洗太也 亇飛介耳鐥各二坐 自本房今方鑄成是如乎 此則勿爲疊鑄。"이라 하였다。 『정조국장도감의궤』에서 중복되는 이선耳膳과 마날개(丁飛介) 중 뒤의 것은 집사관용임을 알 수 있다。 『정조국장도감의궤』의 어반御盤과 어이御匜가 『정조민전혼전도감의궤』에서는 "어관세대야이좌御盥洗大也二坐"로 표현되어 있어 동일 품목의 다른 표기인 것으로 생각된다.

^{15.} 효장세자孝章世子(1719~1728)의 경우는 관련 의궤가 남아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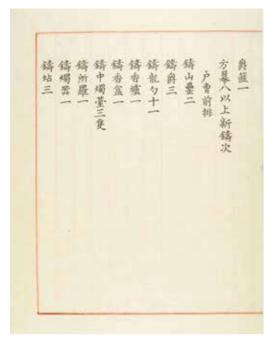
^{1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의궤를 함께 확인할 결과 분상용의 경우 인선왕후, 현종, 인경왕후, 명성왕후, 장렬왕후의 경우는 빈전혼전도감의궤가 합철되어 있고, 인현왕후, 단의빈, 숙종, 경종, 선의왕후의 경우는 빈전도감의궤와 혼전도 감의궤가 분리되어 있다.

^{17. 『}今정원일기』, 영조 27년 11월 27일 기축, "啓禧曰 殯宮都監 魂宮都監 名目雖異 同一堂郎擧行之事 亦不甚相遠 而分作兩儀 軌 不便於考閱 今番則合作一秩 而名以殯宮魂宮兩都監儀軌 何如? トロ 依偽之"

^{18.} 현존하는 혼전도감의궤를 보면 공통적으로 혼전일방의궤는 없다. 외규장각 의궤 누리집(http://uigwe.museum.go.kr)의 『숙종혼전도감의궤』해제에서는 혼전일방이 빠져있는 것은 주요 업무인 제전祭奠을 국장도감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도2. 『인선왕후혼전도감의궤』 「혼전삼방』, 제기주성수



도3, 「사도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하, 「삼방주성소·품목질」에 수록된 제기주성수

조戶曹, 예빈시禮賓寺, 선공감繕工監, 광흥창廣興倉 등 물자의 조달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제기를 만들 때 견본용으로 종묘의 제기를 가져오는 일, 이를 운반할 일군, 이를 지킬 군인의 차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어서 "제기주성수祭器鑄成數"라는 제목으로 혼전 삼방에서 제작한 제기의 종류와 수량, 무게를 기록했다. 이어 「실입질實入秩」에서는 실제 제기를 만들기 위해 들여온 물자를, 「환하질還下秩」에서는 쓰고 남은 물자와 돌려준 물자를 기록했다. 「환하질」에 이어 「혼전각소장기명차지설리급도감낭청안동분급질魂殿各所掌器皿次知薛里及都監郎廳眼同分給秩」(이하「분급질」)이 나온다. 이 내용은 혼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만드는 등의 일을 하는 내관內官 등에게 나누어준 물품 등을 기록한 것이다. 수라간소용水剌間所用, 전사청소용典祀廳所用 등 맡은 일에따라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 수복소용守僕所用에 혼전제기의 수량과 조달처, 무게 등이 기록되어있다. 「분급질」에 이어 마지막으로 참여한 장인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소현세자부터 인원왕후까지 혼전도감의궤들은 제기의 수량과 무게 등을 기록한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 문서의 묶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제기주성수", "제기주성질" 등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록방식과 수록 내용은 유사하다.⁵²

하지만 『사도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1762, 영조 38)의 삼방주성소의 서술 방식은 이전과 다르

다. 즉 「품목질」에 "본방에서 관장하는 제기 중에서 호조에서 전배前排 즉 앞서 진상한 수와 지금 신주新鑄 즉 새로 만든 수를 뒤에 기록한다."고 하고 새로 주조한 것과 전배한 제기를 나누어 기록했다. ⁵³ 그리고 다시 새로 주조한 제기의 무게를 나누어 별도로 기록하고 있다.¹⁹ 또한 「분급질」도 없다. 『영조혼전도감의궤』는 앞선 것들과 유사한 양식으로 되어 있지만, 영조의 혼전도감에서 혼전제기를 제작할 때 진종의 혼전인 연복전, 사도세자의 혼궁인 경모궁의 혼전제기를 함께 제작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²⁰

이어서 문효세자의 장례 때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혼궁도감에서 묘소에 사용할 제기를 함께 제작하였다.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의 삼방의궤는 「삼방주성소」라 표기되어 있고 이어 좌목座目, 처소處所, 시일時日이라는 제목으로 제기 주성에 참여한 관리들, 장소와 작업 일자를 기록하고 바로 제기별단祭器別單이 나온다. 여기에는 각색 소용 기물이 나오는데 이중 수복소용에 제기의 수량과 공급처를 기록했다. 그 내용은 앞선 의궤의 「분급질」에 수록한 것과 유사하다. 이어서 주성수효鑄成數爻라는 제목에 혼궁제기의 명단을 기록했는데, 조정(왕)에서 내려준 것을 표시하는 "내하內下", 새로 주조한 "신주新鑄"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제기 명단을 기록했다. 그 이처럼 사도세자와 문효세자의 혼궁삼방의 기술 방식은 이전과 다른 형태이다.

정조의 국상부터는 국장도감에서 혼전제기를 제작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조의 국상에서는 어반御盤·어이御區 등 일부 혼전제기는 혼전도감에서 이미 만들었다. 따라서 『정조빈전 혼전도감의궤』의 삼방 "제기주성" 항목에 혼전도감에서 만든 제기의 품목과 수량, 무게, 소용된 물자 등을 기록했다." 또 혼전 수라간水剌間 등 각 담당자가 사용하는 은기銀器와 유기鍮器의 목록을 실었는데, 이 중 수복소용으로는 수건류 등만 수록되어 있어, 혼전도감에서 제기를

^{19. 『}사도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 「혼궁도감삼방주성소의궤」, 「품목질」, "一本房所掌祭器中 戶曹前排數及今方新鑄數後錄是置 稟" 이어서 신주한 제기와 전배한 제기의 목록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本房所掌祭器前排外新鑄名目斤兩稱量後錄是置稟" 이라 하여 신주한 제기의 목록과 수량 무게는 별도로 기록했다.

^{20. 『}영조혼전도감의궤』,「혼전삼방의궤」에는 영조의 혼전제기 주성 관련「각색장인질各色匠人秩」에 이어'延福殿祭器鑄成(稟目秩, 甘結秩, 手本秩, 祭器鑄成數, 實入秩, 用還秩, 還下秩, 各色匠人秩), 景慕宮祭器鑄成'이 별도로 실려 있다.

^{21.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하, 「삼방주성소」, 제기별단, 제기주성수.

^{22. 『}정조빈전혼전도감의利』3,「삼방제기주성」、「著목」、"一鍮器皿造成之役今已完畢 各其器皿所入重數及所入各種 今分差計士 一一磨鍊後錄以稟依例 會減之意文 戶曹何如 堂上手決內依稟 後香爐一坐 重六斤十四兩 曲之重七兩 香合一坐重一斤四兩 曲之所枕及足只丁合重二兩 鼠目丁三百箇重十二兩內入合稱量重九斤七兩 所入熟銅九斤七兩 劣一斤二兩八戔 含錫四斤十一兩五戔 御盥洗驗剪大也一坐 重十一斤八兩 大也一坐重六斤四兩 合稱量重十七斤十二兩所入 鑄鐵五斤十五兩 劣十一兩八戔 爺鐵十一斤十三兩 劣一斤七兩六戔 和鍮鑞二斤三兩五戔 執事盥洗鍮大也二坐 重十斤六兩 耳鎋三坐重八斤四兩 合爺鐵十八斤十兩劣二斤五兩二戔 和鍮鑞二斤五兩二戔 銅ケ飛介三坐重十五斤所入 熟銅十五斤劣一斤十四兩 鑞染鍮鑞一斤三兩 鍮鐵五兩 合炭二十五石七斗。"



도4.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 3의 혼전제기 기록 부분

관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²³ 정순왕후부터는 빈 전혼전도감의궤에는 삼방의궤에서 국장도감에 제기 주성을 요청하는 이문移文에 제기의 명단이 후록後錄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제기의 제작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국장도감의궤의 삼방의궤에 수록되어 있다.

『정조국장도감의궤』부터 제기 제작에 관해 수록하는 방식도 이전과 달라졌다. 제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장인과 물자 동원 관련 문서가 실린 것은 종전 혼전도감의궤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제기의 목록과 수량, 무게, 재질 등은 산릉제기, 혼전제기 등으로 나누어 각제기를 그림으로 표시한 도설과 함께 나와 있다. 54 이어서 「실입질」과 「환하질」, 장인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도설과 함께 수록된 항목은 제기 뿐 아니라 시책證册,

시보諡寶, 애책哀册, 증옥贈玉, 증백贈帛, 삽선翣扇, 만장輓章 등 국장도감 삼방에서 제작한 다른 것 들도 포함되어 있다.

Ⅲ. 혼전제기의 구성

Ⅲ장에서는 흉례 의궤에 기록된 혼전제기의 종류와 수량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왕과 왕비의 국상을 기준으로 의궤에 나오는 혼전제기의 기본 구성과 수량, 용도 등을 정리하여 표2로 제시했다.²⁴

[표 2] 혼전제기의 종류, 수량, 용도

	도설	제기 명칭	수량	용도	비고
1	1	상준 象罇	2	준螨은 제례에서 술을 올리는 작헌的獻 절차에 사용되는 술과 맑은 물을 담아두는 큰 항아리이다. 상준은코끼리 문양을 넣거나 코끼리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희준은 소 문양을 넣거나 소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2		- 희준 犧縛	2		
3		산뢰	4	작헌 절차에 올리는 술과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이다. 몸체의 윗부분에는 우레를 새기거나 그려 넣고, 몸체 의 아랫부분에는 산과 산을 덮은 구름무늬를 새기거 나 그려 넣었다.	
4		호 준 壺錯	2	준은 작헌 절차에 사용되는 술과 물을 담아두는 큰 항 아리이다. 호준은 음기陰氣가 사방을 둘러싸서 만물 을 품는 모습을 상징하는 문양을 새긴 것, 착준은 양 기陽氣가 내려와서 땅에 닿는[著] 모습을 상징하는 문양을 새긴 것이다.	
5		착 준 著籍	2		
5		가이 딱秦	1	은 물을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된 항아리이다. 가이는 몸체 표면에 벼 이삭 문양을 넣은 것, 황이는 황금으 로 눈을 새겨 넣은 것, 계이는 몸체 표면에 닭 문양을 넣은 것, 조이는 몸체 표면에 봉황鳳凰 문양을 넣은	
7		황이 黃彝	1	─것이다.	
3		조0 鳥彝	1		

^{23. 『}정조빈전혼전도감의利』3,「삼방 제기주성」,「품목」,"一今此魂殿水刺間以下各色所用中 銀器皿鍮器皿並爲後錄…(중략)… 守僕所用 案拭巾白苧布三尺 祝案拭巾白正布三尺 御前白苧布揮巾一件 手巾一件 獻官執 盥洗位手巾二件 入番宗室盥洗 位手巾二件 瓚爵洗位白苧布手巾一件 瓢子一箇 笏記紙二張 三斤稱子一部 灌池筒一部銅鐵黑真漆板爲蓋豆錫菊花童小圓 環具○工曹"

^{24.} 각 제기의 용도는 법제처편, 『국조오례의』 4(법제처, 1981)의 각주에 표기된 제기 해설, 외규장각 의궤 홈페이지(http://uigwe.museum.go.kr)의 도설 해제, 박봉주, 앞의 두 논문, 국립고궁박물관, 『종묘』도록(국립고궁박물관, 2014)의 도판해설 등을 참고해서 작성하였다.

	도설	제기 명칭	수량	용도	비고
9		계0 1 鷄彝	1	이彝는 제례에서 강신降神 절차에 사용되는 술과 맑은 물을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된 항아리이다. 가이는 몸체 표면에 벼 이삭 문양을 넣은 것, 황이는 황금으로 눈을 새겨 넣은 것, 계이는 몸체 표면에 닭 문양을 넣은 것, 조이는 몸체 표면에 봉황鳳凰 문양을 넣은 것이다.	
10	3	향로 香爐	1	향을 피우는 데 사용된 향로와 향을 담는 그릇인 향합 은 짝을 이룬다. 제례의 초반부에 신위 앞에 세 번 향 을 올리는 절차(삼상향三上香)에 향로와 향합을 사용 하였다. 삼상향을 봉행한 이후에 신위 앞에 폐백幣帛 을 올리고 술잔을 올리는 작헌 등의 본격적인 의식을 진행했다.	
11		診 합 香盒	1	LGM-1.	
12		대촉대 大燭臺	1쌍	촉대는 제사상의 위쪽, 술잔인 작爵의 바로 아래쪽에 향로와 함께 놓이는데, 두 촉대가 좌우로 위치하고 향로가 가운데에 위치한다. 촉대는 크기에 따라 대, 중, 소로 구분된다.	경우도 많음.
13		중촉대 中燭臺			3쌍으로 기록, 소촉대는 정조 국상 이전에는 분급질에 수록
14		소 촉대 小燭臺	3쌍		
15		축점 祝坫	1	제례를 행할 때 신령에게 낭독하여 올리는 축문稅文 을 놓아두는 평평한 판	의소세손의 축점부터 나무로 제작
16		음복작 飮福爵	1	제례가 끝난 후 음복을 행할 때 사용하는 잔	

	도설	제기 명칭	수량	용도	비고
17	煮	작 爵	3	신령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술잔. 준尊, 뢰륲, 이彝 등 큰 술항아리에 담겨 있는 각종 술을 따라 작에 담아서 신령에게 올렸다.	
18	0	マロ 野北	3	작을 받치기 위해 평평하고 네모나게 만든 받침대	
19		州뢰 洗罍	4	손을 씻거나 제기를 씻는 물을 담아놓는 큰 물 항아리	
20	9	州대 洗臺	5	손이나 제기를 씻는 대야大也를 올려두는 받침대. 관 세대盥洗臺라고도 한다.	
21	5	용작 龍勻	11	자루 끝에 용머리 모양의 장식을 붙인 국자. 술 항아 리에서 술을 따를 때와 손 씻는 물을 따를 때 사용했 다. 조선 후기에는 국자로는 용 장식이 없는 세작洗爵 이라는 국자를 사용하게 하고, 용작은 술을 따르는 데 만 사용하도록 했다.	
22		어반 御盤	1	어반御盤과 어이御匜는 짝을 이룬다. 왕이 사용하는 대야인 어이御匜를 받치는 쟁반이 어반이다.	왕세자가 사용한 대야인 아이亞區와 아반亞盤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음
23	9	OHOI 御世	1		SITIME
24	9	전촉기 剪燭器	1	전촉기와 전촉자는 짝을 이룬다. 전촉기는 초에서 흘러내리는 촛농과 심지를 모아 담는 그릇이다. 촛농과심지를 자르는 가위를 전촉자剪燭子라고 한다.	

	도설	제기 명칭	수량	용도	비고
25	X	전(촉)자 剪(燭)子	1	전촉기와 전촉자는 짝을 이룬다. 전촉기는 초에서 흘러내리는 촛농과 심지를 모아 담는 그릇이다. 촛농과심지를 모아 담는 그릇이다. 촛농과심지를 자르는 가위를 전촉자剪燭子라고 한다.	
26		중화로 中火爐	1	화로는 숯불을 담아놓는 기구로 난방이나 가열, 간단한 음식물의 조리 등에 사용하며, 화저火箸를 꽂아두고 사용했다.	
27	40-	용찬 龍瓚	1	울창주鬱鬯酒를 담아 제상 앞 관지통灌地筒에 조금 씩 세 번에 나누어 부어 지하의 백魄이나 신神을 올려 모시는데 사용했다.	
28	0	대야 大也	1	관이鹽壓, 이匜라고도 부른다. 대야는 제례 중 제기를 씻거나, 제관祭官이 손을 씻을 때 사용하였다. 대야를 받치는 쟁반(鹽盤), 수건과 함께 관세위鹽洗位에 놓아두었다.	정순왕후부터 제집사관대야 諸執事盥洗大也 라는 명칭을 사용함
29		동관자 銅貫子	1	네 개의 장식용 관자貫子가 달린 구리로 만든 대접. 음식을 조리하거나 조리한 음식을 담는 데 사용했다.	
30	9	중소라 中所羅	1	소라所羅는 손 씻은 물을 버릴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제관들이 손을 씻는 관세위를 마련해 두고, 손 씻는 자 리에 대야와 대야받침대, 손을 닦는 수건, 손 씻는 물 을 담는 큰 물 향아리 등을 준비해 두었다.	
31		从	1	음식을 떠먹거나 조리하면서 간을 볼 때 사용한 숟가락	
32		승 升	1	곡식이나 액체의 분량이나 부피를 측량할 때 사용하는 되	

	도설	제기 명칭	수량	용도	비고
33		동해 東海	1	조리가 끝난 음식들을 임시로 담아 놓거나 식재료 등을 담아 두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다.	
34		이대야 耳大也	1	물을 따르는 주입구가 있는 대야. 이선耳鳝으로도 불리는 것 같다.	정순왕후 이후는 2~3개
35		幣籠	1	제례에서 신령에게 예물로 바치는 폐백幣帛(모시)을 담는 광주리	
36		容能	3	작을 담는 광주리	작비와 건비는 폐비와 동일한 형태이며, 별도의 도설은 없음
37		力能	3	수건을 담는 광주리	
38		막/멱 幕/冪	25	대나무와 모시로 만든 덮개. 제기를 덮는 데 사용했다.	
39		동마날개 銅ケ飛介	2	손 씻을 물을 부을 때 사용하는 구리로 만든 주전자. 동마날개는 물 항아리에 담긴 물이 줄어들 때마다 새 로운 물을 부어 채워놓는 데 사용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주전자인 이선耳繕은 마날개보다 크기가 더 작 고 배가 더 불룩하며 물을 따르는 주입구가 좀 더 작 고 좁은 형태이다.	분급질에 수록

	도설	제기 명칭	수량	용도	비고
40	0	합 合	1	곡식이나 액체의 분량이나 부피를 측량할 때 사용하는 되의 일종.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재료로 들어가는 각종 곡식, 물, 술 등의 분량을 측량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양만을 담기 위해 합을 사용했다.	분급질에 수록
41	8	从용 沙用	1	밥을 비롯한 각종 음식을 따뜻하게 데우거나 조리할 때 사용하는 솥	분급질에 수록
42	6	주 병 鑄瓶	2	술이나 물을 적당한 양만큼 잠시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한 병	분급질에 수록
43	9	い 最初 ・ ・ ・ ・ ・ ・ ・ ・ ・ ・ ・ ・ ・	1	망료는 제사의 마무리 절차로서, 제사에서 사용한 축 문, 축판, 폐백 등을 태워 없애는 절차이다. 망료쟁반 은 이것들을 태운 재를 담는 쟁반이다.	
44		주 걱 周특	1	곡식을 푸는데 사용됨	영조 국상부터 사용 (문효세자는 제외)
45	p	장화저 長火著	1	화저火箸는 화로나 솥 등에 꽂아 두고 사용하는 쇠로 만든 부젓가락이다. 망료望燎 절차에 사용했다.	영조 국상부터 사용 (문효세자는 제외)
46	Î	장자금 長炙金	1	화로나 가마솥 등에 꽂아 두고 사용하는 쇠 젓가락이 다. 망료望燎 절차에 사용했다.	영조 국상부터 사용 (문효세자는 제외)

[※] 표2의 제기 도설은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 3(1821, 순조 21), 「제기질」에 그려진 산릉제기와 혼전제기 도설에서 따온 것이다.(도설에서 산릉제기와 혼전제기의 모양을 구분하지 않았다) 단 12. 대촉대 도설은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3, 「제기질」에서 가져온 것이다. 의궤에 도설이 나와 있지 않은 제기는 도설난을 공백으로 두었다.

[표 2]의 혼전도감 삼방주성소, 또는 국장도감 삼방주성소에서 제작한 혼전제기는 준소상樽 所床에 진설한 제기인 술이나 물을 담는 항아리와 잔이 주를 이룬다. 실제 제수가 진설되는 제상 祭床에 올라가는 제기로는 촛대와 향로, 향합이 있고 제수를 진설한 제기는 없다. 나머지는 제사를 지낼 때 제관들이 손을 씻는 그릇, 손을 씻을 때 물을 따르는 그릇, 제기를 씻는 그릇, 제수를 데우는 그릇 등 제사 준비 물품과 제사 진행 물품들이다. 5 작비, 폐비, 건비, 멱은 금속기가 아니지만 혼전제기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표 2]의 비고란에 표시한 것처럼 소촉대 3개, 동마날개 2개, 합合 1개, 사용沙用 1개, 주병鑄甁 2 개는 정조 국상 이전 혼전도감에서 제기를 만들었을 때는 혼전도감이 아니라 호조에서 제작한 것으로 "제기주성수"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고, 「분급질」 수복소용守僕所用에만 나와 있다.²⁶ 망료쟁반과 주걱, 장화자, 장자금은 영조 국상 이후 등장하는데 문효세자의 상례에서만 제기 목록에 빠져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의 혼전제기는 『국조오례의서례』등 다른 의례서에 나온 제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선의 의례서의 모범인 『국조오례의서례』「제기도설諸器圖說」 및 수록된 제기가 가장 많은 1706년(숙종 32)에 작성한 『종묘의궤宗廟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소장)에 나오는 제기와 혼전제기를 비교하였다."

먼저 『국조오레의서례』 「제기도설」에 기록된 제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706년에 작성한 『종묘의궤』에 나오는 제기는 다음과 같다.

^{25.} 제사 준비 물품과 제사 진행 물품 등의 용어와 분류 기준은 외규장각의궤홈페이지 도설의 분류를 따랐다.

^{26. 「}분급질」 수복소용에 나오는 제기 중에서 백저포白苧布 등 금속기가 아닌 것은 이 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7.} 김종임, 앞의 논문 141쪽에 『세종실록』 「오례五禮」를 비롯해 15종 예서 및 제기도설에 나오는 제기의 종류를 표로 작성하 였다.

난도^{墨刀} 레^几 상^床 촉대^{獨臺} 향로^{香爐} 향합^{香盒} 모혈반^{毛血盤} 등잔^{燈蓋} 대생갑^{大牲匣} 소생갑^{小牲甲} 식함^{食函} 칠직비^漆 稷난 유증輸館 번간로^{燭肝爐}

의處, 연筵, 준尊, 잔盞은 『국조오례의서례』「제기도설」에만 나온다. 의와 연은 제사 때 쓰는 자리여서 『종묘의궤』의 「제기도설」에는 수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준과 잔은 속제俗祭에 사용되는 것이어서 기록하지 않은 것 같다.²⁸ 한편 『종묘의궤』에는 나오지만 『국조오례의서례』에 나오지 않는 것은 촉대, 향로, 향합, 모혈반, 등잔, 대생갑, 소생갑, 식함, 칠적비, 유증, 번간로이다. 이 중대생갑, 소생갑, 식함, 유증을 제외한 나머지는 1611년(광해군 3)에 작성한 『제기도감의궤祭器都監儀軌』 등에는 나오는 것으로서 실제 제사에 사용되었지만 도설에 등장하지 않았던 것을 정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²⁹

다음으로 『국조오례의서례』와 『종묘의궤』에 나온 제기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과 흉례 의궤에 나오는 혼전제기를 비교하여 [표 3]을 만들었다.

『종묘의궤』와 『국조오례의서례』 중에 변, 두, 보, 궤, 증, 형, 조, 대준, 우정, 양정, 시정, 부, 확, 난도, 준, 잔, 모혈반, 등잔, 칠직비, 유증, 번간로, 대생갑, 소생갑, 식함은 혼전제기 목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중 변과 두는 나무와 대나무로 제작되며 제수를 올리는 것이므로 금속 제기를 주로 기록한 의궤의 혼전제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되었다. 나머지 제기들은 종묘 제향祭享의 중심 제물인 소, 양, 돼지의 희생과 관련된 것들이다.

즉 소, 양, 돼지의 희생을 삶는 큰 가마솥인 확, 삶은 희생을 닮는 솥인 정, 고기의 육즙을 담는 그릇인 형, 간을 하지 않은 고깃국을 담는 증, 희생을 벨 때 사용하는 칼인 난도, 희생을 받치는 상인 조세와 그 위에 올리는 생갑, 희생의 간이나 서직黍稷을 태울 때 사용하는 번간로, 희생의 탈과 피를 담는 그릇인 모혈반은 종묘 제향에는 필요했으나 혼전의 제사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떡이나 쌀을 찌는 도구인 증, 곡식을 담는 식함, 서직을 태우기 위해 조금씩 덜어낼 때 사용하는 서직비, 곡식을 담는 보와 궤 역시 혼전 제사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표 3] "국조오례의』、"종묘의궤」、"국조상례보편」、 흉례 의궤에 나오는 혼전제기 비교

	국조오례의서례/ 종묘의궤	국조상례보편	흉례 의궤		국조오례의서례/ 종묘의궤	국조상례보편	흉례 의궈
せ 選	0			 	0		
<u>두</u> 豆	0			 잔 盞	0		
上簠	0			 촉대燭臺	0		0
刊簋	0			향로香爐	0		0
	0			 향합香合	0		0
형 鉶	0			모혈반毛血盤	0		
조 俎	0			등잔燈盞	0		
H筐	0		0	대생갑大牲匣	0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0	0	0		0		
찬 반瓚盤	0	0	0	 식함食函	0		
작爵	0	$\overline{\bigcirc}$	0		0		
점坫	0	$\overline{\bigcirc}$	0	유증鍮館	0		
계0 鷄彝	0	0	0	世간로燔肝爐	0		
조이鳥彝	0	0	0	어반御盤			0
가이斝彝	0	0	0	아반亞盤			0
황이黃彝	0	0	0	OHOI御匜			0
희준犧尊	0	0	0	0101亞匜			0
상준象尊	0	0	0	이대야耳大也			0
저준著尊	0	0	0	대야大也			0
支配売尊	0	0	0	중사용中所羅			0
대준大尊	0			중화로中火爐			0
산뢰山墨	0	0	0	전촉기剪燭器/ 전자剪(燭)子			0
용작龍勻	0	0	0	동해東海			0
세뢰洗罍	0	0	0	중소라中所羅			0
세洗	0	0	0	승升			0
우정牛鼎	0			주걱周특			0
양정羊鼎	0			망료쟁반望燎錚盤			0
시정豕鼎	0			동마날개銅亇飛介			0
부釜	0			<u>합</u> 合			0
확鑊	0			동관자銅貫子			0
비ヒ	0		0				0
난도鑾刀	0			음복작飮福爵			0

238 17~19세기 홈데 의궤의 혼전제기 기록에 대한 고찰 23**9**

^{28.} 김종임, 앞의 논문 141쪽.

^{29.} 김종임, 앞의 논문 143쪽.

^{30.} 이욱, 「종묘 제향의 절차와 특징」, 『종묘』(국립고궁박물관, 2014) 참조.

즉 소, 양, 돼지의 희생을 삶는 큰 가마솥인 확, 삶은 희생을 닮는 솥인 정, 고기의 육즙을 담는 그릇인 형, 간을 하지 않은 고깃국을 담는 증, 희생을 벨 때 사용하는 칼인 난도, 희생을 받치는 상인 조세와 그 위에 올리는 생갑, 희생의 간이나 서직黍稷을 태울 때 사용하는 번간로, 희생의 탈과 피를 담는 그릇인 모혈반은 종묘 제향에는 필요했으나 혼전의 제사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떡이나 쌀을 찌는 도구인 증, 곡식을 담는 식함, 서직을 태우기 위해 조금씩 덜어낼 때 사용하는 서직비, 곡식을 담는 보와 궤 역시 혼전 제사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한편 『국조오례의』 가운데 상례喪禮 부분만 수정, 증보하여 편찬한 『국조상례보편』에는 혼전에서 지내는 우제와 속제의 진설도와 제기의 도설 규격, 무게 등을 수록했는데, [표 3]에서 보듯이의궤에 실린 혼전제기의 종류와 일치한다. 다만 혼전이나 혼궁의 속절제俗節祭에서는 작爵 대신 잔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혼전제기 목록에는 잔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혼전제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반, 아반, 어야, 아야, 이대야, 이야, 중사용, 중화로, 전촉기/전촉자, 동해, 중소라, 승, 주걱, 망료쟁반, 동마날개, 합, 동관자, 주병, 음복작은 『국조상례보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종묘의궤』와 『국조오례의서례』에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제수나 술을 올리는 데 사용한 제기들이 아니라 제사 진행에 필요한 물품들이어서 『종묘의궤』와 『국조오례의서례』, 『국조상례보편』의 도설에서는 표기하지 않았으나실제로는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Ⅳ 혼전제기의 시기별 의례별 특징

Ⅲ장에서 흉례 의궤에 수록된 혼전제기의 기본 구성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종묘의궤에 나오는 제기 등과 비교해보았다. [표 3]에서도 제시했듯이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시간 동안에 제기의 구성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 Ⅳ장에서는 시기에 따라, 의례의 대상에 따라 제기의 수량이나 구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기의 재질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³¹

1. 제기의 구성

조사 대상 모든 혼전제기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수량도 동일한 제기는 상준, 희준, 호준, 착준, 가이, 황이, 조이, 계이, 작과 작점, 축과 축점, 용찬, 향로와 향합, 시와 승, 합이다. 전촉기와 전촉자도 모든 혼전제기에 1개씩 포함되어 있으나 정조 국상의 경우만 수량이 2개이다. 또 초심지를 자르는 전자와 시는 정조 국상부터 각각 전촉자와 소시小匙로 이름이 바뀌었다.

술항아리의 하나인 산뢰의 경우 대부분 4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의소세손, 사도세자, 문효세자의 산뢰는 2개로 바뀌었다.

종묘제기에 포함되지 않고 혼전제기에만 있는 특이한 품목의 하나가 음복작이다. 조사 대상 혼전제기 중에는 사도세자의 상례까지는 의소세손의 혼궁제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혼전, 혼궁제기에 음복작이 포함되어 있다. 영조의 상례부터는 국왕의 혼전제기 즉 영조, 정조, 순조, 헌종의 혼전제기에만 음복작이 있으며 명칭도 어음복작御飲福爵이다. 따라서 음복작은 왕이 음복하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영조, 정조, 순조, 헌종의 혼전제기에는 어음복작과 함께 섭음복작攝飲福爵이 들어 있다. 음복작이 혼전제기에서 제외된 최초의 의궤인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에는 음복작을 작이 겸한다고 주를 달았다. 음복작이 들어있지 않은 다른 사례에서도 작이 음복작을 겸한 것으로 보인다.

혼전제기 중에는 제사상에 오르는 제기는 아니지만 술잔이나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품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먼저 술잔이나 손을 씻는 물을 따르는 데 사용하는 용작은 공통적으로 11개이지만, 의인왕후, 인목왕후의 혼전제기와 문효세자의 혼궁제기에서는 8개이다. 정순왕후부터 효명세자까지는 술을 따르는 용작과 물을 따르는 세작洗虧을 각각 9개와 2개로 구분했다.

술잔이나 손을 씻는 데 사용하는 대야인 이匜는 반盤과 짝을 이룬다. 왕이 사용하는 어이御匜 와 어반御盤은 혼전제기에는 있고 혼궁제기에는 없다. 하지만 헌경혜빈과 현목수빈의 혼궁제기에는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왕세자가 사용하는 대야인 아이亞匜와 대야 받침 아반亞盤은 인목왕후부터 단의빈까지는 혼전제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나 그 이후는 제작되지 않았다. 다만 정성왕후와 인원왕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작되어 숙종 이전의 전례를 따른 듯하다.

제관들이 손을 씻는 대야의 경우를 보자. 정조 이전까지는 대야로 표기되고 수량은 1개씩이다. 그런데 정조부터는 2개로 바뀌었으며, 이름도 정조의 경우 관세대아盥洗大也, 정순왕후 이후는

^{31.} 의인왕후와 인목왕후의 혼전제기에 대한 기록은 완비되어 있지 않아 본 논문의 분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32.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하, 「삼방주성소·제기별단」, "爵三坐合重二斤十三兩 第一爵兼飲福爵."

제집사관세대야諸執事盥洗大也로 바뀌었다. 효명세자의 혼궁제기에는 별도로 관반監盤과 관이監區 가 추가되어 있다.

이대야는 의소세손, 사도세자, 문효세자의 혼궁제기를 제외하고는 제기목록에 다 포함되어 있다. 정조의 혼전제기에는 이대야가 없고, 이선耳歸이 총 3개 제작되었다. 효순현빈의 혼궁제기의 경우 「제기주성질」에서는 이대야라고 표기하고 수복소용에서는 이선으로 표기했다. 이로 보아 이대야와 이선은 같은 용도로 생각된다. 이선은 물항아리에 담긴 물이 줄어들 때 새로운 물을 부을 때 사용한 것이었다. 이대야는 정순왕후 이후는 2~3개로 수량이 많아졌다. 비슷한 용도의 동마날개도 혼전제기마다 있으며 국장도감에서 혼전제기를 만들기 전에는 「분급질」에만 나와 있다.

손을 씻는 물을 담는 큰 항아리인 세뢰와 세뢰를 받치는 세대는 세뢰 4개에 세대 5개가 기본 이며 대부분은 그 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의소세손의 경우 세대와 세뢰를 각각 3개, 문효세자는 각각 2개만 갖추었다. 사도세자의 경우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

촉대는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나누어진다. 중촉대는 정조 이전은 기본적으로 혼전도감에서 2 쌍을 만들고 1쌍은 호조 주성청에서 만들었다. 따라서 「제기주성질」에는 2쌍, 「분급질」에는 3쌍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소촉대 역시 3쌍이 기본인데 이 역시 「분급질」에 호조 등에서 마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촉대는 주로 1쌍을 사용했는데 문효세자부터 기록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대촉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중촉대의 수가 3쌍 이하이므로 촉대의수량이 늘어났다기보다 크기가 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외 중화로, 동관자, 중소라, 동해, 사용, 주병도 모든 혼전제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망료쟁반과 주걱, 장화자, 장자금은 영조 이후 등장하는데 문효세자 혼궁제기에만 빠져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 왕실의 혼전제기는 17세기 초부터 250여년간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의례에 따라, 즉 국왕이나 왕비의 상례인 대상大喪인지 왕세자·왕세자빈이나 왕세손의 상례인 소상小喪 또는 소내상小內喪 인지에 따라 제기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 즉 왕세자(왕세자

빈, 왕세손)의 혼궁제기는 혼전제기에 비해 일부 제기의 수가 줄거나 생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헌경혜빈(혜경궁 홍씨)과 현목수빈(수빈 박씨)의 제기의 경우 소내상임에도 혼전제기와 다를 바 없는 규모로 제기가 갖추어졌다. 헌경혜빈과 현목수빈이 단순히 세자빈이 아니라 각각 정조와 순조의 생모여서 두 사람의 상례를 소상보다 격상된 형태로 치룬 것으로 생각된다. *5 이에 따라 두 혼궁의 제기도 다른 혼궁제기와 달리 혼전제기와 같은 구성을 갖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혼전제기의 구성은 혼전에 모신 신주의 위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망료쟁반과 주걱, 장화자, 장자금이 영조의 상례부터 사용된 것은 의례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망료쟁반은 제사의 마무리 절차로서, 제사에서 사용한 축문과 축판, 폐백 등을 태워 없애는 절차에 사용되는 쟁반이다. 조선 중기까지는 천신天神에게 올리는 제사에서만 망료 절차를 수행하고, 지기地祇와 인귀人鬼에게 올리는 제사에서는 망료 대신 축문 등을 땅에 파묻는 망예望瘞절차만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1757년(영조 33)에 영조는 축문이나 폐백을 묻어두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 하여 인원왕후의 혼전인 효소전孝昭殿과 정성왕후의 혼전인 휘녕전徽寧殿의 제사부터 축문과 폐백을 망료하도록 했다. 이후 모든 제사에서 망료를 수행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망료쟁반과 장화자 등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국조상례보편』에 수록되어 있고, 실제 『국조상례보편』에 의거한 최초의 국상이 영조의 국상이었고 이에 망료를 위해 이 제기들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제기의 무게

다음으로 제기의 무게에 의례별, 시기별 특징이 드러나는지 확인해보자. 원칙적으로 제기는 중 요한 의례품이기 때문에 모양이나 무게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의궤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인선왕후의 혼전제기를 만들 때는 임신년(1632, 인목왕후 국장)과 기해년(1659, 효종 국장)의 등록에 의거해 보았더니 제기의 무게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용작의 경우 임신년은 8개, 서진書鎭

^{33.} 외규장각 의궤 누리집(http://uigwe.museum.go.kr)의 도설 해제 참조.

^{34. 『}효종빈전혼전도감의궤』에는 중촉대가 제기주성질과 수복소용 모두에 2쌍으로 기록되어 있다. 소현세자, 인조, 인선왕후, 현종, 인경왕후, 명성왕후, 장렬왕후, 인현왕후, 단의빈, 숙종, 경종, 선의왕후, 효순현빈, 정성왕후, 인원왕후의 경우는 제기주성질에는 중촉대 2쌍을 기록했고 분급질에 중촉대 3쌍을 기록하고 이 중 1쌍은 주성청에서 만들고 2쌍은 혼전도감에서 만들었다고 기록하였다. 의소세손의 경우 중촉대가 제기주성과 수복소용에 모두 3쌍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도세자의 경우제기주성에 3쌍이 기록되어 있고 분급질 자체가 없다. 문효세자 이후는 중촉대의 수에 일관성이 없어, 정조 국장에서는 4쌍으로 기록되어 있고, 정순왕후는 3쌍이고 이후는 1쌍~2쌍으로 줄었다. 소촉대의 경우 기본이 3쌍이지만 역시 의례마다출입이 있다. 명성왕후, 장렬왕후, 인현왕후의 경우 수복소용에 소촉대를 중촉대로 잘못 썼다가 단의빈에 와서 바로잡았으나 정성왕후, 인원왕후에서 다시 중촉대로 잘못 썼던 것으로 추정된다.

^{35.} 김윤정, 「조선시대 禮葬都監의 성격과 역사적 추이」, 『장서각』 38(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7. 10.)에서 혜경궁과 수빈의 상례를 치를 때, 사천私親의 지위를 강조하여, 세자빈의 상례에 해당하는 소내상기內喪과 구분하여 예장도감禮葬都監이 아니라 양례도감賽禮都監과 장례도감葬禮都監을 설치하고, 소내상에 비해 격상된 형태로 상례가 진행되었음을 강조하였다.

^{36.} 송지원, 「국왕 영조의 국장절차와 『국조상례보편』」 『조선시대사학보』 51(조선시대사학회, 2009. 12.) 180쪽), 이욱, 「종묘 제향의 절차와 특징」, 『종묘』(국립고궁박물관, 2014), 144~145쪽 참조.

은 기해년에는 11개로 숫자가 맞지 않다고 기록했다." 1718년(숙종 44) 단의빈의 혼궁에서 사용할 제기를 만들 때는 견양見樣은 신사년(1701, 인현왕후의 장례로 추정)에 따르고 무게는 을유년 (1645, 소현세자의 장례로 추정)에 따라 차이가 현격한 문제로 의논을 했다. 결론은 모양은 을유년에 따르고 무게는 신사년에 따르되 조금 감하도록 하였다.

제기의 무게가 제각각인 것은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1757년 정성왕후의 국장 때도 각년의 등록을 고찰해보니 제기의 근량에는 차이가 있으며, 신사년의 등록만으로 보더라도 근량이 다르다고 해서 근수를 맞추기 위해 모양을 변형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실제 의궤에 기록된 혼전제기의 무게는 때마다 달랐다. 일례로 모든 혼전제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준과 희준의 무게를 [표 4]로 제시했다.

[표 4]에 제시했듯이 순조, 효현왕후, 현종의 혼전제기 중 희준과 상준의 무게는 모두 동일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희준과 상준의 무게가 만든 시기에 따라 달랐다. 다른 제기들도 만든 시기에 따라 무게가 달랐다.⁴⁰

특히 의소세손과 사도세자, 영조, 문효세자의 상준과 희준의 무게가 다른 것에 비해 가볍다. 『의소세손빈궁혼궁도감의궤』「혼궁도감삼방조성소의궤」에 제기 주성을 위한 동銅을 효장세자의 장례 때인 무신년에 비해 3분의 1 감하는 것으로 마련한다고 품의했다. 또한 세뢰·세대도 호조에서 만든 것을 가져다 쓰고 파주철破鑄鐵을 재활용하는 등으로 절감한다는 내용이 있다.』

[표 4] 혼전제기 중 상준과 희준의 무게 비교(단위 근두, 소수점 이하는 량兩)

	상준	희준	
소현세자	18.8/18.8	17.8/17.8	
인조	각 19	 각 16	무게는 분급질에 기록
효종	18/18.2	17.12/17.12	
인선왕후	22/22	21/19	
현종	21/21.8	19/19.10	
인경왕후	24.10/24.10	23.8/23.8	
명성왕후	19.8/20	22.8/21/8	
장렬왕후	21.2/18.11	18.5/18.7	
인현왕후	17.8/18.8	19.8/19.9	
단의빈	21/20	19/19	
숙종	19.8/19.8	16.8/17	
경종	20.8/19	20/19.8	
선의왕후	21/21	19.8/19.9	
효순현빈	18/19.10	22/21.8	
의소세손	13.8/13.2	13/13	
정성왕후	23/24	24/25.8	
인원왕후	23.8/24	24/24	
사도세자	14.8/13.8	13.8/14	
영조	13.8/14.8	13.4/12.8	상준은 각각 수보하여 8량과 2근 증가 희준 중 1은 수보하여 1.4근 증가
문효세자	합 17.12	합 16	
정조	합 61.6	합 50.3	국장도감에서 제작. 이하 동일
정순왕후	 합 55		==== 희준의 무게가 기록되지 않음.
헌경혜빈	 전배	전배	
효의왕후	 전배	전배	
현목수빈	합 66	합 59	
효명세자	 전배	전배	
순조	합 65.8	합 59	
효현왕후	합 65.8	 합 59	
헌종	 합 65.8	 합 59	

『사도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의 경우도 호조에서 전배했던 제기에다 재료를 추가하여 개주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⁴²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에는 상준, 희준, 호준, 착준, 가이, 조이, 산

^{37. 『}인선왕후혼전도감의궤』,「혼전삼방·품목질」, "本房所掌各樣祭器等事 取考壬申·己亥謄錄 則同祭器斤兩前後 各異哛不喩 龍勺一種 壬申年則 以八坐 書塡 己亥年則 以十一坐".

^{38. 『}단의빈혼궁도감의궤』,「혼궁삼방·수본질」, 3월 초7일, "一今此祭器鑄成之時 見樣則從辛巳 斤兩則從乙酉 而大小多寡 自相懸殊…(중략)…都提調手決內 體樣只當達乙酉 斤兩則稍存減殺於辛巳宜當."

^{39. 『}정성왕후혼전도감의刊』、「혼전삼방・감결질」、"一本所所掌祭器鑄成之役 一依辛巳謄錄 所載重數磨鍊擧行是乎矣 取考各年謄錄 則祭器斤兩或重或輕 毎毎不劑兺不喻 雖以辛巳謄錄言之 如犧象罇之屬 鳥鷄彝之類 名色之相同者 斤兩亦異為於 其他器皿同是一器而或彼重而此輕 凡一器之有大小體樣者 斤兩輕重之相懸 不是異事是乎矣(후략)"

^{40.} 상준, 희준 외의 다른 제기들은 후대로 가면서 전배前排라고 기록한 예가 많아 무게를 알 수 없지만, 순조, 효현왕후, 헌종 의 제기의 무게가 이전 것에 비해 일정한 경향을 보인다.

^{41. 『}의소세손민궁혼궁도감의궤』,「혼궁도감삼방주성소의궤·품목질」, "一祭器鑄成所入鑄鐵 比戊申 減三分一磨鍊 以稟後 捧上矣 洗罍洗臺 以戶曹所在前排 取用是遺 破鑄鐵五十二斤 亦自戶曹移來 故先磨鍊鑄鐵四百四斤內 二百六十斤量宜捧用一百四十四斤段 還爲出給於當初進 排廛人處之意 稟 手決內 依施." 인조의 혼전제기에 파철을 사용했다는 기록과 정성왕 후 혼전제기 제작에 파기명破器皿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파철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42. 『}사도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혼궁도감삼방주성소의궤・품목질」,"鑄香爐一 重十一斤 戶曹前排 添鐵改鑄 鑰香盒一 重一斤 戶曹前排鑄鐵釜鐵改鑄 鑄所羅一 重七斤二兩 戶曹前排添鐵改鑄 鑄龍勺四各重一斤式合四斤戶曹前排改鑄。"

뢰, 황이, 조이 9종 제기를 이전 것을 전배前排하지 말고 새로 만들되 이전에 비해 크기를 작게 하라고 명시하였다.⁴³ 영조의 혼전제기도 무게가 다른 것에 비해 가벼울 뿐 아니라 수보修補하여 무게를 늘인 것이 많았다.⁴⁴

의소세손, 영조, 문효세자의 흉례는 영조가 편찬한 『국조상례보편』과 관련이 깊다. 영조 연간에는 유난히 국상이 많았고 각각 다른 위격에 따른 상장례를 행할 때 실질적으로 참고할 만한 책이 필요하였다. 『국조상례보편』은 영조 연간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상장례를 바탕으로 편찬한 것으로, 『국조오례의』의 제도와 달라진 것,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개정해야 하는 것, 새로 만들어진 것, 『국조오례의』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실제 시행된 의례 등이 수록되었다.

사도세자의 경우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상장례 절차가 매우 간략히 진행되었지만, "의소세손의 경우 세손의 상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치른 것이라 그 상황이 『국조상례보편』에 반영되었다. 영조의 국상은 영조 자신이 완성한 『국조상례보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른 의례였고 문효세자의 상은 『국조상례보편』에 따라 치른 최초의 소상이다. "따라서 혼전제기의 제작에서 보이는 위와 같은 사례들은 『국조상례보편』에서 변모되거나 재정비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조상례보편』에 제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없지만 의소세손, 영조, 문효세자의 혼전제기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 등 특징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즉 의소세손의 상례를 치루 면서 모든 의물을 제도보다 낮추게 했다. 같은 해에 의소세손에 앞서 사망한 효순현빈의 경우에도 절검하라는 수교가 있었다. 또한 명기明器와 복완服玩의 제도를 줄이라는 영조의 수교도 수록되어 있다. 영조의 이러한 방침들은 제기의 무게가 줄게 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또한 영조는 국장에서 필요한 물품 가운에 은이나 철로 만드는 것은 미리 만들어 호조에 두도록했다. 정순왕후의 국장부터 혼전 제기 중에 전배한 것이 많은 것도 이러한 방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조 국장 이후 망료쟁반이 제기에 포함된 것 역시 영조대의 의례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3. 제기의 재질

마지막으로 제기의 재질에 의례별, 시기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혼전삼방에서 제작한 제기의 재질은 기본적으로 금속에 속하였다. 하지만 현존하는 혼전제기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인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의 혼전제기에는 금속기가 아니라 자기나 사기로 제작된 것이 다수 들어 있다. 즉 황이, 가이, 착준, 호준, 산뢰, 계이, 조이, 희준, 상준, 세와 세뢰가 모두 사기로 제작되었다. 축점의 경우는 의소세손부터 나무로 제작하였다. 문효세자와 의소세손의 혼궁제기에서 중촉대와 작虧 등을 두석豆錫으로 만든 경우가 있었다. 향로와 향합을 두석으로 제작한 경우도 있었다.

^{43.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하,「삼방주성소·제기별단」,"鑄象尊盖具二坐 鑄犧尊盖具二坐 鑄壺尊二坐 鑄著尊二坐 鑄墨 彝一坐 鑄鳥彝一坐以上新造次. 鑄山罍三坐內一坐前排仍用次 三坐新造次 一坐抹下. 鑄黃彝一坐 鑄鶏彝一坐以上九種 判 付內 前排件勿用 出木見樣看品後 新造體樣比前排本稍小。"

^{44. 『}영丕혼전도감의利』,「혼전삼방·제기주성수」,"鑄象轉蓋具二一重十三斤修補加重八兩一重十二斤八兩修補加重二斤機轉蓋具二一重十二斤修補加重一斤四兩一重十二斤八兩以上戶曹前排山罍四內二前排一重七斤十二兩修補加重十三兩一重八斤二兩修補加重八兩二新造一重十一斤八兩一重十一斤四兩壺轉二重各六斤十二兩著轉二重各六斤十兩學轉一重四斤五兩修補加重七兩黃蜂一重三斤九兩修補加重四兩鳥擊一重三斤十四兩選擊一重五斤十兩每三一重一斤十四兩一重一斤四兩修加重十二兩一重一斤九兩修補加重二兩站三一重四斤六兩一重三斤四兩一重三斤十二兩攝飲福爵一重一斤六兩五遂洗臺五一重十七斤八兩十四斤一重十八斤修補加重七斤一重二十五斤一重十八斤洗罍四二重各十八斤一重十五斤修補加重二斤一重十九斤御盤一重八斤修補加重二斤 御匜一重五斤六兩 中火爐一重五十斤能費臺具一重二斤七兩修補加重一斤八兩 中所羅一重五斤十四兩 升一重一斤 東海一重八斤以上十八種並戶曹前排 龍勺十一內十戶曹前排二重各一斤九兩三重各十兩五遂一重十三兩五遂一重一斤八兩一 重一斤二兩一重九兩一重九兩五臺一新造重一斤八兩 香爐蓋具一重八斤六兩工曹所造中燭臺二 雙剪燭器蓋具一以上預殿所排移用工曹御飲福解一重一斤九兩."

^{45.} 송지원, 앞의 논문(2009), 176~183쪽.

^{46.} 이경구, 「1762년(영조 38) 思悼世子의 薨逝와 『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2(서울대학교 규 장각한국학연구원, 2004) 참조,

^{47.} 송지원, 앞의 논문(2009); 이현진, 「정조대 文孝世子의 喪葬 의례와 그 특징」, 『규장각』 40(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 원, 2012, 6.) 참조.

^{48.} 송지원, 앞의 논문(2009), 177쪽.

^{49.} 이문현, 「효순현반의 흉례와 의궤」,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3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흉례 [』, 110쪽.

^{50.} 송지원, 앞의 논문(2009), 181쪽.

^{51.} 송지원, 앞의 논문(2009), 174쪽, 주3.

^{52.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혼전배비」, "沙黃彝壹司饔院 沙斝彝壹司饔院 沙渚尊貳司饔院 沙壺壺尊貳司饔院 沙山疊肆 司饔院 沙鵄彝壹司饔院 沙鳥彝壹司饔院 沙掾尊貳司饔院 沙豫尊貳司饔院…(중략)…沙洗伍司饔院 沙冼疊肆司饔院" 사기로 만든 제기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흙으로 빚은 조선의 제기』(국립중앙박물관 전시도록, 2016, 8.) 참조.

^{53. 『}의소세손빈궁혼궁도감의궤』, 「혼궁도감삼방주성소의궤·품목」, "一本房所掌 鑄成祭器中 祝坫以漆板造作事 已有傳教乙仍于 同祝板所入 依後錄進排事 捧甘何如 稟 手決內依施"라 하였고 이후 축점은 별공장別工作에서 목관으로 만들고 상의원에서 흑진칠을 했다.

^{54.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하,「삼방주성소·제기별단」,"鑄中燭臺二雙內一雙新造 依壬申年例 以豆錫爲之 一雙前排 鑄 爵坫三坐 錫爵三坐以上 判付內 新造 差減其制 木見樣看品 亦依壬申年例 爵則以豆錫爲之"이 때 임신년은 1752년 효순 현빈과 의소세손의 상례가 있었던 때이다. (실제 두 제기는 두석으로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55. 『}정조빈전혼전도감의궤』하,「혼전도감의궤삼방·제기주성·수복소용守僕所用」중에 "豆錫香爐—坐重七斤五兩 豆錫香合—坐重—斤四兩"라고 되어 있다. 『헌경혜빈양례도감의궤』, 「내관內關」의 혼궁제기 중 향로, 향합, 화저도 두석으로 제작하였다.

한편 소현세자부터 문효세자까지 의궤에 기록된 혼전제기에는 제기 명칭 앞에 '주鑄'와 '유鍮' 를 붙였다. 예를 들어 『인조빈전혼전도감의궤』「분급질」의 수복소용守僕所用에 기록된 혼전제기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주상준鑄豫轉 주희준鑄機轉 주산뢰鑄山罍 주호준鑄壺轉 주착준鑄書轉 주가이鑄斝舞 주황이鑄黃彝 주조이鑄鳥彝 주계이鑄鷄彝 주항료鑄香爐 유항합論香盒 주중촉대鑄中燭臺 주축점鑄积坫 주음복작鑄飲福爵 주작점鑄爵坫 주작鑄爵 주세 대鑄洗臺 주세뢰鑄洗罍 주용작鑄龍勺 유어이鑄御區 주어반鑄御盤 유아이鑄亞區 주아반鑄亞盤 주전촉기鑄勢燭器 유전 자輸射子 주중화로鑄中火爐 주용찬대구鑄龍瓚臺具 유대야輸大也 동관자銅貫子 주중소라鑄中所羅 주시鑄匙 주승鑄升 주 동해鑄束海 주이대야鑄耳大也 주병鑄瓶 주사용鑄沙用 동마날개銅末乙飛介 주소촉대鑄小燭臺 주합鑄合56

위 기록에서 동관자와 동마날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기 앞에 '유' 또는 '주'가 붙었는데 향합, 어이, 아이, 전자, 대야에만 '유'가 붙고, 나머지는 제기 앞에 모두 '주'가 붙었다. 이들 제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품을 기록한 「실입질」에서는 주철鑄鐵 547근 8량, 1전 5푼 유철鍮鐵 7근 5량 5전, 유럽鑞鐵 87근, 동철銅鐵 1근 15량, 정철正鐵 8근 4량 8전, 강철强鐵 2근 14량 5전으로 기록했다." 위 제기 중 '주'가 붙은 제기의 무게를 합하면 491근 2량, '유'가 붙은 제기의 무게를 합하면 7근 14량 5전이다. '주'가 붙은 제기 중에서 주병, 주사용, 주소촉대, 주합의 무게가 나와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주'가 붙은 제기의 무게의 총합은 491근 2량보다 많을 것이다. 인조의 혼전제기뿐 아니라 문효세자까지 혼전제기는 모두 '유'와 '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향합, 어이, 아이, 전자, 대야 등에만 '유'가 붙고 나머지는 대부분 '주가' 붙어 있다. 각각의 무게의 총합은 「실입질」에 나오는 주철과 유철 각각의 총합과 유사하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주상준, 주희준 등 '주'가 붙은 제기는 주철로 만들고, 유향합, 유전자 등 '유'가 붙은 제기는 유철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대야를 제외하고는 주향로와 유향합, 주어반과 유어이, 주아반과 유아이, 주전촉기와 유전자와 같이 짝을 이루는 제기의 한쪽은 주철로 한쪽은 유철로 만든 것도 특이하다.

예외적으로 『인목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에 나오는 혼전제기는 유상준鍮象縛, 유희준鍮機縛처럼 대부분 '유'자가 붙어 있고 어이, 어반, 아이, 아반, 전촉기, 전자, 중화로에는 유주의 구분이 없고, 사용, 시, 승에는 주가 붙어 있다.⁵⁰ 하지만 제기 제작에 필요한 물자는 주철 467근 8량 3푼 3전, 유철 6근 10량 6전, 납철鑞鐵 67근이다.⁵⁰ 즉 다른 제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철을 사용해서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주철과 유철이 각각 어떤 금속을 지칭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의궤 등 조선시대 자료에 나와 있는 금속의 명칭은 혼용되고 있어, 명칭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금속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성분이나 특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존의 제기 연구에서도 주철과 유철의 차이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거나, 주철을 철(Fe)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 왕실 제기의 주성분은 철이 아니라 동(Cu)이였기 때문에 주철의 성분을 철로 보는 것은 오류이며, 주철과 유철은 둘 다 동이지만, 합금 성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표 2]의 제기도설 중 동관자銅貫子와 동마날개(銅ケ飛介)의 색이 다른 것은 순동으로 만든 이 두 제기의 재질을 구분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織는 아연을 함유한 황동黃銅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유철은 황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철로 만든 제기는 술이나 제수를 직접 담는 것이 아니어서 황동을 사용해도 무방했을 것 같다. 주철은 청동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제기의 성분이 구리와 주석의 항금인 청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를 뒷받침하다.

한편 『정조국장도감의궤』부터는 '유'와 '주'의 구분없이 혼전제기의 기명을 기록하고 유주상반輸

^{56. 『}인조빈전혼전도감의궤』、「분급질」、"鑄象鐏二各重十九斤 鑄揚鐏二各重十六斤 鑄山罍四各重八斤七兩 鑄壺鐏二各重九斤鑄著鐏二各重九斤六兩 鑄甲擧一重六斤五兩 鑄黃彝一重五斤六兩 鑄烏彝一重五斤十四兩 鑄香爐一重六斤四兩 鑄香盒一重一斤五兩 鑄中燭臺三雙內二雙都監 一雙工曹 各重四斤十一兩 鑄配站一重四斤十二兩 鑄飲福酹一重一斤十一兩半 鑄留站三各重五斤二兩 鑄餘三各重一斤十一兩 鑄洗臺五各重十八斤十四兩半 鑄洗罍四各重十九斤半 鑄龍勺十一各重十二兩 錄御匜一重二斤一兩半 鑄御盤一重十四斤九兩半 鍮亞匜一重一斤九兩 鑄亞盤一重六斤十兩 鑄剪獨器一重二斤七兩 鍮剪子一重十兩 鑄中火爐一重四十一斤十五兩 鑄龍費臺具一重四斤八兩半 鍮大也一重二斤五兩 銅貫子重一斤十四兩 鑄中所羅一重十七斤十四兩半 鑄匙一重一斤十兩 鑄升一重十一兩半 鑄東海一重八斤四兩 鑄耳大也一重二斤七兩 爵能三 巾篚三 羃二十五已上都監。鑄海一一 銅末乙飛介二 鑄小燭臺三隻 鑄合一已上工曹。" "刈기주성수"에도 무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록 내용은 동일하다.

^{57. 『}인조빈전혼전도감의궤』,「혼전삼방·제기주성수」, "實入秩 鑄鐵五百四十七斤八兩一錢五分 鍮鐵七斤五兩五錢 鑞鐵八十七 斤 銅鐵一斤十五兩 正鐵八斤四兩八錢 强鐵二斤十四兩五錢 炭陸十石 海長竹一百四介(の) が 생략)"

^{58. 『}인목왕후빈전혼전도감의계』,「배비排備・수복소장」,"錀象鐏二各重十六斤 鍮檥鐏二各重十六斤二兩 鍮山疊四各重七斤四兩 輸壺鐏二各重五斤二兩 鍮耆鐏二各重六斤十五兩 鍮斝彝一重五斤二兩 鍮黃彝一重四斤四兩 鍮鳥彝一重四斤十五兩半 鍮鷄彝一重五斤三兩 鍮香爐一重五斤三兩 鍮香盒一重一斤一兩 鍮中燭臺三雙各重三斤十五兩二雙都監鐵成一雙工曹鑄成 鍮坫一重四斤三兩 鍮飲福酹一重一斤八兩 鍮酹三重各一斤八兩 鍮酹坫三各重一四斤十三兩 鍮洗五各重十五斤四兩 鍮洗罍四各重十一斤七兩 鍮龍勺八各重十三兩半 御匜一重一斤六兩 御盤一重十一斤 亞匜一重二斤二兩半 亞盤一重六斤四兩 剪燭器一剪子具重一斤十一兩剪子重八兩 中火爐一重三十二斤 鍮龍瓚一重二斤十兩 鍮瓚臺一重一斤七兩 鍮大也一重一斤八兩 鍮耳大也一重一斤二兩 鍮銅貫子一重二斤十五兩 鍮中所羅一重十三斤十二兩以上都監鑄成所監造 鍮瓶二各重三斤七兩工曹 鑄沙用一重五斤九兩工曹 鑄匙一重二斤十四兩 鑄升一重八兩 鍮東海一重八斤二兩以上都監鑄成所監造 鍋瓶二各重三斤七兩工 曹 鑄沙用一重五斤九兩工曹 鑄匙一重二斤十四兩 鑄升一重八兩 鍮東海一重八斤二兩以上都監鑄成所監造 銅末飛介二各重三斤 鍮小燭臺三隻各重二斤八兩 鍮鑄盒一重二兩五菱以上工曹"

^{59. 『}인목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배비」、"제기주성시소용잡물祭器鑄成時所用雜物" "鑄鐵四百六十七斤八兩三錢三分 鍮鐵六 斤十兩八錢 鑞鐵六十七斤以上工曹 銅鐵一斤十五兩戶曹"

^{60.} 주경미, 「조선 전반기 금속공예의 대중교섭」, 『조선 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예경출판사, 2006), 249~150쪽 참조.

^{61.} 장은혜·박용수, 「종묘 출토 제기의 보존처리」, 『문화재보존연구』 8(서울역사박물관, 2011) 참조.

鑄相半, 순유純鍮, 순주純鑄 등으로 기록했다. 예를 들어『현목수빈장례도감의궤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의 혼궁제기 가운데 상준 희준, 산뢰, 호준, 가이, 황이, 조이, 계이, 세뢰, 세대, 승, 대촉대, 중촉대, 소촉대, 전촉기, 망료쟁반, 어반, 어이, 향로, 중소라, 동해, 중화로, 주병은 유주상반으로 기록되어 있고, 전촉자, 작, 점, 용찬대구, 용작, 세작, 소시, 이대야, 합, 주걱, 제집사관세대야는 순유, 사용은 순주로 기록되어 있다. 유주상반으로 기록된 것의 무게를 합하면 924근 15량이고, 순유로 기록된 제기의 무게를 합하면 106근, 순주인 사용의 무게는 5근이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재질은 유철이 567근 8량 5전, 주철이 463근 8량 5전이다. 유주상반을 유철과 주철의 반반으로 해석하여 924근 15량을 2로 나누면 유철과 주철은 각각 462근 7량 5전이 된다. 여기에 순유로 만든 제기가 106근이므로 유철은 462근 7량 5전+106근=568근 7량 5전이다. 주철의 경우 순주로 만든 사용의 무게 5근을 더하면 462근 7량 5전+5근=467근 7량 5전이 된다. 이는 유철과 주철의 총합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기록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조 국상부터 제기의 제작 기법이나 재질 등이 달라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주상반의 의미에 대해서도 추후 고증이 필요하다.

V. 맺음말

본 논고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혼전제기에 관한 기록인 1601년(선조 34)의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부터 1849년(철종 즉위년)에 편찬된 『현종국장도감의궤』의 혼전제기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17~19세기에 혼전제기의 제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제기의 구성 면에서 혼전 제사가 속제였기 때문에 종묘제례에 사용되었던 희생을 담는 제기들은 혼전제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상大喪인지 소상小喪인지에 따라 제기의 구성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소상의 경우에는 일부 제기가 생략되거나 수량이 줄기도 했다. 1776년(정조 즉위년) 영조의 국상부터는 망료쟁반, 주걱, 장화자, 장자금이 새로이 혼전제기에 포함되는 변화가 있었다.

한편 정조 국상 이전에는 혼전도감의 삼방에서 혼전제기를 제작했다. 따라서 혼전제기의 제작과 관련된 각종 문서와 제기의 목록, 수량 등은 혼전도감의궤의 혼전삼방에 수록되어 있다. 정조의 국상부터 국장도감의 삼방에서 산릉제기와 함께 혼전제기를 주조했다. 따라서 혼전제기 관련 내용도 산릉도감의궤의 삼방의궤에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처와 도설을 넣는 등 수록 방식도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인 이유는 추후 추가 고찰이 필요하다.

제기의 재질은 1601년 의인왕후의 혼전제기가 대부분 자기磁器로 만들어진 것 외에는 대부분의 제기를 금속으로 만들었다. 금속의 재질은 청동으로 추정되는 주철과 황동으로 추정되는 유철로 나누어진다. 정조의 국장 이전에는 주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정조의 혼전제기부터유철과 주철의 비율이 역전되어 유철의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 이 역시 정조 혼전제기에서 변화된 양상이다.

영조와 정조대에 제작한 효순현빈, 의소세손, 사도세자, 문효세자의 혼궁제기 제작과 관련해서는 의궤의 관련 기록 방식이 종전과 달라지기도 하고, 제기의 수량이나 무게를 줄이기도 했으며, 기존의 제기를 다시 사용하는 것도 의소세손에서부터 시작되어 이후 사례가 많아졌다.

영조대에는 여러 차례 국상을 거치면서 예제를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상에서 언급한 혼전제기의 제작처, 재질, 제기의 재사용 등은 『국조상례보편』에서 제시한 의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조 국장에서부터 망료쟁반이 새로 제기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1757년(영조 33)에 축문과 폐백을 묻는 것에서 태우는 것으로 바꾼 예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의궤에 기록된 혼전제기의 통시대적 고찰로 의례의 변화와 시대상이 혼전제기의 구성, 재질 등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기의 제작과 관련된 사항들이 『승정원일 기』등 당시 사료에도 나와 있지만, 관련 내용이 산재해 있어 시대나 의례에 따른 차이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의궤는 관련 내용을 모아 두어 맥락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다른 자료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기도 하여, 통시대적 분석에 유리한 자료이다. 본 논고에서는 대상자료의 분량과 걸쳐 있는 시대 범위가 넓어 시론적인 분석에 그쳤지만, 추후 개별 상장례의 특징들이 제기의 변화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의궤에 나오는 여러 재료들이 실제 어떤 것인지 등을 연구하는데 이 분석이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50

^{62. 『}包목수민장례도감의剂』3,「삼방의剂·혼궁利기」,"象講蓋具二坐合重五十九斤 山罍四坐合重一百一斤 壺講二坐合重三十八 斤以上金鏞相半 箸講二坐前排 斝舞一坐重十九斤 黄彝一坐重十九斤 鳥彝一坐重十九斤 鶏彝一坐重十十斤 洗罍四坐合重一百五斤 洗臺五坐合重一百六十六斤 升一坐重一斤九兩 大燭臺一雙重三十八斤半 中燭臺一雙重二十一斤八兩 小燭臺三雙合重三十五斤半 剪燭器蓋具一坐重三斤半以上金鏞相半 剪燭子一坐重七兩 爵三坐合重十斤 拈三坐合重十七斤 木祝 板一部 龍瓚臺具一坐重五斤十兩 龍勺九箇合重十八斤半 洗勺二箇合重四斤 小匙一箇重二兩以上純金 望燎錚盤一坐重十八斤 御整一坐重十八斤半 御匜一坐重十八斤半以上金鏞相半 耳大也一坐重五斤 盒一坐重二十一斤五兩 周昌一箇重八兩以上純金 霄爐蓋具一坐重十四斤金豬相半 香盒蓋具一坐前排 諸執事盥洗大也二坐合重十三斤半 耳大也二坐合重十三斤以上金鏞相半 沙用蓋具一坐重五斤 掩鑄 中火爐一坐重七十六斤 鑄瓶二坐合重八斤半以上金鑄相半 銅貫子一坐重一十八人 上金請相半 沙用蓋具一坐重五斤 純鑄 中火爐一坐重七十六斤 鑄瓶二坐合重八斤半以上金鑄相半 銅貫子一坐重一斤八兩 長火箸一箇別工作 長炙金一箇別工作 爵能三箇 幣能一箇 冪二十五箇…(중書)…魂宮祭器稱量重 釜鐵五百六十七斤八兩五錢 每斤劣二兩式七十斤十五兩 和金織二兩式七十斤十五兩 炭二斗式七十五石十斗 鑄鐵四百六十三斤八兩五錢 每斤劣二兩式五十七斤十五兩 和金織二兩式五十七斤十五兩 炭二斗式六十一石十二斗 熟銅十八斤六兩 每斤劣二兩式二斤 炭二斗式二石六斗 和含錫四斤十兩 汗音及鍍纖爺繼二斤半爺鐵一斤 合爺鐵六百三十九斤七兩五錢 鑄鐵五百二十一斤七兩五錢 熟銅二十斤十一兩 爺鑞一百三十一斤六兩 含錫四斤十兩 炭一百三十九石十三斗。"

국문초록

17~19세기 흉례 의궤의 혼전제기 기록에 대한 고찰

조선 왕실의 제기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은 종묘제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국가나 왕실에서 지내는 제사에는 여러 종류와 위계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제사의 절차와 제수의 구성 등에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수를 담는 제기의 구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의 의례가 『국조오례의』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후 예제에 변화가 있었고, 예론이 정치적 이슈가 되었던 만큼 예제의 변화가 제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묘대제가 길례이자 정사正祀에 속하였던 것과 달리, 혼전이나 혼궁의 제사는 제사 대상이 동일하지만 흉례에 속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혼전제사에 사용된 제기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혼전제기에 대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조선시대에는 흉례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 흉례 의궤가 지속적으로 편찬되었다. 흉례 의궤에는 혼전제기에 대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혼전제기의 구성, 제작 과정과 시대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 논고는 1601년의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부터 1849년에 편찬된 「헌종국장도감의궤」 의 혼전제기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17~19세기에 혼전제기의 제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를 고찰하였다.

제기의 구성 면에서 종묘제례에 사용되었던 희생을 담는 제기들은 혼전제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기의 구성에는 시기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으나, 1776년 영조의 국상부터는 망료쟁반, 주걱, 장화자, 장자금이 새로이 혼전제기에 포함되는 변화가 있었다.

한편 정조 국상 이전에는 혼전도감의 삼방에서 혼전제기를 제작했다. 따라서 혼전제기의 제작과 관련된 각종 문서와 제기의 목록, 수량 등은 혼전도감의궤의 혼전삼방에 수록되어 있다. 정조의 국상부터 국장도감의 삼방에서 산릉제기와 함께 혼전제기를 주조했다. 따라서 혼전제기 관련 내 용도 산릉도감의궤의 삼방의궤에 수록되어 있으며, 도설을 넣는 등 수록 방식도 달라졌다.

제기의 재질은 1601년 의인왕후의 혼전제기가 대부분 자기磁器로 만들어진 것 외에는 대부분 의 제기를 금속으로 만들었다. 금속의 재질은 청동으로 추정되는 주철과 황동으로 추정되는 유 철로 나누어진다. 정조의 국상 이전에는 주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정조의 혼전제기 부터 유철과 주철의 비율이 역전되어 유철의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 이 역시 정조 혼전제기에 서 변화된 양상이다.

영조와 정조대에 제작한 효순현빈, 의소세손, 사도세자, 문효세자의 혼궁제기 제작과 관련해서는 의궤의 관련 기록 방식이 종전과 달라지기도 하고, 제기의 수량이나 무게를 줄이기도 했다. 기존의 제기를 다시 사용하는 것도 의소세손에서부터 시작되어 이후 사례가 많아졌다.

영조대에는 여러 차례 국상을 거치면서 예제를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상에서 언급한 혼전제기의 제작처, 재질, 제기의 재사용 등은 『국조상례보편』에서 제시한 의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조 국상에서부터 망료쟁반이 새로 제기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1757년에 축문과 폐백을 묻는 것에서 태우는 것으로 바꾼 예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의궤에 나와 있는 혼전제기의 통시대적 분석을 통해 의례의 변화와 시대상이 혼전 제기의 구성, 재질 등에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대상 자료의 분량과 걸쳐 있는 시대 범위가 넓어 시론적인 분석에 그쳤지만, 추후 개별 상장례에서 나타나는 특징 들이 제기의 변화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의궤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재료들이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을 연구하는데 이 분석이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의궤. 제기. 혼전. 혼전제기. 흉례

Abstract

Study of Ritual
Vessels Used in
Spirit Halls as
Recorded in
Uigwe for
Funerary Rites
from the
Seven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y

During the Joseon period, performing an ancestral rite was both an important ritual and a political activity essential for administering the Confucian state. Therefore, the kings and the ruling class paid considerable attention to the forms and procedures of ancestral rites, and the production of ritual vessels was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This paper analyzed Uigwe for funerary rites from the seven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y in order to identify details on the ritual vessels used in spirit halls known as honjeon (魂殿, honjeon), particularly the metal versions that constituted the largest proportion of all such ritual vessels. A spirit hall, or honjeon, is where the ancestral tablet of a deceased king or queen was placed before it was enshrined in Jongmyo Shrine. The focus of the study was to compare various Uigwe records on ritual vessels used in spirit halls, and determine how the numbers and types of such ritual vessels changed over time. The study revealed that before the state funeral of King Jeongjo (正朝, r. 1776-1800) in 1800, ritual vessels for spirit halls were produc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ambang (三房) office of the Superintendency for Spirit Halls (魂殿都監, honjeon dogam). Documents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ritual vessels for spirit halls, the types and quantity of such vessels,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were therefore found in the honjeon sambang section of Uigwe titles for spirit halls (魂殿都監儀軌, honjeon dogam uigwe). However, starting with the state funeral of King Jeongjo, the sambang office of the Superintendency for State Funerals 國 葬都監, gukjang dogam), which oversaw the overall procedures for state funerals, took charge of the production of ritual vessels for spirit halls, and also for those used in ancestral rites at the royal tomb. From this point, the types, quantity, and other details about ritual vessels for the spirit hall were recorded in the sambang section of Uigwe titles for State Funerals (國葬都監儀軌, gukjang dogam uigwe), along with illustrations (圖說, doseol) of each vessel.

For roughly three hundred years from the early seventeenth to the late nineteenth century, few changes were made to the types of ritual vessels used in spirit halls, but certain characteristics can be observed for each period. The *Uigwe for the Royal Coffin Hall and Spirit Hall of Queen Uiin*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Uiinwanghu binjeon honjeon dogam uigwe*) (1601) shows that most of the ritual vessels used in the spirit hall at the time were made of porcelain. This is probably because the lack of state funds after the Japanese invasions of the late sixteenth

century (1592–1598) made it difficult to produce metalware. Ritual vessels for spirit halls from later periods are exclusively made of metal. Starting with the funeral of Crown Prince Sado (思悼世子, 1735–1762) in 1762, ritual vessels from previous funerals were often reused, and new types of ritual vessels came into circulation starting from the state funeral of King Jeongjo. Such changes appear to be related to the rearrangement of the funerary rites following the frequent state funerals conduct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英祖, r. 1724–1776).

Keywords: Uigwe, Ritual vessels, Spirit hall (honjeon), Ritual vessels used in spirit halls, Funerary rites (hyungnye)

Abstract

Analyse des manuscrits traitant des ustensiles de culte utilisés dans le pavillon réservé aux tablettes funéraires royales, appartenant aux *Uigwe* relatifs aux rites funéraires du 17eau19esiècle

Sous la dynastie Joseon, dominée par le confucianisme, le culte est un rite significatif et un acte politique nécessaire pour gouverner le pays. Les objets du culte sont variés : de la nature aux ancêtres. Les rois et les nobles portent un grand intérêt aux règles et à la procédure du culte. La fabrication des ustensiles nécessaires est ainsi une préoccupation majeure des dirigeants.

Notre étude examine les ustensiles de culte, décrits dans les *Uigwe* relatifs aux rites funéraires, utilisés dans le pavillon où l'on place la tablette funéraire d'un roi ou d'une reine, en attendant de l'installer définitivement dans le sanctuaire royal. Nous analysons surtout les ustensiles métalliques, qui constituent une grande partie de l'ensemble. Nous concentrons notre attention sur la façon dont ce genre d'ustensiles est décrit dans chaque *Uigwe*, et sur l'éventuelle variation de leur nombre et de leur composition.

Voici le constat. Avant 1800, année des funérailles du roi Jeongjo (qui régna de 1776 à 1800), les ustensiles du pavillon réservé aux tablettes funéraires étaient fabriqués par un sous—bureau (appelé *Sambang*) du bureau qui s'occupait de ce pavillon. Les manuscrits produits par le sous—bureau rapportent les méthodes de fabrication et l'inventaire des ustensiles. Depuis les funérailles du roi Jeongjo, c'est le sous—bureau du bureau présidant à l'ensemble des obsèques d'un roi, qui fabrique les ustensiles de culte utilisés dans le pavillon des tablettes funéraires, mais aussi ceux employés pour le culte devant la tombe. Tout ce qui concerne les ustensiles de culte dans le pavillon est également enregistré dans le *Uigwe* du sous—bureau, qui fait partie du *Uigwe* relatif qux funérailles. Depuis lors, l'inventaire des ustensiles est enregistré avec le nom, le nombre et une illustration de chaque récipient.

Du début du XVIIe siècle à la fin du XIXe, la composition des ustensiles de culte ne présente pas de grand changement, mais on constate certaines spécificités selon les époques. les époques. Rédigé en 1601, le *Uigwe* relatif à l'installation de la tablette de la reine Uiin présente les ustensiles employés: si la plupart sont de porcelaine, c'est que la guerre d'Imjin (due aux invasions japonaises entre 1592 et 1598) appauvrit tant du royaume de Joseon, qu'il ne fut pas possible d'en faire en métal. Mais après cette période difficile, tous les ustensiles de culte sont en métal. À partir des obsèques du dauphin Sado en 1762, les mêmes ustensiles ont été réutilisés à maintes reprises. Depuis les funérailles du roi Jeongjo, des récipients de nouvelles formes sont venus s'ajouter à l'inventaire. Cette évolution

est sans doute due à l'aménagement des rites funéraires réalisé au cours des nombreuses funérailles qui ont eu lieu sous le règne du roi Yeongio.

Mots—clés: *Uigwe*, ustensiles de culte, pavillon réservé à l'installation de la tablette funéraire d'un roi ou d'une reine, ustensiles utilisés pour le culte dans le pavillon réservé à l'installation de la tablette funéraire d'un roi ou d'une reine, rites funéraires

17세기 도감 생산 공문서 연구

09

-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를 중심으로 -

Study of Official Documents Produced by

Dogam in the Seventeenth Century with a Focus on the *Uigwe for*Bestowing Posthumous Titles to King Jeongjong and Queen Jeongan

박준호 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사 | Park Jun-ho
Associate Curator, National Hangeul Museum

- Ⅰ. 머리말
- Ⅱ. 묘호 추상의 논의 과정과 도감의 직제 구성
- Ⅲ. 도감 공문서의 종류와 형식
- 1. 계사
- 2. 이문 관 · 첩정
- 3. 하달 문서 감결
- 4. 상달 문서 품목 · 수본
- Ⅳ. 맺음말

I. 머리말

의궤儀軌는 조선 왕실의 중요 행사에 대한 진행 과정 등을 기록한 종합보고서로 잘 알려져 있는데, 현전하는 의궤의 실제 내용은 도감都監 등에서 생산된 문서文書를 편집하여 수록한 성책고 문서成冊古文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관청 생산 문서는 훗날 참고를 목적으로 정리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승정원承政院의 일기나 각 아문衙門에서 생산한 긴요한 업무에 관계된 문서는 정리한 후 책으로 만들어 매년 그 숫자를 국왕에게 보고하였고, 제사諸司와 제읍諸邑의 문서는 분류하여 편철한 후 제목을 쓴 종이를 문서에 달아서 각각 보관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문서는 특정 사안에 해당하는 부분만 입안立案이라는 문서 형식으로 작성되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감都監에서 생산된 문서도 『경국대전』의 규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리되었을 것이지만, 처음만들어진 의궤가 편집된 서책書冊 방식이었는지의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관청 생산 문서의 정리는 『경국대전』의 규정과 같이 원본을 분류해서 제목을 매다는〔懸籤〕 방식, 편집한 후 책으로 만드는 방식, 똑같은 부본副本을 만드는 방식 등 여러 정리 형식이 있었고, 또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아마도 종이 조달의 경제성과 유지 관리의 효율성 등이 고려되어 원본이나 원본에 가까운 부본 방식에서 편집된 등록謄錄이나 의궤와 같은 서책 방식으로 변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어찌되었건 의궤는 도감에서 주고받은 수백여 점의 문서로 사업 종료 이후 편찬되었다. 따라서 의궤에 수록된 공문서는 단일 사업에 대한 관청 생산 문서의 총합이라는 점에서 당시 조선 조정의 문서 행정과 조직 체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1차 사료가 된다. 원형을 잃어버린 전사轉寫 문서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 만들어진 특정 업무의 일괄 공문서가 현전하지 않는 상황은 의궤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 1. 『경국대전』권3,「예전禮典·장문서藏文書」,"春秋館時政記[撰集承政院日記及各衙門緊關文書 毎歳季啓冊數] 承文院文書 毎三年印藏本衙門議政府及史庫"
- 2. 『경국대전』권3,「예전·장문서」, "諸司諸邑文書 分類作綜懸籤 各藏之."
- 3. 『경국대전』권3,「예전·용문자식用文字式」,"官府文字 並置立案 以憑後考."
- 4. 실록의 기사를 통해서 현존하는 의궤가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었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모두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는 시 각이 보편적인데, (신병주, 「조선시대 儀軌 편찬의 역사」, 『조선시대사학보』 54 (조선시대사학회, 2010. 9.), 272~276쪽.) 이때 조선 중·후기에 나타나는 서책 형태의 의궤가 조선 초기에도 그대로 만들어졌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1681년(숙종 7)에 제작된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定宗定安王后諡號都監儀軌』 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17세기 조선 중앙 관서의 문서 행정 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특정 행정 부서의 운영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생산된 공문서가 절대적인 증빙 자료가 된다. 최종적인 결정권자에게 보고되는 과정, 그리고 그 보고가 지시 사항으로 다시 하달되는 과정, 그 사이에 어떤 권력의 관계가 작용을 하고, 그 권력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관철되어 실무 조직에 반영되었는지는 오로지 생산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의궤에 전사된 공문서는 조선시대 실무 행정 조직의 운용 실제를 아무런 가감 없이 보여주는 사료가 될 것이다.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왕의 묘호廟號나 시호諡號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다. 특정의 때가 도래하였을 때 수행하는 정례화된 사업이 아니고, 국왕의 사후 평가를 단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묘호와 시호의 추상追上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Ⅱ. 묘호 추상의 논의 과정과 도감의 직제 구성

우선 공정대왕恭靖大王(정종, 재위 1398~1400)의 묘호廟號와 시호諡號 그리고 정안왕후定安王后 (1355~1412)의 휘호徽號를 추상追上하는 논의 과정, 그 결과 만들어진 도감의 직제와 인력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공정대왕은 태조太祖(재위 1392~1398)의 양위讓位로 등극하였지만 국정 운영에서는 거의 실권이 없는 국왕이었다. 그것도 즉위 2년 후에는 동생 이방원李芳遠(1367~1422)에게 양위하고 국왕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1419년(세종 1) 공정대왕이 승하하여 그 묘호를 올려야 했지만,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태조에서 태종太宗(재위 1400~1418)으로 확립하고자 하였던 세종世宗(재위 1418~1450)은 묘호를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공정대왕은 묘호도 없이 종묘에 봉안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공정대왕의 묘호 추상에 대한 논의는 예종睿宗(재위 1468~1469)·성종成宗(재위 1469~1494)·중종中宗(재위 1506~1544)의 재위 기간에 계속 있었으나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현종顯宗(재위 1659~1674) 때 천하동례天下同禮의 인식을 가지고 있던 서인西人이 중심이 되어 의리 義理의 실천적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방치되었던 왕실 정통의 상징적 의례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였 고, 후릉厚陵(정종과 정안왕후의 등)의 수개修改는 그 시작이 되었다. 숙종肅宗(재위 1674~1720) 때에 는 『선원록璿源錄』을 수정하면서 공정대왕의 묘호가 없는 것이 차차로 거론되었다.

의궤의 기록상으로 공정대왕의 묘호 추상 건은 1681년(숙종 7) 7월 23일 오도일吳道—(1645~1703)의 발의를 그 시작으로 정리하고 있다. 대신大臣과 비국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는 자리에서 부교리副校理 오도일은 공정대왕의 묘호가 빠졌음에도 이를 추거追擧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흠전欠典임을 아뢰었다. 같이 자리하였던 사간司諫 안후安屋도 이를 국가의 막대한 궐전闕典이라고 하며 오도일과 뜻을 같이 하였다. 이에 숙종은 "열성列聖이 모두 묘호가 있는데, 유독 공정대왕만 없으면서도 추상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흠전이 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여러 대신에게 수의收講하여 품처稟處하라"는 명을 내렸다.

7월 27일 주강畫講에서 참찬관參贊官 이유李濡(1645~1721)는 공정대왕의 묘호를 추거하는 것은 대군大君의 추봉追封과 달리 사체事體가 막중하니 대신들의 뜻을 모아 품처하라는 하명을 거두고 공경公卿이 빈청賓廳(궁궐에 있는 고관들의 회의 장소)에서 회의하여 결정할 것을 아뢰었다.¹¹ 같이 있던 시독관侍讀官 오도일과 지사知事 김석주金錫胄(1634~1684)도 뜻을 같이 하니, 이에 숙종은 "묘호를 추의追議하는 것은 사체가 과연 대군을 추봉하는 일과 다르니 승지承旨의 말이 참으로 맞다. 정원政院은 무고無故한 날에 여러 대신과 육경六卿, 예관禮官, 삼사三司 장관長官을 모두 패초牌招하여 빈청에서 회의하라."는 명을 내렸다.¹² 이렇게 됨으로써 공정대왕의 묘호 추상 논의는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고 공경 대신들이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더 큰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 공경의 논의 결과는 8월 25일 빈첫의 계사啓辭로 이어졌다. 숙종의 명에 따라 빈첫에는 이조판

^{5.} 본 자료의 표제와 내제는 "諡號都監儀軌"이고, 크기는 47.3×34.1×4.0cm이며, 1책 125장에 초주지로 제작된 어람용 의궤이다. (외규장각 의궤 누리집 http://uigwe.museum.go.kr 참조.)

^{6.} 이하 본고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궤는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定宗定安王后諡號都監儀軌』를, 도감都監은 정 종정안왕후시호도감定宗定安王后諡號都監을 지칭한다.

^{7.} 공정대왕(정종)의 묘호 추상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일지사, 2009), 181~223쪽을 참조할 것.

^{8.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계사啓辭」, 7월 23일;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7월 23일 갑술.

^{9.} 오도일의 관직을 실록은 교리校理로, 의궤는 부교리副校理로 명시하였는데, 같은 해 7월 4일 오도일을 부교리에 제수하는 실록 기사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부교리로 명기하였다.(『숙종실록』권12, 숙종 7년 7월 4일 을묘.)

^{10.} 국왕의 처결 사항이 의궤는 "列聖皆有廟號 獨於恭靖大王闕而不擧 誠爲欠典 令該曹收議于諸大臣 稟處可也." 『정종정안왕 후시호도감의궤』, 7월 23일)이고, 실록은 "我朝列聖 俱有廟號 而獨於恭靖大王闕焉 事體未安 其令該曹 議于大臣."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7월 23일 갑술.)인데 본고에서는 의궤의 정리 내용을 따른다.

^{11.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계사」, 7월 27일;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7월 27일 무인.

^{12.} 국왕의 처결 사항이 의궤는 "追議廟號 事體果異於追封大君之事 承旨之言 誠是 政院以無故日 諸大臣及六卿與禮官三司長官並牌招 使之會議於賓廳可也."(『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계사」, 7월 27일.)이고, 실록은 "上可之"(『숙종실록』권12, 숙종 7년 7월 27일 무인.)인데, 본고에서는 의궤의 정리 내용을 따른다.

^{13.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계사」, 8월 25일;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8월 25일 을사.

서 김석주, 행형조판서 남용익南龍翼(1628~1692), 행예조판서 여성제呂聖齊(1625~1691), 행대사헌 조 사석趙師錫(1632~1693), 호조판서 정재숭鄭載嵩(1632~1692), 예조참판 안진安績(1617~1685), 홍문관 부교리 박태손朴泰遜(1641~1692), 사간원정언 권지權持(1656~1709) 등이 모여 상의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김석주는 정사定社의 훈공과 양국讓國의 미덕이 있는 공정대왕의 묘호 추상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며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미 조천桃遷하여 훼묘毀廟된 상황에서 묘호를 올릴 수 있는지 여부를 고례古禮에 어긋나지 않도록 널리 묻고 처리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둘째, 남용익·조사석·정재숭은 열성이 모두 묘호가 있음에도 유독 공정대왕만 묘호가 없는 것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고찰할 문헌이 남아 있지 않고, 또 국왕으로 재위하였고 중국의 시호諡號도 받은 상황에서 묘호만 없는 것은 흠전이므로 추거追擧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셋째, 여성제·안진·박태손·권지는 열성이 모두 묘호가 있는데 공정대왕만 묘호가 없는 것은 궐전이나, 일이 가볍게 처리될 수 없는 사안이므로 널리 묻고 처리할 것을 당부하여 첫째 의견과 둘째 의견을 조합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상 세 가지 의견으로 정리된 빈청의 회의 결과를 김수항金壽恒(1629~1689)·김수홍金壽興(1626~1690)·정지화鄭知和(1613~1688)·민정중閔鼎重(1628~1692)·이상진李尚眞(1614~1690)이 최종 정리하여 빈청의 계사로 국왕에게 계달하였다. 열성이 모두 묘호가 있음에도 공정대왕만 묘호가 없는 것을 강화서고에 가서 실록을 검토해 보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하고, 공정대왕의 묘호가 없는 것은 막대한 궐전으로 이를 추상하는 것은 성조聖朝를 계술繼述하는 도리에 합당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다만, 이미 조천한 상황에서 묘호를 추상하는 것은 변례變禮에 해당되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으니 재외의 원로대신과 예禮에 밝은 지례인知禮人에게 자무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숙종은 "사관史官을 송영부사宋領府事(송시열宋時烈, 1607~1689)에게 보내 순문詢問하고, 박세채朴世采(1631~1695) 등 세 신하에게도 예관禮官을 보내 문의하라."는 명을 내렸다.¹⁴

9월 9일, 이상季翔(1620~1690)·박세채·윤증尹拯(1629~1714)에게 예관을 보내 문의한 결과를 예조에서 계달하였다. 이상은 근거할 만한 예문禮文을 찾지 못했다고 했고, 박세채는 "폐지막감거지 廢之莫敢擧之"의 예문을 들어 묘호 추상이 훼묘된 상황에서 불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유증

도 이상과 같이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숙종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 았다.¹⁵

9월 14일, 송시열에게 자문하기 위해 충청 도 화양동華陽洞에 갔던 사관 조석주趙錫問 (1641~1716)가 서계書함를 올렸다. 송시열은 공 정대왕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로 서론을 이끌 고, 마지막에 빈청의 논의 내용 중 훼묘하여 묘호를 올릴 곳이 없다는 의견을 반박하며 다 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 하였다. "여러 신하의 논의에서, 혹 다시 (묘호를) 올릴 곳이 없다는 것으로 주저합니다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녕전永寧殿에 항시 조주桃主가 있고, 능침陵 寢에서는 한식寒食 때마다 항상 축사飛辭를 올 리는데, 이것이 어찌 올릴 곳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6되 송시열의 견해를 보고 받은



도1. 〈송시열 초상〉, 조선 후기, 비단에 색, 89.7×67.6cm, 국보제239호, 국립중앙박물관(덕수 2828) 공정대왕의 묘효 추상 논의는 송시열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이후 최종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숙종은, "우리 열성은 모두 묘호가 있는데, 하물며 공정대왕의 큰 훈공과 성대한 미덕의 아름다운 칭호가 오히려 지금까지 빠졌으니 어찌 국가의 일대 흠전이 아니겠는가. 묘호를 추상하는 것은 조 금도 불가할 것이 없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즉시 거행토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7월 23일 시작된 공정대왕의 묘호 추상 논의는 송시열의 강력한 지지 이후 9월 14일 국왕의 최종적인 재가를 통해 그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이 업무를 담당할 주무 부처는 예조였다. 국왕의 하명이 있었던 그날 예조에서는 길일吉田로 택정된 9월 18일에 대신大臣, 정부당상政府堂上, 육조참판六曹參判 이상, 관각당상館閣堂上을 불러 회의하겠다고 계달하였고, 숙종은 윤허하였다. 9월 18일, 빈청에서 계사를 올렸다. 이품드品 이상의 관원과 관각 당상관이 빈청에 모여 논의하

^{14.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계사」, 8월 25일, "遣史官詢問於宋領府事 而朴世采等三臣處 亦爲遣禮官問議可也."

^{15.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계사」, 9월 9일.

^{16.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계사」, 9월 14일, "諸臣之議 或以更無所施爲疑 此則不然 永寧殿旣有祧主 陵寢寒食常有祝辭 此豈非可施之處乎."

^{17.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계사」, 9월 14일, "我朝列聖 皆有廟號 而況以恭靖大王之豐功盛德 徽美之稱 尙今闕焉 豈非國家之一大欠典乎 追上廟號 少無不可 其令該曺趁卽擧行."

^{18.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계사」, 9월 14일.

였는데, 열성의 시호證號가 모두 8자인데 유독 공정대왕만은 "온인순효溫仁順孝"의 4자이므로 궐전을 면하기 어려우니 묘호를 추상할 때 시호 4자를 가상加上하여 전례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계달하였다. 이에 숙종은 4자를 가상하라는 명을 내렸고, 이로써 공정대왕의 묘호뿐만 아니라 시호 가상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묘호 추상의 사업을 진행하던 10월 28일, 위판位版을 개제改題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대신들의 중론에 따라 숙종은 시호를 올리는 날 개제를 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11월 3일, 김수항이 정안왕후의 휘호도 가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숙종은 왕후의 휘호를 가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즉시 주요 관원을 불러 휘호를 의논하여 정하라고 명하여 관련된 제반 사업의 내용이 결정되었다."

9월 14일, 국왕으로부터 막중한 묘호 추상의 하명이 있었고 즉각 권설權設의 도감이 꾸려졌다.²¹ 도감을 운영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은 업무 담당 관원에 대한 인사발령이었다. 당시 도감 관원의 인사는 일정한 패턴으로 진행되었는데, 육조 중에서는 호조·예조·공조의 관원이 겸직되었고, 도청都廳의 당청郎廳²²은 모두 청요직인 홍문관의 관원이 임명되었다. 호조와 공조는 숙련된 장인匠人 등의 인력과 각종 물력 마련을 담당하였고, 예조는 사업 추진의 주무 부처였으며, 홍문관은 사업추진 중에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예제禮制와 관련된 고사故事 등을 박고博考하는 업무를 하였다. 사실상의 업무가 도청과 당청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도청을 구성하는 홍문관 관원이사업을 주도하였고, 당청을 구성하는 호조·공조 등의 당관은 실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도제조都提調는 1인. 〈시임時任 또는 원임原任 대신을 이조에서 낙점을 받아 임명한다.〉 당상관堂上官(제조) 3 인. 〈호조·예조·공조의 당상을 이조에서 단부單付로 올려 계하 받고, 거행하는 일이 많을 때는 정경正卿·아경亞卿 중 1인을 더 차하差下한다.〉 도청都聽의 낭청郡廳 2인. 〈시임 옥당玉堂(홍문관) 관원이나 옥당 관원을 거친 사람을 임명한다.〉 각방음房의 낭청 4인.〈호조·예조·공조의 낭청과 각사음司 낭청 중 이조에서 단부로 계하 받고, 거행하는 일이 많을 때는 1인이나 혹은 2인을 더 차하하고, 도감을 설치한 뒤에 궐원關係을 대신할 때는 도감에서 차하한다.〉 23

- 19.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계사」, 10월 28일.
- 20.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계사」, 11월 3일.
- 21. 『만기요람萬機要覽』,「祁용편財用編 5・권설도감權設都監」, "國家有大禮節大事役 則設都監擧行"
- 22. 낭관郎官, 곧 도감의 당하관堂下官을 가리킨다. 도감사목都監事目에 '낭청사원郎廳四員'과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때 낭청은 도청에 배속된 당하관 2인과 낭청을 구성하는 두 방房의 당하관 2인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방과 이방을 함께 지칭할 때도 낭청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낭관의 낭청과 두 방의 낭청은 문맥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 23. 『만기요람』,「재용편 5・권설도감」, "都提調一員 [時原任大臣, 自吏曺書啓受點] 堂上三員 [戸醴工三曺堂上 自吏曺單付啓下

도감 조직의 인적 구성에 대한 이조東曺의 별단別單은 사업 추진이 결정된 직후 국왕에게 상신 되어 9월 21일 재가를 받았다. 그 직제의 내용은 [표 1]과 같은데, 도제조는 영의정 김수항이, 당 상堂上인 제조는 예조·공조·호조 판서가 임명되었다. 시업을 주도한 도청은 홍문관 관원 2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오도일이 곧바로 교체되어 홍문관 수찬修撰·부교리副校理·응교應教 등의 관직을 지낸 심유沈濡(1640~1684)가 이를 대신하였다. 실무인 낭청에는 호조와 공조의 좌랑佐郎이 임명되면서 모든 진용이 갖추어졌다.

[표 1] 도감 직제 구성에 따른 인사 발령 내용

도감 직책	담당자	현 직책	발령 일자
도제조都提調	김수항金壽恒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정1품)	9월 21일 계하
제조提調	여성제呂聖齊	행예조판서行禮曺判書(정2품)	9월 21일 계하
	신여철申汝哲	공조판서工曺判書(정2품)	9월 28일 계하
	정재숭鄭載嵩	호조판서戸曺判書(정2품)	9월 21일 계하
도청都廳	송광연宋光淵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종4품)	9월 21일 계하
	오도일吳道一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정6품)	10월 3일 계체
	심유沈濡	부사직副司直(종5품)	10월 5일 계하
ける郎廳	 이언기李彦紀	호조좌랑戸曺佐郎(정6품)	9월 21일 계하
	민진장閔鎭長		9월 21일 계하

10월 2일, 도감사목都監事目을 제정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 사목은 사업 내용·절차·인력과 물력의 동원·급료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한시적인 시행령으로, 1669년 (현종 10) 신덕왕후神德王后 부묘祔廟 때 만들어진 등록의 사목을 참고해서 모두 15개 조항으로 작성되었다.²⁵

사목 제정과 동시에 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물품과 소모품을 준비하였고, 도청에서는 감조관 監造官으로 승문원承文院 부정자副正字(종9품) 심사홍沈思泓과 동빙고東氷庫 별검別檢(종8품) 송병

舉行浩多時 則正卿亞卿中一員 加差下] 都廳郎廳二員 [時任玉堂 或曾經人] 各房郎廳四員 [戶禮工三曺郎廳及各司郎廳中 自吏曺單付啓下 舉行浩多時 則一員或二員 加差下 設都監後有闕之代 則自都監差下]."

^{24.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시호도감도청의궤諡號都監都廳儀軌・이조별단」, 9월 21일.

^{25.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시호도감도청의궤·도감사목」, 10월 2일.

하宋炳夏 2인의 임명 건을 국왕에 계달啓達하여 재가를 받았다.²⁶

그러나 별공작別工作의 업무를 담당하는 감역관監役官(분차감조관分差監造官)의 경우는 국왕의 재가를 거치지 않고 선공감繕工監 감역監役(종9품) 이의조李儀朝가 분차되었으며," 마찬가지로 11월 21일에는 개제주소차지관改題主所次知官으로 봉상시奉常寺 봉사奉事(종8품) 김하세金夏世가 분차되었다.²⁸

이렇게 도감의 사업 추진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추어졌다. 도감에서 진행할 실무는 도청, 일방, 이방, 별공작의 네 곳을 중심으로 하였고, 기간이 짧지만 개제주소도 일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도청은 종4~종5품관의 위계를, 일방과 이방은 정6품관의 위계를, 별공작은 종9품관, 개제주소는 종8품관의 위계를 가졌다. 도감의 최고 책임자인 도제조가 영의정이고, 그 아래에 판서 위계의 제조가 여러 명 포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도감의 실무를 담당해서 운영하는 것은 중간 단계인 4~6품관이었다.

도감은 당하관 중심으로 적제가 편제 되었다. 그것은 도감이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이 기보다는 결정된 정책 내용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관청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의결된 정책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방식은 도감 생산 공문서에 자세히 담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음 장에서 의궤에 정리된 도감의 공문서를 분석하여 조선시대 도감 조직의 행정 운영을 고찰하겠다.

Ⅲ. 도감 공문서의 종류와 형식

도감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문서는 모두 199점이다. 도감의 인사 발령을 위해 이조에서 계달한 문서 1점, 상훈賞勳을 위해 국왕이 내린 비망기備忘記 1점, 옥책문玉册文 2점, 사목事目 2점 등이 포함되었지만, 대부분은 도감과 관련 관청이 주고받은 공문서이다. 또한 도감의 문서는 아니지만 처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조와 빈청에서 올린 계사가 5점 있다. 따라서 의궤에 수록된 공문서는 모두 204점이 된다. 도감에서 생산하고 접수한 공문서 199점을 생산 관청과 종류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66

[표 2] 도감에서 생산·접수한 공문서 내역

관청명	의궤 분류	수량(점)	소계(점)	비고
도청都廳	감결질甘結秩	9	51	
	계사질啓辭秩	1		미분류
	계사질啓辭秩	13		
	도감별단都監別單	1		
	별단질別單秩	2		
	비망기備忘記	1		
	사목事目	2		
	예관질禮關秩	13		
	이문질移文秩	4		
	이조별단吏曹別單	1		
	품목질禀目秩	3		
일방一房		11	90	
	수본질 手本秩	6		개제주소
	수본질手本秩	6		
	이문질移文秩	7		
	품목질禀目秩	60		
이방二房	감결질甘結秩	4	47	
	수본질手本秩	4		-
	옥책문玉册文	2		
	이문질移文秩	4	47	
	품목질 禀目秩	33		
별공작別工作	미상	12	12	
합계		199		

통계에서 확인되듯 가장 다양한 문서를 생산·접수한 곳은 도청이고, 가장 많은 문서를 생산한 곳은 일방이다. 문서의 종류별 수량을 보면, 품목 96점, 감결 24점, 계사 16점, 수본 16점, 이문 15점, 예관 13점 순으로 작성되었다.

두 달 남짓한 기간 안에 치러야하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감에서는 일방적인 지시·하달의 문서가 많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문서는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품목이다. 다른 그 어느 문서보다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상달 문서라는 점은 통계적 수치만을 보았을 때 분명 이례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이 부분에서 조선시대 문서행정의 특별한 수행 방식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하 도청·일방·이방·별공작의 공문서를 생산 주체의 위계 관계에 따라서 계사啓辭·이문移文·하달下達·상달上達 문서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26.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시호도감도청의궤」, 10월 2일.

^{27.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시호도감도청의궤・이문질移文秩」, 10월 5일.

^{28.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시호도감도청의궤·이문질」, 11월 21일.

1. 계사

계사啓辭는 관청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를 가리킨다. 주로 초기草記·계목啓目·계본啓本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법전 규정의 원칙으로는 2품 아문衙門만 국왕에게 직계直啓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항으로 중외제장中外諸將·승정원·장예원掌隷院·사간원·종부시宗簿寺도 직계할 수 있었고, 각사의 경우 기급한 업무는 제조提調가 직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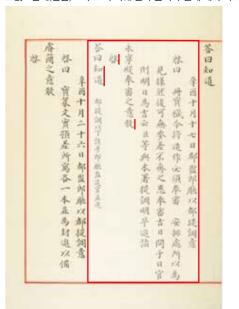
도감의 계사는 모두 도청에서 작성되었다. 의궤에서 별단질別單秩로 분류된 경우는 인사 발령을 위해 국왕에게 계달한 문서로 계사와 차별이 없으므로 계사와 별단을 함께 묶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별도 분류되지 않은 계사 1점을 포함하여 도청의 계달 문서 16점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도청 등에서 생산한 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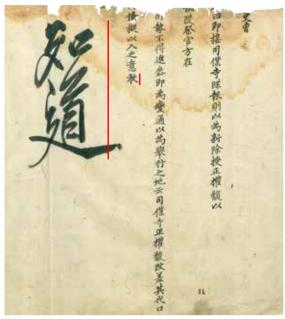
	작성일	두사 頭辭	결사 結辭	판사 判辭	내용	분류
1	10월 2일	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日	敢啓	答日知道	감조관 차출	미분류
2	10월 5일	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日	敢啓	答日知道	책보 서사관 차출	별단질
3	10월 5일	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日	何如	答日允	도청 오도일 개체	계사질
4	10월13일	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日	敢啓	答日知道	 감조관 윤회 직숙	계사질
5	10월17일	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日	敢啓	答日知道	책보장 조작을 위한 봉심	계사질
6	10월26일	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日	敢啓	答曰以實差入刻可也	어보 전문篆文 봉진	계사질
7	11월 1일	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日	敢啓	答日知道	~~~~~~ 옥책문 초본 예람	계사질
8	11월 5일	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日	敢啓	答日知道	휘호 서사관 차출	별단질
9	11월16일	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日	敢啓	答日知道以實差入刻可也	휘호 어보 전문 봉진	계사질
10	11월19일	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日	敢啓	答日知道	휘호 옥책문 초본 예람	계사질
11	11월26일	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日	敢啓	答日知道	각방 공역 간검	계사질
12	12월 3일	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日	敢啓	答日知道	책보 내입 · 내출 보고	계사질
13	12월 6일	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日	敢啓	答日知道	책보 영녕전 악차 봉안	계사질
14	12월 6일	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日	敢啓	答日知道	위판 기록 봉심 후 보고	계사질
15	12월 6일	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日	敢啓	答日知道	위판 기록 봉심 결과 보고	계사질
16	12월 7일	都監郎廳以都提調意 啓日	敢啓	答日知道	상책보 · 개제주 일시 보고	계사질

도감에서 국왕에게 보고하는 계사는 모두 도청에서 작성하는데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도청 은 홍문관의 당하관 위계이기 때문에 직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두사頭辭에 "도감낭청이도제조의

도2. "감계(감품)→지도"의 의궤 전사 문서와 실제 계사 비교



도2-1.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10월 17일 "감계 ↔ 지도"로 작성된 낭청郎瞻 계사의 전사轉寫 부 분. 책보장冊寶欌을 만들기 위해 영녕전에 가서 책보를 실제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도2-2. 「이조계사」, 조선 1825년, 56×37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 학연구워

"감계 ↔ 지도"로 작성된 이조 계사. 사복시司僕寺 정正 권복權馥이 의릉 제관發酸祭官으로 있어서 부득이 진참進參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개차改差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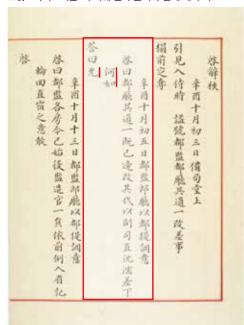
都監郎廳以都提調意", 곧 "도감의 낭청(당하관)이 도제조의 뜻으로"라는 투식을 썼다.³⁰ 도제조는 의정부 영의정으로 정1품 당상관의 위계를 가지며 국왕에게 직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³¹

이때 작성된 계사에서 두사의 "계왈함曰"과 결사結辭의 "하여何如" 및 "감계敢啓"는 법전의 초기草記 서식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실록 기사를 통해 두사는 "계왈함曰"을, 결사는 응답하는 말에 따라서(隨所答之語) "하여何如"·"감계敢啓"·"감품取稟"·"하이위지감품何以爲之取稟"으로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응답하는 말에 따른다."는 내용인데, 국왕이 내리는 판사判辭에 의해서 결사의 서식이 정해진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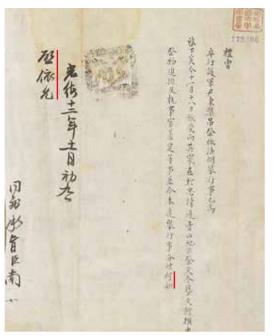
- 30. 『전量통보典律通補』、「별편別編・초기식草記式」、"某司啓曰[或郎廳以提調意啓曰]."
- 31. 제조의 직계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金松姫, 「朝鮮初期의 提調制에 관한 研究」, 『동아시아문화연구』 12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87), 72~79쪽.
- 32. 『전률통보』、「별편・초기식」、"云云何如[一式 云云之意敢啓]."
- 33. 『정조실록』권11. 정조 5년 3월 20일 계사. "頭辭 書以啓曰 結語 隨所答之語 或何如 或敢啓 或取稟 或何以爲之敢稟爲定."

^{29. 『}경국대전』권3, 「예전·용문자식」.

도3. "하여↔의윤"의 의궤 전사 문서와 실제 계사 비교



도3-1.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10월 5일 "하여 ↔ 의윤"으로 작성된 낭청 계사의 전사 부분. 도청 관원 으로 오도일 대신 심유를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도3-2. 「예조 계사」, 조선 1886년, 23×28cm, 서울대학교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하여 ↔ 의윤"으로 작성된 예조 계사. 졸한 행호군行護軍 윤병준尹 秉準에 대해 제물祭物 진배와 집사관執事官 차정 등을 해당 도에서 거행하도록 분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대체적으로 "감계政啓 ↔ 지도知道"와 "하여何如 ↔ 의윤依允"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지도知道는 보고한 내용을 알았다는 의미이므로 특정의 사안을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는 반면, 의 윤依允은 보고한 그대로 시행하라는 의미이므로 특정의 사안을 시행할 것을 허락하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지도"는 현상 보고적인 내부 결재의 성격이라면, ⁵² "의윤"은 향후 시행의 의미를 가지는 대내외 시행문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⁵³

도청의 계사는 1점만 "하여 ↔ 의윤"이고, 나머지는 모두 "감계 ↔ 지도"임이 확인된다. 1점의 계사는 도청 관원의 교체와 관련된 인사 업무 내용으로, 애초부터 관원의 인사권은 국왕의 권한(권력)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도감의 모든 계사가 사실상 현상 보고적인 성격의 것인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감이라는 조직이 당하관 중심으로 편제된 실무 담당 기관이기 때문이다. 정책적 방향을 의결해서 시행을 담아내는 것보다는 실무적인 업무 진행 과정을 국왕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모든 계사가 "감계 ↔ 지도"의 형식일 수 밖에 없었다. 관련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예관禮關과 연계해서 부연 설명하겠다.

2. 이문-관·첩정

의궤는 도청·일방·이방에서 주고받은 공문서를 이문移文과 예관禮關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문은 관청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지칭하고, 예관은 이문 중에서 특히 예조에서 발송한 관문關文을 가리킨다. 따라서 예관을 이문의 범주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다. 도감의 이문은 모두 28점이다.^{표4}

먼저 예관질禮關秩로 분류된 예조 관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8점의 이문 중에서 예관 13점을 별도로 분류한 것은 특히 예조에서 도감에 보내는 공문서가 국왕의 재가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3점 중에서 $2점(6\cdot16번)$ 을 제외한 11점이 숙종肅宗의 계하함도 사항을 예조에서 도감에 전달한 것이다.

제외된 2점도 첩정牒로의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이때 첩정은 일반 관원에 대한 증시贈諡 행정을 참조할 때 봉상시나 홍문관에서 예조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³⁴ 시호諡號 추증追贈의 업무로 봉상시나 홍문관에서 예조에 첩정을 보낼 때는 그 이전에 승정원을 통해서 시호의 내용을 국왕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을 것이다.

예관을 제외한 이문 중에서 국왕의 재가가 있었던 것은 도청에서 생산한 문서 중에 하위직 근무자의 요포料布 지급과 관련된 사항의 문서 2점(1·4번) 뿐이다.

그렇다면 국왕의 재가 사항이 예관을 통해 "예조→국왕→예조→도감(도청)"의 순서로 전달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야겠지만, 본 의궤만을 대상으로 할 때 도감에서 도제조의 명의로 직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조를 통해서 도감에 전달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예조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행력을 가지는 정책적 내용은 예조에서 초안을 만들어 국왕의 재가를 받은 후 도감에 이첩移牒했던 것인데, 정책적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상 예조이며 도감은 결정된 사업 내용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었던 것이다.

도감의 도청에서 도제조의 뜻으로 국왕에게 올린 문서는 모두 "감계 ↔ 지도"의 내용이었던 반면, 예조 관문에 전사된 계사는 대부분 "하여 ↔ 의윤"의 내용으로 정책적 결정 사항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도감의 도제조를 의정부 영의정으로 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중앙 관서의 행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육조직계제六曺直啓制를 근간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4.} 박준호, 『예의 패턴 :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사』(소와당, 2009), 130~146쪽.

[표 4] 도감의 이문

-	날짜	발급	수취	두사 頭辭	결사 結辭	내용	분류
1	10월 4일	도청都廳	支병조戸兵曺	爲相考事	向事	요포 마련	이문질
2	10월 5일	선공감繕工監		 繕工監爲相考事	相考施行爲只爲	 감역관 분차	이문질
3	11월21일	봉상시奉常寺		奉常寺爲相考事	相考施行爲只爲	개제주차지관 분차	이문질
4	12월 일	도청都廳	支병조戸兵曺	爲相考事	向事	요포 마련	이문질
5	10월 9일	예조禮曺	도청都廳	禮曺爲相考事	相考施行爲只爲	옥책문 제진	예관질
6	10월12일	예조禮曺		禮曹爲相考事	相考施行爲只爲	교호 · 시호 후록	예관질
7	10월19일	예조禮曺		禮曺爲相考事	相考施行爲只爲	보식寶式 후록	예관질
8	10월19일	예조禮曺	도청都廳	禮曺爲相孝事	相考施行爲只爲	시보諡寶 입각	예관질
9	11월 6일	예조禮曺	도청都廳	禮曺爲相考事	相考施行爲只爲	 휘호 후록	예관질
10	11월13일	예조禮曺	도 청都廳	禮曺爲相考事	相考施行爲只爲	보식 후록	예관질
11	11월18일	예조禮曺		禮曹爲相考事	相考施行爲只爲	응행절목	예관질
12	11월19일	예조禮曺		禮曺爲相考事	相考施行爲只爲	길일吉日	예관질
13	11월23일	예조禮曺	도청都廳	禮曺爲相考事	相考施行爲只爲	길시吉時	예관질
14	_	예조禮曺	도청都廳	禮曺爲相考事	相考施行爲只爲	내입내출 길일길시	예관질
15	_	예조禮曺	도청都廳	禮曺爲相考事	相考施行爲只爲	습의 행례行禮	예관질
16	 11월25일	예조禮曺	도청都廳	禮曹爲相考事	相考施行爲只爲	 묘호 등 후록	예관질
17	_	예조禮曺	도청都廳	禮曺爲相考事	相考施行爲只爲	응행절목	예관질
18	10월 7일	일방一房	경기감사京畿監司	爲相考事	知委施行向事	백토白土 상납	이문질
19	_	일방一房	경기감사京畿監司	爲相考事	向事	장인 기송起送	이문질
20	10월12일	일방一房	어영청御營廳	爲相考事	向事	장인 기송	이문질
21	10월17일	일방一房	관리청管理廳	爲相考事	向事	장인 기송	이문질
22	10월19일	일방一房	훈령도감訓鍊都監	爲相考事	向事	장인 기송	이문질
23	11월21일	일방一房	종묘서宗廟署	爲相考事	相考施行向事	 주홍배안상 차출	이문질
24	_	일방一房	호조戸曺	爲相考事	相考施行向事	 독책상 차출	이문질
25	_	이방二房	경기감사京畿監司	爲相考事	事	 장인 기송	이문질
26	_	이방二房	경기감사京畿監司	爲相考事	事	정옥사 상납	이문질
27	_	이방二房	경기감사京畿監司	爲相考事	事	정옥사 상납	이문질
28	-	이방二房			施行向事/仍題辭自交河官依數上納	정옥사 상납	이문질

[※] 어람용 의궤는 25~27번 문서의 수신처가 생략되어 있으나, 분상용 의궤에서는 "경기감사료京畿監司了"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신 처를 경기감사로 하였다.

다음으로는 공문서의 발수급 관계와 투식套式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공문서의 두사頭辭 서식은 모두 "상고相考"로 작성되었다. 상고는 공문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투식이다. 평관平關 (대등한 지위의 관청에서 주고받거나 하급 관청에 보낼 때 사용한 공문서 형식)에는 "아무개 일. 상고 등 상황에 따라 칭한다." 라고 규정되었고, 첩정牒呈(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할 때 사용한 공문서 형식)에는 "아무개 일. 치보馳報·첩보牒報·행하行下·상고相考·상송上送 등 상황에 따라 칭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고는 특별히 번역하지는 않지만, 문서를 발급하고 수령하는 관청 상호간에 "점검하고 확인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반면 결사의 투식은 상황에 따라 크게 "힛기솜爲只爲, 안일向事, 사事"로 나뉘고 있다. 모두 이문東文으로, "힛기솜爲只爲"은 현대어로 "~하게끔"의 의미로 "~하도록"이나 "~하게"보다 조금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다. " 일반적으로 하위下位에서 상위上位로 보고하거나 청원하는 문서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상달上達 문서인 첩정이나 청원서인 소지所志 등에서 상급자의 처결을 요청하면서 사용한 경우가 많다. "안일向事"은 "~할 일", "사事"는 "~일"의 의미로 명령이나 당위의 의미를 담고 있다. " 따라서 하위에서 보고하거나 청원한 문서에 상위에서 결정한 처결문은 거의 대부분 "안일向事", "사事"로 마무리되고, 기필코 해야만 하는 것을 강조할 경우에는 "의당안일宜當向事"로 마무리되다. 이러한 투식의 사용 실례를 보이는 문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4

도감에서 주고받은 이문의 결사를 분석하면, 도청과 일방·이방을 불문하고 도감에서 보내는 문서는 모두 "안일向事"과 "사事"로, 도감에서 접수하는 문서는 "호기숨爲只爲"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문서 투식의 패턴을 보더라도 직제에 있어서 영의정이 도제조인 도감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달 조금 넘는 시한 내에 막중한 조정의 사업을 마무리해야 했던 도감의 입장에서는 하달식 시행문이 많았던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17세기 도감 생산 공문서 연구 -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를 중심으로 - 273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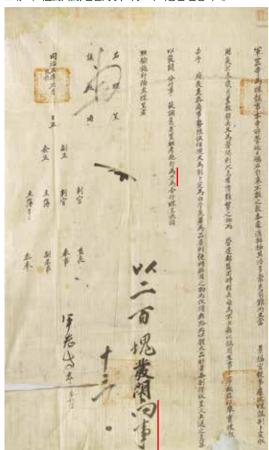
^{35. 『}전률통보』、「별편・평관식平關式」、"某衙門爲某事 [相考等隨稱]."

^{36. 『}전률통보』, 「별편·첩정식牒呈式」, "某職爲某事 [馳報牒報行下相考上送等隨稱]."

^{37.} 홍기문, 『리두연구』(한국문화사, 1957), 199쪽.

^{38.}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 사전』(한양대출판부, 2001), 102·327쪽.

도4. "하기合爲只爲, 안일向事, 사事"가 사용된 첩정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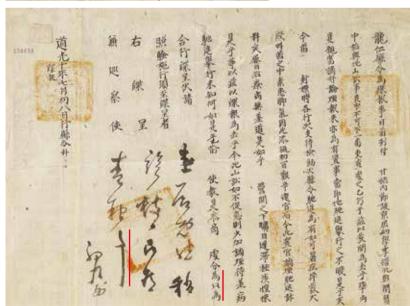
도4-2

도4-1. 「첩정」, 조선 1866년, 53×9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하고학연구워

군기시軍器寺에서 의정부議政府에 올린 첩정. 군기시 작성 문서 본문에 "학기숨爲只爲"이 있고, 의정부의 처결 사항은 "안일向事"로 마무리 되고 있다.

도4-2. 「첩정」, 조선 1830년, 49×36cm,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용인 현감縣監이 순찰사巡察使에 올린 첩정. 현감 작성 문서 본 문에 "ᄒ기숨爲只爲"이 있고, 순찰사의 처결 사항은 "사事"로 마 무리 되고 있다.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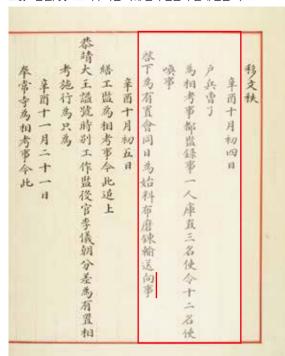
[표 5] 행이 공문서의 발수급 관청 위계 비교

발급 관청	수취 관청	결사	비고
일방一房	훈련도감訓鍊都監(정1품)	向事	도제조(정1품)
일방一房	어영청御營廳(정1품)	向事	도제조(정1품)
도청都廳, 일방一房	호조戸曹(정2품)	 向事, 事	
도청都廳	병조兵曹(정2품)	向事	
일방一房, 이방二房	경기감사京畿監司(종2품)	向事	
일방一房	관리청管理廳(종2품)	向事	유수留守(정2품) 겸직
일방一房	종묘서宗廟署(종5품)	向事	도제조(정1품)
예조禮曺(정2품)	도청都廳	爲只爲	
선공감繕工監(종3품)	도청都廳	爲只爲	
봉상시奉常寺(정3품)		爲只爲	

그렇다면 이들 이문의 문서 종류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예관질로 분류된 예조 발송의 공문서는 예조의 관문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조에서 도감(도청)에 관문을 보냈다면, 도감은 예조와 동등한 위계이거나 그 아래의 위계이어야 한다. 그런데 도감을 2품관의 위계로 보기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데, 예조가 도감의 제조나 도청의 낭청에 보냈다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행이行移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전에 규정된 공문서의 행이 방식에 따른다면, 예관질로 분류된 예조의 관문은 사실 예조의 첩정일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의 정책적 결정이 예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조가 스스로의 권력과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도감에 관문을 보냈을 개연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문移文이나 예조첩정禮事牒呈으로 정리하지 않고 예관禮關으로 달리 분류하였을지도 모른다.

반면 이문질移文秩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공감이나 봉상시에서 도청에 보낸 공문서는 분명히 첩정이었을 것이다.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일반적인 관문의 경우 "합행이관습行移關 청조험시행請照驗施行 수지관자須至關者"의 투식을 제외한 결사는 대부분 "의당안일宜當向事"·"안일向事"·"사事"를 사용하고 있으며, "호기숨爲只爲"은 드물게 쓴다. 또한 첩정의 경우, "합행첩정合行牒呈 복청조험시행伏請照驗施行 수지첩정자須至牒呈者"의 투식을 제외한 결사는 "호기숨爲只爲"을 많이 쓰고, "의당안일宜當向事"·"안일向事"·"사事"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선공감과 봉상시의 결사인 "호기숨爲只爲"을 예관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관은 실제 첩정이거나 아니면 관문이더라도 문서를 받는 상대를 상당히 예우하는 입장에서 작성되었을 것이다.

도5. "안일向事"로 마무리된 의궤 전사 관문과 실제 관문 비교





도5-2

도5-1.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이문질」, 10월 초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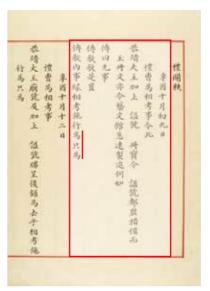
도청에서 호조와 병조에 보낸 공문(관)의 전사 부분으로 '안일向事'로 마무리 되고 있다.

도5-2. 「관」, 조선 1705년, 46×40cm, 서울대학교 규 장각한국학연구원

배천 군수가 연안 현감에게 보내는 관. "합행이관습行移 關, 청조험시행請賜驗施行, 수지관자須至關者,"의 투식을 제 외하면, "상도탈하시행안일相考頻下施行向事,"의 "안일向事" 로 마무리 되고 있다.



도6. "후기솜爲只爲"으로 마무리된 의궤 전사 관 문과 실제 관문 비교



도6-1.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이문질」, 10월 초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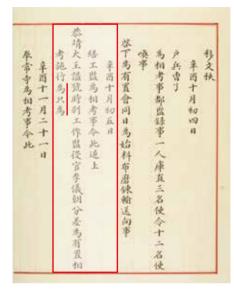
예조에서 도청에 보낸 공문(관)의 전사 부분으로 '호기숨寫只寫'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도6-2. 「관」, 안동 갈전 순흥안씨, 조선 1617년, 41×31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공조에서 호조낭청에 보내는 관. "합행이관습行移關, 청조험시행請照驗施行, 수지관자須至關者."의 투식을 제외하면, "의전례무해유장성급한기숨依前例無解由狀 成給爲只爲"의 "한기숨爲只爲"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도7. "후기合爲只爲"으로 마무리된 의궤 전사 첩정과 실 제 첩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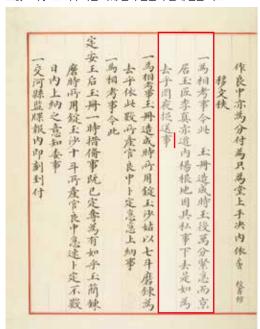
도7-1.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이문질」 10월 5일 선공감에서 도청에 보낸 공문(첩정)의 전사 부분으로 '호기숨寫只寫'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도7-2. 「첩정」 조선 1810년, 21×34cm, 국립중앙박물관 갑산도호부사가 순찰사에게 보낸 첩정. "합행첩정合行牒 呈 복청조험시행休請照驗施行 수지첩정자須至牒呈者."의 투식을 제외하면, "행하호기숨行下爲只爲."의 "호기숨爲只爲"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276 17세기 도감 생산 공문서 연구 -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제』를 중심으로 - **277**

도8. "사事"로 마무리된 의궤 전사 관문과 실제 관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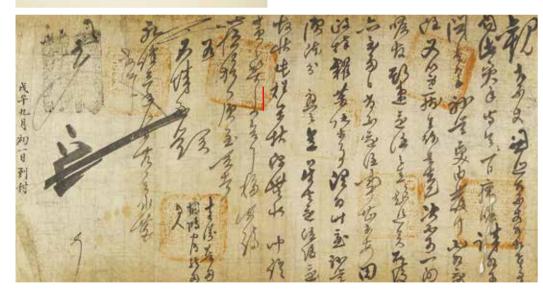
도8-2

도8-1.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수본질」

이방에서 경기 감사에게 보낸 공문(관)의 전사 부분으로 '사事' 로 마무리 되고 있다.

도8-2. 「관」, 조선 1738년, 65×33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 국학연구원

관찰사가 석성 현감에게 보내는 관. "합행이관습行移關 청조험 시행請照驗施行 수지관자須至關者."의 투식을 제외하면, "비무장 문논책지폐사俾無狀閒論竟之弊事"의 "사事"로 마무리 되고 있다.



[표 4]의 19~22까지의 이문에는 "도관즉시분부기송到關即時分付起送"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관문이 도착하면 즉시 송부를 분부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본 공문서가 관문임을 명시한 경우가 되는데, 일방에서 경기감사·어영청·관리청·훈련도감에 보낸 공문서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안일向事"과 "사事"로 결사를 마무리하는 도감 발송의 공문서는 모두 관문으로 규정할 수 있다.



도9. 「봉사지인奉使之印」인 영印影, 조선 1766년, 8.4× 8.4cm, 국립고궁박물관

관문과 첩정의 문서 사례와 "안일向事"·"호기숨爲只爲"·"사事"의 결사는 도5·6·7·8과 같이 비교 정리할 수 있다. 55·6·7·8

마지막으로 도감의 관인官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도감의 관인은 「봉사지인奉使之印」을 사용하고 관련된 내용은 도감의 사목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³⁹ 의궤의 도감 사목에는 "당상과도청의 행용 인신 각 1과는 예조에서 진배할 것.⁵⁰으로 확인되는데, 당상과 도청의 관인은 품계에 따라 그 크기에 차별이 있었다. 현전하는 「봉사

지인奉使之印」의 크기를 보면 방方 8.4cm내외부터 방 6.5cm내외까지 다양하게 구별되어 있고,⁴ 구첩 전九疊篆의 인문印文으로 만들어졌다. 「봉사지인奉使之印」 중에서 방 8.4cm내외의 것은 1품 아문에 해당되는 도감에서 도제조(영의정)의 명의로 작성된 공문서에 답인踏印되었을 것이다. 다만, 현전하는 도감 생산 공문서가 없고, 의궤에도 어떤 관인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관련 인장 제도를 참고하여 추정할 뿐이다.^{도9}

3. 하달 문서 - 감결

조선시대 가장 보편적이었던 관청의 하달下達 문서로는 관關이 있었고, 미관말직에 대한 하달 문서로 하첩下帖이 별도 운용되었다. 이 외에 법전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광범위하게 사용된 하 달 문서로는 감결#結과 전령傳令 등이 있었다.

의궤에 전사된 하달 문서는 관과 감결이 전부인데, 특히 감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감결은 중국에서 전래된 문서로 본래 상위 관청 등의 지시 사항에 대해서 그 수행을 서약하거나 보증하는 개념의 상달 문서였다. 조선에서는 전기부터 하달 문서로 그 성격이 전환되어 상급자의 일방적인 지시 문서로 정착되었다. 본 의궤에는 도청·일방·이방에서 모두 24종의 감결이 작성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278

^{39. 『}만기요람』、「재용편 5・권설도감」、"印信以禮曹奉使之印取用等事 自都監事目啓下"

^{40.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시호도감도청의궤·도감사목」, 10월 2일, "堂上都廳行用印信各一顆 今禮曺進排爲白齊"

^{41. 『}조선왕조의 관인』(국립고궁박물관, 2009), 96~101쪽.

^{42.} 감결에 관한 내용은 다음 논문에서 자세히 정리했다.(尹仁洙, 「朝鮮時代 甘結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08.)

[표 6] 도감에서 생산된 감결

	날짜	발급	수취	결사	내용	분류
1	10월2일	도청	호조戸曹, 형조刑曹, 공조工曹, 장흥고長興庫, 선공감繕工監, 평시서平市署, 위장소衛將所, 제용감濟用監, 와서瓦署, 장예원掌隸院	事	지의 · 다모 등 진배進排 · 정송定送	감결질
2	10월2일	 도청	호조戸曹, 공조工曹, 녹사청錄事廳, 제용감濟用監, 사복시司僕寺, 예조禮曹	事	인신 · 녹사 등 진배 · 정송	감결질
3	10월3일	 도청	호조戸曹, 공조工曹, 사도시司導寺, 예빈시禮賓寺	事	미추尾箒 등 진배	감결질
4	_	도청	호조戸曹, 공조工曹, 장흥고長興庫, 사재감司宰監, 별공작別工作, 군자감軍資監, 광흥창廣興倉	事	낙폭지落幅紙 등 진배	감결질
5	10월4일	도청	호조戸曹	事	분차 산원算員 정송	감결질
6	10월7일	도청	호조戸曺, 장흥고長興庫, 선공감繕工監	事	공사하지公事下紙 등 진배	감결질
7	_	도청	호조戸曹, 공조工曹	事	서사書寫 등 취용取用	감결질
8	12월4일	 도청	호조戸曹, 공조工曹, 장흥고長興庫, 繕工監	事	백지白紙 등 차하	감결질
9	12월16일	도청	호조戸曺, 예빈시禮賓寺, 사재감司宰監	事	교말膠末 등 차하	감결질
10	10월16일	일방	도화서圖畫署	事	화원 정송	감결질
11	10월22일	일방	공조工曺, 제용감濟用監	事	주홍함朱紅函 등 진배	감결질
12	10월29일	일방	승문원承文院	事	전문사자관篆文寫字官 정송	감결질
13	11월1일	일방	도화서圖畫署	事	화원 정송	감결질
14	11월9일	일방	내수사內需司	事	국이장掬耳匠 정송	감결질
15	_	일방	상 방尙方	事	이엄장耳掩匠 정송	감결질
16	11월23일	일방	0 조吏曹	事	분차 김하세의 공회 등 물참	감결질
17	_	일방	한성부漢城府, 평시서平市署	事	습의 시 참여 군인 점고	감결질
18	11월25일	일방	공조工曹, 제용감濟用監, 의장고儀仗庫	事	학창鶴氅 등 영납	감결질
19	11월28일	일방	공조工曹, 이조吏曹, 통례원通禮院, 선공감繕工監, 제용감濟用監, 장흥고長興庫	事	습의 시 상탁床卓 등 준비	감결질
20	12월2일	일방	이조史曹, 한성부漢城府, 의장고儀仗庫, 평시서平市署, 장악원掌樂院, 이방二房, 통례원通禮院, 병조兵曺	事	옥책 등 내입內入 준비	감결질
21	_	이방	도화서圖畫署, 교서관校書館	事	화원 등 정송	감결질
22	_	이방	상의원尙衣院, 공조工曹	事	침선비針線婢 정송	감결질
23	_	이방	승문원承文院	事	사자관寫字官 정송	감결질
24	_	이방	상의원尙衣院, 선공감繕工監, 제용감濟用監	事	색리色吏 진배	감결질

도감에서 생산된 감결의 발급 주체는 도청·일방·이방이며, 수취 관청은 모두 31곳으로 도합 75점의 공문서가 생산되었다. 수취처 중에서 호조·공조·선공감·제용감濟用監·장흥고와 같이 인력이나 물력과 관계있는 다섯 관청이 35점의 감결을 접수하여 전체의 47%를 점하고 있고, 43문서의 거의 대부분은 진배進排·정송定送 등 물력 제공이나 인력 차출에 집중되고 있다.

도감에서 발송한 감결의 결사는 모두 "~사事"로 마무리 되고 있고, 또 2품 아문인 이조東曹 등에 감결을 보내는 것으로 볼 때 모두 도제조의 뜻으로 하달하는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지시를 받는 아문의 품급이 낮더라도 감결을 바로 보낼 수는 없었고, 보내고자 하는 아문의 상급 관청에 관關을 보내 사항을 알리고 나서 그 상급 아문에서 감결을 발송하게 하였다. "그러나도감의 경우는 심지어 육조에까지도 감결을 발송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과 물력의 확보 차원에서 문서 행정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도감과 같은 상급 아문에서 인력과 물력을 일방적으로 차출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선공감과 같이 사업에 소요되는 물력物力의 진배를 담당하는 아문에서는 감결을 접수하여 물력을 제공하고 나서 호조에 보고하면 호조에서는 너무 과하다고 하여 물력의 진배 숫자를 감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결국 선공감만 중간에서 난 감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고자 먼저 호조에 관문을 발송한 다음에 선공감과 같은 관사에 감결을 보내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다.

두 달 남짓한 기간 안에 막중한 시업을 마무리해야 했던 도감의 입장에서 호조의 검토를 경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도감의 문서 중에 "급급急急"이나 "급속急速"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정해진 일정으로 인한 압박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선공감과 같은 이문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물력 징발의 폐해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실제 도감 공문서의 수취 아문을 보면 선공감의 상급 관청인 호조에 관문을 보낸 이후 선공감에 다시 감결을 보낸 경우는 없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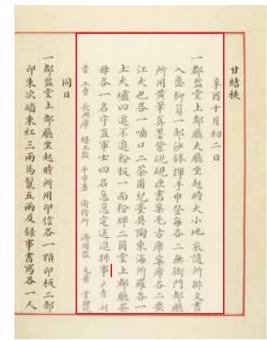
^{43.} 호조·공조·선공감·제용감·장흥고 다섯 관청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경국대전』, 「이전吏典·경관직京官職」, "戶曹 掌戶口·貢賦·田糧·食貨之政 工曹 掌山澤·工匠·營繕·陶冶之政 繕工監 掌土木·營繕 濟用監 掌進獻布物・人 夢・賜與衣服及紗羅·綾段·布貨·綵色・入染・織造等事 長興庫 掌席子・油芚・紙地等物。")

^{44.} 尹仁洙, 앞의 논문(2008), 23~29쪽.

^{45. 『}今정원일기』, 현종 10년 2월 8일 신미, "召對時 左議政計積啓日 諸上司直捧甘結 督令進排雜物 乃是各司通同之弊 而繕工 監之受弊尤甚 諸上司不爲關由戶曹 督令進排之後 戶曹以爲太多 而或不施 或半減 殘司之下人 既已進排於上司之後 勢難還推 凡物之無面 多由於此矣 宋浚吉曰 此事果是莫大之弊 不可不變通 凡干物件 必自戶曹出關後 進排諸上司 毋得直捧甘結 永爲定式官當矣 上日 依爲之。"

^{46. 『}合정원일기』、 숙종 2년 4월 21일 계유、"許積日 凡進排之物 自戸曹量其所入實數 然後分付本監 使之進排 可無濫雜之患 而此則不能直為捧甘結 故既已進排之後 自戸曹以為太多 不許盡數會減 其間弊端 果如寅亮之所達矣 上日 此後則進排之物 必須關由戶曹 可也。"

도10. 의궤에 전사된 감결과 실제 감결 비교



도10-1

도10-2

도10-1.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감결질」, 10월 초2일 도청에서 호조, 형조, 공조, 장흥고長興庫, 선공감緯工監, 평시서 平市署, 위장소衛將所, 제용감濟用監, 와서瓦署, 장예원掌線院에 보 반 감결의 전사 부분으로 '사事'로 마무리 되고 있다.

도10-2. 「감결」, 조선 기해년, 31×74cm, 국립중앙박물관(접수 2972)

도사가 광주 목사에게 발급한 감결. 시작부에 "광주光州"의 수신 처를 명기하였고, 결사는 "안일向事"로 마무리 되고 있다.



현전하는 감결은 대부분 지방 관청에서 발급한 것이어서 중앙 관청의 감결 형식을 유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관인官印과 발송 담당 관원의 서명署名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육조와 같은 곳에도 감결을 보냈으므로 관인은 정1품 도제조급의 것을 찍었을 것이고, 서명도 도제조가 하였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감결은 일방적인 하달 문서이기 때문에 결사가 "의당안일宜當向事"나 "안일向事"과 같이 당위적인 의미를 갖는데, 의궤의 감결은 "사事"로 마무리 되어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았다.^{도10}

4 상달 문서 - 품목·수본

『경국대전』에 규정된 상달上達 문서는 첩정牒呈이지만, 도감에서 생산한 문서 중에는 첩정의 사용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에 상달 문서로서 품목禀日과 수본手本이 사용되었는데, 도청·일방·이방·별공작 등 모든 부서에서 가장 많이 작성된 공문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품목은 서원書院 또는 향교鄉校 문서로 분류되고, 또 대관부對官府 문서로 분류된다. 기본 서식으로 두사는 "품목禀目"으로, 결사는 "감품敢稟"으로 마무리 되며, 접수 관청의 제사題辭가 기재된다. 수본의 경우는 공적인 업무로 장무관掌務官이 상사上司 또는 관계 관서官署에 보고하는 문서로 정의 되며, 궁방宮房에서 내수사內需司로 보내는 것 등의 사례가 현전하고 있다. 48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현전하는 고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중 단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된 것으로, 중앙 관청의 공문서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다소 불완전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품목과 같은 문서의 경우, 의궤에 전사된 것을 보면 앞서 정의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품목은 가장 많이 생산된 문서로 도청·일방·이방에서 96종을 생산하였다. 41곳의 아문이나 관원 등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보낸 것까지를 포함하면 모두 274점을 발송하였다. 역 앞서 감결과 같이 호조·공조·선공감·제용감·장흥고長興庫에 발송한 것이 144점으로 전체 53%를 차지한다. 그리고 정송·진배와 같이 인력과 물력을 차출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우선 품목의 발급·수취 아문과 결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기과 같다.

^{47.} 崔承熙, 『改正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지식산업사, 1999), 488~491쪽.

^{48.} 崔承熙, 앞의 책(1999), 133~135쪽.

^{49.} 이를테면, 의궤에서는 1점의 품목으로 전사되어 있지만 수취 관청을 기준으로 1점의 품목이 많게는 18점의 동일한 내용으로 유관 기관에 발송된 경우가 있다. 이때 전사된 1점을 1종으로 바꾸고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수취 관청 기준으로 계산하면, 96종의 품목이 의궤에 전사되어 있는 것이고 이를 수취한 관청은 중복 관청 포함 모두 274곳이 된다.

[표 7] 도감에서 생산된 품목

284

	날짜	발급	수취	결사	분류
1	-	도청		都提調手決内依國恤時 謄錄以五件修正宜當	품목질
2	10월13일	도청		移文戸兵曺何如堂上手 決内依	품목질
3	11월11일	도청		移文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4	10월2일	일방	호조戸曹, 병조兵曹, 공조工曹, 장흥고長興庫, 위장소衛將所, 양청兩倉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5	10월5일	일방	호조戸曹, 장흥고長興庫, 사섬시司贍寺, 예빈시禮賓寺	-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6	_	일방	호조戸曹, 사재감司宰監, 예빈시禮賓寺, 산청算廳, 공조工曹	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7	10월7일	일방	호조戸曹, 공조工曹, 평시서平市署		품목질
8	_	일방	호조戸曹, 공조工曹, 제용감濟用監, 의영고義盈庫, 예빈시禮賓寺, 선공감繕工監, 군기시軍器寺, 장흥고長興庫, 사섬시司贍寺, 상의원尚衣院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9	_	일방	호조戸曹, 선공감繕工監, 공조工曹, 수세소收稅所, 멸공작別工作, 군기시軍器寺, 제용감濟用監, 장흥고長興庫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10	_	일방	별공작 別工作	-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11	_	일방	호조戸曹, 선공감繕工監, 제용감濟用監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12	-	일방	호조戸曹, 군자감軍資監, 선공감繕工監, 별공작別工作, 제용감濟用監, 공조工曹, 사축서司畜署, 한성부漢城府, 장흥고長興庫, 사도시司導寺, 사섬시司贍寺, 의영고義盈庫, 사재감司宰監, 교서관校書館, 광흥창廣興倉, 예빈시禮賓寺, 내자시內資寺, 평시서平市署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13	_	일방		都提調手決内依前例爲之	품목질
14	_	일방	호조戸曺, 제용감濟用監		품목질
15	_	일방	호조戸曺, 장흥고長興庫, 제용감濟用監	-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16	10월9일	일방	(별공작別工作)	-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17	_	일방	호조戸曹, 양창兩倉, 평시서平市署, 와서瓦署		품목질
18	_	일방	む성부漢城府		품목질
19	_	일방	호조戸曺, 풍저창豊儲倉, 장흥고長興庫		품목질
20	_	일방		都提調手決內旣上 册寶 則不可無樣依前例造作 宜當	품목질
21	10월12일	일방	호조戸曹, 공조工曹, 선공감繕工監, 수세소收稅所, 제용감滯用 監, 군기시軍器寺, 의영고義盈庫, 예빈시禮賓寺, 장흥고長興庫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22	_	일방	(한성부漢城府)		품목질
23	10월13일	일방	호조戸曹, 공조工曹, 사재감司宰監		품목질
24	_	 일방	- 호조戸曺, 공조工曺	- ————————————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날짜	발급	수취	결사	분류
25	-	일방	호조戸曹, 사재감司宰監, 의영고義盈庫, 공조工曹, 별공각別工作, 기인其人, 평시서平市署	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26	10월15일	일방	예조禮曹	都提調手決內 册實詣闕 時及詣 永寧殿時皆當有 儀仗分付禮曹以爲定奪 舉行之地	품목질
27	10월16일	일방	호조戸曹, 공조工曹, 제용감濟用監, 평시서平市署, 와서瓦署, 선공감繕工監, 의영고義盈庫, 사재감司宰監, 군기시軍器寺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28	10월17일	일방	호조戸曺, 제용감濟用監, 산원算員	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29	_	일방	호조戸曺, 선공감繕工監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30	_	일방	호조戸曺, 풍저창豊儲倉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31	_	일방	호조戸曹, 공조工曹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32	_	일방	호조戸曺, 사재감司宰監	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33	10월20일	일방	(평시서平市署)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34	_	일방	호조戸曺, 병조兵曺, 한성부漢城府, 평시서平市署, 의장고儀仗庫, 제용감濟用監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35	10월24일	일방	호조戸曺, 장흥고長興庫, 제용감濟用監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36	_	일방	호조戸曹, 공조工曹, 선공감繕工監, 사재감司宰監, 한성부漢城府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37	10월25일	일방	이조吏曹, 병조兵曹, 이방二房, 상서원尙瑞院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38	10월28일	일방	호조戸曺, 선공감繕工監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39	-	일방	호조戸曺, 공조工曺, 한성부漢城府, 평시서平市署, 선공감繕工監, 의영고義盈庫, 기인其人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40	11월2일	일방	호조戸曺, 조지서造紙署	捧甘何知堂上手決内依	품목질
41	_	일방	전설사典設司, 장흥고長興庫, 선공감繕工監, 호조戸曺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42	11월6일	일방	(종묘서宗廟署)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43	_	일방	제용감齊用監, 선공감繕工監, 장흥고長興庫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44	_	일방	(제용감濟用監)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45	_	일방	호조戸曺, 장흥고長興庫, 제용감濟用監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46	11월7일	일방	호조戸曺, 공조工曺, 풍저창豊儲倉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47	11월7일	일방	호조戸曺, 제용감濟用監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48	_	일방	호조戸曹, 공조工曹, 제용감濟用監, 상의원尚衣院, 의영고義盈庫, 예빈시禮賓寺, 군기시軍器寺, 선공감繕工監, 사섬시司贍寺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49	11월9일	일방	호조戸曺, 공조工曺, 한성부漢城府, 군기시軍器寺, 제용감濟用監, 예빈시禮賓寺, 선공감繕工監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50	_	일방	호조戸曺, 제용감濟用監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51	_	일방	호조戸曺, 조지서造紙署, 내의원內醫院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17세기 도감 생산 공문서 연구 -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례』를 중심으로 - 285

	날짜	발급	수취	결사	분류
52	11월13일	일방	이조吏曹, 병조兵曹, 상서원尙端院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53	_	일방	병조兵曹, 한성부漢城府, 평시서平市署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54	11월21일	일방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55	_	일방		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56	_	일방	호조戸曺, 별공작別工作, 선공감繕工監, 장흥고長興庫, 풍저창豊儲倉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57	_	일방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58	11월23일	일방	호조戸曹, 공조工曺, 선공감繕工監, 제용감濟用監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59	11월26일	일방	호조戸曹, 공조工曹, 장흥고長興庫, 제용감濟用監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60	11월26일	일방	통례원通禮院, 영녕전수복永寧殿守僕	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61	_	일방	호조戸曹, 장흥고長興庫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62	12월4일	일방	0 조吏曺	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63	_	일방	호조戸曹, 공조工曹, 장흥고長興庫, 사섬시司贍寺, 선공감繕工監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64	10월2일	이방	병조兵曹, 호조戸曹, 군자감軍資監, 장흥고長興庫, 평시서平市署, 선공감繕工監, 예빈시禮賓寺, 위장소衛將所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65	_	이방		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66	_	이방	(경기감사京畿監司)	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67	_	이방	별공작 別工作	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68	_	이방	호조戸曺, 공조工曺, 광흥창廣興倉, 군자감軍資監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69	_	이방	(한성부漢城府)	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70	_	이방	사재감司宰監, 기인其人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71	_	이방	(별공작別工作)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72	_	이방	호조戸曺, 별공작別工作, 사섬시司贍寺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73	_	이방		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74	_	이방	내의원内醫院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75	_	이방	호조戸曺, 제용감濟用監	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76	_	이방	별공작 別工作	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77	_	이방	(경기감사京畿監司)	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78	_	이방	호조戸曺, 공조工曺, 제용감濟用監, 선공감繕工監, 사섬시司贍寺, 예빈시禮實寺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79	_	이방	호조戸曹, 사재감司宰監, 조지서造紙署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80	_	이방	호조戸曹, 사재감司宰監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81	_	이방	멸공작 別工作, 한성부 漢城府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82	_	이방	む 성早漢城府	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286

	날짜	발급	수취	결사	분류
83	_	이방	호조戸曹, 광흥창廣興倉, 군자감軍資監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84	_	이방		—————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85	_	이방	호조戸曺, 사재감司宰監	—————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86	_	이방	호조戸曺, 제용감濟用監	————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87	_	이방	호조戸曺, 공조工曺, 장흥고長興庫		품목질
88	_	이방	호조戸曺, 예빈시禮賓寺, 내자시內資寺	—————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89	_	이방	호조戸曺, 장흥고長興庫	—————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90	_	이방	군기시軍器寺	————— 捧甘何如堂上手決内二	품목질
				片加上下事捧甘	
91	_	이방	선공감繕工監		품목질
92	_	이방		————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93	_	이방		———— 何如堂上手決内證道謌	품목질
				刻役旣已完畢叱分不喻	
				役事輕重有別玉簡刻字	
				臨時更稟施行	
94	_	이방		—————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95	_	이방	호조戸曺, 선공감繕工監	————— 捧甘何如堂上手決内依	품목질
96		이방	호조戸曺, 제용감濟用監, 사섬시司贍寺		품목질

96종 품목의 결사는 대동소이한데, "봉감하여捧甘何如"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봉감捧甘"은 "감결을 받는다."는 뜻으로 인력과 물력을 차출 당하는 아문으로부터 감결을 받는다는 것이다. 애초 감결은 하달 문서가 아닌 서약과 보증의 의미를 가지는 문서였기 때문에, "봉감"은 상대방으로 부터 인력과 물력을 제공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둔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감결의 개념은 차츰 변화되어 조선 후기에는 일방적인 하달 문서가 되었지만, 50 봉감은 실제 서약서를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용어는 본래 감결의 뜻대로 서약서의 개념이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봉감하여"는 "감결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서약서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로 풀이해야 할 것 같다. 결사로 사용하는 "봉감"은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사실상 문서의 수취자에 대한 상급자의 일 방적인 지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51

직접 수신처를 지정하여 지시 사항을 하달한 감결의 경우에는 본문 중에 별다른 수신처를 기

17세기 도감 생산 공문서 연구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케』를 중심으로 - 287

^{50.} 尹仁洙, 앞의 논문(2008), 15쪽.

^{51. &}quot;봉감"을 "감결을 보내다."의 의미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의 감결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하달 문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감결을 보낸다."는 뜻으로는 "발감發甘"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록하지 않지만, 품목은 많은 경우에 "급속진배사急速進排事. 각해사은회봉감하여各該司良中捧世何如"(빨리 진배할 일. 각 담당 관사에 감결(서약서)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와 같이 처격조사인 "은회良中"를 써서 감결(서약서)를 받을 수신처를 명기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판사의 경우 "당상수결내의堂上手決內依"가 대부분이고 4종의 품목만은 "도제조수결내都提調手 決內"로 마무리하고 있다.⁵² 용어 중에 "수결手決"의 개념이 애매한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 전』에는 "예전에, 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에 자필로 글자를 직접 쓰던 일. 또는 그 글자. ≒수례手例·수압手押·판압."으로 정의되어 있다. 만약 품목 판사의 수결을 사전적 정의와 같 이 서명署名의 개념으로 풀이한다면, "당상수결내의堂上手決內依"에서 당상의 수결은 곧 의依와 같 은 의미가 된다. 하지만 문서에 의依자로 서명만 한 경우를 가정하는 표현으로 보기에는 실제 문 서와 상이한 점이 많다.

조선 후기 작성된 결송입안決訟立案 등 많은 전사 문서에서 수결은 "손수 처결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의 결송입안은 문서의 서식과 내용을 모두 전사한 것인데, 수결과 착 압출押의 용어가 동시에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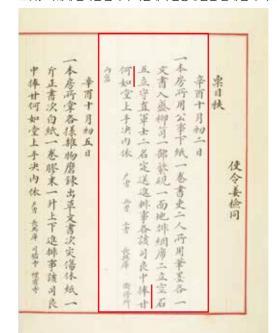
같은 날 당상께서 손수 처결하신 내용^{手決內}, "이여성의 무고죄는 이미 자백을 끝냈으니 형조^{刑曹}에 이관하여 처결하라." 당상^{堂上} 착압^{着押} 답인^{踏印53}

위 인용문에서 착압着押은 처결을 내린 당상의 서명이고, 답인踏印은 그 당상이 관할하는 아 문에서 사용하는 관인官印을 찍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문서의 내용 중 당상의 처결 사항은 "이 여성무고지죄李如晟誣告之罪 기이지만旣已遲晚 이형조처지移刑曹處之."이며, 나머지는 모두 문서의 형식을 설명하는 것이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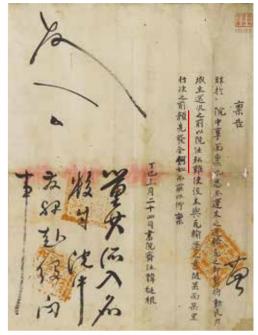
의궤의 "당상수결내堂上手決內"도 "당상이 처결한 내용(에)" 정도의 문서 형식을 설명하는 의미로 풀이해야 할 것 같다. "당상이 수결한 문서"와 같이 당상이 수결(서명)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시 사용 용어의 사례로 보거나 문서의 전사 방식으로 보아도 무리가 있다.

다음 "의依"는 문자 그대로 "아뢴 내용에 따라 시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감의 상달 문서에

도11. 의궤에 전사된 품목과 서원에서 관청에 올린 실제 품목 비교



도11-1.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품목질』, 10월 초2일 일방에서 호조, 병조, 공조, 장홍고, 위장소, 양창兩倉에 보낸 품 목의 전사 부분으로 '봉감하여捧甘何如'로 마무리 되고 있다.



도11-2. 「품목」, 조선 정사년, 38×51cm,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원의 재임이 관에 올린 품목. 결사를 "예선발령하여取先發令何 如"와 같이 마무리하며, 관의 판사가 여백에 내려져 있다. 중앙 관부의 품목은 아니지만, 대략 이러한 형태의 품목이 작성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있어서 그 개념은 조금 더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아래에서 "하여何如"와 "의依"를 묶어서 상술하겠다. 현재 품목은 서원 등에서 관청에 올린 청원 서류만 있고 관청에서 사용한 것은 남아 있지 않 다. 상달 문서인 만큼 본문은 깔끔한 해서체楷書體로 작성되었을 것이고, 좌측이나 좌측 하단의 여백에는 상급자의 지시 사항이 초서체草書體로 기재되었을 것이다.⁵¹¹

다음으로 수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수본은 일방·이방·개제주소改題主所에서 16종의 문서를 생산하였고, 22곳의 아문이나 개인에게 발송한 총 45점의 문서가 전사되어 있다. 앞서 감결과 같이 호조·공조·선공감·제용감·장흥고에 발송한 것이 23점으로 전체 51%를 차지한다. 그리고 진배와 같이 물력을 차출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발급 관청으로 도청이 없는 것과 인력 정송의 내용이 없는 것이 품목과 다른 점이다. 수본의 발급·수취 아문과 결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52.} 당상과 도제조를 구분한 것으로 볼 때, 당상은 도감의 제조임을 알 수 있다.

^{53. 『}古文書集成』57-晉州雲門 晉陽河氏篇,(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1), 276~288쪽, "同日 堂上手決內 李如晟誣告之罪 旣已遲晚 移刑曹處之 堂上着押踏印。"

^{54.} 박준호, 「한국 고문서의 서명 형식에 관한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4), 32~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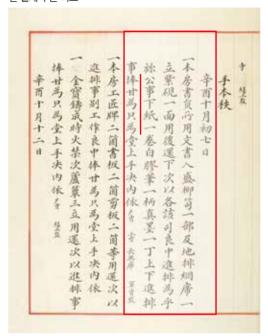
[표 8] 도감에서 생산된 수본

	날짜	발급	수취	결사	분류
1	_	개제	호조戸曺, 공조工曺, 장흥고長興庫	捧甘爲只爲堂上手決内依	개제주소수본질
		주소 ——			
2	-	개제	호조戸曺, 공조工曺, 상의원尙衣院, 사도시司導寺,	捧甘爲只爲堂上手決内依	개제 주 소수본질
		주소	내의원內醫院, 제용감濟用監, 전의감典醫監,		
			병조兵曹, 별공작別工作, 장흥고長興庫, 풍저창豊儲倉, 사용원司饔院, 기인其人		
		711711			
3	_	개제 주소	양창兩倉, 시약司鑰, 상방尙方, 전설사典設司, 장흥고長興庫, 제용감濟用監, 영녕전수복永寧殿守僕	事	개제주소수본질
		' 소 개제	9月77年、200日月月日 00日 1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事	 개제주소수본질
4	_	기시 주소	88位十六水	∌	게세구소구근걸
		개제	호조戸曺, 풍저창豊儲倉, 별공작別工作.		 개제주소수본질
J		주소	でいる。 では、 できる	1十日 がりへかり 土工 リ かに カル	11111111111
6	_	 개제			 개제주소수본질
		주소			
7	10월7일	일방	호조戸曹, 공조工曹, 장흥고長興庫, 군자감軍資監		<u>수본</u> 질
8	_	일방		捧甘爲只爲堂上手決内依	수본질
9	_	일방	호조戸曺, 선공감繕工監	捧甘爲只爲堂上手決内依	수본질
10	10월12일	일방	별공작別工作	捧甘爲只爲堂上手決内依	수본질
11	10월15일	일방	별공작 別工作	捧甘爲只爲堂上手決内依	수본질
12	10월27일	일방	호조戸曺, 장흥고長興庫	捧甘爲只爲堂上手決内依	수본질
13		이방	호조戸曺, 제용감濟用監	捧甘爲只爲堂上手決内依	수본질
14		이방	호조戸曹, 선공감繕工監, 사재감司宰監	捧甘爲只爲堂上手決内依	수본질
15		이방		爲只爲堂上手決内依	수본질
16	_	이방	호조戸曺, 교서관校書館	爲只爲堂上手決内依	수본질

수본의 결사는 대부분 "봉감한기숨捧世爲只爲"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봉감"과 "한기숨"은 모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데, 특히 품목의 "하여何如"에 대해 수본이 "한기숨"으로 한 것은 더 예의를 갖춘 후례厚禮의 표현이다. 따라서 같은 상달 문서라고 해도 품목이 수본보다 박례薄禮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표 8]의 3, 4번 수본은 결사를 "~사事"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사事"는 "안일向事"과 같이 하달 문서에서 사용하는 결사이다. 이 문서의 수신처에 수복守僕 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실무자에게 지시하는 문서임을 알 수 있는데, 미관말직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하첩이나 도감에서 많이 사용한 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달 문서인 수본을 하달 문서로 사용한 것은 특이한 사례이다. 그러나 본 의궤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감결이었던 두 점의 하달 문서가

도12. 의궤에 전사된 수본과 궁방宮房에서 내수사內需司에 올 린 실제 수본 비교





도12-1.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수본질」, 10월 초7일 일방에서 호조, 공조, 장홍고, 군자감軍實監에 보낸 수본의 전사 부분으로 '봉감한기(森神耳爲)'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도12-2. 「수본」, 조선 1701년, 74×36cm, 서울대학교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궁방에서 내수사에 올린 수본이다. 결사를 '시행호숣기삼施行為 百月爲'으로 마무리 하였는데, "白(盆)"은 높임의 의미가 있어 '호 기숨爲月爲'보다 더욱 공손한 표현이 된다.



수본으로 분류되어 수본질에 함께 포함되었을 개연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수본은 관청에서 많이 사용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전하는 수량이 많지 않다. 관청에서 생산된 수본은 품목과 비슷하게 실무자가 문서를 상신하면 상급자가 처결 사항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⁵¹²

290 17세기 도감 생산 공문서 연구 -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제』를 중심으로 - 291

마지막으로 별공작에서 생산된 12종의 문서를 검토하겠다. 의궤에서는 별다르게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 문서 본문 중에 진배進排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물력의 징출 등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결사로 "봉감호기숨捧世爲只爲"을, 판사로 "당상수결내의堂上手決內依"를 쓴 것과 문서의 수취처로 본문에 "병조위장 (이희兵曹衛將所良中", "해사 (이희該司良中", "각해사 (이희各該司良中" 등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본手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도감에서 생산된 수본은 모두 28종이 되는 셈이다. 별공작에서 생산한 수본의 수취 아문과 결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의궤에 전사된 품목과 수본 124종 중에서 84%에 해당하는 104종(품목 82종, 수본 22종)의 문서는 수신처가 있다. 이는 일반적인 상달 문서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이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도감에서 생산된 품목과 수본이라면, 도청·일방·이방·별공작의 낭청 당하관이 제조와도제조에게 올리는 보고 문서이다. 따라서 굳이 수신자를 명기 하지 않더라도 작성자는 낭청이고수취자는 당상이나 도제조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서가 외부 아문을 수신처로 명기하는 것은특별한 사례임이 틀림없다.

[표 9] 별공작에서 생산된 수본

	날짜	발급	수취	결사
1	10월7일	별공작	병조위장소兵曺衛將所	捧甘爲只爲堂上手決内依
2	10월8일	별공작	해사該司	捧甘爲只爲堂上手決內依
3		 별공작	각해사各該司	—— 捧甘爲只爲堂上手決内依
4		별공작	해사該司	—— 捧甘爲只爲堂上手決内依
5	10월11일	별공작	각해사各該司	捧甘爲只爲堂上手決内依
6	10월17일	 별 공 작	각해사各該司	—— 捧甘爲只爲堂上手決内依
7	11월6일	별공작	각해사各該司	捧甘爲只爲堂上手決内依
8		 별 공 작		爲只爲堂上手決内依
9	11월8일	 별 공 작		爲只爲堂上手決内依
10	11월10일	별공작		爲只爲堂上手決内依
11	11월13일	 별공작		爲只爲堂上手決内依
12	11월26일	 별공작		 爲只爲堂上手決内依

실무 담당자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품목이나 수본과 같은 공문서로 관리자에게 보고하면, 관리자인 당상관은 업무 처리의 방향을 판사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선시대 문서 행정 시스 템이다. 그런데 도감에서는 품목과 수본의 대부분이 실무를 집행할 외부 관청에 보내짐으로써 일종의 지시·하달 문서로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감의 품목과 수본은 형식에 있어서는 상달 문서이지만, 사실상 감결과 같은 하달 문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상달 문서에서 하달 문서로 성격이 바뀌는 것은 국왕에게 계달하는 문서와 대체적으로 그 궤를 같이 한다. 계磨는 조선 태종 연간에 명明의 『홍무예제洪武禮制』에 규정된 문서식에서 영향을 받아 정착된 것으로, 55 황제에 대해서는 주奏, 국왕에 대해서는 계磨라는 용어를 투식으로 사용한다. 반면 일반적인 관원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별다른 투식이 없지만, 여러 공문서 사례를 참고할 때 품禀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달 문서인 품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상급자의 처결 내용이 "의依"가 되는 "품목禀目 ↔ 의依"는 계달 문서의 "하여何如 ↔ 의윤依允"과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의依"는 목간木簡 문서를 사용하는 고대古代부터 상급자의 처결을 표현하는 중요 용어였다. 청 대淸代 조익趙翼(1727~1814)은 『해여총고陔餘叢考』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위漢魏 때 제왕이 이미 압押을 한 조서歸書의 사례가 있었으나, 반드시 다른 글자로 압을 만들었다. 의体 자나 가피자와 같은 것으로 만들었고. 그 이름을 변형하여 만들지 않았다⁵⁶

목간으로 문서를 만들어 사용할 때부터 이미 "의依"는 보고 사항 그대로 시행할 것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례는 당대唐代 공문서에서는 "의판依判(판결에 따라서)"와 같은 투식으로 보편화되었다.⁵⁷

요컨대 "의依"는 특정 보고 사항의 결과적 시행을 강조하는 뜻이며, 따라서 계사나 상달 문서에 있는 "의依"는 보고 내용에 준하여 업무를 시행하라는 하달 문서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투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계달 문서의 "감계 ↔ 지도"와 같이 업무 추진 과정의 보고 사항은 일반적인 관청에 있어서는 "도부到付", "조흘照訖", "지실知悉" 등으로 표현되었던 것 같다. "도부"는 접수하였음을, "조흘"은확인·검토하였음을, "지실"은 보고 내용을 잘 알았음을 의미한다.

관청의 공문서 중에서 "의"·"도부"·"조흘"·"지실"이 사용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도13} 17세기 조선 조정의 행정 문서 중에서, 상달 문서가 하달 문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은 상당히

^{55.} 박준호, 앞의 책(2004), 78~81쪽.

^{56. 『}해여총고』 권33. 「화압花押」, "盖漢魏時 帝王已有押詔之例 然必别有字作押 如依字可字之類 而非自花其名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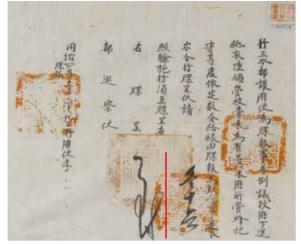
^{57.} 박준호,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박이정, 2016), 73쪽.

도13. 의依' · '도부到付' · '조흘照訖' · '지실知悉'이 사용된 공문서



도13-1. 「소지」, 조선 1710년, 28×25cm, 국립중앙 박물관(구 3910)

노炽 일천日千이 상전을 대신해서 관청에 올린 소지所志. 노비 매매를 공증하는 입안立案 발급을 신청하는 내용이다. 신청대로 진행하라는 의미의 "의依"가 문서 중앙에 쓰여 있다. 의依가 있음으로써 청원서(상달문서)에서 지시서(하달문서)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도13-2. 「첩정」, 조선 1868년, 36×29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삼수도호부사가 도순찰사에게 올린 첩정釋呈, 보고 내용을 접수했다는 뜻 으로 "도부좌付"가 기록되어 있다.



도13-3. 「관」, 조선 1851년, 40.5×53.5cm, 국립중앙박물관(접수 2972) 해유문서 중 호조에서 이조로 발송한 평관平關. 문서 중앙부에 "관조홀부본원關照 試付本員(관을 조홀(검토)하였으니 본원에게 보낼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 조홀은 호조에서 실시한 해유의 결과에 대해 이조에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위해확인을 마쳤다는 의미이다.



도13-4. 「서목」, 조선 1849년, 41×7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철원도호부사가 관찰사에게 올린 서목書目. 보고한 내용을 잘 알았다는 뜻으로 "지실안일知悉向事"이 쓰여 있다.

중요한 특징이다. 법전 규정에 관關이나 첩帖과 같은 하달 문서의 규정이 있고, 일상적으로도 감결 甘結이나 전령傳令 같은 하달 문서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달 문서인 품목이나 수본이 하 달 문서로 성격이 바뀌어 사용되었던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예禮의 후박厚薄 문제와 관련하여 박례薄禮 보다는 후례厚禮 표현의 선호,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조직 효율성 제고, 계달 문서에서 국왕의 재가裁可 방식에 대한 모방 등 그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가 올바르게 밝혀질때 조선시대 도감 조직 운영의 행정적 특징도 한 단계 더 깊이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V. 맺음말

조선 개국 이후 명의 『홍무예제』 규정에 기반한 문서 행정 시스템이 도입은 되었으나, 조선 초기의 것은 중국에 대한 조선의 위상 문제, 『홍무예제』 공문서 체제의 번다함, 인사권에 있어서 서경署經을 둘러싼 왕권과 신권의 대립과 이로 인한 문서 체제의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난맥상은 『경국대전』 체제가 완성되면서 해소되었다. 중국의 육부六部(2품 아문)와 조선 국왕의 위상을 등가로 상정함으로써 조선의 모든 공문서는 중국 육부 중심의 행정 체제에 맞게 재편되었고, 번다한 공문서는 관품官品을 중심으로 관·첩정 체제로 단일화 되었으며, 서경을 둘러싼 왕권王權과 신권 臣權의 대립 구도는 5품을 기준으로 국왕이 직접 입명하는 교지敎旨와 이조와 병조에서 국왕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교첩敎牒으로 정리되었다. 이때 확립된 문서 행정 시스템은 사실상 조선시대 내내 거의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100여 년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세조대世祖代 정착된 행정 체계는 400여 년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응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17세기 묘호·시호·휘호의 추상을 담당한 도감의 생산 문서도 기본적으로는 『경국대전』의 문서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철저히 관품 중심으로 행이 방식이 이루어졌고, 사용되었던 문서의 종류와 형식은 중국에 대한 조선의 위상을 표현하는 것들이었다.

국가의 중대사에 있어서 최고 결정권자인 국왕은 여러 신하와 학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 사업 추진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였다.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도감이 꾸려지고, 도감 관원의 인사 발령과 직제 구성, 시행령 제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감은 유관 관청의 협조를 받아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 백점의 공문서가생산되었으며, 그것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오늘날 의궤로 남게 되었다.

원본이 아닌 전사본이라는 측면에서 공문서 형식의 복원에는 한계가 있지만, 단일한 사안을 중심으로 생산된 일괄 공문서 199점이 온전하게 전한다는 그 자체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1차 사료임에 틀림없다.

도감에서 생산된 공문서를 통해서 볼 때, 비록 도제조와 제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감이라는 조직 자체는 당하관 중심의 실무 처리를 중심에 두었다. 도감에서 국왕에게 보고한 계사의 대부분이 "감계 ↔ 지도"였던 것이 이를 대변한다. 반면 사업 과정에 있었던 중요한 정책적 결정과시행 사항은 예조禮曹에 의해 추진되었고, 예조는 국왕의 재가를 받은 사항을 예관禮關으로 도감에 시달하였다.

도감에서는 다양한 행이 공문서가 생산되었다. 특히 감결·품목·수본이 모두 하달 문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 그 중에서도 상달 문서인 품목과 수본이 하달 문서로 성격이 바뀐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이처럼 하달 문서가 여러 종류로 분화되었던 것은 도감 조직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은 아직 요원한 것 같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도감이라는 임시 기구의 설치가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한 한시적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그결과는 과연 성공적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성공적이었다면 무엇 때문이었고,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또한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현재의 행정 조직 운영에도 유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등의 의문이다. 17세기에 작성된 의궤 한 점으로 당시 행정 조직 운용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더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고,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행정 체제의 비교를 통해 조선시대 행정 시스템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는 그긴 여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작은 위안으로 삼고자한다

국문초록

17세기 도감 생산 공문서 연구 -『정종정안왕후 시호도감의궤』를 중심으로 - 의궤는 임시 조직이었던 도감과 다른 관청이 주고받았던 다양한 공문서를 모아서 편집한 후 베껴 둔 것이다. 본 연구는 1681년에 제작된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에 있는 공문서를 대상으로 17세기 조선 중앙 관서의 행정 조직과 공문서 운용 시스템을 규명한 것이다.

국왕을 비롯한 고위급 신하들의 의결과 재야 원로 학자의 자문으로 결정된 정책적 사업은 곧 바로 도감 조직의 구성을 통해 업무가 추진되었다. 이때 가장 먼저 시행되었던 것은 '도감'을 구성하는 관원의 인사 발령이었다. 인사 발령을 통해 도감의 위상과 인적 구성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고, 새롭게 편제된 도감 관원은 즉시 예전에 만들어 사용했던 시행령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감 운영의 법률적 근거인 '사목'을 만들어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 그리고 도감 자체적으로 하급직 관원의 인사 발령과 집무를 위한 제반 집물을 여러 부서에서 갹출하여 임시 조직의 업무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였다.

이때 도감의 가장 고위직이었던 '도제조'를 관원 중에서 가장 높은 영의정이 겸직하게 함으로 써 막중한 국가 행사 추진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의궤에 전사된 공문서를 분석하면, 도감은 무엇을 의결하여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전혀 없었던 실무적 성격의 조직이었다. 전통적으로 조선은 육조 중심의 행정 조직을 운영하였고, 도감의 업무는 육조 중에서 예조가 담당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도감과 예조에서 국왕에게 보고한 문서와 두 기관이 서로 주고받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감에서 생산된 수백 점의 공문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문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 문서가 다른 하급 실무 관청에 보내져서 그대로 지시 문서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의 행정 조직은 다양한 지시 문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문서를 지시 문서로 바꾸어 사용한 것은 예禮의 패턴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조선시대 행정 조직의 운영을 이 한 점의 의궤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더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중국 일본 등 이웃한 나라의 운영 방식과 비교한다면 조선시대 행정 시스템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궤, 공문서, 도감, 예조, 행정 시스템

Abstract

Study of Official
Documents
Produced by Dogam
in the Seventeenth
Century with a
Focus on the Uigwe
for Bestowing
Posthumous
Titles on King
Jeongjong and
Queen Jeongan

Uigwe are a compilation of various official documents exchanged between a temporary superintendency known as *dogam* (都監) and other government offices. These documents were edited and transcribed for compilation in Uigwe. This study examines the official documents included in the *Uigwe for Bestowing Posthumous Titles to King Jeongjong and Queen Jeongan* (定宗定安王后諡號都 監儀軌, *Jeongjong jeonganwanghu siho dogam uigwe;* hereafter referred to as "Siho dogam uigwe") (1681) in order to investigat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document management system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offices of seventeenth—century Joseon.

When a state project was decided by the king and high-ranking officials after consultation with elder scholars outside of government, a temporary superintendency, or *dogam*, was organiz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first task in implementing such a project was appointing officials to the relevant *dogam*, which determined its status. Once the human resource foundation was laid, the officials at the newly organized *dogam* immediately establish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its assignments by referring to the existing rules and then obtained the king's approval. Known as *samok* (事目), these rules provided a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the *dogam*. Low-ranking officials and the necessary equipment for the *dogam* were transferred from different government offices so that the temporary institution could smoothly perform its affairs.

In bestowing posthumous titles on King Jeongjong (定宗, r. 1398–1400) and Queen Jeongan(定安王后), the king ordered that the State Councilor, or *Yeonguijeong* (領議政) would hold the concurrent office of *Dojejo* (都提調), the highest position in the *dogam* for bestowing posthumous titles on King Jeongjong and Queen Jeongan (hereafter referred to as "Siho Dogam"), thereby demonstrating his resolution toward the project. However, the official documents transcribed in the *Siho dogam uigwe* show that the Siho Dogam was a working—level office with no authority to decide policy. The state affairs of Joseon were administered by the Six Ministries (六曹, *yukjo*), and the Ministry of Rites, known as Yejo (禮曹), took control over the affairs of *dogam* and suggested relevant policy directions. This is evidenced by the reports that the Ministry of Rites and Siho Dogam made to the king, as well as by the documents exchanged between these two institutions.

Among the hundreds of official documents produced by the Siho Dogam, the

majority are reports made to its superiors, which were sent again as directives to working—level offices. That the reports were recirculated as directives, despite the fact that there were many other types of directives used in the Joseon administrative system, appears to be related to courtesy. By using reports as directives, the Siho Dogam paid respect to its partner institutions. Certainly, the operation of the Joseon administrative system cannot be examined through this single Uigwe title. More case studies and further comparisons with neighboring East Asian countries will better help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Joseon period.

Keywords: *Uigwe for Bestowing Posthumous Titles to King Jeongjong and Queen Jeongan (Jeongjong jeonganwanghu siho dogam uigwe)*, Official documents, *Dogam*, Ministry of Rites (Yejo), Administrative system

298 17세기 도감 생산 공문서 연구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레』를 중심으로 - 299

Abstract

Étude sur les documents officiels produits par le *Dogam*, le bureau provisoire établi pour un rite royal au XVIIesiècle, transcritsdansle *Uigwe* relatif à l'attribution de titres posthumes au roi Jeongjong et à la reine Jeongan

Un *Uigwe* consiste en une somme de divers documents officiels transcrits, rassemblés et ordonnés, ayant circulé entre divers offices et le *Dogam* qui est le bureau provisoire chargé d'administrer un rite donné ou une cérémonie. Notre étude examine les documents officiels se trouvant dans le *Uigwe* relatif à l' attribution de titres posthumes au roi Jeongjong et à la reine Jeongan, afin de montrer l'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et le système de traitement des textes officiels au XVIIe siècle, sous la dynastie Joseon.

À la suite d'une délibération du roi et de quelques sujets de rang élevé, et en tenant compte de l'opinion d'érudits n'ayant pas de postes officiels, un projet politique fut mis en place, qui donna naissance à un office provisoire voué à sa mise en œuvre. Pour organiser un tel bureau, on désigne d'abord quelques fonctionnaires, qui constituent la base à partir de laquelle le statut et la composition du personnel de l'office vont s'établir. Sur le modèle de décrets préexistants, ces fonctionnaires arrêtent sans tarder un règlement qui pose le fondement juridique de la gestion du nouveau bureau temporaire, et qui est ensuite ratifié par le roi. Puis, pour accomplir efficacement les tâches du bureau, ces mêmes fonctionnaires sélectionnent des personnels de rang inférieur et demandent à d'autres bureaux tous les objets nécessaires à leur travail.

Le poste de *Dojejo*, le plus élevé du bureau provisoire pour un rite royal, est occupé par le premier ministre, qui cumule ainsi deux fonctions, ce qui montre l'importance de l'organisation d'un rite royal. Cependant, les documents officiels transcrits dans le *Uigwe* révèlent que le bureau provisoire chargé d'un rite royal donné ne peut prendre aucune décision politique, qu'il est un simple organisme à caractère pratique. Traditionnellement, sous la dynastie Joseon,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était composée de six ministères, et c'était celui des rites qui définissait l'orientation politique de la mission d'un bureau provisoire. Tout cela est observable dans les documents remis au roi par le bureau temporaire et par le ministère des rites, et dans ceux qui ont circulé entre les deux.

Un bureau provisoire chargé d'un rite royal donné produisait plusieurs centaines de documents, en grande majorité des rapports remis aux fonctionnaires supérieurs. Il faut noter que ces rapports étaient également transmis à titre de textes d'instructions aux offices inférieurs chargés des tâches pratiques. Les organisations administratives de la dynastie Joseon utilisaient divers documents spécifiques pour donner des instructions; c'est pourquoi l'usage de rapports

dans ce but n'était pas sans lien avec les rites. Il est possible de dire que cet emploi des documents exprimait une forme de respect envers celui qui les recevait.

Il ne serait pas légitime d'expliquer la gestion de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à partir d'un unique *Uigwe*. En consultant une variété de recueils de cette sorte et en comparant les gestions administratives coréenne, japonaise et chinoise, nous pouvons envisager d'identifier les spécificités du système administratif de la dynastie Joseon.

Mots-clés: *Uigwe* relatif à l'attribution de titres posthumes au roi Jeongjong et à la reine Jeongan, documents officiels, *Dogam* (bureau provisoire établi pour un rite royal), ministère des rites, système administratif

300 17세기 도감 생산 공문서 연구 - 『정종정안왕후시호도감의레』를 중심으로 - 301

부록 Append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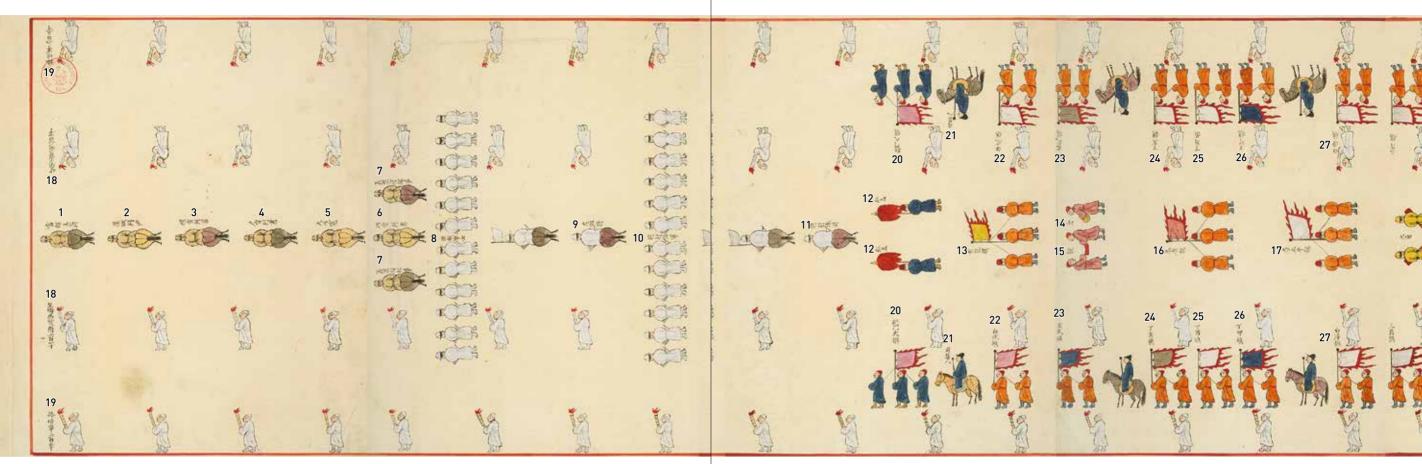
1. 〈발인반차도〉 자세히 보기

Details of the Procession Illustration (Banchado) of the Carrying out of the Royal Coffin for Burial

2.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묘호廟號·시호諡號·존호尊號·휘호徽號 Titles of the Kings and Queens of the Joseon Dynasty

〈발인반차도〉 자세히 보기

Details of the Procession Illustration (Banchado) of the Carrying out of the Royal Coffin for Burial



『효종국장도감의궤』, 〈발인반차도〉

이 반차도는 효종孝宗(재위 1649~1659)이 승하한 후 빈전殯殿(창덕궁 선정전)에 모셔져 있던 효종의 혼백함曉應函과 재궁梓 宮을 받들고 산릉山陵으로 향하는 발인 행렬을 그린 것으로, 총 30면이다.

발인 행렬은 시신이 안치된 재궁을 선정전의 분합문分閣門 밖에서 윤여輪輿에 태워 일덕문一德門, 인화문仁化門을 지나 인정 전仁政殿에 들렀다가, 인정전 앞에서 견여肩輿에 태워 돈화문敦化門으로 나갔다. 이후 흥인문興仁門을 지나 동쪽 관악묘 뒤 노 제소路祭所에서 노제路祭를 모셨다. 노제 후 대여가 떠나고, 사왕嗣王인 현종顯宗(재위 1659~1674)은 환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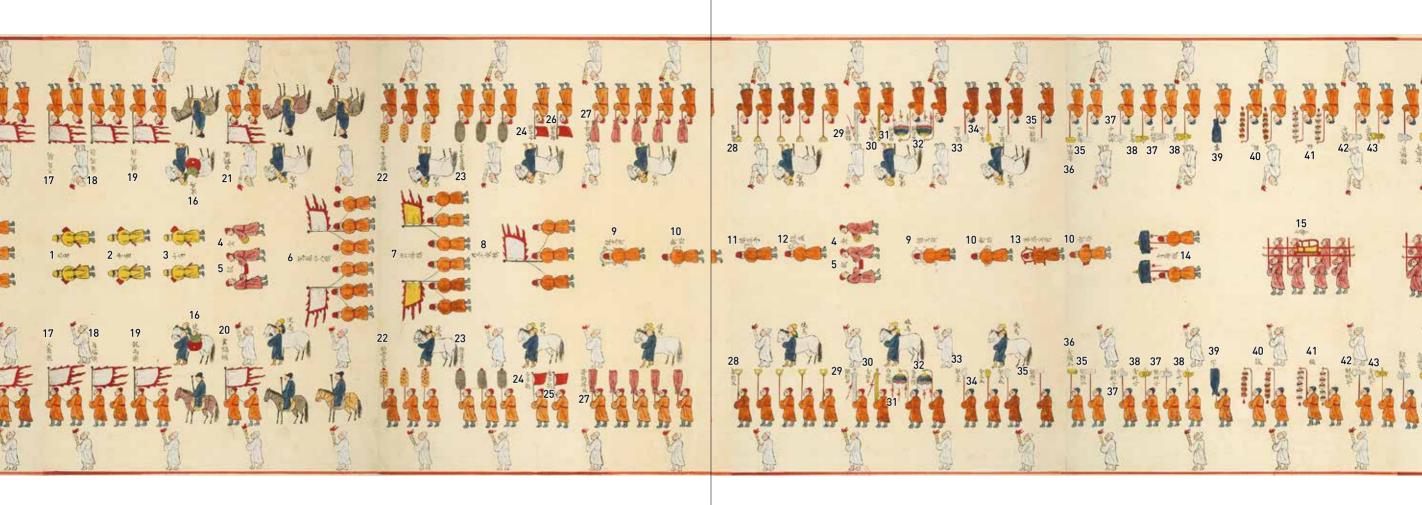
일반적으로 발인반차는 도가導駕, 선상군병先廂軍兵, 대가의장大駕儀仗과 혼백거魂帛車 행렬, 흉의장凶儀仗과 대여大輿 행렬, 호종扈從 행렬, 후상군병後廂軍兵으로 구성되었다.

당부주부가 행렬의 선두에서 길을 인도하고, 국상의 담당자인 한성판윤, 예조판서, 호조판서, 대사헌, 병조판서가 따른다. 이어 행렬을 호위하는 좌상군과 전사대가 나아가고, 이들 뒤로 대가의장大駕儀仗이 늘어선다. 천하태평기를 중심으로 한 의장기 행렬은 행차의 장엄함을 보여준다.

1	당부주부當部主簿	8	ふ とこれ左廂軍士	15	ュ鼓	22	백호기白虎旗
2	한성판윤漢城判尹	9	ふ とる左 麻 將	16	주작기 朱雀旗	23	현무기玄武旗
3	예조판서禮曹判書	10	전사대군前射隊軍	17	천하태평기天下太平旗	24	정해기丁亥旗
4	호조판서戸曹判書	11	전사대장前射隊將	18	망촉충찬위望燭忠贊衛	25	정유기丁酉旗
5	대사헌大司憲	12	홍개紅蓋	19	봉거군 捧炬軍	26	정묘기丁卯旗
6	병 조 판서兵曹判書	13	황룡기黃龍旗	20	홍문대기紅門大旗	27	백택기白澤旗
7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14	-	21	사금司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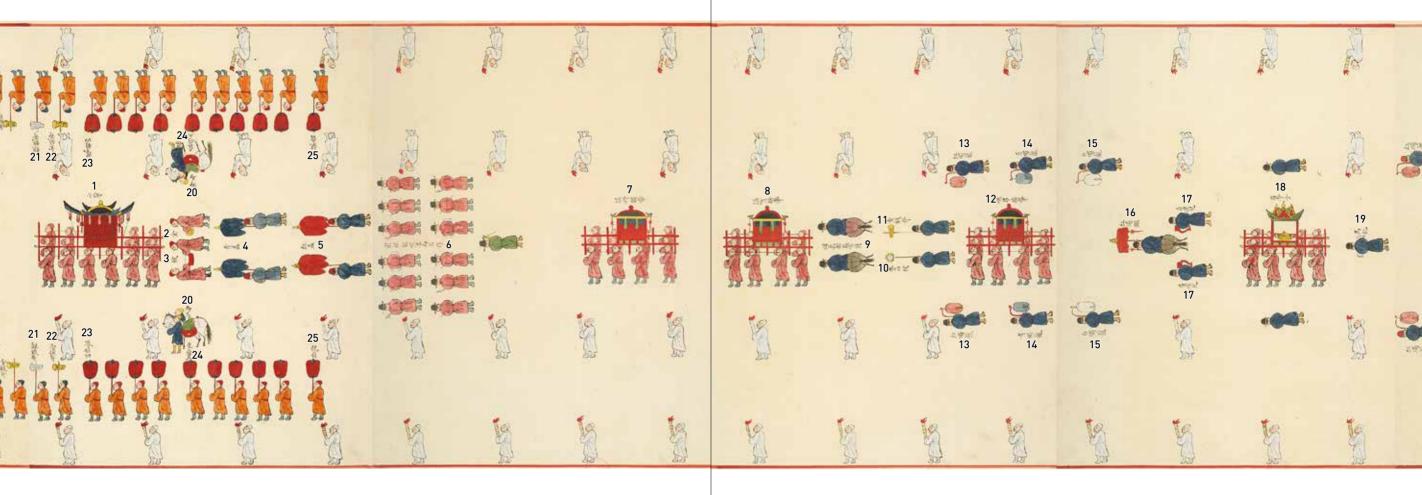
※ 반차도 말미에 반차도의 등장 인물 및 기물에 대한 용어 설명이 있습니다.

304 〈발인반차도〉자세히보기 305



군왕천세기의 주변으로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의장물이 늘어선다. 의장물은 도끼, 칼, 창 등 군사적인 요소가 담긴 것과 우산, 부채 등 상서로움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교의, 각답 등 행사에 소용되는 물품들이 뒤따르고, 이어 왕이 타는 가마가 등장한다.

1 대각大角	13 주칠교의朱漆交倚	25 금자기金字旗	37 은작자銀斫子
2 중각中角	14 청양산靑陽繖	26 고자기鼓字旗	38 금작자金斫子
3 소각小角	15 소여小擧	27 가서봉哥舒捧	39 한罕
4 🔒 🕳 🕳	16 장마仗馬	28 금등金鐙	40 모旄
5 고鼓	17 삼각기三角旗	29 은장도銀粧刀	41 정旌
6 가귀선인기駕龜仙人旗	18 각단기角端旗	30 금장도金粧刀	42 은월부銀鉞斧
7	19 용마기龍馬旗	31 백호당白虎幢	43 금월부金鉞斧
8 군왕천세기君王千歲旗	20 현학기玄鶴旗	32 현무당玄武幢	
9 은교의銀交倚	21 백학기白鶴旗	33 은립과銀立瓜	
10 각답脚踏	22 표골타자豹骨朶子	34 금립과金立瓜	
11 은관자 銀灌子	23 웅골타자雄骨朶子	35 은횡과銀橫瓜	
12 은우銀盂	24 영자기令字旗	36 금횡과金橫瓜	



효종의 혼백거 행렬 앞에 악대인 전부고취가 서지만 실제로 연주하지는 않는다. 이어 효종의 덕을 기리는 시책과 시보를 담은 가마와 왕의 신위 인 혼백을 모시는 혼백요여가 등장한다. 혼백요여 주변의 삼색 초롱은 왕의 혼백 앞에 꺼지지 않는 등불의 역할을 했다.

- 1 소련小輦
- 2 금金
- 3 ユ鼓
- 4 청개靑蓋
- 5 홍개紅蓋6 전부고취前部鼓吹
- 7 시책요여諡册腰轝
- 8 시보요여諡寶腰轝
- 9 국장도감관원國葬都監官員
- 10 수정장水晶仗
- 11 금월부金鉞斧
- 12 혼백요여魂帛腰轝
- 13 홍초롱紅燭籠
- 14 청초롱靑燭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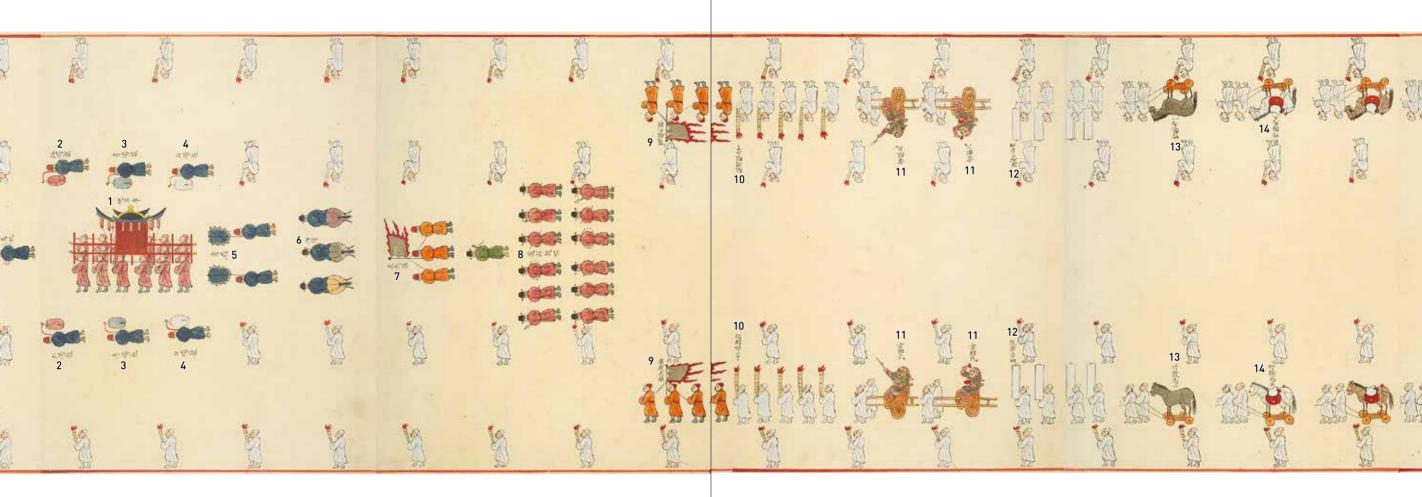
- 15 백초롱白燭籠
- 16 홍양산紅陽繖
- 17 향좌아香座兒
- 18 향정자香亭子
- 19 마궤馬机
- 20 어마御馬
- 21 은월부銀鉞斧

22 금월부金鉞斧23 봉선鳳扇

24 작선雀扇

25 용선龍扇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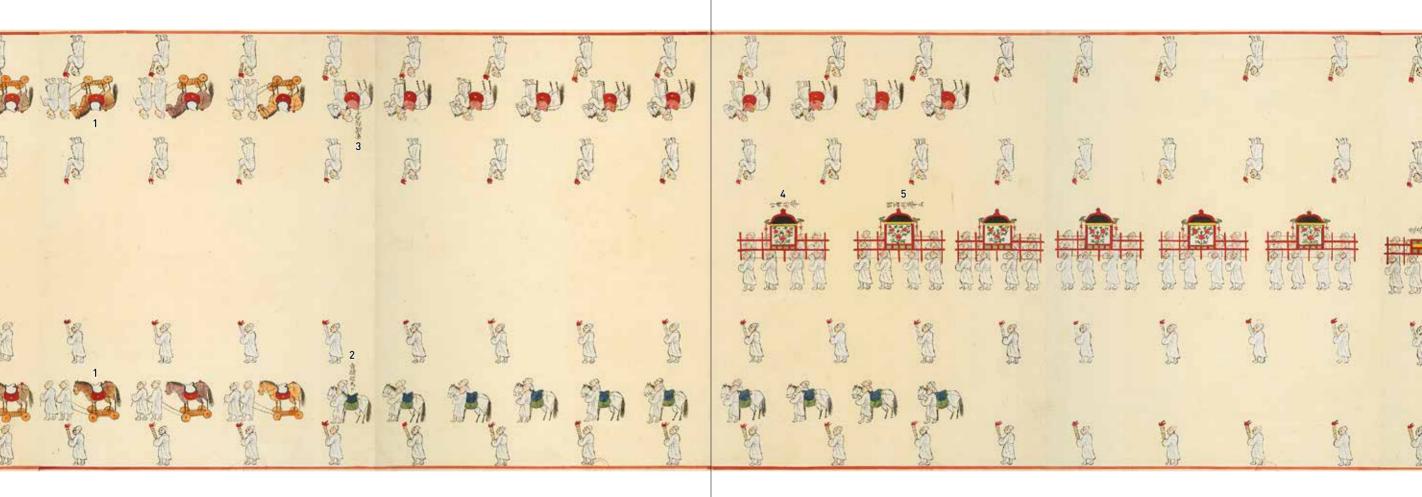
혼백거 행렬 뒤로 송명거가 주위를 밝히며 흉의장 행렬이 등장한다. 방상시, 만장, 죽산마, 죽안마 등은 상례에만 동원되던 의장이다. 방상시는 재궁을 실은 대여 앞에 위치하여 나쁜 기운이 재궁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었다.

- 2 草サイ球用車
 2 草木星紅煙等
- 2 홍초롱紅燭籠
- 3 청초롱靑燭籠
- 4 백초롱白燭籠
- 5 청선靑扇
- 6 내시內侍
- 7 현무기玄武旗
- 8 후부고취後部鼓吹
- 9 후전대기後殿大旗
- 10 송명거松明炬
- 11 방상시方相氏
- 12 만장挽章

〈발인반차도〉 자세히 보기 311

13 죽산마竹散馬

<mark>14</mark> 죽안마竹案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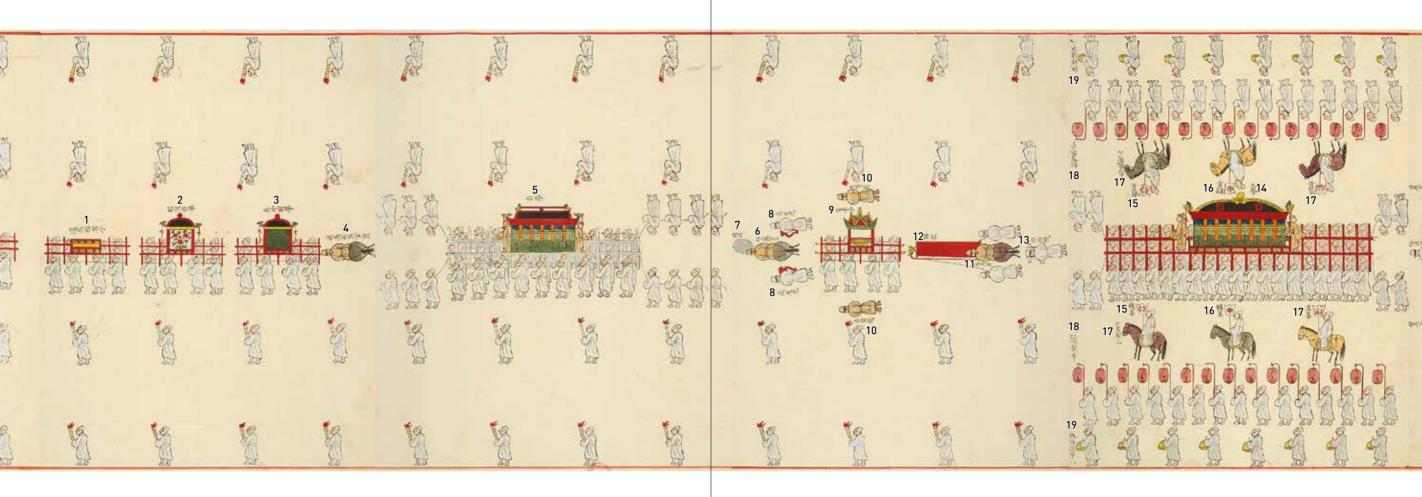


죽안마, 청수안마, 자수안마의 뒤로 죽책을 모신 채여와 명기를 모신 채여가 나타난다. 채여는 귀중품을 나르기 위해 사용하던 가마로 사면을 아름다운 꽃무늬로 꾸미고 채색하였다.

- 1 죽안마竹案馬
- 2 청수안마靑繍鞍馬
- 3 자수안마紫繡鞍馬
- 4 죽책채여竹册彩轝

5 명기채여明器彩轝

312 〈발인반차도〉 자세히 보기 313



유의칭가자, 복완채여, 애책요여, 견여의 뒤로 발인반차의 중심인 대여행렬이 등장한다. 대여를 인도하는 붉은 비단의 명정에는 금물로 '선문장무신성현인대왕 재궁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梓宮'이라 썼다. '선문장무신성현인'은 효종의 시호이다. 불삽·보삽·화삽이 대여를 호위하고, 홍초롱이 대여주변을 밝히며, 방울을 든 군인 16인이 초롱 바깥에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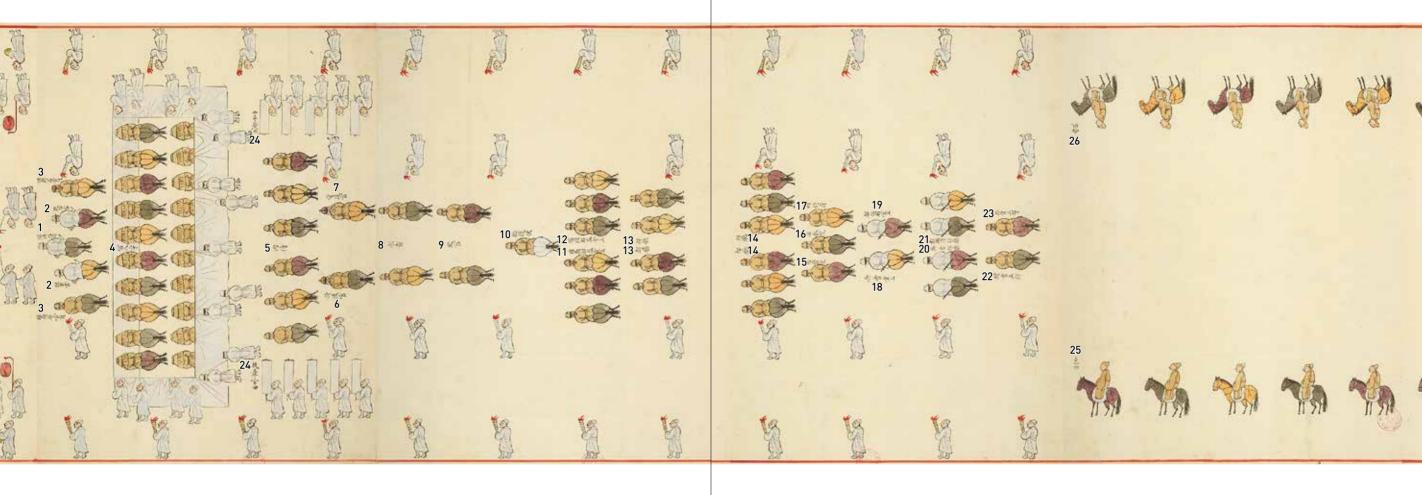
- 1 유의칭가자遺衣稱架子
- 복완요여服琓腰擧
- 3 애책요여哀册腰轝
- 5 견여肩轝
- 6 선공관원繕工官員
- 7 우보羽葆
- 8 장족아長足兒
- 9 **향정자**香亭子 10 충찬위忠贊衛
- 13 명정기銘旌機
- 14 대여大擧

12 명정銘旌

11 충의위忠義衛

- 15 불삽黻翣
- 16 보삽黼翣
- 17 화삽畫翼
- 18 홍초롱紅燭籠
- 19 집탁호군執鐸護軍

314



궁인들이 대여의 뒤를 따르며 곡을 한다. 궁인은 발인반차 행렬 중 유일 한 여성들로 너울을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탔다. 궁인의 주위는 흰 베로 만든 장막으로 둘러막았다. 이 뒤를 호종 행렬이 따른다. 1배왕대장陪往大將2종사관從事官

4궁인宮人5내시內侍

6 시릉관侍陵官

7 수릉관守陵官

3 국장일방관원國葬一房官員

8 승지承旨 9 사관史官 10 총호사摠護使

11 국장도감당상國葬都監堂上12 빈전도감당상殯殿都監堂上

13 도청都廳 14 낭청郎廳 15 내의원內醫院 16 상의원尚衣院

17 내시부內侍府 18 병조당상兵曹堂上

19 도총부당상都摠府堂上20 병조당청兵曹郎廳21 도총부당청都摠府郎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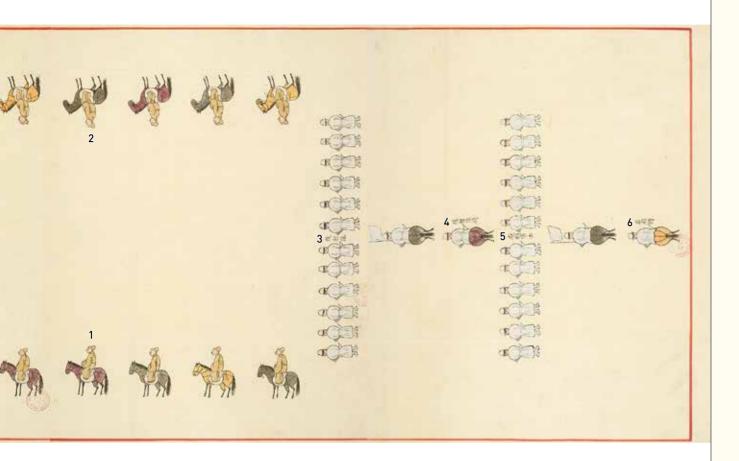
22 예조정랑禮曹正郎

23병조정랑兵曹正郎24만장挽章

<mark>25 동</mark>반東班

<mark>26 서반</mark>西班

316



후사대와 우상군사가 행렬의 후미를 호위하고, 우상장이 행렬의 마지막을 지킨다. 전·후사대와 좌상·우상군사는 일반적으로 훈련도감 군사 400명이 동원되었으나 이 반차도에서는 부대의 편제를 드러내지 않고 일렬횡대로만 묘사하였다.

1 동반東班

3 후사대後射隊

5 우상군사右廂軍士

2 서반西班

4 후사대장後射隊將

6 우상장右廂將

※ 외규장각 의궤 누리집(http://uigwe.museum.go.kr)에서 외규장각 의궤의 다양한 〈발인반차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ш

가귀선인기駕龜仙人旗

거북이를 탄 신선을 그린 의식용 깃발

가서봉哥舒捧

동전 22개를 꿰어 자주색 비단으로 장식한 의식용 장대

각단기角端旗

돼지와 말의 형상을 한 전설 속의 동물인 각단과 구름을 그린 의식용 깃발

간단脚路

임금의 행차 때 의자 밑에 발판으로 사용한 받침대

견여肩擧

장례 행렬에서 좁은 길을 지날 때 임시로 쓴 간단한 상여

己鼓

북

ユ자기鼓字旗

鼓(고)자가 있는 의식용 깃발

ママスマンマンスの大学を表現である。

왕실 장례를 담당하는 임시 관서인 국장도감에 속한 관원

왕실 장례를 담당하는 임시 관서인 국장도감의 정3품 이상의 관원

국장일방관원國葬一房官員

왕실 장례를 담당하는 임시 관서인 국장도감의 제1방에 속한 관원

군왕천세기君王千歲旗

君王千歲(군왕천세)자가 있는 의식용 깃발

궁인宮人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를 가까이 모시며 시중을 들던 여인들

금金

징

금등金銀

붉게 칠한 장대 끝에 도금한 말등자를 걸고 끝은 쇠로 장식한 의식용 장대

금립과金立瓜

붉게 칠한 장대 끝에 도금한 참외 모양의 장식을 붙인 의식용 장대로, 참외 모양 장식이 세로로 서 있다.

금월부 金鉞斧

도금한 도끼 모양의 의식용 장대

コ자기金字旗

金(금)자가 쓰여진 의식용 깃발

금작자金斫子

붉게 칠한 장대 끝에 도금한 도끼 모양의 장식을 붙인 의식용 장대

금장도金粧刀

도금한 의식용 칼

금횡과金橫瓜

붉게 칠한 장대 끝에 도금한 참외 모양의 장식을 붙인 의식용 장대로, 참외 모양 장식이 가로로 누워 있다.

ナ청郎廳

각 관서에서 차출하여 겸임시켰던 실무를 담당한 하급 관원

H人I内侍

궁궐에서 음식이나 왕명 전달, 청소 등의 일을 맡아보던 환관

내시부內侍府

내시의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내의원內醫院

왕의 약을 조제하던 관서

당부주부當部主簿

한성부의 5부部 가운데 행렬이 지나가는 부의 주부

대각大角

신호용 · 의식용으로 사용된 큰 뿔나발

대사헌大司憲

사헌부司憲府의 최고 벼슬

318 〈발인반차도〉자세히 보기 **319**

대여大擧

큰 상여

도청都廳

임시 관서인 도감의 관직

도총부낭청都摠府郎廳

궁궐을 수비하는 도총부都摠府의 실무를 담당한 하급 관원

도총부당상都摠府堂上

궁궐을 수비하는 도총부都摠府의 정3품 이상의 관원

동반東班

문관

마궤馬机

음식을 내어 오거나 물품을 올려놓는 상床

마장挽章

애도의 글을 적은 비단이나 종이로 만든 깃발

마초望燭

국상의 발인 때에 앞을 밝히기 위해 켜는 촛불

명기채여明器彩轝

무덤에 함께 묻으려고 실물보다 작게 만든 식기, 악기, 무기 등을 실은 채색 가마

명정銘旌

죽은 사람의 관직이나 성명을 붉은 비단에 쓴 깃발

명정기銘旌機

죽은 사람의 관직이나 성명을 붉은 비단에 쓴 깃발을 꽂아 두는 틀

兄旄

검은 소의 꼬리로 장식한 전투 지휘용 깃발

Н

방상시方相氏

무서운 복장을 하고 악귀를 쫓는 사람

배왕대장陪往大將

행렬의 호위를 맡은 대장

백초롱白燭籠

흰색 초롱

흰 바탕에 상상 속의 동물 백택白澤(표범 모양의 신수)을 그린 의식용 깃발

백학기白鶴旗

흰 학을 그린 의식용 깃발

백호기白虎旗

흰 바탕에 백호를 그린 군기軍旗.

대오방기大五方旗의 하나로 서방을 상징한다.

백호당白虎幢

새털이나 포목이 늘어진 모양으로 만든 의식용 깃발로 백호를 그렸다.

벽봉기碧鳳旗

황색 바탕에 푸른색 봉황을 그린 의식용 깃발

병조낭청兵曹郎廳

병조의 실무를 담당한 하급 관원

병조당상兵曹堂上

병조의 정3품 이상의 관원

병조정랑兵曹正郎

병조의 정5품 관원

병조판서兵曹判書

병조의 으뜸 벼슬로 정2품의 당상관

보산瓣翠

자루 없는 도끼를 그린 부채 모양의 의식용 장대

복완요여服琓腰轝

무덤에 넣을 옷, 그릇, 노리개 등을 실은 가마

<mark>봉거군</mark>捧炬軍

횃불을 든 군인

봉선鳳扇

봉황을 그린 부채

불삽黻翣

亞(아)자字을 그린 부채 모양의 의식용 장대

也전도감당好所解析

別を表

빈전도감의 정3품 이상의 관원

人

사관史官

역사를 기록하는 관원

사금
司禁

궁궐과 어가 행렬의 호위를 맡은 군사

삼각기三角旗

흰 바탕에 뿔이 세 개인 말을 그린 의식용 깃발

상의원尚衣院

조선시대 임금의 의복을 진상하고, 대궐 안의 재물과 보물 일체를 맡아보던 관서

서반西班

무관

선공관원繕工官員

토목과 건축을 담당하는 선공관의 관원

소각小角

작은 관악기

소련小輦

왕이 타는 작은 가마

소여小擧

왕이 타는 지붕이 없는 작은 가마

송명거松明炬

소나무 관솔 횃불

수릉관守陵官

왕릉을 지키는 관원

수정장水晶仗

도은한 장대 끝에 수정 구슬을 붙이고 도금한 철사를 구부려 수정 구슬의 둘레에 빛나는 형상을 만든 의식용 장대

승지承旨

왕의 비서관

시릉관侍陵官

국상國喪 기간 중에 능陵을 돌보던 관리

人上の内試實腰壁

망자亡者의 존호를 새긴 도장을 실은 가마

시述요여諡册腰轝

망자亡者의 시호와 업적, 덕행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은 시책을 실은 가마

0

애책요여哀册腰轝

애도문을 실은 가마

어마御馬

왕이 타는 말

예조정랑禮曹正郎

예조의 정5품 관직

예조판서禮曹判書

예조의 으뜸 벼슬로 정2품의 당상관

용마기龍馬旗

용마를 그린 의식용 깃발

용선龍扇

용 두 마리를 그린 부채

우보羽葆

우산처럼 생긴 깃털 가리개

우상군사右廂軍士

군대 편제의 하나인 우상右廂의 군사로, 왕의 행차를 호위한다.

우상장右廂將

군대 편제의 하나인 우상右廂의 장수

응골타자 雄骨朶子

곰가죽으로 장식한 의식용 장대

유의칭가자遺衣稱架子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 입던 옷을 걸어놓는 시렁

은관자 銀灌子

은주전자

은교의銀交倚 은으로 만든 의자

은립과銀立瓜

붉게 칠한 장대 끝에 도은한 참외 모양의 장식을 붙인 의식용 장대로, 참외 모양 장식이 세로로 서 있다.

320 < 발인반차도〉 자세히 보기 **321**

은우銀盂

은으로 만든 물항아리

은월부銀鉞斧

도은한 도끼 모양의 의식용 장대

은작자銀斫子

붉게 칠한 장대 끝에 도은한 도끼 모양의 장식을 붙인 의식용 자대

은장도銀粧刀

도은한 의식용 칼

은횡과銀橫瓜

붉게 칠한 장대 끝에 도은한 참외 모양의 장식을 붙인 의식용 장대로, 참외 모양 장식이 가로로 누워 있다.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사법 기관인 의금부의 5~6품 관리

자수안마紫繡鞍馬

자주색 수를 놓은 안장으로 장식한 의식용 목마

작선雀扇

붉게 칠한 장대 끝에 공작새의 깃 모양의 장식을 붙인 의식용 부채

장마仗馬

의식용 목마

장족아長足兒

향로나 향합을 올려놓는 다리가 긴 탁자

전부고취前部鼓吹

행렬의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악대 장례시 행렬에 참가는 하지만 실제로 연주하지는 않았다.

전사대군前射隊軍

활로 무장하고 행렬의 앞을 호위하는 군대

전사대장前射隊將

활로 무장하고 행렬의 앞을 호위하는 전사대의 장수

정旌

검정소의 꼬리를 달고 새털로 장식한 깃발

정묘기丁卯旗

토끼의 머리를 그린 의식용 깃발, 육정기六丁旗 중의 하나

정유기丁西旗

닭의 머리를 그린 의식용 깃발, 육정기六丁旗 중의 하나

정해기丁亥旗

돼지의 머리를 그린 의식용 깃발, 육정기六丁旗 중의 하나

종사관從事官

각 군영의 책임자를 보좌하던 관직

좌상군사左廂軍士

군대 편제의 하나인 좌상左廂의 군사로, 왕의 행차를 호위한다.

좌상장左廂將

군대 편제의 하나인 좌상左廂의 장수

주작기朱雀旗

붉은 바탕에 주작을 그린 군기軍旗, 대오방기大五方旗의 하나로 남방을 상징한다.

주칠교의朱漆交倚

신주神主를 올려 놓는 붉은색 의자

죽산마竹散馬

왕, 왕비의 장례 행렬에 사용한 의장의 하나로, 안장이 없는 대나무 말

죽안마竹案馬

왕, 왕비의 장례 행렬에 사용한 의장의 하나로, 안장을 얹은 대나무 말

죽책채여竹册彩轝

죽책을 실은 채색 가마

중각中角

중간 크기의 관악기

집탁호군執鐸護軍

발인 행렬에서 관을 실은 큰 상여의 좌우에서 방울을 흔들어 호위를 하는 군사

大

천하태평기天下太平旗

天下太平(천하태평)자가 쓰여진 의식용 깃발

청개靑蓋

푸른 비단으로 만든 양산 모양의 가리개

청선靑扇

푸른색 부채

청수안마靑繡鞍馬

대나무나 싸리나무로 몸체를 만들고 푸른색 수를 놓은 안장으로 장식한 의식용 말

청양산靑陽繖

푸른색 양산

청초롱靑燭籠

푸른색 초롱

총**호사**摠護使

국장을 총괄하는 관원

충의위忠義衛

조선시대의 중앙군인 5위衛의 충좌위忠佐衛에 소속되었던 부대로,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 3공신의 자손들로 구성되었다.

충찬위忠贊衛

조선시대의 중앙군인 5위衛의 충좌위忠佐衛에 소속되었던 부대로, 원종공신原從功臣 자손들로 구성되었다.

57

표골타자豹骨朶子

표범가죽으로 장식한 의식용 장대

F-

한성판윤漢城判尹

조선의 수도인 한성부의 수장

한罕

붉게 칠한 장대 끝에 네모난 판자를 붙이고 녹색 보자기를 씌운 의식용 장대

향정자香亭子

향합과 향로를 실은 가마

향좌아 香座兒

향로나 향합을 올려 놓는 사각형 탁자

현무기玄武旗

검정 바탕에 뱀에 감긴 거북을 그린 군기軍旗, 대오방기大五方旗의 하나로 북방을 상징한다.

현무당玄武幢

새털이나 포목이 늘어진 모양으로 만든 의식용 깃발로 현무를 그렸다

현학기玄鶴旗

검은 학을 그린 의식용 깃발

호조판서戸曹判書

호조의 으뜸 벼슬로 정2품의 당상관

혼백거魂帛車

신주를 만들기 전에 임시로 명주나 모시를 접어 만든 신위인 혼백을 나르는 수레

신주를 만들기 전에 임시로 명주나 모시를 접어 만든 신위인 혼백을 옮기는 가마

홍개紅語

붉은 비단으로 만든 양산 모양의 가리개

홍문대기紅門大旗

붉은 바탕에 청룡과 구름 무늬가 있는 의식용 깃발

홍양산紅陽繖

붉은색 양산

홍조롱紅燭籠

붉은색 초롱

화산書翠

구름을 그린 부채 모양의 의식용 장대

황룡기黃龍旗

황색 바탕에 용 두 마리를 그린 깃발

후부고취後部鼓吹

행렬의 뒤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악대

후사대後射隊

활로 무장하고 행렬의 후미를 호위하는 군대

후사대장後射隊將

활로 무장하고 행렬의 후미를 호위하는 후사대의 장수

후전대기後殿大旗

검은 바탕에 청룡과 구름무늬가 있는 깃발

322 〈발인반차도〉자세히 보기 **323**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묘호廟號・**시호**諡號・**존호**尊號・**취호**徽號

Titles of the Kings and Queens of the Joseon Dynasty

			왕			
	묘호廟號	시호諡號		존호尊號	황제 추존	능묘陵墓
		중국	조선			
1대	태조太祖 재위 1392~1398 1335~1408	강 헌康獻	지인계운 성문신무 至仁啓運 聖文神武 정의광덕 正義光德	계운신무 啓運神武 응천조통 광훈영명 應天肇統 廣勳永命	고황제 高皇帝	건원 릉 健元陵
2대	정종定宗 재위 1398~1400 1357~1419	공정恭靖	온인순효 의문장무 溫仁順孝 懿文莊武	인문공예 仁文恭睿		亨 厚陵
3대	태종太宗 재위 1400~1418 1367~1422	공정恭定	성덕신공 문무광효 聖德神功 文武光孝 예철성렬 睿哲成烈	건천체극 대정계우 建天體極 大正啓佑		헌 릉 獻陵
4대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1397~1450	장헌莊憲	영문예무 인성명효 英文睿武 仁聖明孝			영릉 英陵
5대	문종文宗 재위 1450~1452 1414~1452	공 순恭順	흠명인숙 광문성효 欽明仁肅 光文聖孝			현 릉 顯陵
6대	단종端宗 재위 1452~1455 1441~1457		순정안장 경순돈壺 純定安莊 景順教孝			장릉 莊陵
7대	세조世祖 재위 1455~1468 1417~1468	혜장惠莊	지덕용공 성신명예 至德隆功 聖神明睿 흠숙인효 欽肅仁孝	승천체도 열문영무 承天體道 烈文英武		광릉 光陵
추존1	덕종德宗 1438~1457	회 간懐簡	선숙공현 온문의경 宣肅恭賢 溫文懿敬			경 릉 敬陵

	왕비								
-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人」・	~ 豆醇號	황후 추존	휘호徽號					
제 릉 齊陵	신의神懿 1337~1391		고황후 高皇后	승인순성 承仁順聖					
정릉 貞陵	신덕神德 ?~1396		고황후 高皇后	순원현경 順元顯敬					
亨릉 厚陵	정안定安 1355~1412	순 号 順徳		온명장의 溫明莊懿					
헌 릉 獻陵	원경元敬 1365~1420	亨덕厚德		창덕소렬 <i>彰</i> ·德昭烈					
영 릉 英陵	소현昭憲 1395~1446			선인제성 宣仁齊聖					
현릉 顯陵	현덕顯德 1418~1441			인료순혜 仁孝順惠					
사릉 思陵	정순定順 1440~1521	의덕 懿德		단량제경 端良齊敬					
강릉 光陵	정희貞熹 1418~1483	자성 흠인 경덕 선렬 명숙 慈聖 欽仁 景德 宣烈 明淑 원숙 휘신 혜의 신헌 元淑 徽愼 惠懿 神憲							
경 릉 敬陵	소혜昭惠 1437~1504	인수 자숙 仁粹 慈淑		휘숙명의 徽肅明懿					

324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묘호廟號· 시호諡號· 존호錄號· 휘호徽號 325

			왕			
	묘호廟號	시호諡號		존호 尊號	황제 추존	능묘陵墓
		중국	조선			
8대	예종睿宗 재위 1468~1469 1450~1469	양도襄悼	흥문성무 의인소효 欽文聖武 懿仁昭孝			창 등 昌陵
9대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1457~1494	강정康靖	인문헌무 흠성공효 仁文憲武 欽聖恭孝			선 릉 宣陵
10대	연산군燕山君 재위 1494~1506 1476~1506					연산군묘 燕山君墓
11대	중종中宗 재위 1506~1544 1488~1544	공희恭僖	휘문소무 홈인성효 徽文昭武 欽仁誠孝			정통 靖陵
12대	인종仁宗 재위 1544~1545 1515~1545	영정榮靖	헌문의무 장숙흠효 獻文懿武 章肅欽孝			효릉 孝陵
13대	명종明宗 재위 1545~1567 1534~1567	공헌恭憲	헌의소문 광숙경효 獻毅昭文 光肅敬孝			강릉 康陵
14대	선조宣祖 재위 1567~1608 1552~1608	소경昭敬	현문의무 성예달효 顯文毅武 聖睿達孝 계통광헌 응도용조 啓統光憲 凝道隆祚	정륜입극 성덕홍렬 正倫立極 盛德洪烈 지성대의 격천희운 至誠大義 格天熙運 경명신력 홍공융업 景命神曆 弘功隆業		早島穆陵
15대	광해군光海君 재위 1608~1623 1575~1641					광해군묘 光海君墓

왕비							
- 号 足陵墓	人 支諡號	~ 豆醇號	황후 추존	휘호徽號			
공릉 恭陵	장순章順 1445~1461	인혜 仁惠		휘인소덕 徽仁昭德			
창릉 昌陵	안순安順 1445~1498	명의 明懿		소휘제숙 昭徽齊淑			
순릉 順陵	공혜恭惠 1456~1474	자순 화혜 慈順 和惠		휘의신숙 徽懿愼肅			
선릉 宣陵	정현貞顯 1462~1530			소의흠숙 昭懿欽淑			
연산군묘 燕山君墓	거창부인 신씨 1472~1537						
오릉 溫陵	단경端敬 1487~1557			공소순열 恭昭順烈			
희릉 禧陵	장경章敬 1491~1515			숙신명혜 淑愼明惠			
태릉 泰陵	문정文定 1501~1565	성렬 인명 聖烈 仁明		선소의숙 宣昭懿淑			
효릉 孝陵	인성仁聖 1514~1577	공의 恭懿		遠 순 孝順			
강릉 康陵	인순仁順 1532~1575	의성 懿聖		선렬의성 宣別懿聖			
목 릉 穆陵	의인황(- 1555~1600	장성 휘렬 경목 章聖 徽烈 敬穆		정헌 貞憲			
	인목仁穆 1584~1632	소성 정의 명렬 정숙 昭聖 貞懿 明烈 正肅		광숙장정 光淑莊定			
광해군묘 光海君墓	문성군부인 유씨 1576~1623						

326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묘호廟號· 시호諡號· 존호尊號· 위호徽號 327

	왕						
	묘호廟號	시호證號		존호尊號	황제 추존	능묘陵墓	
		중국	조선				
추 <u>존</u> 2	원종元宗 1580~1619	공량恭良	경덕인헌 정목장효 敬德仁憲 靖穆章孝			장릉 章陵	
16대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1595~1649	장목莊穆	헌문열무 명숙순효 憲文烈武 明肅純孝	개천조운 정통선덕 開天肇運 正紀宣德		장릉 長陵	
17대	효종孝宗 재위 1649~1659 1619~1659	考 선忠宣	선문장무 신성현인 宣文章武 神聖顯仁	명의정덕 明義正德 흠천달도 광의홍열 欽天達道 光毅弘烈		80 寧陵	
18대	현종顯宗 재위 1659~1674 1641~1674	장각莊恪	순문숙무 경인창효 純文肅武 敬仁彰孝	소휴연경 돈덕수성 昭休衍慶 敦德緞成		숭릉 崇陵	
19대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1661~1720	희순德順	장문헌무 경명원효 章文惠武 敬明元孝	현의광륜 예성영렬 顯義光倫 睿聖英烈 유모영운 홍인준덕 裕謨永運 洪仁峻德 배천합도 계휴독경 配天合道 啓休篤慶 정중협극 신의대훈 正中協極 神毅大勳		명통	
20대	경종景宗 재위 1720~1724 1688~1724	각공恪恭	덕문익무 순인선효 德文翼武 純仁宣孝			의 릉 懿陵	

		왕비		
능 显陵墓	人の意識・	존호尊號	황후 추존	휘호徽號
장릉 章陵	인헌仁獻 1578~1626			경의정정 敬懿貞靖
장릉	인렬仁烈	정유		명덕정순
長陵	1594~1635	正裕		明德貞順
취릉	장렬莊烈	자의 공신 휘헌 강인 수목		정 숙온혜
徽陵	1624~1688	慈懿 恭慎 徽獻 康仁 淑穆		貞肅溫惠
8	인선仁宣	효숙 정범		경열명헌
寧陵	1618~1674	孝肅 貞範		敬烈明獻
숭릉	명성明聖	현 열 희인		정헌문덕
崇陵	1642~1683	顯烈 禧仁		貞獻文德
익릉	인경仁敬	광렬 선목 혜성 순의		효장명현
翼陵	1661~1680	光烈 宣穆 惠聖 純懿		孝莊明顯
명릉明陵	인현仁顯 1667~1701	효경 숙성 장순 원화 孝敬 淑聖 莊純 元化		의열정목 懿烈貞穆
	인원仁元 1687~1757	혜순 자경 헌열 광선 현익 강성 정덕 惠順 慈敬 獻烈 光宣 顯翼 康聖 貞德 수창 영복 융화 휘정 정운 壽昌 永福 隆化 徽靖 正運		정의장목 定懿章穆
혜릉 惠陵	단의端懿 1686~1718			공 효정목 恭孝定穆
의 릉	선의宣懿	경 순		효인혜목
懿陵	1705~1730	敬純		孝仁惠穆

328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묘호廟號· 시호諡號· 존호錄號· 휘호徽號 329

	왕					
	묘호 廟號	시호證號		존호尊號	황제 추존	능묘陵墓
		중국	조선			
21대	영조英祖 재위 1724~1776 1694~1776	장순莊順	익문선무 희경현효(영종) 翼文宣武 熙敬顯孝 정문선무 희경현효 正文宣武 熙敬顯孝	지행순덕 영모의열 포行純德 英謨毅烈 장의홍륜 광인돈희 章義弘倫 光仁敦禧 체천건극 성공신화 體天建極 聖功神化 대성광은 개태기영 大成廣運 開泰基永 요명순철 건건곤녕 堯明舜哲 乾健坤寧 배명수통 경력홍휴 配命垂統 景曆洪休 중화용도 숙장창훈 中和隆道 肅莊彰勳		원릉 元陵
추존3	진종眞宗 1719~1728		온량예명 철문효장 溫良睿明 哲文孝章		소황제 昭皇帝	영 릉 永陵
추 <u>존</u> 4	장조莊祖 1735~1762		신문환무 장헌광효 神文桓武 莊獻廣孝	장륜융범 기명창휴 章倫隆範 基命彰休 찬원헌성 계상현희 贊元憲誠 啓祥顯熙	의황제 懿皇帝	용 隆陵
22대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1752~1800		문성무렬 성인장효 文成武烈 聖仁莊孝	경천명도 홍덕현모 敬天明道 洪德顯謨	선황제 宣皇帝	건 릉 健陵

	왕비						
능묘陵墓	人」支急號	존호尊號	황후 추존	휘호徽號			
홍릉 弘陵	정성貞聖 1692~1757	혜경 장신 강선 공익 인휘 소헌 원렬 惠敬 莊愼 康宣 恭翼 仁徽 昭獻 元烈		단목장화 端穆章和			
원릉 元陵	정순貞純 1745~1805	예순 성철 장희 혜휘 익렬 명선 睿順 聖哲 莊僖 惠徽 翼烈 明宣 수경 광헌 융인 정현 綏敬 光獻 隆仁 正顯		소숙정헌 昭肅靖憲			
영룡	효순孝純 1716∼1751		소황후 昭皇后	휘정현숙 徽貞賢淑			
양 隆 陵	헌경獻敬 1735~1816	휘목 유정 徽穆 裕靖	의황후 懿皇后	인철계성 仁哲啓聖			
건릉健陵	효의孝懿 1754~1821	장휘 莊徽	선황후 宣皇后	예경자수 睿敬慈粹			

330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묘호廟號・八호諡號・ぞ호尊號・위호徽號 331

	왕					
	묘호廟號	시호證號		존호尊號	황제 추존	능묘陵墓
		중국	조선			
23대	순조純祖 재위 1800~1834 1790~1834		문안무정 헌경성효(순종) 文安武靖 惠敬成孝 문안무정 영경성효 文安武靖 英敬成孝	연덕현도 경인순희 淵德顯道 景仁純禧 체성응명 흠광석경 體聖凝命 欽光錫慶 계천배극 융원돈휴 繼天配極 隆元敦休 의행소륜 희화준렬 懿行昭倫 熙化峻烈 대중지정 홍훈철모 大中至正 洪勳哲謨 건시태형 창운홍기 乾始泰亨 昌運弘基 고명박후 강건수정 高明博厚 剛健粹精 계통수역 건공유범 啓統垂曆 建功裕範	숙황제 肅皇帝	인룡
추존5	<u> </u>		돈문현무 인의효명 敦文顯武 仁懿孝明	체원찬화 석극정명 體元贊化 錫極定命 성헌영철 예성연경 聖憲英哲 睿誠淵敬 용덕순공 독휴홍경 隆德純功 篤休弘慶 홍운성렬 선광준상 洪運盛군 우그탕정 堯欽舜恭 신훈숙모 현조는 지한 사람이 한국 전 환조는 한국	의황제 翼皇帝	수弓 経陵

	왕비						
-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人 支流號	존호尊號	황후 추존	휘호徽號			
인통	순원純元 1789~1857	명경 문인 광성 明敬 文仁 光聖 용희 정렬 선휘 隆禧 正烈 宣徽 영덕 자헌 현륜 英德 慈獻 顯倫 홍화 신운 수목 洪化 神運 粹穆	全勢卓粛皇后	예성홍정 睿成弘定			
수 륭 殺陵	신정神貞 1808~1890	효유 헌성 선경 孝裕 獻聖 宣敬 정인 자혜 홍덕 正仁 慈惠 弘德 순화 문광 원성 純化 文光 元成 숙렬 명수 협천 肅烈 明粹 協天 용목 수녕 현정 隆穆 壽寧 慕경 徽安 欽倫 洪慶 태운 창복 희상 泰運 예헌돈장 翼謨 기지 啓祉	익황후	경훈철범 景勳哲範			

332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묘호廟號· 시호諡號· 존호錄號· 휘호徽號 333

	왕					
	묘호廟號	시호證號		존호尊號	황제 추존	능묘陵墓
		중국	조선 / 대한제국			
24대	헌종憲宗 재위 1834~1849 1827~1849		경문위무 명인철효 經文緯武 明仁哲孝	체건계극 중정광대 體健繼極 中正光大 지성광덕 홍운장화 至聖廣德 弘運章化	성황제 成皇帝	중등
25대	철종哲宗 재위 1849~1863 1831~1863		문현무성 헌인영효 文顯武成 獻仁英孝	희륜정국 수덕순성 熙倫正極 粹德純聖 흥명광도 돈원창화 欽命光道 敦元彰化	장황제 章皇帝	예 릉
26대	고종高宗 재위 1863~1907 1852~1919		태황제 太皇帝 문헌무장 인익정효 文獻武章 仁翼貞孝	통천용운 조극돈륜 統天隆運 肇極敦倫 정성광의 명공대덕 正聖光義 明功大德 요준순휘 우모탕경 堯峻舜徽 禹謨湯敬 응명입기 지화신렬 應命立紀 至化神烈	외훈홍업 巍勳洪業 계기선력 啓基宣曆 건행곤정 乾行坤定 영의홍휴 英毅弘休 수강 壽康	喜 高 洪陵
27대	순종純宗 재위 1907~1910 1874~1926		효황제 孝皇帝 문온무녕 돈인성경 文溫武寧 敦仁誠敬			유통 裕陵

능묘陵墓 시호諡얼 경릉 효현孝됨 景陵 1828~1 효정孝의 1831~1	顧 1843	존호尊號 단성수원 端聖粹元 명헌 숙경 정목 홍성 明憲 淑敬 正穆 弘聖 장순 정휘 장소	황후 추존 성황후 成皇后	희호徽號 경혜정순 敬惠靖順 자온공안
景陵 1828~1 立정孝3	1843 定	端聖粹元 명헌숙경정목홍성 明憲 淑敬 正穆 弘聖	成皇后 성황후	敬惠靖順
	_	明憲 淑敬 正穆 弘聖		자온공안
		章純 貞徽 莊昭 단희 수현 의헌 端禧 粹顯 懿獻 강수 유녕 康綏 裕寧	m.∓.l⊔	慈溫恭安
예릉 철인哲년 睿陵 1837~1		예인 명순 휘성 睿仁 明純 徽聖 정원 수녕 正元 粹寧	장황후 章皇后	경헌장목 敬獻莊穆
홍릉 명성明屆 洪陵 1851~1	成 태황후 太皇后 1895	효자 원성 정화 孝慈 元聖 正化 합천 홍공 성덕 合天 洪功 誠德		제 휘열목 齊徽烈穆
유릉 순명純明 裕陵 1872~1	明 효황후孝皇后 1904			경현성미 敬顯成嶶
순정純』 1894~1	貞 효황후 孝皇后			헌의자인 獻懿慈仁

[※] 이 표는 『조선 왕조 어책 – 옥책』 (국립고궁박물관, 2017)을 참고하여 정리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묘호廟號ㆍ시호諡號ㆍ존호錄號ㆍ휘호徽號 335

외규장각 의궤 연구: 흉례 때 Ⅱ

Funerary Rites of the Oegyujanggak Uigwe II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기획 이재정

편집 이재정 이기현

글 이재정 이선아 박미선 이상식 최주희

임혜경 명세라 박준호(수록 순)

부록 이기현

 번역
 정은선(영문)
 이성엽(불문)

 영문 감수
 William Edward Sharp

 교정 · 교열
 이재정 이기현 정해진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T. 02. 2077. 9000 www.museum.go.kr

북디자인 천진영 최샛별 디자인공방

제작 · 보급 디자인공방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메트로시티 6층 616호

T. 02. 2285. 4132 F. 02. 2266. 9821

 인쇄
 ㈜ 태웅씨앤피

 인쇄일
 2018년 4월 12일

 발행일
 2018년 4월 20일

©2018 국립중앙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SBN 978–89–8164–179–5

978-89-93773-24-8(세트)